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1-01
협동연구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책임연구자】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심층분석
(전문과목지역종별 의사인력 적정성 평가 및 불균형 원인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지영건 차의대학교 교수

정승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진경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명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1-01
협동연구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발행일 2013년

저자 오영호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가격 17,000원

발간사 <<

사회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은 기업 및 정부와 달리 독립된 제3의 제도부문(the third sector)으로서 정부 및 기업과 보완·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제3부문 조직들은 매우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대두되는 비영리부문의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대와 문화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제3부문의 조직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등 일부 사회서비스의 고부가가치성 인정과 노동시장확대의 가능성 등 시장화, 산업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협동연구과제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부분별 비영리 법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년 3차년도에서는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였고, 또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당원 오영호 연구위원 책임 하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차의과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또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유근춘 연구위원과 이철선 연구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1-0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난희 전문연구원 진재현 연구원 오혜인 연구원 진경인 연구원 김명선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안혁근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승은 교수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7
제2절 연구의 목적	44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44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1
제1절 비영리기관의 의의 및 유형	53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68
제3절 선행연구	74
제3장 연구방법	95
제1절 연구자료	97
제2절 책무성 모델 및 연구변수	100
제3절 추정방법	105
제4장 조사대상별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37
제1절 일반국민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39
제2절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66
제3절 비영리법인 직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9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46

제5장 비영리법인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249
제1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251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	278
제3절 조사대상자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비교분석	311
제6장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375
제1절 조사대상기관의 일반특성	377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397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 종합분석	420
제4절 소결	433
제7장 비영리법인의 질적조사 분석	443
제1절 조사대상자 일반특성	44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화된 측면	447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맥락적 측면	499
제4절 소결	515
제8장 외국사례 고찰 및 시사점	519
제1절 내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521
제2절 외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524
제3절 시사점	527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531
제1절 요약	533
제2절 정책방향	535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545
참고문헌	549
부 록	593
부록 1. 비영리법인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 설문지	593
부록 2.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 설문지	597

표 목차

〈표 1- 1〉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분류	46
〈표 2- 1〉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영리 조직 분류	57
〈표 2- 2〉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59
〈표 2- 3〉 비영리단체의 국제분류(ICNPO)	60
〈표 2- 4〉 한국 비영리조직의 분류	61
〈표 2- 5〉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	63
〈표 2- 6〉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	74
〈표 2- 7〉 행정학과 교육학에서의 책무성 관련 선행연구들	82
〈표 2- 8〉 비영리분야 책무성 관련 선행연구들	90
〈표 3- 1〉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	102
〈표 3- 2〉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	103
〈표 3- 3〉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	104
〈표 3- 4〉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원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114
〈표 3- 5〉 일치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115
〈표 4- 1〉 조사대상 국민의 일반적 특성	139
〈표 4- 2〉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141
〈표 4- 3〉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42
〈표 4- 4〉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143
〈표 4- 5〉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45
〈표 4- 6〉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47
〈표 4- 7〉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48
〈표 4- 8〉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54
〈표 4- 9〉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인식도의 기술통계	155
〈표 4-10〉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58
〈표 4-11〉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60

〈표 4-1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0
〈표 4-13〉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0
〈표 4-14〉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61
〈표 4-15〉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62
〈표 4-16〉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2
〈표 4-17〉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3
〈표 4-18〉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63
〈표 4-19〉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64
〈표 4-20〉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4
〈표 4-21〉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5
〈표 4-2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65
〈표 4-23〉 조사 대상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의 일반특성	166
〈표 4-24〉 책임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168
〈표 4-25〉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69
〈표 4-26〉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임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172
〈표 4-27〉 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73
〈표 4-28〉 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74
〈표 4-29〉 공무원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 인식도의 기술통계	176
〈표 4-30〉 공무원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78
〈표 4-31〉 공무원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80
〈표 4-32〉 공무원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85
〈표 4-3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임성 인식도의 기술통계	187
〈표 4-34〉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임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89
〈표 4-3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91
〈표 4-36〉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2
〈표 4-3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2
〈표 4-38〉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92
〈표 4-39〉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94

〈표 4-40〉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4
〈표 4-41〉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4
〈표 4-42〉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95
〈표 4-4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96
〈표 4-44〉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6
〈표 4-4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7
〈표 4-46〉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97
〈표 4-47〉	조사대상 비영리법인의 일반적 특성	199
〈표 4-48〉	책임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201
〈표 4-49〉	설립주체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03
〈표 4-50〉	설립주체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04
〈표 4-51〉	월 이용자수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07
〈표 4-52〉	월 이용자수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09
〈표 4-53〉	인력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11
〈표 4-54〉	인력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13
〈표 4-55〉	출연자산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15
〈표 4-56〉	출연자산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17
〈표 4-57〉	수입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19
〈표 4-58〉	수입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21
〈표 4-59〉	수익분배정도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23
〈표 4-60〉	수익분배 정도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25
〈표 4-61〉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자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28
〈표 4-62〉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자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30
〈표 4-63〉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32
〈표 4-64〉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 책임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33
〈표 4-65〉	조직유형별 책임성 항목의 기술통계	235
〈표 4-66〉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임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237
〈표 4-6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240

〈표 4-68〉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0
〈표 4-69〉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0
〈표 4-70〉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241
〈표 4-71〉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242
〈표 4-72〉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2
〈표 4-7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3
〈표 4-74〉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243
〈표 4-7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244
〈표 4-76〉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5
〈표 4-7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5
〈표 4-78〉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245
〈표 5- 1〉	비영리법인의 내부적 책임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255
〈표 5- 2〉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임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258
〈표 5- 3〉	전체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0
〈표 5- 4〉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3
〈표 5- 5〉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6
〈표 5- 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9
〈표 5- 7〉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72
〈표 5- 8〉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75
〈표 5- 9〉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79
〈표 5-1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0
〈표 5-1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1
〈표 5-1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1
〈표 5-13〉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2
〈표 5-14〉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3
〈표 5-15〉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3
〈표 5-1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4
〈표 5-1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5

〈표 5-18〉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6
〈표 5-19〉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6
〈표 5-2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7
〈표 5-21〉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8
〈표 5-22〉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9
〈표 5-2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9
〈표 5-2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0
〈표 5-25〉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1
〈표 5-2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2
〈표 5-27〉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3
〈표 5-28〉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3
〈표 5-29〉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4
〈표 5-30〉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5
〈표 5-3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6
〈표 5-32〉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6
〈표 5-33〉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7
〈표 5-34〉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8
〈표 5-35〉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9
〈표 5-36〉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9
〈표 5-37〉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0
〈표 5-38〉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1
〈표 5-39〉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2
〈표 5-40〉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2
〈표 5-41〉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3
〈표 5-42〉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4
〈표 5-43〉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5
〈표 5-44〉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5
〈표 5-45〉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6

〈표 5-46〉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7
〈표 5-47〉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8
〈표 5-48〉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8
〈표 5-49〉 전체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12
〈표 5-50〉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15
〈표 5-51〉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18
〈표 5-52〉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21
〈표 5-5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24
〈표 5-54〉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27
〈표 5-55〉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0
〈표 5-5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1
〈표 5-57〉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2
〈표 5-58〉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3
〈표 5-59〉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4
〈표 5-6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5
〈표 5-6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6
〈표 5-6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7
〈표 5-6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8
〈표 5-6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9
〈표 5-65〉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0
〈표 5-66〉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1
〈표 5-6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2
〈표 5-68〉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3
〈표 5-69〉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4
〈표 5-7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지표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5
〈표 5-7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6
〈표 5-72〉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7
〈표 5-73〉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8

〈표 5-74〉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9
〈표 5-75〉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0
〈표 5-7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1
〈표 5-77〉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2
〈표 5-78〉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3
〈표 5-79〉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4
〈표 5-80〉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5
〈표 5-81〉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지표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6
〈표 5-82〉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7
〈표 5-8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8
〈표 5-84〉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9
〈표 5-85〉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0
〈표 5-86〉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1
〈표 5-87〉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2
〈표 5-88〉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3
〈표 5-89〉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4
〈표 5-90〉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5
〈표 5-91〉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6
〈표 5-92〉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7
〈표 5-93〉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8
〈표 5-94〉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9
〈표 6- 1〉 활동분야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377
〈표 6- 2〉 설립주체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378
〈표 6- 3〉 법률상 법인 분류에 따른 비영리법인 수	379
〈표 6- 4〉 설립주체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유형	379
〈표 6- 5〉 활동분야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유형	380
〈표 6- 6〉 기능상 법인유형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381
〈표 6- 7〉 조사대상 비영리기관의 수익추구 가능성	381

〈표 6- 8〉 법인 유형별 수익추구 가능성	382
〈표 6- 9〉 법인 기능유형별 수익추구 가능성	382
〈표 6-10〉 비영리법인 활동분야별 월평균이용자수	383
〈표 6-11〉 비영리법인의 운영기관 수	383
〈표 6-12〉 기능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운영기관 수	384
〈표 6-13〉 기관 세부유형별 법인 구성인력	384
〈표 6-14〉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 법인 구성인력	385
〈표 6-15〉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법인 구성인력	385
〈표 6-16〉 활동분야별 평균 기관인력	386
〈표 6-17〉 기관 세부유형별 평균인력	386
〈표 6-18〉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기관인력	386
〈표 6-19〉 기관 세부유형별 겸직인력	387
〈표 6-20〉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겸직인력	387
〈표 6-21〉 기관 세부유형별 평균 출연자산 규모	388
〈표 6-22〉 법인 법률상 유형별 설립주체별 출연자산 규모	388
〈표 6-23〉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출연자산 규모	389
〈표 6-24〉 법인 법률상 유형별 설립주체별 수입 규모	389
〈표 6-25〉 활동분야별 총수입 구성비율	390
〈표 6-26〉 법인 종류별 총수입 구성비율	391
〈표 6-27〉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수입구성비율	392
〈표 6-28〉 법인 기능유형별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수입구성 비율	393
〈표 6-29〉 법인 유형별 활동분야별 비영리법인 지출규모	394
〈표 6-30〉 활동분야별 지출구성	394
〈표 6-31〉 법인유형별 활동분야별 내부구성원 수익배분율(%)	395
〈표 6-32〉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 내부구성원 수익배분율(%)	395
〈표 6-33〉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권자	396
〈표 6-34〉 설립주체별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권자	397
〈표 6-35〉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측정지표 및 설문문항	398

〈표 6-36〉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측정지표 및 설문문항	399
〈표 6-37〉 민주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00
〈표 6-38〉 활동분야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402
〈표 6-39〉 활동분야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2
〈표 6-40〉 설립주체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402
〈표 6-41〉 활동분야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3
〈표 6-42〉 잔여재산 귀속여부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403
〈표 6-43〉 잔여재산 귀속여부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3
〈표 6-44〉 투명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04
〈표 6-45〉 활동분야별 투명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5
〈표 6-46〉 설립주체별 투명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5
〈표 6-47〉 법인유형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6
〈표 6-48〉 지출규모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6
〈표 6-49〉 잔여재산 귀속여부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7
〈표 6-50〉 효과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08
〈표 6-51〉 활동분야별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8
〈표 6-52〉 법인유형별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9
〈표 6-53〉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9
〈표 6-54〉 형평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1
〈표 6-55〉 요인회전 결과	411
〈표 6-56〉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제도적 형평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2
〈표 6-57〉 합법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3
〈표 6-58〉 활동분야별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4
〈표 6-59〉 기관 설립주체에 따른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4
〈표 6-60〉 법인 유형에 따른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4
〈표 6-61〉 대표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5
〈표 6-62〉 활동분야별 대표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6
〈표 6-63〉 전문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7

〈표 6-64〉 활동분야별 전문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7
〈표 6-65〉 반응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8
〈표 6-66〉 활동분야별 전문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9
〈표 6-67〉 활동분야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0
〈표 6-68〉 설립주체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1
〈표 6-69〉 법인유형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1
〈표 6-70〉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1
〈표 6-71〉 지출규모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2
〈표 6-72〉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2
〈표 6-73〉 내부적 책무성 그룹분류를 위한 Duda/Hart 기준	423
〈표 6-74〉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군집분석 결과	424
〈표 6-75〉 그룹별 내부적 책무성 지수 평균 값	425
〈표 6-76〉 활동분야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7
〈표 6-77〉 설립주체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7
〈표 6-78〉 법인유형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8
〈표 6-79〉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8
〈표 6-80〉 지출규모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9
〈표 6-81〉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9
〈표 6-82〉 외부적 책무성 그룹분류를 위한 Duda/Hart 기준	430
〈표 6-83〉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군집분석 결과	431
〈표 6-84〉 내부적 책무성 지수 요인 적재값	433
〈표 6-85〉 내부적 책무성 지수I 회귀분석 결과	434
〈표 6-86〉 내부적 책무성 지수II 회귀분석 결과	436
〈표 6-87〉 외부적 책무성 지수 회귀분석 결과	437
〈표 7-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45
〈표 7- 2〉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패턴	447

그림 목차

[그림 3-1] AHP 분석의 계층구조 개념도	113
[그림 5-1]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계층구조도	253
[그림 6-1] 내부적 책무성 지수의 그룹별 특성	424
[그림 6-2] 외부적 책무성 지수의 그룹별 특성	431
[그림 7-1]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맥락적 이해	500

Abstract <<

On Improving the Institution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This study, in its third year, is aimed at suggesting a pla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To this end, a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measur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long with a qualitative research asking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o evaluate the corporations' accountability based on their experience with their roles in such corporations.

The qualitative research identified seven inter-related patterns of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that include "legal basis", "representative expert activities", "democratic management",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indiscrimination", "transparency", and "external relationship". A nonprofit organization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law. The core pattern of accountability is representative expert activities, and for this pattern of accountability to realize, democratic management is required, resources should be efficiently used, and no discrimination should be allowed among corporation staff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and good external rela-

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tionship help improv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The overall scor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public officials, and the corporations' staff was in the mid-three point range. This means that Korea's nonprofit corporations have not properly fulfilled its role and functions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 meet social needs that have become ever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e need is voiced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 to expand its role and reinvigorate its activities. This requires the nonprofit corporation's management system to be reexamined to find out if it can live up to such expect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earch finding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nonprofit corporation pursues public interest,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such a process, it should be done by specialize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lso, such verification should not be confined to some document reviews but require broad access to practical information to secure validity.

Given the increasing rol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it is high time to study a more innovative and transparent role of such corporations and to consider the need to improve its accountability by providing new mission and vision for it through working-level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its service to public interest. It is also recommended to establish a relevant information system.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한 정부와 시장 역할의 한계는 오늘날 비영리기관의 성장을 가져왔음. 특히 환경, 복지, 재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정부의 힘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참여와 활동은 비영리 분야의 성장을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
- 이처럼 공익적 활동이 일정부분 민간으로 넘어와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형성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커질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양적 팽창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관련 과세제도, 거버넌스, 지원체계, 이사회의 조직과 운영,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조직의 역량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인 설립취지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그 일환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부분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금년 3차년도에서는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무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비영리법인의 이론적 고찰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수여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로서 사람들의 집합체인 단체, 독립적 재산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재단, 그리고 공법상의 영조물 재단 등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또한 의료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 그리고 학자금·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및 자선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자격을 획득한 공익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의 역할 및 기능

- 비영리법인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나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또한 다른 비영리조직의 기능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를 들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

- 책무성은 어떠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책무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좁은 관점에서 응답성과 연계된 합법적 책무성을 의미하기도 함.
- Dwivedi와 Jabbara(1989), Ott와 Dicke(2000)은 책무성을 조직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

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며, Stone(1995)은 관리, 법, 투표자 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은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음. Behn(2001) 역시 복합적 관점인 사회적 형평성과 성과 관점에서의 책무성의 의미를 고찰했으며, Romzek과 Dubnick(1987)은 책무성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 및 외부관계, 책무성에 의한 통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사분법적 복합책무성 체계를 강조하였음.

- 따라서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무성은 전통적 의미에서 보다 높은 감독자 혹은 상급기관에 대한 절차적 설명가능성을 뜻하지만, 사적 영역에 비해 목적을 명시하기 힘든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혹은 기타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은 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더 큰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 분석틀

- 본 연구에서 책무성의 분석틀은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협의의 책무성 개념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켰음.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공정성, 정당성 등 도덕적 부문과 주변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요구받는 부문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측면을 정리하여 내부적 차원에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책무성과 외부적으로 보다 확장된 외부적 차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틀을 형성하였음. 이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책무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내부적 책무성은 크게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요소로 구성되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의 요소로 구성됨.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기존 국내·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과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책무성 분석모델과 책무성 평가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국가의 공공기관의 책무성 제고방안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함.

□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표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4가지 유형으로,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고, 각 책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설정한 뒤, 이에 근거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책무성에 대한 평가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다’를 3,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수행함. 첫

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째, 양적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둘째, 질적조사는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음.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이었음.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 책무성 분석모델

○ 3차년도 연구의 연구모델과 연구변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의 연구에서 사용한 책무성의 분류를 준용하였음. 책무성 모델에 근거하여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종교 등 5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모델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로는 '책무성'이고, 책무성에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개의 하위 책무성이 있고, 각 하위 책무성에는 각각 4개의 하위 책무성으로 구성되어있음. 설명변수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 등이 있음.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변수로는 조직유형, 기관유형, 그리고 설립주체의 3개의 설명변수가 있음.

□ 모델추정 통계적 방법

- 먼저 비영리법인의 특성별 책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음.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책무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추정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사용하였음.
-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 제공과 함께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음. 해석적 기술은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함(Thorne, 2008).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법들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학계, 비영리법인학회, 정부 및 각 분야별단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4. 연구결과

□ 조사대상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먼저 일반국민은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의료법인(3.447)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3.328), 교육법인(3.262), 종교법인(3.253)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문화예술법인으로 3.154로 나타났음.
-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60으로 일반국민의 평가점수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공무원들도 일반국민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교육법인(3.945)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3.649), 문화예술법인(3.642)과 종교법인(3.47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국민의 평가와는 달리 의료법인으로 3.368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당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95로 일반국민과 공무원과는

달리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내부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비영리법인 유형은 사회복지법인(4.107)이었고, 다음으로는 종교법인(3.979), 교육법인(3.925), 문화예술법인(3.855)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의료법인으로 3.801로 나타났음.

○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비영리법인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 AHP 분석을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분야별로는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 보다 중요하였음. 각 분야를 구성하는 4개씩의 항목별로는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효율

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음.

-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점수를 기준으로서는 합법성, 효율성, 민주성, 대표성, 반응성, 형평성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명성, 전문성 항목이 3.6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음. 이는 AHP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합법성, 형평성, 대표성 항목 등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총 48개의 책무성 지표 중에서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기관의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기관설립의 적법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음.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4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상근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었으며, 종교 및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그리고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라고 판단할 수 있음.
-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평가점수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 분야는 투명성이, 교육분야는 전문성이, 문화예술분야는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이 크게 낮았고, 사회복지 분야는 투명성의 평가 점수가 크게 높았음.
- 의료분야의 경우 반응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다른 분야 보다 책무성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투명성 항목에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음.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설립자나 실질적인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의 평가점수가,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의 평가점수가 다른 분야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음.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보임.
 - 교육분야는 전문성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됨. 즉, 학교법인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문화예술분야는 외부적 책무성에서 대표성을 제외한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 소규모로서 내부적인

1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종교분야는 내부적 책무성 분야의 구성 항목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항목의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종교의 이념적 특성, 예식과 행사의 관행, 그리고 신자 등의 인적 요소 등이 결합하여 외부적 책무성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과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 평가결과에 대한 AHP 분석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보다 높았음. 이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내부적 책무성 구성항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두 집단에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었고, 그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관련 공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책무성 지수분석의 결과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책무성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 비영리법인의 특성별로도 책무성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조직운영의 내부적 관점에서 파악한 내부적 책무성과 기관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외부적

책무성으로 나누어 검토함.

- 내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보면 분석대상 법인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고, 83.4%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였음. 나머지 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두 번째 그룹은 전체의 약 14.8%는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그룹에 속하는 기관들은 내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분석대상의 1%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다른 요소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기본권적 형평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기본권적 형평성은 업무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무엇보다 요구됨. 7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제도적 형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 중에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의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요소별 지수 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수를 기준으로 투명성 지수 값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기본권적 형평성, 민주성, 효과성,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 순으로 책무성 수준이 높았음. 그룹별로 기본권적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전체 비영리법인들의 투명성 지수 값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됨.

- 외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전체 분석대상 비영리법인은 5개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그룹별로 책무성 수준이 상이하며 상당한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룹 전체로 보면 외부적 책무성은 대표성 점수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순으로 책무성 점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88.6%의 기관이 포함된 첫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외부적 책무성 요소들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목별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항목들도 있어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개의 기관만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은 반응성이 타 그룹에 비해 낮고 다른 요소들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응성은 타 비영리기관과의 교류, 정부와의 협력, 고객이나 사회일반의 요구수렴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포함된 그룹으로 전체의 11%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외부적 책임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2개 기관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반응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수준이하이며, 다섯 번째 그룹은 전문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분석결과, 다수의 기관들은 사회적 책무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서 기대되는 보통 수준의 책무성 수준을 보여준 반면, 분석대상의 10%가 넘는 일부 기관들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여러 항목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내부적 책무성보다 외부적 책무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수입규모 등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활동분야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일수록 책무성에 긍정적 영향을, 교육과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일수록 책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설립주체도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책무성에 긍정적 영향을, 반면 개인이 설립한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유형은 비법인은 책무성에 부정적이고,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입규모가 클수록 책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그룹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면 대부분의 그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룹분류가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책무성 지수분석을 통해 볼 때, 의료분야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설립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익중심의 운영 등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도 조직운영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본 분석에서도 투명성이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기관은 13개인데,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5개(38.5%), 의료분야가 7개(53.8%)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 친인척 개입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는 교육부문의 형평성 관련 점수가 매우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은 능력에 따른 인사나 처우, 성별·지역별 차별금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형평성 관점에서 내부적 책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은 소규모이고 아직은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의 내부적 책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외부적 책무성에 있어서도 합법성 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규모 가족적 기관운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부적 책무성 요소 중 전문성은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질적자료(Qualitative Data) 분석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음.
 -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질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항목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

적 활동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예산 및 인적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 관련 기관 및 국가, 정부, 지자체 등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각 항목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항목에 따른 책무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책무성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고찰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적 책무성 제고방안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민주성항목과 관련한 데이톤 허드슨 사례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이나 기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위기도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투명성 항목은 독일의 바이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본 강령에 체계적인 재정관리, 재정관련 내역의 공개, 재정 활동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및 감사,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내부적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예술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효율성 항목과 관련한 영국의 더바디샵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이를 장기적인 경영계획과 단기적인 연도별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형평성 항목과 관련한 사례는 독일의 바우데에서와 같이 기업 내 인종, 나이, 성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기업 내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하여 바우데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합법성과 관련한 코카콜라 사례는 국제적으로 협의된 기준에 맞춰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코카콜라는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사업장에서 정부의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기준의 10% 미만을 유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성과 관련한 에스티로더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켰음. 즉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 정도, 고객서비스의 실효성, 사회적 기여여부, 고객과의 소통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참여 기업을 늘려 왔음.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왔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들은 기업이미지 개선과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성 항목과 관련한 KDDI사례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내부적으로는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강조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통신환경정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응성 항목은 타 기관과의 공동활동, 국가기관과의 협력, 고객요청에 대한 대응,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사례는 기업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사건이 발생 후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제품회수 명령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변조가 불가능한 포장방법 개발, 그리고 제조과정의 공개 등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업의 내·외부 책무성 구성요소를 통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차원의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무화 하거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책무성 제고방향

□ 책무성 제고방향

-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항목, 즉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외부와의 관계 형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확보

- 비영리법인의 법적 근거 확보의 책무성은 법인 설립과 존속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함. 비영리법인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인 설립 허가 이후 제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됨.

○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특성을 대표할만한 기관으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부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초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 것임.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경력에 따라 실무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이사 및 경영진들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함. 또한 법인 업무의 자가평가 척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야 함.

○ 민주적 운영

- 비영리법인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책무성은 의사결정의 형태, 의견수렴의 정도,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음.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하향식의 의사결정 형태와 구성원들의 제한되거나 단절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인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식이 부각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개발해야 함.

○ 효율적인 자원 활용

-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책무성은 규정화된 자원과 활동, 예산 확보 및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활용 정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수행해야 할 사업과 활동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공적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강화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즉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의 사업이 아닌 특별 사업이나 특별 상황에 따른 인력 편성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언과 자문을 얻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에 해당되는 전문가집단의 인력풀이 마련되어야 함.

○ 차별 없는 대우

- 비영리법인의 차별 없는 대우라는 책무성은 성적 평등, 생활권의 보장, 그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처우로서 평가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여성의 성적 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급 제도의 적용에 앞서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함.

○ 투명한 관리 및 공개

-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의 책무성은 내부 통제 및 감사, 공개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

리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

○ 외부와의 관계 형성

- 비영리법인의 외부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책무성은 시민, 관련 기관, 그리고 국가·정부·지자체와의 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서의 담당자는 비영리법인을 감시하는 감시자보다는 비영리법인의 협조자로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비영리법인과 관련 기관 모두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확보하여 배치토록 함. 비영리법인은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의식을 더욱 굳건히 갖춰야 함.

□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제고방안

○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

-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의사, 간호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담당자를 위한 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직종의 담당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따라서 행정직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감독기능

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하여는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제도화 하여 감사기능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함.

- 자발적 내부통제 기능을 위해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주무관청의 감독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회계기준 등 제반 보고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세제 혜택 또는 정부 지원의 기준을 삼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 병원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 평가시 이러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제한된 인원으로 최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뒤따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화된 역할만 완수할 뿐 질적인 측면에서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수행정도를 평가할 때 질적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만능 실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업무의 동기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됨.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담당자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함.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로만 책정되어 담당자들의 인건비로 책정할 수 없거나 인건비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남발로 인해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회복지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무너졌음을 실감하고 있는 담당자는 유관기관과의 지나친 경쟁관계,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이 아닌 최고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관리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돼야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의 공시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의 기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이사 정수의 확대와 감사기능 강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확대 강화 등이 되어야 함.

○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

-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

며, 운영과 관련된 객관적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설립자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이사회로 선정되지 않아야 할 것임. 특히 학교를 설립하고 재산을 출현한 자와 학교의 경영권자 간의 긴밀함에서 오는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투자가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또한 직업교육 기관이 방만한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현 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 장기적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함.
- 장기적으로는 교육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법인제도 이외에 영미법계의 교육신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신탁제도는 재산출연자와 학교의 설치·경영자 사이의 동일성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사립학교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출연자와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긴밀함에서 오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위축 문제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침해 등의 문제를 비롯한 오늘날 대두된 문제점의 상당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 문화예술 법인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입법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입법에 반영되기 위한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예산과 인력 확보, 사업 진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함. 예를 들면 영상 자료의 경우 영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될 수 있지

만, 예술 자료의 경우는 관련 근거법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법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문화예술 분야의 법인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문화 보존의식을 떠나서 향후 문화산업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토양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중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 기준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즉 정부의 지원이 우리의 전통문화적 가치보다는 공연매출액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함.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삶의 희망찬 메시지를 제공해주는 기관임.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라는 명목 하에 개인적인 직업으로 인식하여 재산을 축적하거나 운영상의 비리를 일삼는 신흥종교가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종교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종교집단의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함. 종교법인법은 종교집단의 규제가 아닌 법인으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함. 특히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종교법인과 관련된 법이 규정화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해야 할 것임. 법인화된 종교단체와 비법인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면세나 지원을 한다면 종교법인제도는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종교법인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정치와 분리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에서는 종교법인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조직되어 교단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능을 체계화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종교단체의 사적인 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종교법인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른 길을 세워가야 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즉, 비영리법인 제도와 관련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비영리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해 8가지 유형의 책무성 항목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인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책무성에 대한 평가결과

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탐색이 요구되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양적인 평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해석적 작업과정이 필요하였음.

- 먼저 질적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었음.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음.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공개를 해야 하며,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각 항목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항목에 따른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

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양적인 평가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 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질적인 조사와 양적인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 앞서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주요 선진국가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고찰을 통해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찾았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문제점들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1, 2차년도 연구에 이어 본 3차년도 연구는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해석학적 기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음.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볼 수 있겠음.
- 또한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할 책무성을 밝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영리법인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책무성 제고방안과 함께 이를 위해 필

3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존재의미와 책무성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시도한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개발하여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 가이드를 이끌어냈음.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와 차별화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도했으나 양적 연구의 결과 범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됨.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경영진, 법인 대표가 포함되었는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참여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고해야 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까지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주요용어: 비영리법인, 책무성, 질적 연구, 우선순위선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국가별로 그 정의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비영리 부문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 복지, 재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이 아닌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비영리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부문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및 시장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다원주의 확대에 기인한다.

1960년대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증가가 학생시위와 빈민, 여성, 노동, 반전 등의 여러 사회 운동의 격화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양한 시민운동 조직들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패와 독점적 서비스 공급에서 연유되는 비능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비영리조직의 활동 또한 확대된 것이다.

비영리 부문의 규모면에서의 증가는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갔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프로그램들의 상당부분이 비영리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제삼자 정부(third-party government)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¹⁾ 이러한 흐름을 비영리조직의 수적인 면에서만 파악해 보자면, 비영리조

1) Salamon, Lester M.(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9(3):213-48.

직의 숫자는 1967년에 309,000개에서 1997년에 약 1,000,000개로 3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²⁾ 2011년에는 미국 국세청 등록 비영리조직만도 1,600,000개 이상이 되었다.³⁾ 또한, 총자산 측면에서도 2009년 기준으로 비영리조직의 자산규모가 4.3조원으로 나타나 1999년의 2.41조원에 비해 78.6%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비영리부문의 이러한 성장추세는 고용인력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비영리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고용 인력은 두 차례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동 기간 동안 미국의 영리조직의 연평균 고용율인 -0.6%⁵⁾와는 매우 대조됨을 알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세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는 정부 프로그램이 비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국가(contract states)적 경향이 심화되는 추세이다.⁶⁾ 뿐만 아니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시민사회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발적 비영리 부문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⁷⁾ 유럽 13개국과 남미 5개국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나라의 비영리조직 고용 인력은 2천 9백만 명(전체 고용 인력의 5%선)이고 경제 규모는 1

2) Burton A. Weisbrod,(1998). To Profit or Not to Profit: The Commercial Transform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5, 25~28.
 3) <http://nccs.urban.org/index.cfm>
 4) Katie L. Roeger, Amy Blackwood, Sarah L. Pettijohn(2011),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 Public Charities. Giving and Volunteering, Urban Institute
 5) Lester M. Salamon, S. Wojciech Sokolowski, and Stephanie L. Geller(2012), Holding the Fort: Nonprofit Employment during a Decade of Turmoil, Nonprofit Economic Data Bulletin #39.
 6) Kramer, Ralph M. et al.(1993). Privatization in Four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Studies in Government-Third Sector Relationships. Sharpe, M.E.
 7) 김승현(2002),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1호.

조 1천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세계 8위 국가의 경제규모와 같은 것이며, 특히 네덜란드(12.4%), 아일랜드(11.5%), 벨기에(10.5%) 그리고 이스라엘(9.2%)의 비영리조직 분야의 고용비중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일본의 경우에도 서양 비영리조직의 역사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 수는 2002년 현재 90,000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비영리부문의 성장추세는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수의 비영리 조직¹⁰⁾들이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의 비영리조직들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수는 신고법인 기준으로 1988년에 9,034개로 집계되었으며 1998년에는 12,817개로 10년 만에 41.9%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9,798개로 집계되고 있다.¹¹⁾ 이런 폭발적 증가는 한국사회에서도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비영리부문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세는 그에 비례하는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정부부문의 새로운 역할의 등장과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역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장려·촉

8) Lester M. Salamon,(1999). The Nonprofit Sector And The Challenge of Renewal: U.S. And Global Perspectives, Annual Conference Coalition of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Ottawa Canada, September 18.

9) 요시타카 모리(2005). 일본의 비정부 단체들과 사회운동, 아시아 시민 문화네트워크구축 포럼 발제문

10) 한국에서 비영리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 공공(semi-public) 및 민간(private) 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또한 이윤동기에 의하지 않으면서 배분금지제약을 받으며,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한다.

11) 국세청(2011.12). 국세통계연보

진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의거하여 열악한 행정적이고 재정적 여건에 처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정부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이 확대되면서, 고유목적과는 관련이 적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출연행위를 통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¹²⁾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감독을 필요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의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단체 선정 및 지원액과 빈도에 대한 형평성,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¹³⁾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영리법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과 각 영역별 특이성과 문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크게 비영리의료법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 학교법인, 종교부문, 그리고 문화예술부문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리더십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며, 이사의 선출, 임명방식, 자격요건 등의 문제와 유연하게 운영되는 조직규정의 문제, 그리고 지역이사회(regional boards)의 필요성 등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크게 정부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 후원금(또는 기부금)의 자의

12) 김대영(1999),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개선방향. 재정정책논집 pp1~19.
13) 박천일·김선엽(2011),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4, pp.153~178.

적 사용 등과 같은 재정적인 문제,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재무적인 내용을 비롯한 종사자 및 서비스 수혜자 처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¹⁴⁾

셋째, 학교법인의 경우는 50인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필요성과 위헌성, 학사인사재정 등 영역에서의 사학운영의 자율성 범위,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범위, 임원선임의 제한 등 이사회 구성 자율권의 규제 범위,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종교부문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는 종교재산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수이며, 종교법인(단체)의 보호와 분리 시의 현실에 맞는 절차와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과세의 명확한 범위 확정으로 종교행위에 대한 과세, 비과세 논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대체로 순수예술분야 등의 소규모 형태의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인 보호육성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 업무집행이 기관이 필요하다.¹⁵⁾

전술한 각 영역별 조직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영리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인 비영리조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학자들은 비영리조직들의 역할 및 기능, 관련 과세제도, 거버넌스, 지원체계, 그리고 조직역량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한 가지 원인이 바로 비영리조직들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14) 장병원(2006),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감사방향.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과정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실과 사회적으로 책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¹⁶⁾ 실제적으로 비영리기관이 공공서비스의 제공,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 공공가치의 학습과 보존, 사회적 안전과 통합 등의 역할을 함을 고려하면, 비영리조직들의 공공성은 공공기관과 같은 신뢰성의 핵심적인 토대인 책무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비영리조직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하여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비영리기관의 목적, 조직, 구성원의 행위 등을 책무성 개념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비영리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비영리조직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과는 달리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비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감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은 합의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¹⁷⁾ 이는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은 정부나 기업과 달리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은 정부에서의 유권자나 기업에서의 주주와 대비될 만한 책임대상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명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확보하는 체계의 설계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이 낮아지게 하고, 비영리기관의 전문성이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민들은 결국 비영리기관에 대해 무관심해지고,¹⁸⁾ 비영리기관은 그 필요성에 비해 조직 목표의 수행에 있어서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

16) Kearns(1994), Mcdonald(1999), 노연희(2007) 재인용,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책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책임성의 주체, 대상 및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vol.33. 여름. pp.35~64

17) L. David Brown & Mark H. Moore(2001). Accountabil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paper No.7. pp.1~33

18) 김주경(2011), 한국 NGO에 고함!!! 사회가 변하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2011(사)한국NGO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4

가 제기되어 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평가 시, 비영리기관의 유형별로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1차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각 부분별 비영리법인의 문제점들을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개별 비영리기관의 고유한 책무성을 구분하였다. 이에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책임성이나 책무성에 접근한 것과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을 크게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한다. 보다 명확한 연구를 위해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는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요소로 세분화하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의 요소로 세분화하여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 중에 무엇이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을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계층화분석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비영리기관의 적정 책무성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차년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3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진행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집단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책무성을 제고시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과 이해관계집단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책무성의 관점의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주요 공익비영리기관의 제도와 관련하여 각 비영리기관들이 그 분야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각 비영리기관들이 담보해야 할 공익성을 포함한 책무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

면, 그들이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혹은 정책적 지원으로 안 된다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고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해서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3차년도 연구는 각 부문별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 일반국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그리고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책무성 제고방안에 대한 사례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제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비영리법인은 범위 면에서 광범위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비영리조직을 구분하는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구분으로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인 등기상으로 특별법에 따르는 특수법인과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 이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때 비영리법인 중 일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여 이를 규율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여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의 기재사항,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기준, 임원의 자격과 인원수 및 취임요건, 이사회·운영·감사의 권한과 의무, 법인재산의 관리, 그리고 주무관청의 감독 등과 벌칙에 관한 자세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한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을 조직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public-serving organization)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member-serving organiz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⁹⁾ 한편, ICNPO²⁰⁾의 분류와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 1-1>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19) 채은경(2004), 한국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 비영리조직에 대한 국제적 분류는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과 European Statistics Office에서 개발된 NACE(Nation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그리고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서 개발된 NTEE(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가 있으며, ISIC와 NTEE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ICNP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를 제안하고 있다(박상필, 2001).

4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1-1〉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분류

학문적 구분		주요단체	법적구분	
목적	활동영역		민법	법인등기
공익 단체	의료/보건	의료법인, 의료보험조합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조합 미등록법인
	교육/연구	사립학교법인, 직업학교법인, 연구소		
	복지서비스	양로원, 고아원,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 수련회 등의 운영법인		
	예술/문화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관련 운영법인		
	환경	환경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기금매개	공동모금회, 모금단체, 국제원조단체		
	시민권리옹호	소비자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옹호단체		
	종교	종교법인		
집단 이익 추구 단체	직능단체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노동조합 등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등		

자료: 채은경(2004)(오영호 2012, p.64 재인용)

전술하였듯이 비영리법인은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다.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조사는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사업체 리스트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이 중시되는 4가지 영역 즉, 보건의료부문, 사회복지부문, 학교부문, 그리고 종교·문화 부문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본 3차 연구에서는 2차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각 상기 영역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실태조사 범위를 상기 4가지 영역의 책무성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이때 책무성은 다시 외부적 책무성과 내부적 책무성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기관의 책무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오영호 2012, p.63 재인용).²¹⁾

- 21) • 보건의료부문: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기본권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할 권리와 건강 돌봄을 받을 권리는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보건의료제도가 어떤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보건의료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현 의료법 제 33조 2항의 규정을 통해 제한되어 있다. 위 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는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인정받은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의료법 제정 당시인 1962년에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다. 또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도 의원이나 병원을 개설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었다. 비록 1973년 의료법 개정 후 현재와 같이 제한을 두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현재 사회·문화경제 등 각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운영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의견으로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 국부 창출이 가능하며, 고급의료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성 강화, 의료기관 자본 조달 강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신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응성 제고 등이 있다.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야기 및 서비스의 과잉 공급 등이 있다. 또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 문제는 의료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이미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등 혹은 의료기관의 도시 편중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권의 직업독점권을 보장해주는 특해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 상황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의 도출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본 연구의 1차 연구에서 보건의료기관들의 전반적 사안 및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제시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연구범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부문의 연구를 위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은 물론이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종교·문화법정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현재 의료법인 이외의 법인이 설립한 대형·중소형 병원들의 수가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의 수에 못지않다.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국공립 병원이 대표적이고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4개의 전 영역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법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은 한국전쟁 이후 신규설립이 증가하였지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했다. 그러나 1975년을 저점으로 다시 설립건수가 증가하면서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설립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은 2010년 12월 기준 1,718개(시설법인 1451개, 지원법인 267개)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고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 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정부와 사회로부터 복지 공급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요 주체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국가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민들도 법인을 신뢰하고, 여러 형태의 후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법인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최근 들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 국가로부터 제공된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 시설 이용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법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 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 내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대시키고,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며, 민간의 기부 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¹⁾ 연구에서 파악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운영 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책무성 강화를 통한 법인 규제 측면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측면에서의 대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의 연구의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전반에 걸친 조사보다는 사회복지 기관 연구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내의 사회복지기관을 제외한 다른 영역 즉 의료기관, 학교기관, 그리고 종교·문화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에서 자세히 논할 예정이므로 이 장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학교법인: 우리나라는 공공성의 보장과 교육의 평등성 유지를 위해 비영리 법인만을 학교설립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을 1963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개선방안이 제시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만으로 운영이 이루어져 경영이 방만해 지는 것은 물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설립자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장의 상황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장의 세계화·개방화에 맞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런 사립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복지 및 학교법인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다른 장에서 논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종교·문화 기관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사립학교법인 중에서도 학교기관 관련 법인에 대해서 연구의 초점을 두기로 한다. 즉 학교기관 관련 법인의 조직, 거버넌스, 관련세제와 제도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비영리 종교·문화법인: 종교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들 법인들의 재정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등은 이러한 성장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법의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종교 법인이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이 없어 이사회 구성이나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나 견제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교계가 세습·횡령·배임 등의 문제로 사회에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개신교의 경우 세습, 대형화와 물신주의,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양극화 현상, 보수수구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고, 불교계의 경우는 금품 수수 및 국가보조금 편취 등 사찰간의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한국 종교계의 최고 결정기구들의 대부분이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의신학조직제도에서의 성차별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으며, 현재 종교 법인에게 적용할 만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부재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문화법인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 예측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기관 산하의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무용단 등

을 문화재단으로 이전하거나 직접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등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고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각종 문화재단 산하 기관의 예산은 100% 가깝게 정부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예산편성에서 조직운영까지 핵심적인 부분도 여전히 정부의 지도 감독 하에 놓여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산하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은 형식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예산 편성 시에 도나 시 공무원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재단 정부기관의 이중 감독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법인은 실제로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문제이다. '전통예술 전승발전'의 기관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영화는 비고유 사업부문의 기관 역량 편중을 초래하여 공공성 및 전통예술의 보존·전승이라는 극장의 정체성 훼손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예술성 위기에 대해선 "상업적인 공연 추구 시 순수예술의 존립과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다고 분석되며, 법인화 이후에 수익성 우선 경영에 따라 예술의 상업화가 가속화되어 순수예술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각 종교·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문화법인법을 제정하고 종교·문화 활동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종교·문화법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내부적 책무성 및 외부적 책무성으로 나누어 평가해보고, 각 법인의 적정 책무성 수준 제고를 통해 종교·문화법인의 능동적인 발전을 꾀하여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종교·문화 법인 중에서 종교·문화 관련 기관으로 한정해서 종교·문화 관련 기관들의 비영리성의 담보, 조직의 효율성, 관련 세제,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오영호 2012, p.65 재인용).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비영리기관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제3절 선행연구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제1절 비영리기관의 의의 및 유형

1. 비영리조직의 의의 및 유형

비영리부문이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은 그 역사가 짧지 않다. 더욱이 1970년대의 경제위기가 증가시킨 복지의 변화요구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비영리조직은 그 형태와 모습이 다양하여 개념과 정의를 쉽게 규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념이 국가별·학자별로 상이하며 국가 내에서도 통일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해 UN(2003)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개념정의 시 다음의 특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운영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구성원의 이해를 위하여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운영 이익은 영리 기업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목적 기능에 활용된다. 둘째, 그들이 생산하는 사적 제품이 무엇이든 간에, 공공재의 생산에 관여한다. 셋째, 수입구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양의 자발적 시간과 자금을 포함한다. 넷째, 유급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다섯째, 이윤 분배의 금지로 인해 자기자본(equity capital)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여섯째, 많은 국가에서 특별 세제 혜택의 자격을 받는다. 일곱째, 지배, 요건의 보고,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있다. 여덟째, 공공재 제공에 관여하지만 지배정부가 갖는 힘은 부족하다.¹⁾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

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private) 조직을 포괄적으로 비영리조직이라 지칭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은 이윤동기에 의하지 않으면서 ‘배분금지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을 받는,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한다. 비영리조직은 조직운영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²⁾ 비록 비영리조직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러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nonprofit seeking)’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협의의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 등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용어가 분명한 개념규정 없이 종종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³⁾

비영리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나 시대별로 증시되는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유주나 이해당사자의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영리조직이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영리조직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논쟁적이고 인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정부의 혁신을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사

1) 조흥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pp.39~40
 2) 오영호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준기(2000).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회문제해결에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선거로부터 독립적인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와 구별되는 비영리조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영리조직의 기능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국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권력 및 경제 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이러한 강화된 견제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의 자유를 고양하고,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경제정의 등의 분야 등에서도 기업의 이기주의를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정부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이지 않고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개인주도권 확장을 중요한 이념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조직 내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개인 주체성 강화 및 자유로운 의사소통망이 발달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히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 자원주의, 공동체 사회, 능동사회와 같은 중요 정치·사회적 이념을 학습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연대는 제도화된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경쟁과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갈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외에도 각종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 속에서 이타주의와 공민 의식을 고양하고 리더십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여성, 소수인종, 소수종교 신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리더십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내부의 활발한 비판과 토론, 자율적 행동 및 상호협력문화의 발달 과정 자체가 정치 학습의 장으로서 정치 공동체 속

의 자신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비영리조직은 국가와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한 믿음이나 전통의 보존과 전승, 종교·비술·신비감의 체험, 사교·우정·친목의 유지, 레크리에이션과 미의 추구, 개인 잠재력의 발휘 등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장되고 소외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들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뿐 아니라 활발한 토론과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익 충돌 시에는 정부 대신 중재조정자로 나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부와 기업 내 갈등에 대한 제 3의 조정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은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부정적 피드백 제공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⁴⁾

비영리조직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져있고, 각기 독특한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속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미국 비영리단체의 전국조직인 독립섹터(Independent Sector)의 한 분과인 국가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 의해 개발된 국가면세조직분류(NTEE: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그리고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방식이다.

먼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는 미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Standard

4)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 각국의 일관적인 경제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경제활동에 따라 단체를 분류하는 이 방식은 1948년에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되었다.⁵⁾ 이 방식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는 교육, 건강 및 사회복지, 기타(커뮤니티·사회·개인서비스 활동)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는 범주의 수를 적게 함으로써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성, 한 국가의 범주가 다른 국가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엄격성, 그리고 많은 국가를 이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비영리단체를 단 세 가지 범주로 묶음으로써 상호비교를 위한 수단 제공에는 유용하지 못하다.⁶⁾

〈표 2-1〉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영리 조직 분류

주요활동그룹	하부그룹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기타
건강 및 사회복지	건강, 수의활동, 사회복지활동
기타 (커뮤니티, 사회, 개인서비스)	위생, 비즈니스 및 전문가 활동, 노조, 종교 및 정치모임, 오락, 뉴스, 도서관, 박물관,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미국의 IRS에 의한 분류를 단순화 시켜놓은 국가면세조직분류(NTEE)는 비영리단체를 교육, 건강, 정신건강, 질병 및 장애 등 경제활동에 따른 26개 주요 그룹으로 분류해놓았다.⁷⁾ 비영리보고서에 많이 사용되는 국가면세조직분류(NTEE)는 1984년 미국의 United Way International

5) Salamon. L. M. & Anheier. H. K.(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6)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Salamon. L. M. & Anheier. H. K.(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 A Cross- 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Russy Sumariwalla가 United Way의 목적 분류를 위해서 조직분류시스템으로서 고안되었다. 이 주요 26개 그룹은 교육, 건강, 정신건강, 질병 및 장애, 의료연구, 범죄, 고용, 식품 및 영양, 주택, 공공안전 및 재난예방,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청소년 개발, 사회서비스, 예술 및 문화, 환경, 동물보호, 국제원조, 시민권, 커뮤니티 개선, 자선, 과학연구, 사회과학 연구, 기타 사회편의, 종교, 집단의익 추구단체, 알려지지 않는 조직 등이다.⁸⁾ NTEE는 ISIC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비영리단체를 구분했기 때문에 비교가 쉽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분류요소의 하나인 현실을 단순화 시키는 점,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세밀해서 오히려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를 들 수 있다. 세계은행(2007)의 시민사회팀은 시민사회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집을 만들면서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시민사회 조직 분류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한 후,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8) 박상필(1999). 비영리단체(NPO)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8(2) 재인용 - Hodgkinson et al. 1996)

9) 조홍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표 2-2〉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기능구분	역할	관련조직 예
대표 (representation)	시민집단의 목소리를 집합하여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조직	- 노동조합, 여성단체, 농민단체 포함 회원 조직 - 비정부조직, 연합회, 상부조직이나 네트워크 - 신앙기반의 조직 - 토착민 조직
기술적 전문자문 (technical expertise)	연구를 수행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조직	- 전문협회, 기업협회 - 두뇌집단이나 연구조직
옹호 (advocacy)	특정 이슈에 대한 옹호하는 조직	- 무역협회 - 비정부조직 - 인권집단 - 뉴스와 미디어집단 - 시위조직
역량구축 (capacity-building)	지역사회집단이나 다른 시민사회조직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	- 재단(지역, 국제, 지역사회) - 시민사회조직 지원조직 - 훈련조직
서비스 전달 (service-delivery)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조직	- 지역, 국가, 국제비정부조직 - 신용 및 상호부조 연합 - 비공식, 풀뿌리, 지역사회기반의 결사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s)	집합적 레크리에이션과 타사회활동 지원 조직	- 문화조직 - 스포츠클럽 외

자료: 세계은행(2007). 조흥식 외(2011)에서 재인용

Salamon과 Anheier(1997)는 ISIC과 NTEE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SIC에 기초하여 서비스 형태에 따라 12그룹으로 분류한 대안적 분류방식 ICNP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를 제안하고 있다.¹⁰⁾ 조흥식 외(2011)에 의하면, 이 자

10)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비영리 조직을 분류하면서 정리된 것이다.

<표 2-3> 비영리단체의 국제분류(ICNPO)

주요 활동 그룹	하부 그룹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 레크리에이션, 서비스클럽
교육 및 연구	초등·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 교육, 연구
건강	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원, 정신건강과 위기처방, 기타 건강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긴급구제, 소득보조
환경	환경보호, 동물보호
개발 및 주택	경제·사회·커뮤니티 개발, 주택, 고용 및 훈련
법률·시안정치	시민조직, 법률서비스, 정치조직
박애활동 증계 및 자원봉사 촉진	박애활동 증계(모금단체 포함)
국제교류 및 원조	국제교류 및 원조
종교	종교 집회 및 연합
비즈니스 직능단체노동조합	비즈니스 직능단체노동조합
기타	기타

자료: Salamon & Anheier(1997), 박상필(199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상의 국제적 분류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창회와 같은 조직이 비영리조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경우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다.¹¹⁾ 이에 한국에서는 한국사회를 중심으

11) 이명식(2001). 한일 비영리단체에 관한 비교연구: 제도적 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로 하는 새로운 비영리조직 분류법이 몇몇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조희연(2001)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라 비영리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의 활동영역에서 시민단체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은정(2004)은 시민단체를 환경, 기금매개, 시민권옹호 등으로 더 세분화하여 비영리조직을 분류하고 있다.¹²⁾

〈표 2-4〉 한국 비영리조직의 분류

목적	활동영역	주요단체
공익단체	의료보건단체	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연구단체	초등·중등·고등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원,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단체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옹호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이익 추구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원우회

자료: 조희연(2001)

이외에도 한국민간단체총람(2009)의 분류도 국내의 시민단체, 이익단체, 직능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를 종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리 작업을 했다. 그러나 총 7,570개의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분류는 분류기준의 타당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여러 의문이 제시되고 있

12) 채은정(2004), 한국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 사례 연구

다. 13) 조흥식 외(2011)는 이 분류에 대해 대분류와 소분류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으며, 일부는 조직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부는 사업영역에 맞추어져 있는 등의 분류 초점의 일관성 부문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조직의 분류는 위의 조희연(2001)과 채은정(2004) 등의 분류를 채택하여 사용하되, 특히 우리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이 중시되는 영역인 보건의료부문, 사회복지부문, 학교부문, 종교 및 문화 부문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의의 및 특징

비영리법인은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서에 등록된 법인자격을 획득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¹⁴⁾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지위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목적의 비영리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민법상의 설립요건이 아닌 상법상의 요건 등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¹⁵⁾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민법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할 수 있다. 주무

13) 조흥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14) 손원익(201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15) 양세모(2004).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법과정책연구 4(2).

관청은 비영리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기도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관리·감독하며, 설립 규정을 보완 할 수 있다.¹⁶⁾ 비영리법인설립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

법률명	대상
민법	- 제32조 학습,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민법의 하위 규정으로 민법은 소관부처별 규칙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설립 규정을 보완 -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및 그 소속청,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법원행정처, 법제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통일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헌법재판소 사무처, 환경부 및 기상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습,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
특별법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이란 특정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호 등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의료법	-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는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의료법인, ④비영리법인, ⑤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 하나임.

자료: 손원익(2001)

16) 손원익(201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pp.6~25

이들 비영리단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근거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미등록 비영리단체의 경우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아 조세적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물론 이 경우에도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조직성, 이익무분배성, 자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주에는 사립학교, 대학교, 대규모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및 여가조직, 연구소, 종교단체, 전문직업인 및 학술단체, 재단이나 협회로서 설립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조직 등이 포함된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보다 대상에 있어서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고유목적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법」,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법인세법」이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¹⁷⁾

또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부수적인 수익사업만을 영위한다고 가정하여, 법인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은 출연금, 기부금, 현금, 회비, 등록금(학교법인)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정한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별개의 회계

17) 조흥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p.42

로 구분하여 이런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만일 이들이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무상취득이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두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지 않는 대신 출연 이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우선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을 종료하고 해산 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제 12조에 따라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의료보건영역, 교육영역,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하여 공익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조세우대를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 8조).¹⁸⁾

이러한 면세나 조세우대 등의 특징 외에 비영리법인의 또 다른 특징은 주주가 없고 또한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⁹⁾ 따라서 비영리법

18)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의 지배구조란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가를 감독하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조정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의 핵심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다.²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는 비영리법인이 가진 민주성에 의해 지탱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정부의 지시나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자율적이고 비시장적이다. 또한 성원의 의결권은 주식시장에서처럼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제외 소 '1원 1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의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민주적이기 때문이다.²¹⁾

비록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이러한 민주성은 조직의 기관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감독기관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에는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과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 있다.

의사결정기관의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인 만큼 전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하지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으므로 최고 의사는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다음으로 업무집행기관으로는 이사와 이사회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민법상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불문하고 공

19) 황창순(1998). 한국 공익법인의 성격과 기능: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8(2)

20) 안성포(2004).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법학논총 28권

21) 박찬임(2009).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월간노동리뷰. pp.39~49, 한국노동연구원

통사항이며, 이사의 임명방법은 민법 제 40조 제 5호와 제 43조에 따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해진다. 이사회는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는 민법상 필요기관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부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뿐, 이사 중 특정인을 선출하여 이사장이나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는 조직형태가 많아서 비영리법인의 핵심적 경영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면서 경영성과를 올리는 책임을 지게 되는 이사장이나 사장, 회장 등의 경영자를 선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임 뿐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해 일차적인 감독과 지휘 또한 맡고 있다. 또한 조직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며 공익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역할을 포함하는 조직의 존재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및 서업 결과 점검 및 감사 시행의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원을 동원하고, 자금조달이나 모금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민법 제 66조에서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통해 법인의 업무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이 감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공익법인 또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필요기관으로서 감사가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²²⁾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1. 책무성의 개념

책무성이라는 개념은 회계(accounting)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처음에는 부기(bookkeeping)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인에게 설명(audit, account)한다는 좁은 의미의 설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²³⁾ 또한 Bovens(2007)와 같은 학자는 그 개념의 근원을 ‘피수탁자가 수탁한 자에게 부기(booking)를 통해 설명하는 것’에서 찾았으며, 이런 전통적인 신탁의 의무(fiduciary obligation)를 통해 책무성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법학을 비롯하여 정치학 문헌의 많은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⁴⁾ 책무성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의 사회 공적서비스인 행정과 교육분야의 책무성 운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오늘날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어가 되었다.²⁵⁾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행정학과와 교육학계에서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²⁶⁾ 오늘날 우리가 책무성을 말할 때, 책무성

22) 오영호 외(201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이숙중, 양세진(2007).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p.1~27

24) 이근찬, 유명순(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25) Emanuel, E. J.(1996). A Professional response to demands for accountability: Practical recommendations regarding ethical aspects of patient care. Ann Intern Med. 124(2). pp.240~249

26) 김규태(2001); 김무성(2001); 정우일(1996); 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권 2호, pp.233~241 재인용

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러 학자들이 책무성이 책임성과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⁷⁾ 책무성과 책임성의 관계에 대해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Simms(1967)²⁸⁾는 책무성과 책임성을 동일시한 반면, 정우일(1996)²⁹⁾은 책무성을 책임성의 다른 측면으로 보았고, Hull(1981)³⁰⁾과 김규태(2001)³¹⁾는 책임성을 책무성의 한 속성으로 보았다. 한편 Bergman(1981)³²⁾, Batey & Lewis(1982)³³⁾, Day & Klein(1987)³⁴⁾, Wagner(1989)³⁵⁾ 등의 다수 학자들은 책임성을 책무성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³⁶⁾ 협의의 책무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응답성(answerability)과 연계된 합법적 책무성 의미만을 내포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 의하면,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³⁷⁾

27) Batey & Lewis(1982); Day & Klein(1987); Wagner(1989); Wnowdon(1993); 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권 2호, pp.233~241 재인용

28) Simms, L.(1967), Creating on educational dimate for nursing practice. *Br J Nurs*, 9(9), pp.549~554

29) 정우일(1996), 관료제의 책임성과 책무성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사회과학론집, 제15편, pp.215~270

30) Hull, R.(1981),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nalyzed Nurs Outlook*, 29, pp.707~712

31) 김규태(2001),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교육행정학연구*, 19(2), pp.287~307

32) Bergman, R.(1981), Accountability: definitions and dimensions. *Int Nurs Rev*, 28, pp.53~59

33) Batey, M. & Lewis, F.(1982), Clarifying automomy and accountability in nursing service. Part I. *J Nurs Adm*, 12(9), pp.13~18

34) Day, P.and Klein,R.(1987), *Accountabilities: Five public service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35) Wagner ,R.B.(1989). *Accountability in educ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New York: Routledge.

36) 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권 2호, pp.233~241

37) 이환범, 김태영, 이수창(2005), 행정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책무성의 차이 분석, 한국행

Mosher(1982)³⁸⁾는 책임성을 주관적 책임(subjective responsibility)³⁹⁾과 객관적 책임(objective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책무성은 그 중에서도 객관적 책임인 법, 규칙 등과 같은 근거에 기반을 두고 개인 업무활동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Cooper(1990)⁴⁰⁾도 책임을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때 객관적 책임은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관련된 것으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행에 대해 외부에 지게 되는 책임으로 법, 조직, 사회적 요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전술한 협의의 책무성에 상응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주관적 책임은 행위자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충성, 양심, 일체화와 같은 경험으로 설명된다.

Dwivedi와 Jabbra(1989) 그리고 Ott와 Dicke(2000)는 책무성을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들은 책무성이 조직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다른 여러 학자들도 책무성에 대해 이들과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one(1995) 역시 책무성이 관리, 법, 투표자 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은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Romzek과 Dubnick(1987)⁴¹⁾는 책무성을 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조직내부 및 조직외부 관계 그리고 책무성에 의한 통제수준의 고(高) 및 저(低) 분류기준을 근거로 사분법적 복합책무

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4, pp.541~558

38) Mosher, Frederick. (1982).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39) 주관적 책임은 자기인식, 양심, 도덕성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양심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40) Cooper. T.(1990).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San Francisco: Jossey-Bass.

41) Romzek BS, Dubnick MJ.(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pp.227~238.

성 분류체계를 강조하였다.

한편에서는 책무성의 보편적 정의를 찾는 대신 공통된 특성을 일별하려는 시도도 찾아볼 수 있다. Ebrahim(2010)과 같은 학자는 책무성이란 투명성(transparency), 응답성이나 정당화 과정(answerability or justification), 순응(compliance), 강제 또는 제재(enforcement or sanctions)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투명성은 조직이 수집한 정보가 공적 감시(public scrutiny) 목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응답성 또는 정당화 과정은 합당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조직이 내린 결정과 수행한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순응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강제 및 제재는 앞서 말한 순응, 정당화 증명,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의미 한다.⁴²⁾

한편 김기경(2004)은 책무성의 선행요인으로 의무임무, 수행능력, 지식, 기술, 가치, 경험, 권한, 권한부여, 책임성 및 자율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문직 발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의 안전보호, 대상자와의 협력, 스트레스와 긴장 등의 발생과 같은 책무성의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책무성에 대해서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⁴³⁾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책무성은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전통적 의미의 책무성은 보다 높은 감독자 혹은 상급기관에 대한 절차적 설명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적 영역에 비해 목적을 명시하기 힘든 공적영역에 있어서의 책무성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기 힘든 측면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혹은 기타 공적

42) 이근찬, 유명순(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43) 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권 2호, pp.233~241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은 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더 큰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협소한 책무성 개념의 수정과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 책무성 개념이 필요하며, 확대된 책무성 개념은 공정성, 정당성 등 도덕적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고, 주변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요구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2.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비영리조직의 책무성 분류에는 Kearns(1994)⁴⁵⁾의 이론이 널리 인용되고 있는데, Kearns는 ‘전략적 조직 관리’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조직의 역량과 외부 환경을 정밀하게 조사(scanning, 精査)한 뒤 해당 조직에 가장 적합한 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을 찾고자하였다(Kearns, 1994; 1996). Kearns는 이 연구의 결과로서 외부 통제의 성격과 조직 내부 대응이라는 두 기준을 조합하여 모두 네 가지의 책무성, 즉 순응을 강조하는 법적 책무성(compliance accountability), 반응성을 강조하는 협상된 책무성(negotiated accountability), 상황 판단에 따르는 재량적인 책무성(discretionary accountability), 그리고 옹호와 변호를 위한 예견적인 책무성(anticipatory accountability)을 제시하였다.⁴⁶⁾

이외에도 다수의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비영리조직과 관련한 책무성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Salamon은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을 누구에게,

44) 최준규(2008). NGO운영과 책무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5) Kearns KP.(1994). The Strategic Management of Accountability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 Analytical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2), pp.185~192.

46) 이근찬, 유명순(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와 관련하여 재정적 성실성, 내부 거버넌스 구조, 임무에 대한 목적 유지의 책임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책임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⁴⁷⁾ Oliver(1990)⁴⁸⁾는 책무성을 수행 주체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치적 공적 책무성과 소비자 지향적 행정적 책무성으로 분류한다. 또한 정부의 수행달성도에 따라 책무성을 다섯 단계로 분류한 Tomkins도 있다.⁴⁹⁾

이처럼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분류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떤 유형의 책임을 강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구분되었으나, 그 중 큰 흐름은 책무성을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측면을 정리하여 내부적 차원에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책무성과 외연적으로 보다 확장된 외부적 차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을 나누면, 아래 <표 2-6>과 같다.

47) 김시영, 노인만, 이명숙(2004). 지방NGO의책임성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48) Oliver C.(1990). Determinant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tegration and Future Direct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2).

49) 이자성(2004). 정보공개제도와정부의책무성에관한한국과일본비교. 한국행정학보

7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2-6〉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

구분	의미	측정방법	
내부적 책무성	민주성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참여보장, 국민의 뜻에 따른 행정수행	국민의 참여정도 여론수렴 정도
	투명성	행정과정, 결과의 공개를 통한 부정부패 해소	부패지수 정보공개지수
	효율성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달성 정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행정수행	목표달성도 투입/산출 비율
	형평성	지역, 성,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불평등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정당한 법령에 부합하는 행정수행	법령위반정도
	대표성	공적목표에 입각해 공익을 대표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전문성	전문가의 참여 외부지식의 실질적 이용	전문가 교류정도 전문가 활용성과
	반응성	사회의 일반적 요구 수렴 정부와 타 비영리기관과 협력정도	정부와의 교류정도 타 비영리기관과의 반응도 언론사와의 협력정도

자료: 오영호(2012)

제3절 선행연구

본 연구는 각 분야별 비영리법인의 문제점들을 비영리법인의 전반적인 책무성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책무성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바, 선행연구는 책무성 이론의 고찰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책무성 이론의 발전은 교육학, 법학, 정치학, 사회심리학, 행정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노력에 따라 전개되어 왔으나,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

금까지 발표된 많은 책무성 연구들은 개념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⁵⁰⁾ 책무성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정학과 교육학을 토대로 전개되는 책무성 이론들은 대체로 책무성 개념의 다차원성을 전제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인 예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무성 연구에 가장 널리 적용되는 Romzek과 Dubnick(1987)⁵²⁾의 이론을 들 수 있다.

Romzek과 Dubnick은 권한과 재량이라는 힘의 통제 원천과 통제 수준을 조합하여 계층적(bureaucratic), 법적(legal), 전문가적(professional), 정치적(political) 책무성의 네 가지의 개념 유형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계층적·전문가적 책무성은 조직 내부의 책무 관계이며, 법적·정치적 책무성은 조직과 조직 외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책무 관계이다. Romzek과 Dubnick의 이론이 제시한 책무의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층적 책무성은 상위 기관에 대한 복종으로, 조직 목적, 규칙 및 표준운영규칙(SOP)에 관한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무이다. 전문가적 책무성은 전문가 규범과 동료 집단의 관행에 따른 전문 지식과 성과 기준에 대한 존중이고, 법적 책무성은 조직 외부의 개인 및 집단과의 의무적 관계로 법적 제재 및 계약적 책임 불이행시 감사, 청문회,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무성은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으로서 설명된다. 이에 대해서는 관료들이 선출직 정치인, 고객 집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50) 이근찬, 유명순(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51) Bovens(2007a); Koppell(2005); Mulgan(2000); Romzek and Dubnick.(1987)

52) Romzek BS, Dubnick MJ.(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pp.227~238.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Dwivedi와 Jabbara(1989)⁵³⁾는 Romzek과 Dubnick과 거의 유사하지만, 책무성을 법적, 전문적, 정치적 외에 조직적, 도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O'Loughlin(1990)⁵⁴⁾은 이들과는 다소 다르게 책무성을 응답성(answer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 지표를 정부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체제의 질, 정책의사결정에 미치는 외부의 영향력 정도, 정책결정에 있어 재량과 비재량의 확실한 경계의 존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또한 Stone(1995)⁵⁵⁾은 관리, 법, 투표자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은 복합관계로 책무성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Behn(2001)⁵⁶⁾은 책무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재무성(finance), 공평성(fairness), 성과(performance)로 정의하여,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형평성 및 성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Tomkins(1987)⁵⁷⁾는 책무성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정부의 수행달성도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는 정책책무성(policy accountability)으로 특정 수요에 대한 정책 형성 및 그 수요에 대응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행정관이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 행하는 정치책임에 가까운 개념이다. 2단계는 프로그램책무성(program accountability)으로 정책 결정 후, 그 정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프

53) Dwivedi O.P. and Jabbara J.G.(1989).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Service Accountability Edited by: Jabbara, JG and Dwivedi, O.P. 1-16. West Hartford

54) O'Loughlin, Michael G.(1990). What is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nd How Can We Measure it?. Administration & Society. 22(3), pp.275~302

55) Stone, Bruce(1995).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in the Westminster Democracies: Toward a New Conceptual Framework. Governance. 8(4), pp.505~526

56) Behn, Robert(2001). Rethinking Cemocratic Accountabil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57) Tomkins, C.(1987). Achieving Econom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Scotland

로그래ムの 효과에 대한 책임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달성이 가능하지 않는 목표의 설정이나 프로그램 설계를 한 경우에 실패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책무성이다. 3단계는 수행책무성(performance accountability)으로 경제적 수단의 능률적 운영이나 업무달성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비능률, 시장가치 무시, 업적 지표 결여 등에 대한 책무성이다. 4단계는 과정책무성(process accountability)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의 집행수단의 적정성, 타당성, 정확성, 유용성을 문제로 하는 책임을 말하며, 실시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낭비,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책무성이다. 마지막 5단계는 법적책무성(legal accountability)으로 법과 규칙 준수, 합법성, 합규성 등 자금이나 자원 사용이 회계 상 규정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으로 법령정보, 비리, 목적 자금의 사용 및 유용 등에 대한 책무성이다. Tomkins는 책무성이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5단계 하위의 법적책무성에서 1단계 상위의 정책책무성까지 이행된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Romzek과 Dubnick의 이론은 책무성에 관한 기존의 실증 사례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Romzek과 Dubnick 또한 지난 1987년에 미국 챌린저(Challenger)호 폭발 사고의 발생 원인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NASA 조직은 초기에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운영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 의회와 행정부의 조직 효율성에 대한 압력과 예산 삭감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그 결과 NASA 조직 내부에서는 전문가 책무를 덜 강조하고, 정치적 책무, 계층적 책무를 더욱 강조하는 의사결정 문화가 조성되었는데, 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이런 적절하지 못한 시스템 변화가 챌린저호 사고발생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최흥석(2003)은 Romzek과 Dubnick의 책무성 범주를 활용하여 지방 의회의 활용 가능한 권능을 확인하고, 그 권능들의 활용 정도와 한계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다.⁵⁸⁾ 모창환(2005)의 연구 역시 Romzek과 Dubnick의 책무성 범주를 활용하여 대구 지하철 사고를 다루었다. 그는 대구철도공사의 경영평가 지표 구성의 적절성을 책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조직 내에 시민참여, 법 규정 준수, 내부 수행 규칙 준수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안전성 지표와 같이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이 낮았고 형식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한편, 권오성 등(2009a; 2009b)⁵⁹⁾의 연구는 설문 조사 방식을 통해 책무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복합 개념의 시각에서 책무성을 가정하고 수직적 책무, 내부적 책무, 고객에 대한 책무, 사회적 책무로 책무성 개념을 구분한 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책무성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 공공기관 유형별로 책무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책무성이 고객 책무, 사회적 책무, 내부적 책무, 수직적 책무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이환범, 김태영, 이수창(2005)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조직문화가 책무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조직문화 유형을 집단문화, 혁신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행정조직구성원의 책무성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은 실증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행정조직문화의 유형 및 그 구성변수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책무성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여 복합책무성 분석지표와 연계시켰을 때 과연 어떠한 행정조직문화 유형이 행정공무원의 책무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분석했다. 연

58) 최홍석(2003).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지방의회. 지방행정연구 17(3), pp.131~172

59) 권오성, 황혜신, 박석희, 김철회(2009). 공공기관의 책임성 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pp.51~74; 권오성, 황혜신, 안혁근, 박석희(2009). 공공기관 유형별 책임성 차이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2), pp.231~261.

구결과 이들은 행정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설정은 행정조직의 내부통합과 안정성, 현상유지 등을 중시하는 위계문화로부터 직무몰입에 의한 실적 중시를 강조하는 합리문화로의 계획적이고도 지속적인 조직문화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의 연구는 조직문화라는 조직 특성을 책무성의 영향변수로 설정하고 세부적 책무를 통합하여 단일 지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⁶⁰⁾

이외에도 라영재(2009)⁶¹⁾는 기존 행정 책무성에서 전환되어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등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서는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속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사회적 기대의 4가지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내·외부 통제와 절충적인 옴부즈만 통제를 통해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복합적 연계방안을 이론적,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학에서도 책무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념적인 측면 등에 있어서 참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Wagner(1989)⁶²⁾는 책무성 개념의 필수 요소로써 책임과 자격 권한부여(entitlement)가 개념의 타당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인에게 보고, 설명, 해명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인에게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해 놓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책임이 책무성의 핵심조건이지만 책임 그 자체가 책무성이라고 볼 수 없음을 언급했다.

Halstead(1994)는 교육적 책무성 보장을 위하여 통제와 자율성의 중

60) 이환범, 김태영, 이수창(2005). 행정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책무성의 차이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4, pp.541~558

61) 라영재(2009).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한국정책연구 9(1), pp.235~265

62) Wagner. R. B.(1989). Accountability in educ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New York: Routledge.

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상황에서의 책무성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책무성을 책무의 계약이 고용주, 전문가, 소비자 중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구분한 후 이것을 다시 반응적인지 혹은 자율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책무는 책무의 성격을 고용주가 계약적 책무를 주도하는 중앙통제 모형, 전문가가 계약적 책무를 주도하는 자체적 책무 모형, 소비자가 계약적 책무를 주도하는 소비자 보호 모형, 고용주가 반응적으로 책무를 주도하는 연쇄적 책임모형, 전문가가 반응적으로 책무를 강조하는 전문가 모형, 소비자가 반응적으로 책무를 주도하는 협력자 모형의 여섯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개념화된다.⁶³⁾

국내의 교육적 책무성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설명 또는 보고를 강조하는 연구동향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연구동향으로 나눌 수 있다.⁶⁴⁾ 전자의 예로 유해중(1995)은 그의 연구에서 책무성을 “회답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⁶⁵⁾ 김희대(2004)⁶⁶⁾ 역시 요구자가 수행하기로 한 책무와 그 결과에 대해 수행방법 및 산출 이유를 묻고 계산하며, 수행자가 이에 대해 응답하고, 설명하며, 해명하는 행위를 연구하였다. 윤정일(2004)⁶⁷⁾ 또한 책무성 개념에 있어서 결과의 보고와 설명, 정당화 과정을 중요 요소로 정의내리고 있고, 주중남(2004)⁶⁸⁾은 이행 요구자가 이행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해 당사자는 그 위임 수락으로 이행 결과를 이행

63) Halstead, M.(1994). Accountability and values. In D. Scott(Ed). Accountability and Control in Educational Settings. London: Cassell. pp.146~165

64) 신재철(2004). 대학의 책무성. 한국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107~130

65) 상계서. 재인용

66) 김희대(1998). 학교책무성 체제와 교사의 인식. 경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7) 윤정일(2004). 기조강연: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3~23

68) 주중남(2004). 단위학교 책무성 증진을 위한 학교장이 변혁적 지도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요구자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책무성을 정의하고 있다.

후자의 예가 되는 연구에서는 책무성을 어떤 활동 영역이나 직책의 당사자가 주변으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받은 정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⁹⁾ 또한 책무성의 개념을 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거나 책임과 의무의 이행으로 정의하면서 논의를 전개시킨 연구도 있다.⁷⁰⁾ 신재철(2004)은 책무성을 개인이나 기관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투입과 변화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행연구자에게 보고·설명·책임을 지는 능력으로 보았다. 한편 김영철(2004)은 책무성을 단순한 책임 및 의무를 다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 의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로써 정의함으로써 두 동향을 통합을 시도하기도 했다.⁷¹⁾

69) 신현석(2002). 학교단위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8(1), pp.77~114

70) 양성관(2011). 중등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59차 학술대회 자료집, pp.119~151 재인용

71) 상계서 p.33

8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2-7> 행정학과 교육학에서의 책무성 관련 선행연구들

학문 분야	저자 (연도)	책무성 내용
행정학	Romzek & Dubnick (1987)	권한과 재량이라는 힘의 통제 원천과 통제 수준을 조합하여 계층적 (bureaucratic), 법적(legal), 전문가적(professional), 정치적(political) 책무성의 네 가지의 개념 유형을 구분. 미국 챌린저(Challenger)호 폭발 사고의 발생 원인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분석
	Dwivedi & Jabbra (1989)	책무성의 요소를 조직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나누고 비교적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에서의 책무성을 연구
	O'Loughlin (1990)	응답성(answer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성을 정의하면서, 평가지표를 정부기관과 국민간의 의사소통체제의 질, 정책의사결정에 미치는 외부의 영향력 정도, 정책결정에 있어 재량과 비재량의 확실한 경계 존재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설정
	Stone (1995)	책무성은 관리, 법, 투표자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은 복합관계로 구성
	Behn (2001)	책무성을 재무성(finance), 공정성(fairness), 성과(performance)로 정의하고, 사회적 형평성 및 성과까지 책무성 논의의 확대
	Tomkins (1987)	책무성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정부의 수행달성도를 기준으로 1단계 정책책무성(policy accountability), 2단계 프로그램책무성(program accountability), 3단계 수행책무성(performance accountability), 4단계 과정책무성(process accountability), 5단계 법적책무성(legal accountability)으로 나누어 하위의 법적책무성에서 상위의 정책책무성까지 책무성이 이행된다고 봄.
	최흥석 (2003)	지방의회에의 활용가능한 권능을 확인하고, 그 권능들의 활용 정도와 한계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의 책무성을 제고
	모창환 (2005)	대구철도공사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구성의 적절성을 Romzek & Dubnick의 복합적인 관계에 근거한 책무성을 기준으로 평가
	권오성, 황혜신, 박석희, 김철희 (2009)	복합 개념의 시각에서 책무성을 가정하고 수직적 책무, 내부적 책무, 고객에 대한 책무, 사회적 책무로 책무성 개념을 구분한 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책무성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
	이환범, 김태영, 이수창 (2005)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조직문화가 책무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조직문화 유형을 집단문화, 혁신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행정조직구성원의 책무성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
라영재 (2009)	개인적 속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사회적 기대의 4가지 요인이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공직 책무성 확보하는 통합적, 복합적 연계방안을 이론적, 규범적으로 분석	

학문 분야	저자 (연도)	책무성 내용
기 타 분 야	Wagner (1989)	책임과 자격 권한 부여가 책무성의 개념의 필수 요소로써 타당성을 제공
	Halstead (1994)	교육적 책무성 보장을 위하여 통제와 자율성의 중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중앙통제 모형, 자체책무 모형, 소비자 보호 모형, 연쇄적 책임 모형, 전문가 모형, 협력자 모형의 여섯 모형으로 책무성을 제시
	Popham (2000)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그 과제의 수행결과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책무성 개념을 정의
	유해중 (1995)	책무성을 “회답성”으로 번역
	김희대 (2004)	요구자가 수행하기로 한 책무와 그 결과에 대해 수행방법 및 산출 이유를 묻고 계산하며, 수행자가 이에 대해 응답하고, 설명하며, 해명하는 행위를 연구
	윤정일 (2004)	결과의 보고와 설명, 정당화 과정을 중요 요소로 책무성 정의
	주중남 (2004)	이행 요구자가 이행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해 당사자는 그 위임 수락으로 이행 결과를 이행 요구자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책무성을 정의
	신현석 (2002)	책무성을 어떤 활동 영역이나 직책의 당사자가 주변으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받은 정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정도 ⁷²⁾ 로 포괄적으로 정의
	김명수 (2003)	책무성의 개념을 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봄.
	조석훈 (2004)	책무성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
신재철 (2004)	책무성을 개인이나 기관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투입과 변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행연구자에게 보고·설명·책임을 지는 능력으로 봄.	
김영철 (2004)	단순한 책임 및 의무를 다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적극적 의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로써 책무성을 정의	

전술한 비영리조직에 관한 책무성을 설명할 때 널리 인용되는 Kearns(1994)⁷³⁾의 이론은 책무성 개념의 다차원성을 전제로 이론화를

72) 신현석(2002). 학교단위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8(1), pp.77~114

73) Kearns KP.(1994). The Strategic Management of Accountability in Nonprofit

시도한다. 이 이론은 외부 통제의 성격과 조직 내부 대응이라는 두 기준을 조합하여 모두 네 가지의 책무성, 즉 순응을 강조하는 법적 책무성, 반응성을 강조하는 협상된 책무성, 상황 판단에 따르는 재량적인 책무성, 및 옹호와 변호를 위한 예견적인 책무성을 제시하고 있다.⁷⁴⁾

Ospina와 그의 동료들(2002)⁷⁵⁾은 책무성에 대해 상향식의 기부자와의 관계, 하향식의 고객과의 관계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 상향식 견인이 절차적 측면 책무성의 전통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향식 견인은 도덕성이나 정당성의 측면의 포괄적 책무성 개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⁷⁶⁾ 또한 Leat(1990)⁷⁷⁾은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범위를 재정적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절차적 책무성(process accountability), 프로그램 활동의 질에 대한 프로그램 책무성(programme accountability),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for priorities), 즉 올바르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Salamon(2002)⁷⁸⁾ 역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와 관련하여, 재정적 성실성, 내부 거버넌스 구조, 임무에 대한 목적유지의 책임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책임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⁷⁹⁾

Organizations: An Analytical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2), pp.185~192.

- 74) 이근찬·유명순(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75) Sonia Ospina, William Diaz and James F. O'Sullivan(2002). Negotiating Accountability: Managerial Lessons from Identity-Based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1, no.1, March 2002. pp.5~31
76) 김준기(2004). 한국 시민사회의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 Leat, D.(1990). Voluntary Organizations and Accountability: Theory and Practice in Helmut K. and Wolfgang Seibil(ed.)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78) Salamon, L.M.(2002).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이외에도 시민단체와 관련된 책무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도 있다. Iain Attack(1999)⁸⁰⁾의 연구에서는 시민단체의 책무성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 피며, 정당성(Legitimacy)이라는 개념으로 책무성 문제에 접근하여 형식적·절차적 차원에서 비영리조직의 대표성과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실체적·목적적 차원에서 권능화와 효과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4가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책무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arry Blair(2000)⁸¹⁾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대표성을 가지며, 시민들을 권능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익의 효과를 전달하며, 빈곤, 환경, 평화, 인권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책무성의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⁸²⁾

Lisa Jordan과 Peter Tuij(2000)⁸³⁾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연구에서 비영리기관의 외부적 책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재정적 기부자들을 주목한다. 이들은 비영리기관이 재정적 기부자들과 관련될 때 전통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충돌하거나 가치와의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후원자들과 비영리기관의 추구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책무를 감당해야 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책무성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한국 주창(advocacy)단체의 책무성 모델 연구에 중요한 이

79) 김시영, 노인만, 이명숙(2004). 지방 NGO의 책임성 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80) Iain Attack.(1999). Four Criteria of Development NGO Legitimacy. World Development. 27(5), pp.855~864.

81) Harry Blair.(2000).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t the Periphery. World Development. 28(1), pp.21~39.

82) 이숙종양세진(2007),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83) Jordan, Lisa & Tuij, lPeter. Van.(2000). Political Responsibility in Transnational NGO Advocacy. World Development. 28(12), pp.2051~2065.

론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⁸⁴⁾ 김시영과 그의 동료들은 (2004) 지방 NGO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구생태공원조성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구의 결과로서 정부규제, 민간규제, 내부규제, 일반대중 규제의 4가지로 구분되는 책임성 확보 메커니즘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자성(2004)⁸⁵⁾은 앞선 Tomkins의 책무성 분석틀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의 청구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법적책무성 관점에서 일본은 수행책무성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박상필(2005)⁸⁶⁾의 연구는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주요 요소를 사회적 목적과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 재정의 건전성, 효율적 자원배분, 투명한 회계, 프로그램의 적절성, 사회문제 해결능력, 서비스의 질, 고객에 대한 반응이라는 9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김준기(2006)⁸⁷⁾의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책임성이 단지 전통적 의미에서 대리인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협상적 책임성, 조직의 관리자나 운영진이 지니는 도덕적 책임성이나 전문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등 내부운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4) 이숙중·양세진(2007),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p.2

85) 이자성(2004), 정보공개제도와 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시민단체의 예산지출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5), pp.171~195

86) 박상필(2005), NGO학 - 자율·참여·연대의 동학, 아르케.

87) 김준기(2006), 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숙종과 양세진(2007)의 연구는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특히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들을 심층면접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책무성의 체계를 종합하여 (1) 비전, 사명, 목표, 전략, 사업간의 한 방향 정렬, (2) 성과, (3) 재무적 투명성, (4) 의사결정의 민주성, (5) 사업 운영 프로세스 규정화, (6)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여섯 가지 주요 범주로 정리하여 여성의 전화 사례를 통해 이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에 관련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비영리조직 중에서도 의료 조직에 적용된 책무성 이론들은 의료제공을 둘러싼 개인과 조직의 책무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manuel과 Emanuel(1996)은 이러한 비영리의료조직의 차별성을 인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책무의 영역(domain), 소재(locus), 절차(procedure)를 근거로 보건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책무성을 전문가 (professional), 경제적(economic), 정치적(political) 책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전문가 책무는 의료 전문가들이 역량과 법적·도덕적 규범을 토대로 환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책무로써, 의료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다. 경제적 책무는 재무적 이익을 토대로 시장에서 의료 제공자가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환자의 주관적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써, 특히 관리의료(managed care)가 확산되고 의료의 시장화가 가속화된 1980년대 이후에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무는 환자와 의사가 같은 시민(citizen)으로서, 정부나 행정 당국에 의료의 공공재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제시된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장되는 책무를 말한다. 이때의 정치적 책무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

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나아가 Emanuel과 Emanuel은 이 세 가지 책무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가 지향해야 하는 책무성은 전문가 책무를 근간으로 하는 환자-의사 관계가 정치적 책무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시민으로서 환자와 의료인의 목소리가 사회적·제도적으로 확산되고 보장되는 의견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계외의 다른 관계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책무를 전달 받고 이행하는 일종의 체계(system)인 것이다.

한편 Etzioni(1975)는 의료 조직들이 책무를 어떤 차원에서 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상징적 사용(symbolic use)으로서의 책무성, 현실 정치(realpolitik)로서의 책무성, 공식적·법적 차원에서의 책무성, 가이던스 접근법(guidance approach)으로서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였다. 책무를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책무를 레토릭(rhetoric) 차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게 책무적 활동에 대해 모호하게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으며 단지 제스처를 취할 뿐이다. 반면 현실 정치로서의 책무성은 이해 집단들이 조직에 행사하는 권력(power)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공식적·법적 책무성은 법과 제도적 요구 사항에 반응하는 역량을 말하며, 가이던스 접근법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책무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내재된 도덕적 기반(moral base) 위에서 조직의 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조직 구성원을 교육하고 궁극적으로 계획된 운영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조직 내·외부에 협력 연합체를 형성(coalition building) 하는 것을 의미한다.

Gamm(1996)은 복합 책무성 시각에서 의료기관 조직 관리에 적용 가능한 책무성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시각에서 책무성이란 정치, 경제, 지역사회, 임상적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이며, 이는 보건의료 조직 환경의

속성과 조직 활동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다. 우선 정치적 책무성은 무엇이 정당한(legitimate) 조직 구조이며 그리고 행위인가의 경계를 규정하는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경제적 책무성은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며, 임상적 책무성은 환자에게 진료의 적정성, 접근성, 서비스 질과 관련된 내재적 활동과 보험자, 전문가의 판단을 준수하고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외재적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책무성은 지역사회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개발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Gamm의 이론 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책무성의 네 가지 유형이 상부와 하부 구조로 일종의 위계(hierarchy)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 조직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을 획득하고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하부 구조에 해당하는 경제적, 정치적 책무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하부 토대에 속하는 두 가지 종류의 책무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의료 조직들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두 영역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책무성은 임상적 지역사회 책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고(invisible) 그만큼 암묵적인 것이다.⁸⁸⁾

비영리 의료기관의 책무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책무성의 개념분석을 간호 행정적 관점에서 시도한 김기경(2004)의 연구와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해 모형을 개발한 이근찬과 유명순(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김기경은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책무성을 누구에게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 설명, 보고, 공개하고,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재를 받아들일 의무, 능력 및 수행이라 정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무성의 선행요인으로 의무, 임무, 수행능력, 권한, 권한부여, 책

88) 이근찬·유명순(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임성 및 자율성을, 그리고 책무성의 결과요인으로 전문직 발전,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의 안전보호, 대상자와의 협력, 스트레스와 긴장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근찬과 유명순은 (1) 응답성(answerability)과 (2) 가치창출(value-creation)의 두 가지 기준으로 보건 의료 조직들의 책무성을 구분하였고, 법적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 경제적 책무성, 임상적 책무성의 요소들로 나누어 평가항목들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병원들의 책무성 평가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다.

〈표 2-8〉 비영리분야 책무성 관련 선행연구들

비영리 분야	저자 (연도)	책무성 내용
시민 단체, NGO 및 NPO 전반 연구	Kearns (1994)	순응을 강조하는 법적 책무성, 반응성을 강조하는 협상된 책무성, 상황 판단에 따르는 재량적인 책무성, 및 옹호와 변호를 위한 예견적인 책무성 등 외부 통제의 성격과 조직 내부 대응이라는 두 기준을 조합하여 네 가지의 책무성을 제시
	Ospina et al (2002)	상향식의 기부자와의 관계, 하향식의 고객과의 관계로 나누어 책무성 정의. 상향식 견인이 절차적 측면 책무성의 전통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향식 견인은 도덕성이나 정당성의 측면의 포괄적 책무성 개념의 내용을 포함
	Leat (1990)	책무성을 재정적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절차적 책무성(process accountability), 프로그램 활동의 질에 대한 프로그램 책무성(programme accountability),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for priorities)으로 구분
	Salamon (2002)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와 관련하여, 재정적 성실성, 내부 거버넌스 구조, 임무에 대한 목적유지의 책임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책임, 네 가지로 제시
	Iain Attack (1999)	정당성(Legitimacy)이라는 개념으로 책무성 문제에 접근하여 형식적 절차적 차원에서 비영리조직의 대표성과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적 목적적 차원에서 권능화와 효과성의 문제를 제기
	Harry Blair (2000)	시민단체의 참여가 대표성을 가지며, 시민들을 권능화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익의 효과를 전달하며 빈곤, 환경, 평화, 인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책무성의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모델을 소개

비영리 분야	저자 (연도)	책무성 내용
	Lisa Jordan & Peter Tuij (2000)	시민단체의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연구. 비영리기관의 후원자들과 비영리기관의 추구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책무를 감당해야 할지 설계하는 것이 책무성의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
	김시영, 노인만, 이명숙 (2004)	정부규제, 민간규제, 내부규제, 일반대중 규제의 4가지로 구분하여 책임성 확보 메커니즘을 제시
	이자성 (2004)	시민단체의 청구와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한일 비교를 통해 분석. 한국은 법적책무성 관점에서 일본은 수행책무성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박상필 (2005)	연구는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주요 요소를 사회적 목적과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 재정의 건전성, 효율적 자원배분, 투명한 회계, 프로그램의 적절성, 사회문제 해결능력, 서비스의 질, 고객에 대한 반응이라는 9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
시민 단체, NGO 및 NPO 전반 연구	김준기 (2006)	비영리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협상적 책임성, 조직의 관리자나 운영진이 지니는 도덕적 책임성이나 전문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 비영리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등 내부운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숙중, 양세진 (2007)	다양한 책무성의 체계를 종합하여 (1) 비전, 사명, 목표, 전략, 사업 간의 한 방향 정렬, (2) 성과, (3) 재무적 투명성, (4) 의사결정의 민주성, (5) 사업 운영 프로세스 규정화, (6)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여섯가지 주요 범주로 정리
의료 분야	Emanuel & Emanuel (1996)	책무의 영역(domain), 소재(所在, locus), 절차(procedure)를 근거로 보건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책무성을 전문가 (professional), 경제적(economic), 정치적(political) 책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Etzioni (1975)	의료 조직들이 책무를 어떤 차원에서 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상징적 사용(symbolic use)으로서의 책무성, 현실 정치 (realpolitik)로서의 책무성, 공식적·법적 차원에서의 책무성, 가이드선 접근법(guidance approach)으로서의 책무성으로 구분
	Gamm (1996)	복합 책무성 시각에서 의료기관 조직 관리에 적용 가능한 것을 제시. 정치적, 경제적, 임상적, 지역사회 책무성으로 나뉘 의료기관 조직관리를 나누고 있으며, 책무성의 네가지 유형이 상부와 하부 구조로 위계를 이룸.
	김기경 (2004)	간호행정적 관점에서 책무성의 개념 및 요인 정리. 책무성을 누구에게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 설명, 보고, 공개하고,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재를 받아들일 의무, 능력 및 수행이라 정의하고, 책무성의 선행요인으로 의무, 임무, 수행능력, 권한, 권한부여, 책임성 및 자율성을, 책무성의 결과요인으로 전문직 발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의 안전보호, 대상자와의 협력, 스트레스와 긴장을 포함

9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비영리 분야	저자 (연도)	책무성 내용
	이근찬, 유명순 (2011)	(1) 응답성(answerability)과 (2) 가치 창출(value-creation)의 두 가지 기준으로 보건의료 조직들의 책무성을 구분하고, 법적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 경제적 책무성, 임상적 책무성의 요소들로 나누어 평가항목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병원들의 책무성 평가항목들을 검토
사회 복지 분야	Johnston & Romzek (1999)	미국 캔사스주 메디케어 노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제도에서 생긴 변화를 Romzek과 Dubnick의 책무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
	Kim (2005)	해마다 미국의 주정부와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를 Romzek과 Dubnick의 책무성 이론으로 분석
	노연희 (2007)	단순하게 조직 내, 외적으로 부여된 조직 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매우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책임성에 대해 언급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관련 연구로는 Johnston과 Romzek(1999)의 연구와 Kim(2005), 노연희(2007)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Johnston과 Romzek은 미국 캔사스주 메디케어 노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는 제도에서 생긴 변화를 Romzek과 Dubnick의 책무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im(2005)⁸⁹⁾도 해마다 미국의 주정부와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를 Romzek과 Dubnick의 책무성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Romzek과 Dubnick가 지적한 바와 같이 Kim의 사례 분석 역시 정신보건센터의 성과개선 실패는 법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를 강조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책무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결과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연희(2007)는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89) Kim, S. E.(2005). Balancing competing accountability requirements: Challenges in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nonprofit human service agency.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29(2), pp.145~163.

을 고찰하며, 단순하게 조직 내·외적으로 부여된 조직 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매우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책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책무성 정의나 유형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책임의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념으로부터 공통요소를 파악하여 책무성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책무성은 과업이 주어질 때 과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 개인 또는 조직이 이행 정도에 대하여 요구자에게 보고·설명·해명하거나 알림으로써 그들의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되 지각된 과오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⁹⁰⁾ 특히 시민사회나 여타 공적 영역에서의 책무성은 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큰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협소한 책무성 개념의 수정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책무성의 개념분석을 위하여 책무성을 내부적 차원에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전통적 책무성과 외연적으로 보다 확장된 책무성인 외부적 차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는 크게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요소로,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의 요소로 설정하여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90) 안선옥(2007). 초등학교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책무성 수준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자료

제2절 책무성 모델 및 연구변수

제3절 추정방법

3

연구방법 <<

제1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양적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전화번호 명부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총 2,000명을 추출하였으며, 전화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여,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606명이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편의성 등을 위해 WEB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On-Line)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 별로 가능한 비영리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담당하였던 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명부를 작성하였다. 총 조사대상자 수는 200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74명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차년도 연구에서 조사표를 인터넷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¹⁾

1) 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본조사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소규모에 걸쳐 구체적인 실제자료를 수집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함으로서 그 자료에 의한 표본설계(sampling design)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도구(research tool)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잠정적인 조사설계(research design)를 확정하였다. 분야별 사전조사는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선택된 기관에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사전조사 협조를 구하고 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표는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조사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내부적 책무성에는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외부적 책무성에는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고 각 책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설정한 뒤 이에 근거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의료, 종교의 5분

문지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수신하였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교육분야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립학교 법인명단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을 조사하였고,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문화예술 리스트를 인터넷에서 확보하여 2곳을 조사하였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4곳 및 인터넷 검색과 지인을 통해 8곳을 추가하여 총 12곳을 조사하였고, 의료분야는 병원협회를 통해 5개 병원과 인터넷 검색으로 임의적으로 2곳을 추가하여 총 7곳을 조사하였다. 종교분야에서 불교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4곳을 조사하였고, 기독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4곳을 조사하였다. 사전조사로 총 33기관을 조사하였다. 사전조사의 코멘트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한 후 본 조사는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각 분야의 하위 시설 또는 상위 법인의 리스트 확보가 어려웠고,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화조사원 16명을 고용하여 조사를 독려했다. 연구대상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다. 교육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지원과 및 전문대학과로부터 리스트를 받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립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500개의 표본기관을 선정하였다. 문화예술분야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등록된 법인 리스트에서 250개 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법인 및 시설의 리스트를 받아서 사회복지법인 250개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시설별 50개씩,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의료분야는 국공립병원 84개 전수조사, 의료법인은 250개를 전국 16곳 지역광역코드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을 하였다. 개인병원은 종합병원 50개, 요양병원 50개, 병원 150개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종교분야는 불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불교는 BBS 불교방송에서 발간한 2010 불교정보라는 책자를 통해 오래되고 큰 곳을 중심으로 16곳 지역광역코드를 고려하여 법인 및 사찰을 포함해서 125개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기독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개신교관련 전국에 있는 법인과 서울에 위치해 있는 큰 교회 125개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법인이 있는 곳은 법인 이사장 앞과 기관장 앞으로 각각 1부씩 등기를 보냈고, 시설 또는 기관에는 각 기관장 앞으로 등기를 보내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수는 총 2000여개였고, 조사 응답률은 의료분야가 500개소 중에서 281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응답률 56.2%), 사회복지법인이 500개 기관 중에서 224개 기관이 조사에 응하여 44.8%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분야는 500개 기관 중에서 224개소가 조사에 응답을 하여 44.8%의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분야는 250개 기관 중에서 129개소가 응답하여 51.6%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종교분야로 각각 250개 중에서 94개 기관이 응답을 하여 37.6%의 응답률을 보였다(오영호, 2012).

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으로 진행된 비영리법인 평가실태 조사이다. 설문은 조직의 실태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²⁾

두 번째, 질적조사는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통하여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질적연구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책무성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색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2차년도 연구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문화법인, 그리고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참여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이었다. 연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2012년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연구참여자 명단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5개의 각 분야별로 개별 전화 연락하여 연구 참여에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 약속을 정하였다.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오영호 외(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절 책무성 모델 및 연구변수

3차년도 연구의 연구모델과 연구변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의 연구에서 사용한 책무성의 분류를 준용하였다. 우선 책무성의 개념은 책무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어떠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책무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좁은 관점에서 응답성과 연계된 합법적 책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³⁾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책무성과 책임성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도 하며,⁴⁾ 때론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⁵⁾

이러한 책임성은 크게 주관적 책임과 객관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관적 책임은 자기인식, 양심, 도덕성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양심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즉 이는 행위자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충성, 양심, 일체화와 같은 경험으로 설명된다.⁶⁾ Mosher(1982)는 객관적 책임인 법, 규칙 등과 같은 근거에 기반을 둔 개인 업무활동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책무성을 보았으며, Cooper(1990) 역시 객관적 책임을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관련된 것으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성을 좁은 의미에서의 책무성에 상응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Dwivedi와 Jabbra(1989), Ott와 Dicke(2000)은 책무성을 조직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Stone

3) 이환범, 김태영, 이수창(2005). 행정조직문화와 유형에 따른 책무성의 차이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4, 541-558.

4) Simms, 1967; Bergman, 1981; Hull, 1981; Batey & Lewis, 1982; Day & Klein, 1987; Wagner, 1989; 정우일, 1996; 김규태, 2001

5) 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2), 233-241.

6) 오영호 외(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은 관리, 법, 투표자 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은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Behn(2001) 역시 복합적 관점인 사회적 형평성과 성과 관점에서의 책무성의 의미를 고찰했으며, Romzek과 Dubnick(1987)은 책무성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 및 외부관계, 책무성에 의한 통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사분법적 복합책무성 체계를 강조하였다.⁷⁾ 지금까지 책무성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무성은 전통적 의미에서 보다 높은 감독자 혹은 상급기관에 대한 절차적 설명가능성을 뜻하지만, 사적 영역에 비해 목적을 명시하기 힘든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혹은 기타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은 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더 큰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협의의 책무성 개념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켰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공정성, 정당성 등 도덕적 부문과 주변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요구받는 부문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정리하여 내부적 차원에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책무성과 외부적으로 보다 확장된 외부적 차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내용적 특징은 <표 3-1>과 같다.⁸⁾

7) 오영호 외(2012), 전제서

8) 오영호 외(2012), 전제서

〈표 3-1〉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

구분	의미	측정방법	
내부적 책무성	민주성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참여보장, 국민의 뜻에 따른 행정수행	국민의 참여정도 여론수렴 정도
	투명성	행정과정, 결과의 공개를 통한 부정부패 해소	부패지수 정보공개지수
	효율성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달성 정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행정수행	목표달성도 투입/산출 비율
	형평성	지역, 성,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불평등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정당한 법령에 부합하는 행정수행	법령위반정도
	대표성	공적목표에 입각해 공익을 대표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전문성	전문가의 참여 외부지식의 실질적 이용	전문가 교류정도 전문가 활용성과
	반응성	사회의 일반적 요구 수렴 정부와 타 비영리기관과 협력정도	정부와의 교류정도 타 비영리기관과의 반응도 언론사와의 협력정도

따라서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서와 같이 상기의 각각의 요소들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각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은 다음의 〈표 3-2〉, 〈표 3-3〉과 같다.

〈표 3-2〉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

평가항목	측정지표	설문문항
민주성	규정의 정비정도	•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가?
	규정 준수 정도	•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의사결정 참여정도	•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얼마나 그 과정에 참여하는가?
	직위의 고른 분포도	• 의사결정구조에 인원의 배치가 얼마나 중복 되어 있는가?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빈도	•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의 개최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
	내부 의결권의 다양성 정도	• 논의나 안건의 주도는 누가 하는가?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성	• 재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재정 관리의 공개 정도	• 수입·지출 내역은 얼마나 공개되는가?
	재정 관리에 대한 통제 정도	• 내부통제와 감사제도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서류 관리에 대한 통제 정도	• 관련 서류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 정도	• 정보의 공시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가?
	정보 공개에 대한 반응성	•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효과성	사업의 장기적 계획성	• 활동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되는가?
	사업 성취도	• 계획한 사업을 완수하였는가?
	사업 진행 정도	• 계획된 일정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 정도	• 분야별 책임자가 존재하는가?
	업무량의 적절성	• 실무자의 업무량은 적절한가?
	상근 인력의 활용도	• 인력은 기능별로 배치되어 있는가?
극형성	예산의 장기적 계획성	• 예산은 장기적 계획 아래 사용되는가?
	예산 사용의 절약성	• 불필요한 예산 사용은 없는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	• 예산대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고 있는가?
형평성	구성원간의 지역차별	• 구성원 간의 지역차별은 없는가?
	구성원간의 성차별	• 구성원 간의 성차별은 없는가?
	구성원간의 계층차별	• 구성원 계층 간 차별은 없는가?

〈표 3-3〉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

평가항목	측정지표	설문문항
합법성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의 일치	•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과 기관의 목적은 일치하는가?
	설립목적의 이행	•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는가?
	법적 의무의 이행	• 해당기관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가?
	기관의 행위 합법성	•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대표성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 해당 단체가 일반 시민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가?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정도	•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한가?
	활동의 실효성	• 활동이 대상 집단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가?
	목적 적합성	•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
	사회적 기여도	•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회원 기대 적합성	• 회원의 바람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전문성	외부 인식의 정도	• 일반인들이 해당 단체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가?
	내부 교육 정도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외부 교육의 제공 정도	• 외부에 전문적 지식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전문가 교류 정도	• 외부 자원의 활용에 적극적인가?
	전문가 활용 성과	•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 도움을 가져오는가?
반응성	타 비영리기관에 대한 반응도	•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가?
	타 비영리기관과의 교류정도	• 다른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
	정부와의 교류정도	• 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
	언론사와의 협력 정도	• 언론의 보도가 적극적으로 대응되는가?
	고객 요구에 대한 수렴 정도	• 고객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는가?
	사회 일반적 요구 수렴 정도	•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는가?

이러한 책무성 모델에 근거하여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의료, 종교의 5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모델은 사용되는 연구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로는 ‘책무성’이며, 책무성에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개의 하위 책무성이 있고, 각 하위 책무성에는 각각 4개의 하위 책무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설명변수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 등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변수로는 조직유형, 기관유형, 그리고 설립 주체의 3개의 설명변수가 있다.

제3절 추정방법

1. 책무성 차이분석 추정방법

일반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책무성 인식도 조사의 설문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다. 첫째, 집단 간 책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은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할 때 집단내의 분산과 총평균 그리고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으로, 로널드 피셔(R.A. Fisher)에 의해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만들어 졌다. 실제로 조사연구에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 집단의 구분은 무수히 많아 질 수 있다. 분산분석은 이렇게 다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의 검증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분산분석은 집단 내의 차이가 집단 간의 차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집단 내의 차이와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모두 분산으로 표시하게 된다. 집단 내의 차이는 집단 요소들의 각 집단 평균에 대한 분산의 합산으로 하고, 집단 간의 차이는 각 집단들의 평균 사이의 분산과 전체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구한다.⁹⁾ 그리고 그 값

을 비교하여 집단 간에 현저한 차이(차이의 수준은 F값을 기준으로 함)를 보이는 경우에만 그 차이를 인정하여 검증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균들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분석 중 하나인 Scheffe 검증을 수행하였는데, Scheffe 검증은 대응별 다중비교를 수행하여 차이가 나는 평균을 판별할 수 있는 검증방법으로써 가능한 모든 대응별 평균조합에 대해 동시 결합 대응별 비교가 가능하다. χ^2 검증은 가설검증시에 두 변수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분석기법이다. 두 변수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별이 애매한 경우에 특히 유용하며, χ^2 검증을 하면 일정한 유의수준에서 차이의 유무나 두 변수간 관련성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¹¹⁾ 즉, χ^2 검증은 두 변수의 상호관련성 또는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또한 χ^2 검증은 주어진 분포가 정규분포, 이항분포, 포아송분포와 같은 특정 형태를 띠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크다는 것인 독립변수의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관찰도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같다. χ^2 값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9) 오영호 외(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0) 분산분석의 가정은 첫째, 각 표본의 모집단 분포는 정규분포 일 것, 둘째, 각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 할 것, 셋째, 각 표본들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정이 충족하는 상황인 어려운 일이므로 위의 가정과 유사한 상황인 경우에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고 있다.

11) 오영호 외(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chi^2 = \sum \frac{(F_0 - F_e)^2}{F_0}$$

관찰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가 클수록 χ^2 값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두 변수간 관련성의 정도가 강할수록 χ^2 값도 커지게 된다.¹²⁾

두 번째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혼란변수(confounding factor)를 통제할 수 있는 공분산 분석(ANCOVA)을 적용하였다.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정들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처리(treatment) 안에서 공변량 x 가 반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처리에 대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각 처리 안에서 공변량의 효과가 같아야 하며, 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공분산 분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절에서는 공변량의 효과가 같은 경우에 대한 공분산 모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 때 공분산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y_{ij} &= \mu + \alpha_i + \beta(x_{ij} - \bar{x}_{..}) + \varepsilon_{ij} \quad (i = 1, \dots, I; \quad j = 1, \dots, n_i) \\ &= \beta_0 + \alpha_i + \beta x_{ij} + \varepsilon_{ij} \\ &= \beta_{0i} + \beta x_{ij} + \varepsilon_{ij} \end{aligned}$$

위 식에서 y_{ij} 는 i 번째 처리(treatment)에서 j 번째 개체의 반응값을 나타내고, x_{ij} 는 그때의 공변량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beta_{0i} = \beta_0 + \alpha_i$ 이다. μ 는 반응변수의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모수이고, α_i 는 처리의 효과를, 그

12) χ^2 값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표본크기가 변하면 χ^2 값도 함께 변한다는 것인데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χ^2 값도 증가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변수간의 관련성이 약하다 해도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검증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리고 β 는 모든 처리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공변량의 효과를 나타낸다. 오차항 ε_{ij} 는 등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공분산 분석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가정은 공변량의 효과 β 가 0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귀무가설 $H_0 : \beta = 0$ 을 기각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변량의 효과가 0이라면 공변량의 모형에 존재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공분산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분산분석만으로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수의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분산 모형에서 모수들은 반응변수들의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μ , 처리효과 α_i 그리고 공변량의 효과 β 이다. $\sum_i \hat{\alpha}_i = 0$ 이라는 제약식을 이용하여 이 모수들의 최소제곱추정치(LSE)를 구할 수 있다. 최소제곱추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풀어야할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partial \mu} \sum_i \sum_j (y_{ij} - \mu - \alpha_i - \beta(x_{ij} - \bar{x}_{..}))^2 = 0$$

$$\frac{\partial}{\partial \alpha_i} \sum_i \sum_j (y_{ij} - \mu - \alpha_i - \beta(x_{ij} - \bar{x}_{..}))^2 = 0 \quad (i = 1, \dots, I)$$

$$\frac{\partial}{\partial \beta} \sum_i \sum_j (y_{ij} - \mu - \alpha_i - \beta(x_{ij} - \bar{x}_{..}))^2 = 0$$

위의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각 모수들의 최소제곱추정치(LSE)는 다음과 같다.

$$\hat{\mu} = \bar{y}_{..}$$

$$\hat{\alpha}_{ij} = \bar{y}_{i.} - \bar{y}_{..} - \hat{\beta}(\bar{x}_{i.} - \bar{x}_{..})$$

$$\hat{\beta} = \frac{\sum_i \sum_j (x_{ij} - \bar{x}_i)(y_{ij} - \bar{y}_i)}{\sum_i \sum_j (x_{ij} - \bar{x}_i)^2}$$

따라서 β_{0i} 는 다음 식과 같이 추정된다.

$$\hat{\beta}_{0i} = \hat{\beta}_0 + \hat{\alpha}_i = \bar{y}_i - \hat{\beta} \bar{x}_i$$

다음은 공분산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모수의 검정을 위하여 공분산 모형에서 2개의 귀무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H_{01} : \beta &= 0 \\ H_{02} : \alpha_1 &= \alpha_2 = \dots = \alpha_I \end{aligned}$$

첫 번째 귀무가설은 처리 효과를 제어한 반응변수에 공변량이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굳이 공분산 분석을 하지 않고 분산분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귀무가설은 공변량의 효과를 제어한 상태에서 처리간 반응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각 요인의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평균제곱합을 오차항의 평균제곱합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다.

처리효과를 제어한 후 공변량의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 H_{01} 을 검정하기 위한 F 검정은 다음과 같다.

$$F_1 = \frac{SSX/1}{SSE/(N-I-1)} \sim F(1, N-I-1)$$

그리고 공변량의 효과를 제어한 후 처리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H_{02} 을 검정하기 위한 F검정은 다음과 같다.

$$F_2 = \frac{SSt/1}{SSE/(N-I-1)} \sim F(I-1, N-I-1)$$

따라서 각각의 F값이 해당하는 자유도를 갖는 F-분포에서의 기각치보다 크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2. 우선순위 추정방법

가. AHP기법의 기본원칙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책무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추정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¹³⁾를 사용하였

13) AHP는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의 두문자어(acronym)로서 우리나라 용어로는 '계층적분석과정'이나 '계층적분석법'으로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계층화하여 분석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1970년대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Thomas L. Saaty 교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Cognitive Limitation)로부터 기인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비능률적인 의사결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점점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아지는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합리적이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수학적인 해결방법이 AHP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복합적 문제를 계층화하여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 구성 요인들 간의 일대비교(pairwise comparison: 一對比較)를 통해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도출시켜 의사결정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AHP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대비교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과 그 해석방법에 주 고유벡터를 사용하고, 또한 그 평가구조를 계층구조로서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다(강진규, 2008, p.15). 인간의 단계적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에 수많은 의사결정요소가 필요한 경우 최근에 논의한 몇 개의 요소만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의 상황은 이러한 인식능력의 한계(cognitive

다. 사람들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AHP 기법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인 계층적 구조의 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weighting),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유지의 원칙을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Saaty, 1995; 오영호, 2012, p.106.재인용). 첫째, 사람들은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구성하는 요소별 특징의 위계에 따라 계층구조를 설정하려는 특징을 AHP기법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계층적 구조 설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둘째, AHP기법은 사람들이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 특징이나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하고, 또한 각 분류그룹의 구성인자 사이의 중요도를 설정하려는 특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대적 중요도 설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셋째, 사람은 사물이나 사고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AHP기법에서는 비교행렬의 주고유벡터를 활용한 1:1 비교 결과의 통합과정에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로 도출되어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합리성과 논리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논리적 일관성 유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여 복잡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많은 결정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AHP 기법이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복잡한

limitation)로 인하여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고 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AHP 기법이다. 인간의 의사결정 절차는 단계적이며 위계적인 분석과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AHP기법은 많은 의사결정이론 들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이론의 단순성,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그리고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AHP 기법은 현재 미 연방정부,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LG전자 등 민간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http://www.expertchoice.co.kr.>, 2013).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상황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설정된 구조를 구성 요소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의 논리적 일관성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AHP 기법이다(오영호, 2012, p.107.재인용).

나. AHP기법의 전제조건

AHP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논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¹⁴⁾ 4가지의 공리는 다음과 같다 : 공리 1) 상호비교(reciprocal comparison), 공리 2) 동질성(homogeneity), 공리 3) 독립성(independence), 공리 4) 기대성(expectation).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결과에 따라 설정된 계층구조는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합리적 기대를 맞추는데 필요한 모든 대안이나 모든 판단기준을 사용하였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다. AHP기법의 분석단계¹⁵⁾

일반적으로 AHP 분석과정은 브레인스토밍, 계층구조의 설정, 중요도 설정, 일관성검증, 그리고 피드백의 5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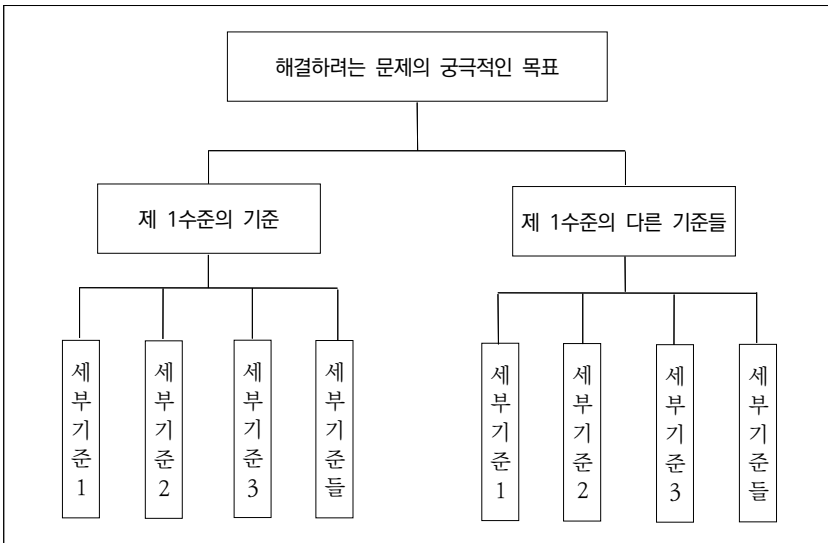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는 문제설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다.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통해

14) Vargas, 1990; 오영호 2012, p.107 재인용

15) 오영호, 2012, p.108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목표를 명확히 한 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관련 항목과 대안을 열거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계층구조의 설정(Structuring)이다. 1단계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최종 목적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요인들로 인한 인식의 한계(cognitive limita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위계관계를 찾아내고 군집화하는 단계이다. 최상계층에는 문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배치하고 제1수준에는 궁극적 목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그 다음 단계에는 제 1 수준에 영향을 주는 하부 요소들을 배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논리성을 강화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그림 3-1] AHP 분석의 계층구조 개념도



자료: 오영호, 2012, p.108.

세 번째 단계는 1:1 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Weighting)를 설정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나타난 각 단계별, 요소별, 및 대안 간의 1:1비교를 통해 각각의 요소 및 대안들이 상위요소 및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갖는지 등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1:1비교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은 복잡한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 요소들의 중요도를 쉽고 간단한 비교를 함으로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의 수치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AHP 분석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표 3-4〉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원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이원비교 요소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A에 대한 B의 중요도	극단적 선호: 5	매우 강한 선호:4	강한 선호:3	약간 선호: 2	동등하게 선호: 1
B에 대한 C의 중요도	극단적 선호: 5	매우 강한 선호:4	강한 선호:3	약간 선호: 2	동등하게 선호: 1
C에 대한 A의 중요도	극단적 선호: 5	매우 강한 선호:4	강한 선호:3	약간 선호: 2	동등하게 선호: 1

자료: 오영호, 2012, p.109.

네 번째 단계는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을 통해 검증한다. 전문가 집단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들이 공리를 만족시키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알기 위해 일관성 분석을 실시한다. 일관성 분석의 절차는 우선 최대 고유값(principal eigenvalue) λ_{max} 를 구하고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일치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구한 후, 이 지수를 가지고 일치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구하여 이 비율을 이용하여 일치성 여부를 판단한다.

〈표 3-5〉 일치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 AHP 분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 설문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했는지 여부를 판단
- λ_{max} 는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다. 즉 $n \times n$ 정방행렬[A]와 $n \times 1$ 가중치행렬[W]를 곱하면 새로운 $n \times 1$ 가중벡터행렬[Y]가 산정되는데, 이 가중벡터 행렬의 구성요소 Y1.....Yn과 가중치 W1.....Wn을 이용하여 λ_{max} 을 얻음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 \times [W] = [Y] \text{이고,}$$

$$(Y1/W1 + Y2/W2 + \dots + Yn/Wn)/n = \lambda_{max}$$

- AHP 분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 설문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했는지 여부를 판단

$$CI = \frac{\lambda_{max} - n}{n - 1}$$

- $CI < 0.1$ 일 경우 받아들임
- $CR = CI/RI < 0.1$ 받아들임(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 RI(Random Index): 임의지수
- 행렬 차수별로 100개씩 상반행렬을 임의로 발생시켜 차수별로 CI를 평균한 것

다섯 번째 단계는 검토(Feedback)이다. 분석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일관성을 검토하고,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 및 개선하는 단계이다. 일관성검토에서 타당성 있는 모델이라고 하여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과를 조정 및 개선시키는 단계로서 모델의 타당성, 가중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요소의 추가 및 삭제 등을 통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단계이다.

3. 질적분석방법

가. 질적연구의 특성

질적 연구¹⁶⁾의 특성은 역사주의 과학철학의 논제와 질적 연구의 학문

- 16) 질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양적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적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을 보면, 인간의 자연과 사회, 우주와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은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게 하였고 학문을 발전시켰다. 과학적 지식은 경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사물 현상에 대한 지식이다. 특히 논리실증주의는 과학과 학문을 동일시하고 과학의 패러다임을 물리학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으로, 모든 지식을 과학적 지식과 동일시하고 유일한 목적과 구조, 방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은 그 지식의 내용이나 지식을 찾는 방법이 자연과학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방법론의 문제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즉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제도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의 맥락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자연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을 진보적이고 최상의 확증된 것으로 다루어왔던 일반적인 시도들이 실패하고 과학적 활동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가장 신뢰할만한 진리로 간주된 과학 지식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하게 이르렀다. 과학철학이 과학사와의 관련 속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 Kuhn(김명자, 1992) 등은 과학과 과학자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진보를 규명하였고, 과학자 집단의 합의나 개인적 관심을 이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Popper는 사회과학의 한 접근법으로, 과학철학의 한 주류로 역사주의를 정의하였다. 그는 역사적 진보의 밑바탕에 있는 규칙적인 흐름, 패턴, 법칙이나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역사적 예측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한구, 1990). 역사주의는 세계관의 원리이면서 역사적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인 것이다. 패러다임으로서 역사주의는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과 사회과학은 전혀 다른 것이며 물리학의 몇 가지 특징적인 방법들은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회생활의 규칙성은 역사와 문화사의 차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사회학의 법칙이

적, 이론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특성은 모든 질적 연구방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수집 방식을 개발하는

나 사회적 삶의 법칙은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는 연구대상인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수량화함으로써 현상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양적 연구의 인식론적 전통은 실증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증주의는 실재를 탐구하는 주체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 또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며, 그러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양적 연구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도구와 절차를 따름으로써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Crotty, 1998). 표준화된 조사도구와 분석절차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현상을 요약적으로 재현하고, 결과들의 상호비교나 일반화 하는데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숫자로 재현된 사회 현상은 연구자가 탐구하는 실제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상을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된 실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질적 연구는 후기 실증주의나 구성주의의 입장과 연관된 인식론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은 객관적 실재나 보편적 진리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회적 실재란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며, 그 집단 내에서 개인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속성을 가진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속성이 개입하는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노력에 대한 구조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Bogdan & Biklen, 2007). 질적 연구는 인간이 사회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감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이다. 또한 질적 연구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나 과거에 제시된 지식이 편협하거나 일부분의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이다(Richards & Morse, 2007). 이는 개인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경험이 일어난 상황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자연주의적 탐구”라고 할 수 있다(Guba & Lincoln, 1981).

해석적, 자연주의적 전통에 따른 질적 연구방법은 합리적, 실증주의적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분리된 존재로서 객관적인 실재의 존재를 인정한다. 질적 연구는 객관적인 실재란 존재할 수 없으며 연구대상은 연구자의 인식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상호작용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셋째, 양적 연구에서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질적 연구에서는 선별된 연구대상, 즉 사례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통해서 해당 사례와 자료에 가장 적합한 지식을 생산한다고 본다. 넷째, 양적 연구는 어떤 사건이나 개인 행위의 실제 요인을 밝혀 내고, 각 요인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연구자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치관, 연구환경, 문화 등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연구설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질적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사건, 행동, 규범, 가치 등을 참여자의 시각에서 본다는 점이다. 즉 질적 연구는 '의미'에 관심을 갖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자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의미를 두는 방식, 즉 참여자의 시각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세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 자연주의적 접근에 따른 질적 연구의 전략은 의미 있고 믿을 만하며 타당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현상에 대하여 공감과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질적 연구자는 참여자에 대해 흥미를 갖고 돌보는 점에서 공감을 해야 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 중에 사람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공감은 타인의 세계관, 경험, 느낌, 입장, 위치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 조사에서 참여자를 인터뷰하고 관찰하면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는 내부자적 시각을 파악하고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립성은 신뢰관계를 촉진하고 연구자가 개방되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훈련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데, 이는 생활세계에 대한 지식의 핵심으로서 통찰력이다. 통찰력은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현상 안으로 들어갈 때 얻을 수 있다. 즉 질적 연구의 핵심인 자료 수집의 도구로서 연구자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관심, 연구의 목적, 관점, 가치, 의미, 그리고 편견까지 만들어내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와 편견을 중지한 채 참여자를

인터뷰하고 관심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 누가 인터뷰나 관찰을 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상이한 내용의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접근에서는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사례연구, 상세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질적 연구는 자연주의적 탐구를 의미한다. 자연주의적 탐구는 연구현상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 현상의 의미를 얻으려는 현장 활동이다. 질적 연구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처럼 연구 상황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이나 프로그램, 사회, 관계, 그리고 사전에 연구자가 정해놓지 않은 상호작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연구대상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다섯 번째, 질적 연구는 총체적 접근을 따른다. 질적 연구자는 현상을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고자하며, 특정 상황의 종합적인 본질을 추구한다. 연구자는 관찰된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사회적 환경이나 조직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총체적 접근은 특정 상황의 사회적 역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상황의 모든 차원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여섯 번째, 질적 연구는 특정 사건이나 형태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맥락 중심의 시각은 총체적 접근과 분리할 수 없는 특성으로, 연구자가 자료를 어떤 측면에서 수집했는지 간에 그 사건이나 형태를 보다 넓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내에서 기술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 번째, 질적 연구는 인간이나 사회 현상을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것

으로 간주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를 다룬다. 변화는 자연스럽고 인간 경험의 필연적인 속성이다. 질적 연구자는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과 총체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자는 일상생활의 실재를 반영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단순한 산물이나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게 된다.

여덟 번째, 질적 연구는 이론과 개념으로 자유롭다. 질적 연구자는 현장 연구를 시작할 때 이미 이론과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면 연구자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참여자의 세계에 온전히 빠져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이론과 개념을 개발하거나 검증하는데 더 치중하게 된다.

아홉 번째, 연구설계는 연구 초기의 관점, 관찰과 인터뷰 계획, 탐구할 기본적인 질문 정도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자연주의적이고 귀납적인 속성 때문에 조작적 변수를 구체화하거나 검증가능한 가설을 진술한다거나 표본 추출 방식을 구조화하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조사할 것이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정확히 결정하기 보다는 비교적 개방된 전략을 선호한다.

열 번째, 질적 연구는 일상생활 사건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상황과 참여자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 형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나타난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병원, 학교, 복지관, 예술관, 교회나 사찰 등과 같은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가까운 공간 내에 머물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경험을 나누게 된다.

열한 번째,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수의 사례를 통해 심층적이고 상세한 기술을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하고 특별한 관심을 끄는 이유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열두 번째, 질적 연구는 숫자가 아닌 단어나 그림과 같은 자료를 수집한다. 질적 연구의 자료는 주로 인터뷰 필사본, 현장노트, 사진, 비디오테이프, 사문서, 공문서, 메모 등을 포함한다. 질적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량화하지 않고 가능한 기록되고 텍스트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러한 텍스트로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자가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풍부하고, 왜곡 없이 수집되었을 때 가치가 더하게 된다. 또한 질적 연구는 독자에게 연구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실증하기 위해 원자료를 인용하고 제시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한다.

열세 번째, 질적 연구는 발견의 논리를 지향하는 귀납적 접근을 취한다. 질적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관심사를 인식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연구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이론적 가정과 기존의 기대를 부과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감각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귀납적이다. 즉 실제로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이들 자료들이 가리키는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귀납적 접근은 인간 활동과 상황 간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즉 연구의 대상이 개인이나 집단, 사회인 경우 개별 사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 전반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연구자는 사회적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각과 일치된 기술을 해야 한다. 질적 연구는 매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정밀하게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인 현상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심층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¹⁷⁾

질적 연구는 연구 상황 내에 있는 참여자들이 해석하는 현상의 의미를 맥락과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의 대상인 현상은 행위자들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질적 연구자는 현상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실증적 정보를 바탕으로 그 현상을 깊이 있게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바로 그 현상에서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이끌어낸 것이어야 한다.

나. 질적연구 방법론 : 해석학적 기술

질적연구방법론으로서 해석학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이 이해 불가능한 것에서 이해 가능한 것으로 옮겨지는 과정, 즉 이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해석학은 이해의 학문 혹은 기술이며, 모든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의 조건들을 기술하는 학문으로 여겨진다. 해석학의 원리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 해석을 기초로 사용될 있는 이해의 기술에 대한 것이다.¹⁸⁾ 이해의 기술로서 해석학의 주요내용은 이해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다. 말로 된 것이나 글로 쓰여진 것에서 대화관계가 성립되려면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사람과 이를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듣는 사람은 단순한 단어들의 배열을 듣다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으로서 사회현상 또는 그 현상 속에 있는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학적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접

17) 신경림 등, 200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18) 신경림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하게 되는 외적인 조건, 사건,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재적 대상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즉 우리가 이해하는 것 자체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적 통일성 혹은 순환을 형성한다. 전체로서의 순환은 개별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또 부분들이 모여 순환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장 전체와의 연관성 하에서 각각의 개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전체로서의 문장의 의미는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에 의존한다. 이러한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의 순환과정 속에서 각각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해의 원리를 해석학적 순환이라 한다.¹⁹⁾ 전체로서의 인간의 경험은 하위의 부분들로 구성되며, 동시에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로서 경험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험한 현상에 부여된 의미는 경험의 전체적인 맥락과 부분이 상호작용하는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²⁰⁾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해석적 기술방법은 새로운 지식 개발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다. 연구에서 ‘기술’이란 용어는 세목화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즉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는 연구를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질적 연구에서의 기술은 인간의 주관성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연구에서의 기술과는 다르게 이해된다. 또한 ‘해석’이란 용어는 연구방법이 이분법적 철학 전통이 아닌 인간의 사회적 현상에 위치한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실재는 실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²¹⁾ 해석적 기술접근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무현장

19) 신경림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 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1) Sandelowski, M. (2000). Whatever happened to qualitative description? Research

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단순한 근거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찾아내는 해석적 사고과정을 포함한다. 이로써 기존에 가졌던 사전 지식을 바라보는 데 새로운 시각을 재구성하고, 근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구성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사회적 실무 환경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런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해석적 기술은 엄격한 기술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을 확대하거나 연장함으로써 실무적으로 흥미로운 특정 주제현상을 밝히는 방법이다.²²⁾ 즉 특정 사회 또는 기관 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적, 감각적이고 패턴화된 측면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학문적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사람들의 실무 현장에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안내를 제공하는 맥락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함이다.²³⁾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생각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해석적 기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비영리법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책임성 현황에 대한 예비적 실증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문항에 많은 조사대상자들은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상황 속에 감춰둔 채 긍정적인 책무성의

in Nursing & Health, 23, 334-340.

22) Hunt, M. R.(2009). Strengths and challenges in the use of interpretive description: Reflections arising from a study of the moral experience of health professionals in humanitarian work.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9(9), 1284-1292.

23) Thorne, Kirkham, & O'Flynn-Magee, 2004; Thorne, 2008

결과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미 확인된 요소들과의 맥락적 연관성을 찾아봄으로써 기존의 서술적 지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 연구참여자 선정

비영리법인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하며, 법원 등기상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과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 이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2차년도 연구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법인을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문화법인, 그리고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참여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이었다.

연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2012년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연구참여자 명단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5개의 각 분야별로 개별 전화 연락하여 연구 참여에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 약속을 정하였다.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라.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인터뷰는 질적 연구방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수집의 방법이다. 인터뷰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어떠한 정보를 구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개인간의 상황이며 상호 관심사인 주제에 관한 두 사람간의 대화이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지식이 전개해 나가는 특수한 형태의 상호작용인 것이다.²⁴⁾ 질적 연구방법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활용되는 인터뷰는 친밀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대화나 단순한 의견교환과는 달리, 일정한 정보를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²⁵⁾ 즉 질적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된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의도적인 대화인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서술한 것이다.

인터뷰 자료는 참여자의 주관에 개입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은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의미해석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인터뷰는 참여자의 주관에 의해서 구성된 경험을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인 동시에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의 경험 재구성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참여자는 연구자가 질문하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그에 대한 적절한 형태로써 자신의 경험을 다시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자의 질문은 바로 연구주제 및 목적에 따른 연구자의 관심과 밀접하

24) 신경림(1998). 인터뷰: 내면으로 보는 눈. 서울: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25) Bogdan & Biklen, 2007; Merriam, 1998

게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연구주제와 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던지는 질문에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은 다시 한 번 더 재구성되는 것이다.

한편 인터뷰 자료의 수준은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 즉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해 내는 능력과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익숙한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문해 수준이나 이해 능력에 따라 인터뷰를 이끌어가야 한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가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이해시켜야 하며, 반대로 참여자의 응답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재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인터뷰는 인터뷰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인터뷰의 유형은 크게 구조적(structured), 반구조적(semi-structured), 그리고 비구조적(unstructured) 인터뷰가 있다.²⁶⁾ 먼저 구조적 인터뷰는 연구자가 사전에 인터뷰 진행을 위한 인터뷰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서 진행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연구자가 인터뷰 가이드에 준비된 모든 질문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 이외에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화된 인터뷰는 일종의 문서화된 면담지를 이용하여 구두로 진행되는 단순한 설문 of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반구조적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인터뷰 가이드 혹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구조화된 인터뷰처럼 엄격하게 질문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반구조적 인터뷰는 연구

26) 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참여자의 응답 내용과 형식이 비교적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의도나 편향된 가치가 인터뷰 내용을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할 때 연구자의 편견, 선입견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²⁷⁾ 그러나 반구조적 인터뷰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자유로운 상황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형이다.

비구조적 인터뷰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일상적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형태로서, 연구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질문내용과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 비구조적 인터뷰는 대화의 주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포함한 인터뷰 가이드를 준비하거나, 혹은 인터뷰 가이드를 준비하지 않은 채 진행되기도 한다. 비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려면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대해 해박한 정도와 이해가 필요하며 숙련된 인터뷰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인터뷰에 응할 적절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주제, 현상에 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뷰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공감대가 형성되

27) 신경림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어야 한다. 인터뷰를 약속하고 첫 만남을 가진 경우라도 연구자와 참여자는 낯선 상태이므로 인터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는 참여자와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여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를 위한 질문의 형태 또한 효과적인 인터뷰의 고려사항이 된다. 전통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동시에 질문하거나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폐쇄적 질문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강한 질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경청을 통한 인터뷰이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참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듣게 되면 참여자는 인터뷰에 더욱 집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참여자의 말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의 복합적인 한계를 해석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해석학적인 접근의 일환이다.²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구수행과정의 시기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인터뷰로서 반구조적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와 3명의 연구보조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효과적인 인터뷰를 위한 지침과 고려사항을 알려주었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일부 진행한 후 녹음 파일과 필사본을 연구보조원에게 제시하면서 인터뷰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보조원은 충분한 훈련과정을 거쳐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28) 신경림, 1998; 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2) 자료수집 절차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면대면 인터뷰 약속을 정했다. 인터뷰는 주로 참여자의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담당자의 기관 상사나 동료의 허락 하에 업무 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 중 일부는 질문내용을 사전에 알기를 요청하여 인터뷰에 앞서 인터뷰 가이드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참여자가 인터뷰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개별인터뷰 일정은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정했으며,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의 근무지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회의실 또는 상담실, 직무실과 같은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커피숍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4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인터뷰에 의한 연구진행 방법, 연구참여의 잇점 또는 해로운 점,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 자료를 다룰 것이라는 점,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연구참여자의 비밀 보장, 연구참여 및 중단에 대한 자유로움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양식을 이용해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이 양식에 기입된 자료를 보면서 원활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참고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녹음을 하였다. 연구자는 성능 좋은 디지털 녹음기(ICD-TX50, SONY)를 준비하여 매 인터뷰 전에 녹음기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지, 충전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녹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가까이 두었으며, 녹음에 방해가 될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1회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인터뷰에 응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첫 번째 인터뷰 이후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것을 약속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질문으로 참여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뷰 질문을 위한 가이드는 2차년도 연구에서 적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한 도구를 근거로 구체화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도입 질문으로는 연구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렸고, 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을 위한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인터뷰 질문들은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물어보았으며, 순서는 인터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는 인터뷰 도중 연구자가 느꼈던 점들을 메모해 두고 자료분석 시 이용하였다.

마. 자료분석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한 후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사한 후 참여자별로 파일명을 부여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필사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확한 필사과정을 확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된 면담내용을 필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교육시켰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이름, 법인과 관련된 인물, 장소 등 개인적인 정보는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삭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필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은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 글로 옮겨 적는 워드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²⁹⁾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석적 기술은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한다.³⁰⁾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 자료에서 패턴 분류하기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집중하기 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수많은 정보에 직면하게 된다.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매우 선택적으로 조직화하고 분류해야 한다. 우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에 오고갔던 수많은 내용 중에서 몇 개의 단어나 구절은 이미 연구자에게 주의를 끌고 생각하게 된다. 연구자는 그 주위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탐구할 때, 연구자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필사본으로 옮

29) Richards, L., & Morse, J. M. (2007). *Readme first for a user's guide qualitative methods* (2nd ed). Thousand Oakes, CA: Sage.

30) Thorne, S. (2008). *Interpretative description*.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긴 후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확인하였고, 그 기록에 파묻혀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즉각적인 생각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코드 작성하기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료 수집의 초기 과정에서 자료를 패턴으로 분류하고, 관련성에 따라 이들 패턴을 검증하고, 그러한 관련성들을 개념화하여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코딩하는 분석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인터뷰의 필사본에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가 수반되어 있는지, 유사한 것은 무엇이고, 서로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따라 ‘코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단어나 표현을 미세한 수준으로 그대로 묘사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필사본에 의미 있는 부분을 밑줄 긋기와 형광펜으로 표시하기를 이용하여 모든 자료를 코드화 하였다.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거나 필요한 부분은 녹음내용을 다시 듣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회계업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 ‘여직원의 제한된 업무’, ‘하향식의 의사결정 체제’, ‘결재단계 내에서 의사소통 이루어짐’, ‘업무상 동기 저하’ 등과 같은 코드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 분류하기 이다. 다양한 코드에서 잠정적으로 유사한 주제를 하나의 구조로 묶는 단계이다. 잠정적인 주제와 대조를 하고, 잠정적인 주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제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코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서로 합칠 수 있는 코드가 있는지, 특정 코드가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원자료와 코드, 잠정적인 주제를 오고가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31) Crabtree & Miller, 1999; Priest, Roberts, & Woods, 2002

연구참여자별로 파일명을 부여한 원자료에서 주제별로 해당되는 자료의 내용을 오리고 붙여서 별도로 저장하였다. 즉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번호와 필사본의 페이지 번호를 기록해 두어, 인터뷰의 전체 자료를 다 열어보지 않고도 어떤 자료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개인적 진술은 연구결과를 기술할 때 좋은 자료를 놓치지 않고 인용할만한 인용문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전반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2) 패턴에서 관련성 이해하기

패턴에서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질적 분석 작업은 각각의 자료들을 다양한 그룹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각의 그룹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추론 과정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일관성 있는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³²⁾ 자료 안에서 그룹으로 묶은 것과 주제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개별 사례에서 전체적인 자료로 시각을 전환하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즉 어떤 사례에서 유사성으로 묶은 것이 다른 사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음에는 관련성 없이 이질적으로 보였던 자료들이 맥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처음에 분류했던 것을 다시 재분류하고 다른 주제로 옮겨진 경우도 있었다.

다음 단계는 분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료 세트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과 더욱 친숙해지기 위해 시각적이고 구문론적인 양식을 사용하여 일련의 분석 기록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 연구자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

32) Miles, W. L.,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여 참여자별로 앞서 분류해 두었던 잠정적인 주제와 패턴에 따라 관련된 코드와 하위주제를 각 셀에 작성해 두었다. 이때 코드마다 참여자의 인터뷰 필사본에서 해당되는 페이지 번호를 함께 기록해 두었다. 연구자는 분석표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메모를 첨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분석표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생각이 모아지고 연결되면서 초기의 분석표가 점차 명확해졌고, 점차 질서와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분석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최종적인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를 조직하고 개념화하고 자세하게 작성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친 감사가능성³³⁾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3) Thorne, S., Kirkham, S. R., & O'Flynn-Magee, K. (2004). The analytic challenge in interpretive descri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1), Article 1.



제4장 조사대상별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제1절 일반국민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제2절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제3절 비영리법인 직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

조사대상별 책무성인식 << 차이분석

제1절 일반국민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606명이었다.¹⁾ 응답자는 여성이 63.0%이고, 남성이 37.0%였으며, 연령 분포는 39세 이하가 15.2%, 40대와 50대가 40.9% 그리고 60세 이상이 43.9%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인 분포는 서울이 14.7%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대구와 부산 순으로 각각 11.1%와 10.6%로 조사되었다.

〈표 4-1〉 조사대상 국민의 일반적 특성

일반특성	세부내용	빈도	백분율(%)
성	남자	224	37.0
	여자	382	63.0
	합계	606	100.0
연령	39세 이하	92	15.2
	40~59세	248	40.9
	60세 이상	266	43.9
	합계	606	100.0

1)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화번호 명부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총 2,000명을 추출하였으며, 전화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여,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606명이었다.

14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일반특성	세부내용	빈도	백분율(%)
지역	서울	89	14.7
	부산	64	10.6
	대구	67	11.1
	인천	40	6.6
	대전	14	2.3
	울산	22	3.6
	경기	57	9.4
	강원	35	5.8
	충북	29	4.8
	충남	22	3.6
	전북	30	5.0
	전남	49	8.1
	경북	20	3.3
	경남	38	6.3
	제주	30	5.0
	합계	606	100.0

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가. 신뢰성 분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내용은 크게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화조사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직원이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책무성에 대한 항목별 전체질문을 사용하는 대신에, 각 책무성 항목별로 대표적인 한 개씩의 질문만을 선정하여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책무성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책무성 척도에 대한 신뢰성을 검정 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Cronbach- α 를 이용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책무성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책무성의 요인별로 설문항목 수와 Cronbach- α 를 제시하였다. 요인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구성된 내부 책무성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성된 외부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내부적 책무성의 신뢰도는 0.817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적 책무성의 신뢰도는 0.837로 내부적 책무성의 신뢰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내부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을 합한 전체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는 0.8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요인명	설문항목 수	Cronbach- α
내부적 책무성	4	0.817
외부적 책무성	4	0.837
전체 책무성	8	0.852

나.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일반국민의 성별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3.33로 조사되

었다. 이는 일반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잘하지도 않고 그리고 크게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비교하여보면, 남자가 3.37, 여자가 3.31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책무성을 포함한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 그리고 세부 항목별 책무성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영리법인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이 전반적인 책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책무성의 각 요인별 차이는 효율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남자	224	3.21	.950	.063	3.08	3.33	1	5
	여자	382	3.17	.873	.045	3.08	3.26	1	5
	합계	606	3.19	.902	.037	3.11	3.26	1	5
투명성	남자	224	3.41	.842	.056	3.30	3.52	1	5
	여자	382	3.38	.823	.042	3.30	3.46	1	5
	합계	606	3.39	.830	.034	3.32	3.46	1	5
효율성	남자	224	3.50	.787	.053	3.39	3.60	1	5
	여자	382	3.35	.827	.042	3.26	3.43	1	5
	합계	606	3.40	.815	.033	3.34	3.47	1	5
형평성	남자	224	3.47	.814	.054	3.36	3.58	2	5
	여자	382	3.43	.793	.041	3.35	3.51	1	5
	합계	606	3.45	.801	.033	3.38	3.51	1	5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내부적 책무성	남자		
	여자	382	3.33	.619	.032	3.27	3.40	1	5
	합계	606	3.36	.613	.025	3.31	3.41	1	5
합법성	남자	224	3.32	.896	.060	3.20	3.44	2	5
	여자	382	3.19	.846	.043	3.10	3.27	1	5
	합계	606	3.24	.866	.035	3.17	3.31	1	5
대표성	남자	224	3.47	.883	.059	3.35	3.58	2	5
	여자	382	3.43	.838	.043	3.34	3.51	1	5
	합계	606	3.44	.854	.035	3.37	3.51	1	5
전문성	남자	224	3.22	.933	.062	3.10	3.34	1	5
	여자	382	3.22	.899	.046	3.13	3.31	1	5
	합계	606	3.22	.911	.037	3.15	3.29	1	5
반응성	남자	224	3.35	.886	.059	3.24	3.47	1	5
	여자	382	3.29	.817	.042	3.21	3.37	1	5
	합계	606	3.31	.843	.034	3.24	3.38	1	5
외부적 책무성	남자	224	3.34	.691	.046	3.25	3.43	2	5
	여자	382	3.28	.661	.034	3.21	3.35	1	5
	합계	606	3.30	.672	.027	3.25	3.36	1	5
책무성	남자	224	3.37	.587	.039	3.29	3.45	2	5
	여자	382	3.31	.572	.029	3.25	3.36	2	5
	합계	606	3.33	.578	.023	3.28	3.38	2	5

〈표 4-4〉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94	1	.194	.238	.626
	집단-내	491.735	604	.814		
	합계	491.929	605			
투명성	집단-간	.137	1	.137	.199	.656
	집단-내	416.175	604	.689		
	합계	416.312	605			

14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효율성	집단-간	3.176	1	3.176	4.816	.029
	집단-내	398.383	604	.660		
	합계	401.559	605			
형평성	집단-간	.165	1	.165	.257	.612
	집단-내	387.645	604	.642		
	합계	387.810	605			
내부적 책임성	집단-간	.562	1	.562	1.498	.221
	집단-내	226.573	604	.375		
	합계	227.135	605			
합법성	집단-간	2.496	1	2.496	3.340	.068
	집단-내	451.286	604	.747		
	합계	453.782	605			
대표성	집단-간	.250	1	.250	.342	.559
	집단-내	441.229	604	.731		
	합계	441.479	605			
전문성	집단-간	.002	1	.002	.002	.961
	집단-내	502.368	604	.832		
	합계	502.370	605			
반응성	집단-간	.591	1	.591	.832	.362
	집단-내	429.463	604	.711		
	합계	430.054	605			
외부적 책임성	집단-간	.491	1	.491	1.087	.298
	집단-내	273.105	604	.452		
	합계	273.596	605			
책임성	집단-간	.526	1	.526	1.577	.210
	집단-내	201.440	604	.334		
	합계	201.967	605			

다.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임성 인식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

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국민의 연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여 보면, 40대와 50대의 연령층이 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39세 이하가 3.26 이었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3.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보면 내부적 책무성보다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이 내부적인 책무성과 외부적인 책무성 모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책무성보다는 외부적인 책무성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내부적인 책무성과 함께 비영리법인들이 외부적인 책무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책무성의 각 요인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39세 이하	92	3.04	.824	.086	2.87	3.21	1	4
	40~59세	248	3.36	.880	.056	3.25	3.47	1	5
	60세 이상	266	3.07	.923	.057	2.96	3.18	1	5
	합계	606	3.19	.902	.037	3.11	3.26	1	5
투명성	39세 이하	92	3.37	.737	.077	3.22	3.52	1	4
	40~59세	248	3.52	.789	.050	3.43	3.62	1	5
	60세 이상	266	3.27	.879	.054	3.17	3.38	1	5
	합계	606	3.39	.830	.034	3.32	3.46	1	5
효율성	39세 이하	92	3.55	.618	.064	3.43	3.68	2	4
	40~59세	248	3.49	.784	.050	3.39	3.59	1	5
	60세 이상	266	3.27	.882	.054	3.16	3.37	1	5
	합계	606	3.40	.815	.033	3.34	3.47	1	5

14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형평성	39세 이하	92	3.37	.737	.077	3.22	3.52	2	5
	40~59세	248	3.65	.739	.047	3.55	3.74	2	5
	60세 이상	266	3.29	.839	.051	3.19	3.39	1	5
	합계	606	3.45	.801	.033	3.38	3.51	1	5
내부적 책무성	39세 이하	92	3.33	.517	.054	3.23	3.44	2	4
	40~59세	248	3.51	.549	.035	3.44	3.57	2	5
	60세 이상	266	3.23	.668	.041	3.14	3.31	1	5
	합계	606	3.36	.613	.025	3.31	3.41	1	5
합법성	39세 이하	92	3.04	.863	.090	2.86	3.22	2	5
	40~59세	248	3.39	.832	.053	3.28	3.49	2	5
	60세 이상	266	3.17	.879	.054	3.06	3.27	1	5
	합계	606	3.24	.866	.035	3.17	3.31	1	5
대표성	39세 이하	92	3.46	.732	.076	3.30	3.61	2	5
	40~59세	248	3.63	.757	.048	3.54	3.73	2	5
	60세 이상	266	3.26	.938	.058	3.15	3.37	1	5
	합계	606	3.44	.854	.035	3.37	3.51	1	5
전문성	39세 이하	92	3.11	.895	.093	2.92	3.29	2	5
	40~59세	248	3.38	.854	.054	3.27	3.48	1	5
	60세 이상	266	3.12	.950	.058	3.00	3.23	1	5
	합계	606	3.22	.911	.037	3.15	3.29	1	5
반응성	39세 이하	92	3.17	.779	.081	3.01	3.34	2	4
	40~59세	248	3.42	.820	.052	3.31	3.52	1	5
	60세 이상	266	3.26	.876	.054	3.16	3.37	1	5
	합계	606	3.31	.843	.034	3.24	3.38	1	5
외부적 책무성	39세 이하	92	3.20	.586	.061	3.07	3.32	2	5
	40~59세	248	3.45	.606	.038	3.38	3.53	2	5
	60세 이상	266	3.20	.733	.045	3.11	3.29	1	5
	합계	606	3.30	.672	.027	3.25	3.36	1	5
책무성	39세 이하	92	3.26	.461	.048	3.17	3.36	2	4
	40~59세	248	3.48	.512	.032	3.41	3.54	2	5
	60세 이상	266	3.21	.640	.039	3.14	3.29	2	5
	합계	606	3.33	.578	.023	3.28	3.38	2	5

〈표 4-6〉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3.121	2	6.561	8.262	.000
	집단-내	478.808	603	.794		
	합계	491.929	605			
투명성	집단-간	8.056	2	4.028	5.949	.003
	집단-내	408.256	603	.677		
	합계	416.312	605			
효율성	집단-간	8.819	2	4.409	6.770	.001
	집단-내	392.741	603	.651		
	합계	401.559	605			
형평성	집단-간	16.891	2	8.445	13.730	.000
	집단-내	370.920	603	.615		
	합계	387.810	605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0.078	2	5.039	13.999	.000
	집단-내	217.057	603	.360		
	합계	227.135	605			
합법성	집단-간	10.396	2	5.198	7.069	.001
	집단-내	443.387	603	.735		
	합계	453.782	605			
대표성	집단-간	17.942	2	8.971	12.772	.000
	집단-내	423.536	603	.702		
	합계	441.479	605			
전문성	집단-간	9.944	2	4.972	6.089	.002
	집단-내	492.425	603	.817		
	합계	502.370	605			
반응성	집단-간	5.036	2	2.518	3.573	.029
	집단-내	425.018	603	.705		
	합계	430.054	6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9.373	2	4.686	10.695	.000
	집단-내	264.224	603	.438		
	합계	273.596	605			
책무성	집단-간	9.502	2	4.751	14.886	.000
	집단-내	192.464	603	.319		
	합계	201.967	605			

라.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일반국민의 지역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국민의 지역별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여 보면, 충남지역 국민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가 3.66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부산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평가 점수는 3.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지역별 책무성의 각 요인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내부적 책무성에서는 형평성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외부적 책무성에서는 합법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서울	89	3.21	1.017	.108	3.00	3.43	1	5
	부산	64	3.00	.873	.109	2.78	3.22	2	5
	대구	67	3.28	.934	.114	3.06	3.51	1	5
	인천	40	3.03	.920	.145	2.73	3.32	1	4
	대전	14	3.36	1.008	.269	2.78	3.94	2	5
	울산	22	3.14	.990	.211	2.70	3.58	2	4
	경기	57	3.18	.869	.115	2.94	3.41	2	5
	강원	35	3.06	.938	.158	2.74	3.38	1	5
	충북	29	3.24	.636	.118	3.00	3.48	2	4
	충남	22	3.64	.790	.168	3.29	3.99	2	5
	전북	30	3.03	.850	.155	2.72	3.35	1	4
	전남	49	3.43	.791	.113	3.20	3.66	1	5
	경북	20	3.20	.951	.213	2.75	3.65	2	5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경남	38	3.18	.926	.150	2.88	3.49	1	5
	제주	30	3.00	.788	.144	2.71	3.29	2	5
	합계	606	3.19	.902	.037	3.11	3.26	1	5
투명성	서울	89	3.48	.854	.091	3.30	3.66	1	5
	부산	64	3.30	.706	.088	3.12	3.47	2	5
	대구	67	3.55	.840	.103	3.35	3.76	2	5
	인천	40	3.30	.823	.130	3.04	3.56	2	5
	대전	14	3.36	.929	.248	2.82	3.89	2	5
	울산	22	3.50	.802	.171	3.14	3.86	2	4
	경기	57	3.53	.782	.104	3.32	3.73	2	5
	강원	35	3.23	.877	.148	2.93	3.53	1	4
	충북	29	3.10	.900	.167	2.76	3.45	1	4
	충남	22	3.73	.550	.117	3.48	3.97	2	4
	전북	30	3.40	.855	.156	3.08	3.72	1	5
	전남	49	3.29	.842	.120	3.04	3.53	1	4
	경북	20	3.30	.979	.219	2.84	3.76	1	5
	경남	38	3.26	.828	.134	2.99	3.54	2	5
	제주	30	3.37	.890	.162	3.03	3.70	2	5
합계	606	3.39	.830	.034	3.32	3.46	1	5	
회계 투명성	서울	89	3.31	.861	.091	3.13	3.50	1	5
	부산	64	3.28	.863	.108	3.07	3.50	2	5
	대구	67	3.58	.781	.095	3.39	3.77	2	5
	인천	40	3.50	.751	.119	3.26	3.74	2	5
	대전	14	3.50	.855	.228	3.01	3.99	2	5
	울산	22	3.41	.796	.170	3.06	3.76	2	4
	경기	57	3.39	.921	.122	3.14	3.63	1	5
	강원	35	3.37	.808	.136	3.09	3.65	1	5
	충북	29	3.31	.761	.141	3.02	3.60	2	5
	충남	22	3.73	.550	.117	3.48	3.97	2	4
	전북	30	3.43	.728	.133	3.16	3.71	2	4
	전남	49	3.33	.774	.111	3.10	3.55	1	4
	경북	20	3.45	.945	.211	3.01	3.89	1	5
	경남	38	3.24	.820	.133	2.97	3.51	2	5
	제주	30	3.50	.777	.142	3.21	3.79	2	5
합계	606	3.40	.815	.033	3.34	3.47	1	5	

15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형평성	서울	89	3.55	.826	.088	3.38	3.72	1	5
	부산	64	3.31	.871	.109	3.10	3.53	2	5
	대구	67	3.67	.660	.081	3.51	3.83	2	5
	인천	40	3.33	.829	.131	3.06	3.59	2	5
	대전	14	3.43	.852	.228	2.94	3.92	2	5
	울산	22	3.32	.839	.179	2.95	3.69	2	4
	경기	57	3.56	.802	.106	3.35	3.77	2	5
	강원	35	3.17	.822	.139	2.89	3.45	1	4
	충북	29	3.21	.675	.125	2.95	3.46	2	4
	충남	22	3.82	.395	.084	3.64	3.99	3	4
	전북	30	3.50	.630	.115	3.26	3.74	2	4
	전남	49	3.43	.816	.117	3.19	3.66	1	5
	경북	20	3.40	1.046	.234	2.91	3.89	2	5
	경남	38	3.26	.828	.134	2.99	3.54	2	5
	제주	30	3.50	.820	.150	3.19	3.81	2	5
합계	606	3.45	.801	.033	3.38	3.51	1	5	
내부적 책무성	서울	89	3.39	.638	.068	3.26	3.52	2	5
	부산	64	3.22	.658	.082	3.06	3.39	2	5
	대구	67	3.52	.529	.065	3.39	3.65	3	5
	인천	40	3.29	.587	.093	3.10	3.48	2	4
	대전	14	3.41	.770	.206	2.97	3.86	2	5
	울산	22	3.34	.600	.128	3.07	3.61	2	4
	경기	57	3.41	.542	.072	3.27	3.56	2	5
	강원	35	3.21	.611	.103	3.00	3.42	1	4
	충북	29	3.22	.581	.108	2.99	3.44	2	4
	충남	22	3.73	.288	.061	3.60	3.85	3	4
	전북	30	3.34	.563	.103	3.13	3.55	2	4
	전남	49	3.37	.602	.086	3.19	3.54	2	4
	경북	20	3.34	.775	.173	2.97	3.70	2	4
	경남	38	3.24	.705	.114	3.01	3.47	2	4
	제주	30	3.34	.635	.116	3.10	3.58	2	5
합계	606	3.36	.613	.025	3.31	3.41	1	5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합법성	서울	89	3.28	.929	.098	3.09	3.48	1	5
	부산	64	3.14	.753	.094	2.95	3.33	2	4
	대구	67	3.30	.835	.102	3.09	3.50	2	5
	인천	40	3.20	.823	.130	2.94	3.46	2	5
	대전	14	3.14	1.027	.275	2.55	3.74	2	5
	울산	22	3.05	.950	.203	2.62	3.47	2	4
	경기	57	3.33	.852	.113	3.11	3.56	2	5
	강원	35	3.11	.932	.158	2.79	3.43	1	5
	충북	29	3.14	.693	.129	2.87	3.40	2	4
	충남	22	3.55	.858	.183	3.17	3.93	2	5
	전북	30	3.40	.770	.141	3.11	3.69	2	4
	전남	49	3.33	.944	.135	3.06	3.60	1	5
	경북	20	3.00	.973	.218	2.54	3.46	2	5
	경남	38	3.08	.941	.153	2.77	3.39	2	5
	제주	30	3.30	.794	.145	3.00	3.60	2	5
합계	606	3.24	.866	.035	3.17	3.31	1	5	
대표성	서울	89	3.73	.780	.083	3.57	3.89	2	5
	부산	64	3.20	.894	.112	2.98	3.43	2	5
	대구	67	3.54	.927	.113	3.31	3.76	2	5
	인천	40	3.38	.807	.128	3.12	3.63	2	5
	대전	14	3.64	.842	.225	3.16	4.13	2	5
	울산	22	3.45	.800	.171	3.10	3.81	2	4
	경기	57	3.42	.885	.117	3.19	3.66	2	5
	강원	35	3.23	.843	.143	2.94	3.52	1	4
	충북	29	3.31	.712	.132	3.04	3.58	2	4
	충남	22	3.68	.646	.138	3.40	3.97	2	5
	전북	30	3.33	.802	.146	3.03	3.63	2	4
	전남	49	3.51	.869	.124	3.26	3.76	1	5
	경북	20	3.25	1.118	.250	2.73	3.77	1	5
	경남	38	3.26	.860	.140	2.98	3.55	2	5
	제주	30	3.47	.776	.142	3.18	3.76	2	5
합계	606	3.44	.854	.035	3.37	3.51	1	5	

15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전문성	서울	89	3.28	.941	.100	3.08	3.48	1	5
	부산	64	3.03	.835	.104	2.82	3.24	2	4
	대구	67	3.51	.927	.113	3.28	3.73	2	5
	인천	40	3.30	.823	.130	3.04	3.56	2	5
	대전	14	3.57	.852	.228	3.08	4.06	2	5
	울산	22	3.09	.921	.196	2.68	3.50	2	4
	경기	57	3.05	1.025	.136	2.78	3.32	1	5
	강원	35	3.11	.832	.141	2.83	3.40	2	4
	충북	29	3.21	.861	.160	2.88	3.53	2	5
	충남	22	3.59	.666	.142	3.30	3.89	2	5
	전북	30	2.93	1.015	.185	2.55	3.31	1	4
	전남	49	3.08	.932	.133	2.81	3.35	1	4
	경북	20	3.10	1.119	.250	2.58	3.62	1	5
	경남	38	3.29	.802	.130	3.03	3.55	2	5
제주	30	3.33	.802	.146	3.03	3.63	2	5	
	합계	606	3.22	.911	.037	3.15	3.29	1	5
반응성	서울	89	3.48	.799	.085	3.31	3.65	1	5
	부산	64	3.14	.814	.102	2.94	3.34	2	5
	대구	67	3.57	.802	.098	3.37	3.76	2	5
	인천	40	3.43	.813	.129	3.17	3.68	2	5
	대전	14	3.64	.842	.225	3.16	4.13	2	5
	울산	22	3.14	.941	.201	2.72	3.55	2	4
	경기	57	3.33	.873	.116	3.10	3.56	2	5
	강원	35	3.11	.867	.147	2.82	3.41	1	4
	충북	29	3.24	.786	.146	2.94	3.54	2	5
	충남	22	3.55	.739	.157	3.22	3.87	2	5
	전북	30	3.17	.834	.152	2.86	3.48	2	4
	전남	49	3.12	.927	.132	2.86	3.39	1	4
	경북	20	3.35	.875	.196	2.94	3.76	2	5
	경남	38	3.11	.727	.118	2.87	3.34	2	4
제주	30	3.20	.925	.169	2.85	3.55	2	5	
	합계	606	3.31	.843	.034	3.24	3.38	1	5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외부적 책무성	서울	89	3.44	.643	.068	3.31	3.58	2	5
	부산	64	3.13	.691	.086	2.96	3.30	2	4
	대구	67	3.48	.638	.078	3.32	3.63	2	5
	인천	40	3.33	.628	.099	3.12	3.53	2	5
	대전	14	3.50	.740	.198	3.07	3.93	2	5
	울산	22	3.18	.724	.154	2.86	3.50	2	4
	경기	57	3.29	.674	.089	3.11	3.46	2	5
	강원	35	3.14	.671	.113	2.91	3.37	2	4
	충북	29	3.22	.584	.108	3.00	3.45	2	4
	충남	22	3.59	.497	.106	3.37	3.81	3	5
	전북	30	3.21	.695	.127	2.95	3.47	2	4
	전남	49	3.26	.722	.103	3.05	3.47	1	5
	경북	20	3.18	.870	.195	2.77	3.58	2	5
	경남	38	3.18	.622	.101	2.98	3.39	2	4
	제주	30	3.33	.664	.121	3.08	3.57	2	5
합계	606	3.30	.672	.027	3.25	3.36	1	5	
책무성	서울	89	3.42	.568	.060	3.30	3.54	2	5
	부산	64	3.18	.609	.076	3.02	3.33	2	5
	대구	67	3.50	.512	.063	3.38	3.62	2	5
	인천	40	3.31	.537	.085	3.13	3.48	2	5
	대전	14	3.46	.725	.194	3.04	3.87	2	5
	울산	22	3.26	.606	.129	2.99	3.53	2	4
	경기	57	3.35	.528	.070	3.21	3.49	2	4
	강원	35	3.18	.579	.098	2.98	3.37	2	4
	충북	29	3.22	.528	.098	3.02	3.42	2	4
	충남	22	3.66	.360	.077	3.50	3.82	3	4
	전북	30	3.28	.569	.104	3.06	3.49	2	4
	전남	49	3.31	.585	.084	3.15	3.48	2	4
	경북	20	3.26	.784	.175	2.89	3.62	2	5
	경남	38	3.21	.586	.095	3.02	3.40	2	4
	제주	30	3.33	.605	.110	3.11	3.56	2	5
합계	606	3.33	.578	.023	3.28	3.38	2	5	

15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8〉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4.183	14	1.013	1.253	.232
	집단-내	477.746	591	.808		
	합계	491.929	605			
투명성	집단-간	11.876	14	.848	1.240	.242
	집단-내	404.436	591	.684		
	합계	416.312	605			
효율성	집단-간	8.603	14	.614	.924	.532
	집단-내	392.957	591	.665		
	합계	401.559	605			
형평성	집단-간	16.079	14	1.149	1.826	.032
	집단-내	371.731	591	.629		
	합계	387.810	605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8.459	14	.604	1.633	.066
	집단-내	218.676	591	.370		
	합계	227.135	605			
합법성	집단-간	8.821	14	.630	.837	.629
	집단-내	444.962	591	.753		
	합계	453.782	605			
대표성	집단-간	18.348	14	1.311	1.831	.031
	집단-내	423.130	591	.716		
	합계	441.479	605			
전문성	집단-간	19.777	14	1.413	1.730	.046
	집단-내	482.592	591	.817		
	합계	502.370	605			
반응성	집단-간	18.732	14	1.338	1.922	.022
	집단-내	411.322	591	.696		
	합계	430.054	6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10.790	14	.771	1.733	.046
	집단-내	262.806	591	.445		
	합계	273.596	605			
책무성	집단-간	8.831	14	.631	1.930	.021
	집단-내	193.136	591	.327		
	합계	201.967	605			

3.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가.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일반국민의 책무성 인식 차이분석

다음 표에서는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 유형에 따른 책무성 인식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3.33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점수보다 다소 높은 비영리법인 유형은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이었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비영리법인은 문화예술분야와 종교법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은 전반적인 책무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비영리법인 유형에 따른 책무성의 각 요인별 차이는 외부적 책무성과 특히 외부적인 책무성에서 전문성과 반응성의 항목에서 비영리법인 유형 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의료	143	3.14	1.011	.085	2.97	3.31	1	5
	사회복지	143	3.16	.793	.066	3.03	3.29	2	5
	교육	85	3.42	.807	.088	3.25	3.60	2	5
	문화예술	90	3.07	.922	.097	2.87	3.26	1	5
	종교	145	3.19	.915	.076	3.04	3.34	2	5
	합계	606	3.19	.902	.037	3.11	3.26	1	5

15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투명성	의료	143	3.31	.945	.079	3.16	3.47	1	5
	사회복지	143	3.41	.715	.060	3.29	3.53	1	5
	교육	85	3.34	.825	.089	3.16	3.52	2	5
	문화예술	90	3.38	.758	.080	3.22	3.54	2	5
	종교	145	3.48	.859	.071	3.34	3.62	1	5
	합계	606	3.39	.830	.034	3.32	3.46	1	5
효율성	의료	143	3.43	.916	.077	3.28	3.58	1	5
	사회복지	143	3.40	.723	.060	3.28	3.52	2	5
	교육	85	3.48	.666	.072	3.34	3.63	2	5
	문화예술	90	3.44	.809	.085	3.28	3.61	2	5
	종교	145	3.30	.875	.073	3.15	3.44	1	5
	합계	606	3.40	.815	.033	3.34	3.47	1	5
형평성	의료	143	3.41	.899	.075	3.26	3.56	1	5
	사회복지	143	3.46	.729	.061	3.34	3.58	2	5
	교육	85	3.34	.765	.083	3.18	3.51	2	5
	문화예술	90	3.62	.787	.083	3.46	3.79	2	5
	종교	145	3.42	.788	.065	3.29	3.55	2	5
	합계	606	3.45	.801	.033	3.38	3.51	1	5
내부적 책임성	의료	143	3.33	.706	.059	3.21	3.44	1	5
	사회복지	143	3.36	.589	.049	3.26	3.46	2	5
	교육	85	3.40	.536	.058	3.28	3.51	2	5
	문화예술	90	3.38	.581	.061	3.26	3.50	2	5
	종교	145	3.35	.605	.050	3.25	3.45	2	5
	합계	606	3.36	.613	.025	3.31	3.41	1	5
합법성	의료	143	3.37	.940	.079	3.22	3.53	1	5
	사회복지	143	3.22	.742	.062	3.09	3.34	2	5
	교육	85	3.16	.843	.091	2.98	3.35	2	5
	문화예술	90	3.17	.890	.094	2.98	3.35	2	5
	종교	145	3.21	.899	.075	3.07	3.36	2	5
	합계	606	3.24	.866	.035	3.17	3.31	1	5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대표성	의료		
	사회복지	143	3.34	.796	.067	3.20	3.47	2	5
	교육	85	3.48	.734	.080	3.32	3.64	2	5
	문화예술	90	3.37	.917	.097	3.17	3.56	2	5
	종교	145	3.44	.807	.067	3.31	3.57	2	5
	합계	606	3.44	.854	.035	3.37	3.51	1	5
전문성	의료	143	3.37	1.073	.090	3.19	3.55	1	5
	사회복지	143	3.32	.775	.065	3.19	3.45	2	5
	교육	85	3.18	.833	.090	3.00	3.36	2	5
	문화예술	90	2.98	.960	.101	2.78	3.18	1	5
	종교	145	3.15	.844	.070	3.01	3.29	2	5
	합계	606	3.22	.911	.037	3.15	3.29	1	5
반응성	의료	143	3.45	.902	.075	3.31	3.60	1	5
	사회복지	143	3.37	.766	.064	3.24	3.50	2	5
	교육	85	3.31	.787	.085	3.14	3.48	2	5
	문화예술	90	3.12	.859	.091	2.94	3.30	2	5
	종교	145	3.23	.858	.071	3.09	3.38	2	5
	합계	606	3.31	.843	.034	3.24	3.38	1	5
외부적 책무성	의료법인	143	3.44	.764	.064	3.32	3.57	1	5
	사회복지	143	3.31	.626	.052	3.21	3.41	2	4
	학교법인	85	3.28	.577	.063	3.16	3.41	2	5
	문화예술	90	3.16	.665	.070	3.02	3.30	2	5
	종교법인	145	3.26	.660	.055	3.15	3.37	2	5
	합계	606	3.30	.672	.027	3.25	3.36	1	5
책무성	의료법인	143	3.38	.677	.057	3.27	3.50	2	5
	사회복지	143	3.33	.559	.047	3.24	3.43	2	5
	학교법인	85	3.34	.495	.054	3.23	3.45	2	5
	문화예술	90	3.27	.537	.057	3.16	3.38	2	5
	종교법인	145	3.30	.561	.047	3.21	3.40	2	5
	합계	606	3.33	.578	.023	3.28	3.38	2	5

15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10〉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 분석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6.480	4	1.620	2.005	.092
	집단-내	485.450	601	.808		
	합계	491.929	605			
투명성	집단-간	2.347	4	.587	.852	.493
	집단-내	413.965	601	.689		
	합계	416.312	605			
효율성	집단-간	2.467	4	.617	.929	.447
	집단-내	399.093	601	.664		
	합계	401.559	605			
형평성	집단-간	4.015	4	1.004	1.572	.180
	집단-내	383.795	601	.639		
	합계	387.810	605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331	4	.083	.219	.928
	집단-내	226.804	601	.377		
	합계	227.135	605			
합법성	집단-간	3.579	4	.895	1.195	.312
	집단-내	450.203	601	.749		
	합계	453.782	605			
대표성	집단-간	4.736	4	1.184	1.629	.165
	집단-내	436.742	601	.727		
	합계	441.479	605			
전문성	집단-간	10.840	4	2.710	3.313	.011
	집단-내	491.530	601	.818		
	합계	502.370	605			
반응성	집단-간	7.513	4	1.878	2.672	.031
	집단-내	422.541	601	.703		
	합계	430.054	6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4.968	4	1.242	2.779	.026
	집단-내	268.628	601	.447		
	합계	273.596	605			
책무성	집단-간	.865	4	.216	.647	.630
	집단-내	201.101	601	.335		
	합계	201.967	605			

나.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한 일반국민의 책무성 인식 차이분석

앞서 일반국민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인식도에 대한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산분석을 통해서 성별, 연령 그리고 지역변수 등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연령에 따라 책무성의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순수한 책무성의 인식도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책무성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인 연령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고자 한다.

1) 내부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내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분야가 포함된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델의 적합도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내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비영리법인 유형별에 따른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다중비교를 통해서도 일반국민들의 비영리유형별 책무성의 인식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6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11〉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수정 모형	3.876 ^a	5	.775	2.084	.066	.017
절편	624.984	1	624.984	1679.625	.000	.737
연령	3.545	1	3.545	9.528	.002	.016
분야	.270	4	.067	.181	.948	.001
오차	223.258	600	.372			
합계	7054.125	606				
수정 합계	227.135	605				

a. R 제공 = .017 (수정된 R 제공 = .009)

〈표 4-1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공
					하한값	상한값	
절편	3.602	.096	37.344	.000	3.412	3.791	.699
연령	-.005	.002	-3.087	.002	-.009	-.002	.016
[분야=1]	-.005	.072	-.074	.941	-.147	.136	.000
[분야=2]	.046	.073	.627	.531	-.097	.189	.001
[분야=3]	.030	.084	.358	.721	-.134	.194	.000
[분야=4]	.035	.082	.422	.673	-.126	.195	.000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13〉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3.332	상한값
의료	3.33	3.332	.051	3.232	3.433
사회복지	3.36	3.383	.052	3.282	3.485
교육	3.40	3.367	.067	3.236	3.499
문화예술	3.38	3.372	.064	3.246	3.499
종교	3.35	3.338	.051	3.238	3.437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연령=50.74.

〈표 4-14〉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051	.072	1.000	-.255	.153
	학교법인	-.035	.084	1.000	-.273	.202
	문화예술	-.040	.082	1.000	-.271	.192
	종교법인	-.005	.072	1.000	-.209	.198
사회복지	의료법인	.051	.072	1.000	-.153	.255
	학교법인	.016	.085	1.000	-.225	.256
	문화예술	.011	.083	1.000	-.222	.244
	종교법인	.046	.073	1.000	-.159	.251
학교법인	의료법인	.035	.084	1.000	-.202	.273
	사회복지	-.016	.085	1.000	-.256	.225
	문화예술	-.005	.093	1.000	-.266	.256
	종교법인	.030	.084	1.000	-.206	.265
문화예술	의료법인	.040	.082	1.000	-.192	.271
	사회복지	-.011	.083	1.000	-.244	.222
	학교법인	.005	.093	1.000	-.256	.266
	종교법인	.035	.082	1.000	-.196	.265
종교법인	의료법인	.005	.072	1.000	-.198	.209
	사회복지	-.046	.073	1.000	-.251	.159
	학교법인	-.030	.084	1.000	-.265	.206
	문화예술	-.035	.082	1.000	-.265	.196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 Bonferroni

2) 외부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외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과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 분석 모델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혼란변수인 연령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반국민의 외부적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중비교를 통한 일반국민들의 비영리유형별 책무성의 인식도 차이는 의료법인과 문화예술법인간의 차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5〉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6.642 ^a	5	1.328	2.986	.011	.024
절편	573.586	1	573.586	1289.179	.000	.682
연령	1.674	1	1.674	3.762	.053	.006
분야	5.489	4	1.372	3.084	.016	.020
오차	266.954	600	.445			
합계	6885.813	606				
수정 합계	273.596	605				

a. R 제곱 = .024 (수정된 R 제곱 = .016)

〈표 4-16〉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곱
					하한값	상한값	
절편	3.434	.105	32.566	.000	3.227	3.642	.639
연령	-.004	.002	-1.940	.053	-.007	.000	.006
[분야=1]	.194	.079	2.462	.014	.039	.349	.010
[분야=2]	.075	.080	.946	.345	-.081	.232	.001
[분야=3]	.009	.091	.099	.921	-.170	.188	.000
[분야=4]	-.099	.090	-1.100	.272	-.274	.077	.002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17〉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44	3.447	.056	3.337	3.557
사회복지	3.31	3.328	.056	3.217	3.439
교육	3.28	3.262	.073	3.118	3.406
문화예술	3.16	3.154	.070	3.016	3.293
종교	3.26	3.253	.056	3.144	3.362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연령=50.74.

〈표 4-18〉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119	.079	1.000	-.104	.342
	학교법인	.185	.092	.453	-.075	.445
	문화예술	.293*	.090	.012	.039	.546
	종교법인	.194	.079	.141	-.028	.416
사회복지	의료법인	-.119	.079	1.000	-.342	.104
	학교법인	.066	.093	1.000	-.197	.329
	문화예술	.174	.090	.550	-.081	.428
	종교법인	.075	.080	1.000	-.149	.300
학교법인	의료법인	-.185	.092	.453	-.445	.075
	사회복지	-.066	.093	1.000	-.329	.197
	문화예술	.108	.101	1.000	-.178	.393
	종교법인	.009	.091	1.000	-.248	.266
문화예술	의료법인	-.293*	.090	.012	-.546	-.039
	사회복지	-.174	.090	.550	-.428	.081
	학교법인	-.108	.101	1.000	-.393	.178
	종교법인	-.099	.090	1.000	-.351	.154
종교법인	의료법인	-.194	.079	.141	-.416	.028
	사회복지	-.075	.080	1.000	-.300	.149
	학교법인	-.009	.091	1.000	-.266	.248
	문화예술	.099	.090	1.000	-.154	.351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 Bonferroni

3) 전체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내부책무성과 외부책무성을 모두 합한 전체 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과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는 모델에서 연령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반국민의 책무성 평가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비영리법인 유형에 따른 전체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중비교를 통한 일반국민들의 비영리유형별 책무성의 인식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9〉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3.388 ^a	5	.678	2.047	.050	.014
절편	599.009	1	599.009	1809.893	.000	.751
연령	2.523	1	2.523	7.623	.006	.013
분야	1.178	4	.295	.890	.470	.006
오차	198.578	600	.331			
합계	6921.141	606				
수정 합계	201.967	605				

a. R 제곱 = .017 (수정된 R 제곱 = .009)

〈표 4-20〉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곱
					하한값	상한값	
절편	3.518	.091	38.678	.000	3.339	3.697	.714
연령	-.004	.002	-2.761	.006	-.008	-.001	.013
[분야=1]	.094	.068	1.388	.166	-.039	.228	.003
[분야=2]	.060	.069	.881	.379	-.074	.195	.001
[분야=3]	.019	.079	.247	.805	-.135	.174	.000
[분야=4]	-.032	.077	-.414	.679	-.184	.120	.000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21〉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38	3.390	.048	3.295	3.484
사회복지	3.33	3.356	.049	3.260	3.451
교육	3.34	3.315	.063	3.191	3.439
문화예술	3.27	3.263	.061	3.144	3.382
종교	3.30	3.295	.048	3.201	3.389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연령=50.74.

〈표 4-2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034	.068	1.000	-.158	.226
	학교법인	.075	.080	1.000	-.149	.299
	문화예술	.126	.078	1.000	-.092	.345
	종교법인	.094	.068	1.000	-.097	.286
사회복지	의료법인	-.034	.068	1.000	-.226	.158
	학교법인	.041	.081	1.000	-.186	.268
	문화예술	.092	.078	1.000	-.127	.312
	종교법인	.060	.069	1.000	-.133	.254
학교법인	의료법인	-.075	.080	1.000	-.299	.149
	사회복지	-.041	.081	1.000	-.268	.186
	문화예술	.051	.087	1.000	-.195	.297
	종교법인	.019	.079	1.000	-.203	.241
문화예술	의료법인	-.126	.078	1.000	-.345	.092
	사회복지	-.092	.078	1.000	-.312	.127
	학교법인	-.051	.087	1.000	-.297	.195
	종교법인	-.032	.077	1.000	-.250	.186
종교법인	의료법인	-.094	.068	1.000	-.286	.097
	사회복지	-.060	.069	1.000	-.254	.133
	학교법인	-.019	.079	1.000	-.241	.203
	문화예술	.032	.077	1.000	-.186	.250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Bonferroni

제2절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두 번째 조사대상인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은 총 674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49.9%인 336명이고, 여성이 50.1%인 338명이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 41세~50세가 50.0%로 가장 많고, 31~40세가 29.2%, 51세 이상이 14.8%이었으며, 30세 이하의 가장 적은 5.9%를 차지했다. 근무연수로 보면, 21~30년 근무한 공무원이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하가 33.7%, 11~20년이 26.3%, 31년 이상이 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15.0%의 분포를 보였고, 이어서 경북이 11.4%, 서울이 9.1%, 경남이 8.8%를 보였으며, 제주가 가장 낮은 1.3%였고, 이어서 대구와 울산이 각각 2.4% 정도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3〉 조사 대상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의 일반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남자	336	49.9
	여자	338	50.1
	합계	674	100.0
연령	30세 이하	40	5.9
	31~40세	197	29.2
	41~50세	337	50.0
	51세 이상	100	14.8
	합계	674	100.0
근무연수	10년 이하	227	33.7
	11~20년	177	26.3
	21~30년	246	36.5
	31년 이상	24	3.6
	합계	674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지역	서울	61	9.1
	부산	38	5.6
	대구	16	2.4
	인천	27	4.0
	광주	21	3.1
	대전	18	2.7
	울산	16	2.4
	경기	101	15.0
	강원	55	8.2
	충북	35	5.2
	충남	46	6.8
	전북	41	6.1
	전남	54	8.0
	경북	77	11.4
	경남	59	8.8
	제주	9	1.3
	합계	674	100.0

2.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크게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 담당 공무원의 성별, 연령별, 근무연수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전에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검정 한 후, 책무성의 요인별로 설문항목 수와 Cronbach- α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가.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Cronbach- α 를 이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구성된 내부적 책무성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성된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내부적 책무성의 신뢰도는 0.955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적 책무성의 각 요인들도 최소 0.814(민주성)에서부터 최대 0.916(투명성)까지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외부적 책무성의 신뢰도 역시 0.9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외부적 책무성의 각 요인들 역시 최소 0.864(반응성)에서 최대 0.910(대표성)까지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역시 0.977로 신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24〉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요인명	설문항목 수	Cronbach- α
민주성	6	0.814
투명성	6	0.916
효율성	6	0.910
형평성	6	0.898
내부적 책무성	24	0.955
합법성	6	0.867
대표성	6	0.910
전문성	6	0.904
반응성	6	0.864
외부적 책무성	24	0.958
전체 책무성	48	0.977

나.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평가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전체 책무성 평가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남자가 3.61, 여자가 3.59으로 남자들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는 남자가 3.62, 여자가 3.61이었고, 외부 책무성은 남자가 3.64, 여자가 3.60으로 남자의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평가가 다소 더 높았으며, 각 책무성 요인별로 보면, 내부 책무성의 민주성과 형평성은 남자가, 투명성과 효율성은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외부 책무성의 경우는 대표성만 남녀가 동일하고,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은 남자의 책무성 평가점수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책무성의 각 요인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남자	336	3.67	0.57	0.03	3.60	3.73	1.50	5.00
	여자	338	3.63	0.61	0.03	3.57	3.70	1.00	5.00
	합계	674	3.65	0.59	0.02	3.60	3.69	1.00	5.00
투명성	남자	336	3.56	0.69	0.04	3.49	3.64	1.17	5.00
	여자	338	3.58	0.74	0.04	3.50	3.66	1.00	5.00
	합계	674	3.57	0.72	0.03	3.52	3.63	1.00	5.00

17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효율성	남자		
	여자	338	3.61	0.66	0.04	3.54	3.68	1.00	5.00
	합계	674	3.59	0.64	0.02	3.54	3.64	1.00	5.00
형평성	남자	335	3.68	0.57	0.03	3.62	3.74	2.00	5.00
	여자	337	3.63	0.63	0.03	3.57	3.70	1.00	5.00
	합계	672	3.66	0.60	0.02	3.61	3.70	1.00	5.00
내부적 책임성	남자	336	3.62	0.54	0.03	3.56	3.68	1.58	5.00
	여자	338	3.61	0.58	0.03	3.55	3.67	1.00	5.00
	합계	674	3.61	0.56	0.02	3.57	3.66	1.00	5.00
합법성	남자	333	3.92	0.57	0.03	3.86	3.98	1.83	5.00
	여자	336	3.87	0.61	0.03	3.81	3.94	1.00	5.00
	합계	669	3.90	0.59	0.02	3.85	3.94	1.00	5.00
대표성	남자	333	3.64	0.60	0.03	3.57	3.70	1.00	5.00
	여자	336	3.64	0.66	0.04	3.57	3.71	1.00	5.00
	합계	669	3.64	0.63	0.02	3.59	3.69	1.00	5.00
전문성	남자	333	3.34	0.61	0.03	3.28	3.41	1.00	5.00
	여자	335	3.29	0.71	0.04	3.21	3.37	1.00	5.00
	합계	668	3.32	0.66	0.03	3.27	3.37	1.00	5.00
반응성	남자	332	3.65	0.54	0.03	3.59	3.71	1.83	5.00
	여자	334	3.61	0.61	0.03	3.54	3.68	1.00	5.00
	합계	666	3.63	0.58	0.02	3.59	3.67	1.00	5.00
외부적 책임성	남자	333	3.64	0.51	0.03	3.58	3.69	1.42	5.00
	여자	336	3.60	0.59	0.03	3.53	3.66	1.00	5.00
	합계	669	3.62	0.55	0.02	3.57	3.66	1.00	5.00
책임성	남자	336	3.61	0.55	0.03	3.55	3.67	1.15	5.00
	여자	338	3.59	0.59	0.03	3.53	3.66	1.00	5.00
	합계	674	3.60	0.57	0.02	3.56	3.64	1.00	5.00

다. 담당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연령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평가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별 전체 책무성 평가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0세 이하와 51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3.67과 3.66을 보였고, 다음으로 31~40세가 3.63이었으며, 41~50세는 3.56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는 51세 이상이 가장 높고, 이어서 30세 이하와 31~40세의 연령대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41~50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부 책무성의 경우는 30세 이하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이어서 51세 이상과 31~40세의 연령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책무성의 평가점수도 41~50세의 연령대가 가장 낮았다. 요인별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 책무성 중에서 합법성의 평가점수만 경우만 31~40세의 공무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세부 요인별로는 모두 41~50세의 비영리법인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담당공무원의 연령에 따른 책무성 평가의 차이는 외부 책무성 중에서 전문성만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7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26〉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84	1	.184	.528	.468
	집단-내	233.914	672	.348	.	.
	합계	234.098	673	.	.	.
투명성	집단-간	.070	1	.070	.136	.712
	집단-내	344.186	672	.512	.	.
	합계	344.256	673	.	.	.
효율성	집단-간	.201	1	.201	.497	.481
	집단-내	272.487	672	.405	.	.
	합계	272.688	673	.	.	.
형평성	집단-간	.326	1	.326	.912	.340
	집단-내	239.736	670	.358	.	.
	합계	240.062	671	.	.	.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005	1	.005	.016	.899
	집단-내	211.769	672	.315	.	.
	합계	211.774	673	.	.	.
합법성	집단-간	.408	1	.408	1.182	.277
	집단-내	230.164	667	.345	.	.
	합계	230.572	668	.	.	.
대표성	집단-간	.006	1	.006	.016	.898
	집단-내	262.471	667	.394	.	.
	합계	262.478	668	.	.	.
전문성	집단-간	.511	1	.511	1.159	.282
	집단-내	293.275	666	.440	.	.
	합계	293.786	667	.	.	.
반응성	집단-간	.271	1	.271	.808	.369
	집단-내	222.380	664	.335	.	.
	합계	222.651	665	.	.	.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265	1	.265	.871	.351
	집단-내	202.618	667	.304	.	.
	합계	202.883	668	.	.	.
책무성	집단-간	.049	1	.049	.152	.697
	집단-내	216.725	672	.323	.	.
	합계	216.774	673	.	.	.

〈표 4-27〉 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39세 이하	40	3.67	0.59	0.09	3.48	3.86	2.67	5.00
	40~59세	197	3.68	0.58	0.04	3.60	3.76	2.17	5.00
	60세 이상	337	3.60	0.59	0.03	3.54	3.67	1.50	5.00
	합계	100	3.74	0.59	0.06	3.63	3.86	1.00	5.00
투명성	39세 이하	674	3.65	0.59	0.02	3.60	3.69	1.00	5.00
	40~59세	40	3.65	0.67	0.11	3.44	3.87	2.67	5.00
	60세 이상	197	3.62	0.70	0.05	3.52	3.72	2.00	5.00
	합계	337	3.52	0.74	0.04	3.44	3.60	1.17	5.00
효율성	39세 이하	100	3.63	0.68	0.07	3.50	3.76	1.00	5.00
	40~59세	674	3.57	0.72	0.03	3.52	3.63	1.00	5.00
	60세 이상	40	3.68	0.61	0.10	3.48	3.88	2.50	5.00
	합계	197	3.62	0.61	0.04	3.54	3.71	2.00	5.00
형평성	39세 이하	337	3.54	0.65	0.04	3.47	3.61	1.00	5.00
	40~59세	100	3.68	0.62	0.06	3.56	3.80	1.00	5.00
	60세 이상	674	3.59	0.64	0.02	3.54	3.64	1.00	5.00
	합계	40	3.61	0.61	0.10	3.42	3.81	2.67	5.00
내부적 책무성	39세 이하	197	3.66	0.60	0.04	3.58	3.75	1.83	5.00
	40~59세	335	3.63	0.59	0.03	3.57	3.69	1.83	5.00
	60세 이상	100	3.74	0.62	0.06	3.61	3.86	1.00	5.00
	합계	672	3.66	0.60	0.02	3.61	3.70	1.00	5.00
합법성	39세 이하	40	3.65	0.54	0.09	3.48	3.83	2.71	5.00
	40~59세	197	3.65	0.56	0.04	3.57	3.72	2.17	5.00
	60세 이상	337	3.57	0.56	0.03	3.51	3.63	1.58	5.00
	합계	100	3.70	0.55	0.06	3.59	3.81	1.00	5.00
대표성	39세 이하	674	3.61	0.56	0.02	3.57	3.66	1.00	5.00
	40~59세	40	3.89	0.65	0.10	3.69	4.10	2.50	5.00
	60세 이상	195	3.88	0.60	0.04	3.80	3.96	2.00	5.00
	합계	335	3.89	0.58	0.03	3.82	3.95	1.83	5.00

17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전문성	39세 이하	99	3.96	0.56	0.06	3.85	4.07	1.00	5.00
	40~59세	669	3.90	0.59	0.02	3.85	3.94	1.00	5.00
	60세 이상	40	3.72	0.58	0.09	3.54	3.91	2.67	5.00
	합계	195	3.70	0.60	0.04	3.62	3.78	2.00	5.00
반응성	39세 이하	335	3.60	0.65	0.04	3.53	3.67	1.00	5.00
	40~59세	99	3.63	0.61	0.06	3.51	3.76	1.00	5.00
	60세 이상	669	3.64	0.63	0.02	3.59	3.69	1.00	5.00
	합계	40	3.44	0.61	0.10	3.24	3.63	2.33	5.00
외부적 책무성	39세 이하	195	3.38	0.65	0.05	3.29	3.48	2.00	5.00
	40~59세	334	3.24	0.68	0.04	3.17	3.31	1.00	5.00
	60세 이상	99	3.40	0.63	0.06	3.27	3.52	1.00	5.00
	합계	668	3.32	0.66	0.03	3.27	3.37	1.00	5.00
책무성	39세 이하	40	3.69	0.51	0.08	3.53	3.85	3.00	5.00
	40~59세	194	3.66	0.58	0.04	3.57	3.74	2.17	5.00
	60세 이상	334	3.59	0.57	0.03	3.53	3.66	1.83	5.00
	합계	98	3.68	0.62	0.06	3.55	3.80	1.00	5.00

〈표 4-28〉 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794	3	.598	1.725	.161
	집단-내	232.304	670	.347	.	.
	합계	234.098	673	.	.	.
투명성	집단-간	1.973	3	.658	1.287	.278
	집단-내	342.283	670	.511	.	.
	합계	344.256	673	.	.	.
효율성	집단-간	2.251	3	.750	1.859	.135
	집단-내	270.437	670	.404	.	.
	합계	272.688	673	.	.	.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형평성	집단-간	.938	3	.313	.873	.455
	집단-내	239.125	668	.358	.	.
	합계	240.062	671	.	.	.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692	3	.564	1.799	.146
	집단-내	210.081	670	.314	.	.
	합계	211.774	673	.	.	.
합법성	집단-간	.460	3	.153	.443	.722
	집단-내	230.112	665	.346	.	.
	합계	230.572	668	.	.	.
대표성	집단-간	1.571	3	.524	1.335	.262
	집단-내	260.907	665	.392	.	.
	합계	262.478	668	.	.	.
전문성	집단-간	4.124	3	1.375	3.151	.024
	집단-내	289.661	664	.436	.	.
	합계	293.786	667	.	.	.
반응성	집단-간	.924	3	.308	.919	.431
	집단-내	221.727	662	.335	.	.
	합계	222.651	665	.	.	.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1.169	3	.390	1.285	.279
	집단-내	201.714	665	.303	.	.
	합계	202.883	668	.	.	.
책무성	집단-간	1.246	3	.415	1.292	.276
	집단-내	215.527	670	.322	.	.
	합계	216.774	673	.	.	.

라. 공무원의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평가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근무연수별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1년 이상 근무한 공

무원의 경우에 3.77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10년 이하와 11~20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가 각각 3.61로 평가하였으며, 21~30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는 3.57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의 경우도 3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이어서 10년 이하와 11~20년 근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1~20년 근무한 경우가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요인별 세부적으로 본 경우에도 모두 3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20년 근무한 공무원은 민주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보였고, 10년 이하의 경우는 형평성과 합법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이를 제외하면 다른 항목은 모두 21~30년 근무한 공무원에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인식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29〉 공무원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39세 이하	227	3.66	0.61	0.04	3.58	3.74	1.00	5.00
	40~59세	177	3.58	0.61	0.05	3.49	3.67	1.50	5.00
	60세 이상	246	3.67	0.54	0.03	3.60	3.73	2.17	5.00
	합계	24	3.88	0.65	0.13	3.60	4.15	2.50	5.00
투명성	39세 이하	674	3.65	0.59	0.02	3.60	3.69	1.00	5.00
	40~59세	227	3.60	0.72	0.05	3.51	3.70	1.00	5.00
	60세 이상	177	3.59	0.76	0.06	3.48	3.70	1.17	5.00
	합계	246	3.52	0.67	0.04	3.43	3.60	1.33	5.00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효율성	39세 이하		
	40~59세	674	3.57	0.72	0.03	3.52	3.63	1.00	5.00
	60세 이상	227	3.60	0.66	0.04	3.51	3.69	1.00	5.00
	합계	177	3.60	0.64	0.05	3.50	3.69	1.00	5.00
형평성	39세 이하	246	3.56	0.62	0.04	3.48	3.63	1.17	5.00
	40~59세	24	3.83	0.58	0.12	3.59	4.08	2.33	4.83
	60세 이상	674	3.59	0.64	0.02	3.54	3.64	1.00	5.00
	합계	227	3.62	0.63	0.04	3.54	3.70	1.00	5.00
내부적 책무성	39세 이하	177	3.65	0.57	0.04	3.57	3.74	2.17	5.00
	40~59세	244	3.67	0.57	0.04	3.59	3.74	1.83	5.00
	60세 이상	24	3.94	0.68	0.14	3.66	4.23	2.50	5.00
	합계	672	3.66	0.60	0.02	3.61	3.70	1.00	5.00
합법성	39세 이하	227	3.62	0.59	0.04	3.54	3.70	1.00	5.00
	40~59세	177	3.60	0.56	0.04	3.52	3.69	1.58	5.00
	60세 이상	246	3.59	0.52	0.03	3.53	3.66	1.67	4.96
	합계	24	3.84	0.58	0.12	3.60	4.08	2.33	4.96
대표성	39세 이하	674	3.61	0.56	0.02	3.57	3.66	1.00	5.00
	40~59세	225	3.86	0.63	0.04	3.78	3.95	1.00	5.00
	60세 이상	177	3.91	0.58	0.04	3.82	4.00	1.83	5.00
	합계	243	3.90	0.55	0.04	3.83	3.96	2.00	5.00
전문성	39세 이하	24	4.10	0.59	0.12	3.86	4.35	3.00	5.00
	40~59세	669	3.90	0.59	0.02	3.85	3.94	1.00	5.00
	60세 이상	225	3.66	0.63	0.04	3.58	3.74	1.00	5.00
	합계	177	3.68	0.64	0.05	3.58	3.77	1.00	5.00
반응성	39세 이하	243	3.59	0.61	0.04	3.51	3.67	1.83	5.00
	40~59세	24	3.69	0.62	0.13	3.43	3.95	2.67	5.00
	60세 이상	669	3.64	0.63	0.02	3.59	3.69	1.00	5.00
	합계	225	3.35	0.67	0.04	3.26	3.44	1.00	5.00
외부적 책무성	39세 이하	176	3.33	0.67	0.05	3.23	3.43	1.00	5.00
	40~59세	243	3.27	0.66	0.04	3.19	3.36	1.00	5.00
	60세 이상	24	3.35	0.60	0.12	3.10	3.61	1.83	4.33
	합계	668	3.32	0.66	0.03	3.27	3.37	1.00	5.00
책무성	39세 이하	224	3.65	0.60	0.04	3.57	3.73	1.00	5.00
	40~59세	176	3.61	0.57	0.04	3.52	3.69	1.83	5.00
	60세 이상	243	3.61	0.56	0.04	3.54	3.68	1.83	5.00
	합계	23	3.82	0.67	0.14	3.53	4.11	2.67	5.00

17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30〉 공무원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2.197	3	.732	2.116	.097
	집단-내	231.900	670	.346	.	.
	합계	234.098	673	.	.	.
투명성	집단-간	1.560	3	.520	1.017	.385
	집단-내	342.696	670	.511	.	.
	합계	344.256	673	.	.	.
효율성	집단-간	1.706	3	.569	1.406	.240
	집단-내	270.983	670	.404	.	.
	합계	272.688	673	.	.	.
형평성	집단-간	2.344	3	.781	2.196	.087
	집단-내	237.718	668	.356	.	.
	합계	240.062	671	.	.	.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378	3	.459	1.463	.224
	집단-내	210.396	670	.314	.	.
	합계	211.774	673	.	.	.
합법성	집단-간	1.334	3	.445	1.290	.277
	집단-내	229.237	665	.345	.	.
	합계	230.572	668	.	.	.
대표성	집단-간	1.029	3	.343	.872	.455
	집단-내	261.449	665	.393	.	.
	합계	262.478	668	.	.	.
전문성	집단-간	.760	3	.253	.574	.632
	집단-내	293.026	664	.441	.	.
	합계	293.786	667	.	.	.
반응성	집단-간	1.018	3	.339	1.014	.386
	집단-내	221.633	662	.335	.	.
	합계	222.651	665	.	.	.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331	3	.110	.362	.780
	집단-내	202.552	665	.305	.	.
	합계	202.883	668	.	.	.
책무성	집단-간	.948	3	.316	.981	.401
	집단-내	215.826	670	.322	.	.
	합계	216.774	673	.	.	.

마. 공무원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 분석

다음 표에서는 지역별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책무성 평가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책무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비영리법인 책무성 평가수준이 가장 높은 3.22를 보였고, 다음으로 전남이 3.17, 경남이 3.10, 광주가 3.03의 순을 보였으며, 인천 지역은 2.8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도 제주 지역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남, 경남의 순이었으며, 인천 지역이 가장 낮고, 이어서 서울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외부 책무성의 경우도 역시 제주 지역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전남이 3.79, 경남이 3.72 순으로 나타난 것은 동일하였으나, 가장 낮은 평가수준을 보인 곳은 인천으로 3.41이었다. 요인별로 세부적으로 본 경우에도 전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투명성과 광주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응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제주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 책무성의 요인들에서는 울산이 가장 낮게 나온 형평성을 제외하고는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모두 인천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외부 책무성 요인들에서는 인천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합법성, 대표성, 반응성 모두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 인천, 울산 지역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책무성 평가수준의 차이는 내부 책무성의 경우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내부 책무성에서는 투명성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민주성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8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31〉 공무원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서울	61	3.47	0.66	0.08	3.30	3.64	1.00	5.00
	부산	38	3.66	0.48	0.08	3.50	3.82	2.83	5.00
	대구	16	3.73	0.59	0.15	3.41	4.05	2.83	5.00
	인천	27	3.40	0.43	0.08	3.22	3.57	2.67	4.17
	대전	21	3.71	0.50	0.11	3.48	3.94	2.83	4.50
	울산	18	3.69	0.45	0.11	3.46	3.91	2.67	4.50
	경기	16	3.68	0.54	0.13	3.39	3.96	2.83	5.00
	강원	101	3.68	0.60	0.06	3.56	3.80	2.17	5.00
	충북	55	3.55	0.53	0.07	3.41	3.70	2.33	4.50
	충남	35	3.66	0.57	0.10	3.46	3.85	2.50	5.00
	전북	46	3.66	0.60	0.09	3.48	3.84	2.33	5.00
	전남	41	3.73	0.51	0.08	3.57	3.89	2.83	4.83
	경북	54	3.88	0.63	0.09	3.70	4.05	2.50	5.00
	경남	77	3.54	0.60	0.07	3.41	3.68	2.33	5.00
	제주	59	3.73	0.68	0.09	3.55	3.91	2.17	5.00
합계	9	3.94	0.67	0.22	3.43	4.46	2.67	4.83	
투명성	서울	674	3.65	0.59	0.02	3.60	3.69	1.00	5.00
	부산	61	3.30	0.78	0.10	3.10	3.49	1.00	4.67
	대구	38	3.46	0.65	0.10	3.25	3.68	2.50	5.00
	인천	16	3.63	0.51	0.13	3.35	3.90	2.67	4.50
	대전	27	3.26	0.55	0.11	3.04	3.48	2.17	4.17
	울산	21	3.56	0.75	0.16	3.21	3.90	2.50	5.00
	경기	18	3.68	0.48	0.11	3.44	3.91	2.83	4.33
	강원	16	3.47	0.78	0.19	3.06	3.88	2.17	5.00
	충북	101	3.60	0.70	0.07	3.46	3.73	1.67	5.00
	충남	55	3.59	0.67	0.09	3.41	3.77	2.17	5.00
	전북	35	3.50	0.64	0.11	3.27	3.72	1.67	5.00
	전남	46	3.52	0.76	0.11	3.29	3.74	1.33	5.00
	경북	41	3.63	0.72	0.11	3.41	3.86	2.33	5.00
	경남	54	3.89	0.81	0.11	3.67	4.11	2.17	5.00
	제주	77	3.60	0.70	0.08	3.44	3.75	2.33	5.00
합계	59	3.68	0.73	0.09	3.49	3.86	2.00	5.00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효율성	서울	9	3.85	0.72	0.24	3.30	4.41	2.33	4.83
	부산	674	3.57	0.72	0.03	3.52	3.63	1.00	5.00
	대구	61	3.44	0.72	0.09	3.26	3.63	1.00	4.67
	인천	38	3.56	0.68	0.11	3.34	3.79	2.17	5.00
	대전	16	3.66	0.63	0.16	3.32	3.99	2.83	5.00
	울산	27	3.35	0.38	0.07	3.20	3.50	2.50	4.00
	경기	21	3.68	0.58	0.13	3.42	3.95	2.67	4.83
	강원	18	3.56	0.46	0.11	3.33	3.78	2.83	4.33
	충북	16	3.56	0.62	0.16	3.23	3.89	2.00	5.00
	충남	101	3.64	0.60	0.06	3.52	3.76	2.00	5.00
	전북	55	3.57	0.65	0.09	3.39	3.74	2.00	5.00
	전남	35	3.54	0.65	0.11	3.32	3.77	1.50	5.00
	경북	46	3.56	0.71	0.10	3.35	3.77	1.17	5.00
	경남	41	3.50	0.71	0.11	3.28	3.73	2.00	5.00
	제주	54	3.70	0.63	0.09	3.53	3.87	2.67	5.00
합계	77	3.63	0.61	0.07	3.49	3.77	2.17	5.00	
형평성	서울	59	3.71	0.64	0.08	3.54	3.88	2.33	5.00
	부산	9	3.93	0.61	0.20	3.45	4.40	2.67	4.67
	대구	674	3.59	0.64	0.02	3.54	3.64	1.00	5.00
	인천	61	3.54	0.60	0.08	3.38	3.69	1.00	5.00
	대전	37	3.59	0.56	0.09	3.41	3.78	2.67	4.67
	울산	16	3.65	0.62	0.16	3.32	3.98	2.17	5.00
	경기	27	3.47	0.64	0.12	3.22	3.72	2.17	5.00
	강원	21	3.61	0.53	0.11	3.37	3.85	2.50	4.67
	충북	18	3.69	0.44	0.10	3.47	3.92	2.67	4.50
	충남	16	3.45	0.50	0.13	3.18	3.71	2.00	4.00
	전북	101	3.66	0.59	0.06	3.54	3.78	2.00	5.00
	전남	54	3.67	0.48	0.07	3.54	3.80	2.00	4.83
	경북	35	3.65	0.55	0.09	3.46	3.84	2.50	4.67
	경남	46	3.66	0.63	0.09	3.47	3.84	1.83	4.67
	제주	41	3.66	0.65	0.10	3.45	3.86	2.00	5.00
합계	54	3.83	0.70	0.10	3.64	4.03	2.17	5.00	

18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내부적 책무성	서울	77	3.66	0.60	0.07	3.52	3.79	2.00	5.00
	부산	59	3.75	0.64	0.08	3.59	3.92	1.83	5.00
	대구	9	3.83	0.65	0.22	3.33	4.33	2.50	4.67
	인천	672	3.66	0.60	0.02	3.61	3.70	1.00	5.00
	대전	61	3.44	0.64	0.08	3.27	3.60	1.00	4.67
	울산	38	3.55	0.51	0.08	3.38	3.72	2.71	4.67
	경기	16	3.66	0.49	0.12	3.40	3.92	2.79	4.67
	강원	27	3.37	0.39	0.08	3.21	3.52	2.67	4.17
	충북	21	3.64	0.50	0.11	3.41	3.87	2.75	4.63
	충남	18	3.65	0.38	0.09	3.46	3.84	3.00	4.29
	전북	16	3.54	0.52	0.13	3.26	3.81	2.25	4.50
	전남	101	3.64	0.56	0.06	3.53	3.75	2.46	5.00
	경북	55	3.58	0.54	0.07	3.43	3.72	2.29	4.58
	경남	35	3.59	0.52	0.09	3.41	3.77	2.25	4.83
	제주	46	3.60	0.60	0.09	3.42	3.78	1.67	4.79
합계	41	3.63	0.57	0.09	3.45	3.81	2.63	4.79	
합법성	서울	54	3.83	0.59	0.08	3.67	3.99	2.54	5.00
	부산	77	3.61	0.54	0.06	3.48	3.73	2.63	5.00
	대구	59	3.72	0.61	0.08	3.56	3.88	2.17	4.92
	인천	9	3.89	0.62	0.21	3.41	4.37	2.54	4.75
	대전	674	3.61	0.56	0.02	3.57	3.66	1.00	5.00
	울산	61	3.66	0.71	0.09	3.48	3.84	1.00	5.00
	경기	37	4.01	0.52	0.09	3.84	4.19	2.83	5.00
	강원	15	4.03	0.52	0.13	3.75	4.32	3.17	5.00
	충북	27	3.81	0.56	0.11	3.59	4.03	2.50	5.00
	충남	21	4.00	0.49	0.11	3.78	4.22	3.17	5.00
	전북	18	3.83	0.33	0.08	3.67	4.00	3.17	4.33
	전남	16	3.79	0.77	0.19	3.38	4.20	2.00	5.00
	경북	101	3.86	0.56	0.06	3.75	3.97	2.50	5.00
	경남	54	3.86	0.56	0.08	3.71	4.02	2.50	5.00
	제주	35	3.82	0.51	0.09	3.65	4.00	3.00	5.00
합계	46	3.98	0.62	0.09	3.80	4.16	2.83	5.00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대표성	서울	41	4.03	0.60	0.09	3.84	4.22	3.00	5.00
	부산	54	3.98	0.61	0.08	3.82	4.15	2.83	5.00
	대구	75	3.87	0.62	0.07	3.72	4.01	2.00	5.00
	인천	59	3.99	0.57	0.07	3.84	4.14	2.83	5.00
	대전	9	4.04	0.55	0.18	3.62	4.46	3.00	5.00
	울산	669	3.90	0.59	0.02	3.85	3.94	1.00	5.00
	경기	61	3.44	0.75	0.10	3.25	3.64	1.00	5.00
	강원	37	3.76	0.61	0.10	3.55	3.96	2.17	5.00
	충북	15	3.58	0.61	0.16	3.24	3.91	2.67	4.83
	충남	27	3.49	0.52	0.10	3.28	3.70	2.17	4.50
	전북	21	3.63	0.58	0.13	3.36	3.89	2.17	5.00
	전남	18	3.56	0.49	0.11	3.31	3.80	2.67	4.33
	경북	16	3.45	0.71	0.18	3.07	3.83	2.00	5.00
	경남	101	3.64	0.66	0.07	3.51	3.77	1.83	5.00
	제주	54	3.70	0.58	0.08	3.54	3.85	2.33	5.00
합계	35	3.65	0.63	0.11	3.44	3.87	1.83	5.00	
전문성	서울	46	3.55	0.70	0.10	3.34	3.75	2.17	5.00
	부산	41	3.65	0.69	0.11	3.44	3.87	2.00	5.00
	대구	54	3.77	0.56	0.08	3.62	3.92	2.50	5.00
	인천	75	3.64	0.58	0.07	3.51	3.78	2.50	5.00
	대전	59	3.77	0.53	0.07	3.63	3.91	2.50	5.00
	울산	9	3.98	0.59	0.20	3.53	4.43	2.67	4.83
	경기	669	3.64	0.63	0.02	3.59	3.69	1.00	5.00
	강원	61	3.16	0.74	0.09	2.97	3.34	1.00	4.50
	충북	37	3.33	0.74	0.12	3.09	3.58	1.50	4.83
	충남	15	3.22	0.56	0.14	2.91	3.53	2.00	4.17
	전북	27	3.02	0.54	0.10	2.81	3.24	2.17	4.17
	전남	20	3.44	0.64	0.14	3.14	3.74	2.00	4.50
	경북	18	3.32	0.53	0.13	3.06	3.59	2.67	4.50
	경남	16	3.26	0.75	0.19	2.86	3.66	2.00	5.00
	제주	101	3.31	0.68	0.07	3.18	3.45	1.50	5.00
합계	54	3.37	0.58	0.08	3.21	3.53	2.00	4.50	

18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반응성	서울	35	3.31	0.62	0.10	3.10	3.53	1.50	4.83
	부산	46	3.23	0.77	0.11	3.00	3.46	1.00	4.67
	대구	41	3.33	0.73	0.11	3.10	3.56	2.00	5.00
	인천	54	3.48	0.65	0.09	3.30	3.66	2.17	5.00
	대전	75	3.32	0.65	0.08	3.17	3.47	2.00	5.00
	울산	59	3.43	0.58	0.08	3.28	3.58	2.17	4.50
	경기	9	3.57	0.53	0.18	3.16	3.98	2.67	4.33
	강원	668	3.32	0.66	0.03	3.27	3.37	1.00	5.00
	충북	61	3.44	0.64	0.08	3.28	3.60	1.00	5.00
	충남	37	3.70	0.48	0.08	3.54	3.86	2.83	5.00
	전북	15	3.68	0.45	0.12	3.43	3.93	3.17	4.50
	전남	27	3.47	0.46	0.09	3.29	3.65	2.50	4.17
	경북	20	3.78	0.51	0.11	3.54	4.02	3.00	5.00
	경남	18	3.65	0.47	0.11	3.42	3.88	2.83	4.50
	제주	16	3.56	0.62	0.15	3.23	3.89	2.67	5.00
합계	100	3.60	0.65	0.06	3.47	3.73	1.83	5.00	
외부적 책무성	서울	54	3.64	0.51	0.07	3.50	3.78	2.67	5.00
	부산	35	3.56	0.59	0.10	3.35	3.76	2.33	5.00
	대구	46	3.62	0.60	0.09	3.45	3.80	2.00	5.00
	인천	41	3.72	0.53	0.08	3.55	3.89	2.83	5.00
	대전	54	3.79	0.59	0.08	3.63	3.96	2.33	5.00
	울산	75	3.59	0.58	0.07	3.46	3.72	2.67	5.00
	경기	58	3.73	0.59	0.08	3.57	3.88	2.17	5.00
	강원	9	3.72	0.63	0.21	3.24	4.21	2.83	4.83
	충북	666	3.63	0.58	0.02	3.59	3.67	1.00	5.00
	충남	61	3.42	.66	.09	3.25	3.59	1.00	4.88
	전북	37	3.70	.50	.08	3.53	3.87	2.83	4.83
	전남	15	3.63	.46	.12	3.37	3.88	2.79	4.63
	경북	27	3.45	.41	.08	3.29	3.61	2.75	4.25
	경남	21	3.63	.60	.13	3.36	3.90	1.96	4.79
	제주	18	3.59	.40	.09	3.39	3.79	3.08	4.33
합계	16	3.52	.64	.16	3.18	3.86	2.17	5.00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책무성	서울	101	3.59	.57	.06	3.48	3.71	2.21	5.00
	부산	54	3.64	.49	.07	3.51	3.78	2.50	4.71
	대구	35	3.59	.54	.09	3.40	3.77	2.21	4.88
	인천	46	3.60	.61	.09	3.41	3.78	2.00	4.92
	대전	41	3.68	.58	.09	3.50	3.87	2.50	5.00
	울산	54	3.76	.52	.07	3.62	3.90	2.71	5.00
	경기	75	3.60	.54	.06	3.48	3.73	2.75	5.00
	강원	59	3.71	.50	.07	3.58	3.84	2.71	4.83
	충북	9	3.83	.51	.17	3.44	4.22	2.79	4.67
	충남	669	3.62	.55	.02	3.57	3.66	1.00	5.00
	전북	61	3.43	.64	.08	3.27	3.60	1.00	4.77
	전남	38	3.58	.59	.10	3.38	3.77	1.48	4.75
	경북	16	3.53	.68	.17	3.17	3.89	1.65	4.65
	경남	27	3.41	.39	.07	3.25	3.56	2.77	4.08
	제주	21	3.63	.51	.11	3.40	3.87	2.63	4.54
합계	18	3.62	.38	.09	3.43	3.81	3.06	4.21	

〈표 4-32〉 공무원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9.545	15	.636	1.865	.024
	집단-내	224.553	658	.341		
	합계	234.098	673			
투명성	집단-간	15.650	15	1.043	2.089	.009
	집단-내	328.607	658	.499		
	합계	344.256	673			
효율성	집단-간	6.589	15	.439	1.086	.365
	집단-내	266.100	658	.404		
	합계	272.688	673			
형평성	집단-간	5.262	15	.351	.980	.475
	집단-내	234.800	656	.358		
	합계	240.062	671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7.845	15	.523	1.688	.049
	집단-내	203.928	658	.310	.	.
	합계	211.774	673	.	.	.
합법성	집단-간	7.519	15	.501	1.468	.111
	집단-내	223.052	653	.342	.	.
	합계	230.572	668	.	.	.
대표성	집단-간	7.836	15	.522	1.340	.172
	집단-내	254.642	653	.390	.	.
	합계	262.478	668	.	.	.
전문성	집단-간	7.663	15	.511	1.164	.295
	집단-내	286.123	652	.439	.	.
	합계	293.786	667	.	.	.
반응성	집단-간	6.477	15	.432	1.298	.197
	집단-내	216.174	650	.333	.	.
	합계	222.651	665	.	.	.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5.836	15	.389	1.289	.203
	집단-내	197.047	653	.302	.	.
	합계	202.883	668	.	.	.
책무성	집단-간	6.671	15	.445	1.393	.144
	집단-내	210.103	658	.319	.	.
	합계	216.774	673	.	.	.

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가. 분산분석(ANOVA)을 통한 공무원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다음 표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에 따른 책무성 평가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이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3.60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점수보다 다소 높은 비영리법인 유형은 사회복지, 학교법인,

문화법인이었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과 종교법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은 일반국민들보다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가 높지만,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이 전반적인 책무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수준의 차이는 모든 책무성 항목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무성 인식도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의료	188	3.51	0.57	0.04	3.42	3.59	1.00	5.00
	사회복지	199	3.70	0.59	0.04	3.62	3.78	2.17	5.00
	교육	99	3.93	0.58	0.06	3.82	4.05	2.83	5.00
	문화예술	147	3.63	0.54	0.04	3.54	3.71	2.33	5.00
	종교	41	3.46	0.61	0.10	3.27	3.66	2.17	5.00
	합계	674	3.65	0.59	0.02	3.60	3.69	1.00	5.00
투명성	의료	188	3.27	0.70	0.05	3.17	3.37	1.00	5.00
	사회복지	199	3.67	0.64	0.05	3.58	3.76	2.17	5.00
	교육	99	4.03	0.75	0.08	3.88	4.18	2.00	5.00
	문화예술	147	3.57	0.64	0.05	3.46	3.67	2.00	5.00
	종교	41	3.41	0.61	0.09	3.22	3.60	2.33	5.00
	합계	674	3.57	0.72	0.03	3.52	3.63	1.00	5.00
효율성	의료	188	3.37	0.64	0.05	3.28	3.46	1.00	5.00
	사회복지	199	3.61	0.61	0.04	3.52	3.69	2.00	5.00
	교육	99	3.88	0.66	0.07	3.75	4.01	2.17	5.00
	문화예술	147	3.66	0.59	0.05	3.56	3.75	2.33	5.00
	종교	41	3.60	0.55	0.09	3.42	3.77	2.17	4.83
	합계	674	3.59	0.64	0.02	3.54	3.64	1.00	5.00

18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형평성	의료	187	3.48	0.56	0.04	3.40	3.56	1.00	4.83
	사회복지	198	3.70	0.57	0.04	3.62	3.78	1.83	5.00
	교육	99	3.81	0.70	0.07	3.67	3.95	2.00	5.00
	문화예술	147	3.71	0.56	0.05	3.62	3.80	2.33	5.00
	종교	41	3.70	0.61	0.10	3.51	3.89	2.83	5.00
	합계	672	3.66	0.60	0.02	3.61	3.70	1.00	5.00
내부적 책무성	의료	188	3.40	0.55	0.04	3.32	3.48	1.00	4.79
	사회복지	199	3.66	0.54	0.04	3.59	3.74	2.17	5.00
	교육	99	3.91	0.59	0.06	3.79	4.03	2.63	5.00
	문화예술	147	3.64	0.49	0.04	3.56	3.72	2.33	5.00
	종교	41	3.54	0.49	0.08	3.39	3.70	2.54	4.50
	합계	674	3.61	0.56	0.02	3.57	3.66	1.00	5.00
합법성	의료	186	3.76	0.57	0.04	3.68	3.84	1.00	5.00
	사회복지	197	3.93	0.57	0.04	3.85	4.01	2.00	5.00
	교육	99	4.23	0.59	0.06	4.11	4.34	3.00	5.00
	문화예술	147	3.87	0.52	0.04	3.78	3.95	2.83	5.00
	종교	40	3.62	0.63	0.10	3.41	3.82	2.50	5.00
	합계	669	3.90	0.59	0.02	3.85	3.94	1.00	5.00
대표성	의료	186	3.33	0.63	0.05	3.24	3.43	1.00	5.00
	사회복지	197	3.72	0.59	0.04	3.64	3.80	2.00	5.00
	교육	99	3.99	0.62	0.06	3.86	4.11	2.50	5.00
	문화예술	147	3.71	0.52	0.04	3.62	3.80	2.50	5.00
	종교	40	3.56	0.52	0.08	3.39	3.73	2.33	5.00
	합계	669	3.64	0.63	0.02	3.59	3.69	1.00	5.00
전문성	의료	186	2.98	0.66	0.05	2.89	3.08	1.00	4.67
	사회복지	196	3.44	0.64	0.05	3.35	3.53	1.50	5.00
	교육	99	3.60	0.68	0.07	3.46	3.73	2.17	5.00
	문화예술	147	3.40	0.57	0.05	3.31	3.50	2.17	5.00
	종교	40	3.27	0.47	0.07	3.12	3.42	2.50	4.33
	합계	668	3.32	0.66	0.03	3.27	3.37	1.00	5.00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반응성	의료	186	3.40	0.58	0.04	3.32	3.49	1.00	5.00
	사회복지	194	3.67	0.55	0.04	3.59	3.75	2.17	5.00
	교육	99	3.94	0.59	0.06	3.83	4.06	2.83	5.00
	문화예술	147	3.69	0.50	0.04	3.61	3.77	2.83	5.00
	종교	40	3.52	0.53	0.08	3.35	3.69	2.67	5.00
	합계	666	3.63	0.58	0.02	3.59	3.67	1.00	5.00
외부적 책무성	의료법인	186	3.37	.54	.04	3.29	3.45	1.00	4.92
	사회복지	197	3.67	.54	.04	3.60	3.75	1.96	5.00
	학교법인	99	3.94	.55	.05	3.83	4.05	2.63	5.00
	문화예술	147	3.67	.47	.04	3.59	3.74	2.75	5.00
	종교법인	40	3.49	.44	.07	3.35	3.63	2.50	4.54
	합계	669	3.62	.55	.02	3.57	3.66	1.00	5.00
책무성	의료법인	188	3.37	.57	.04	3.29	3.45	1.00	4.85
	사회복지	199	3.65	.56	.04	3.57	3.73	1.48	5.00
	학교법인	99	3.93	.55	.06	3.82	4.03	2.69	5.00
	문화예술	147	3.65	.47	.04	3.58	3.73	2.58	5.00
	종교법인	41	3.47	.54	.08	3.30	3.64	1.50	4.52
	합계	674	3.60	.57	.02	3.56	3.64	1.00	5.00

〈표 4-34〉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무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3.636	4	3.409	10.345	.000
	집단-내	220.462	669	.330		
	합계	234.098	673			
투명성	집단-간	41.015	4	10.254	22.622	.000
	집단-내	303.241	669	.453		
	합계	344.256	673			
효율성	집단-간	18.302	4	4.575	12.033	.000
	집단-내	254.387	669	.380		
	합계	272.688	673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형평성	집단-간	8.786	4	2.196	6.335	.000
	집단-내	231.277	667	.347		
	합계	240.062	671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8.047	4	4.512	15.581	.000
	집단-내	193.726	669	.290		
	합계	211.774	673			
합법성	집단-간	17.924	4	4.481	13.992	.000
	집단-내	212.648	664	.320		
	합계	230.572	668			
대표성	집단-간	31.609	4	7.902	22.728	.000
	집단-내	230.868	664	.348		
	합계	262.478	668			
전문성	집단-간	32.551	4	8.138	20.654	.000
	집단-내	261.234	663	.394		
	합계	293.786	667			
반응성	집단-간	20.727	4	5.182	16.963	.000
	집단-내	201.924	661	.305		
	합계	222.651	66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23.301	4	5.825	21.539	.000
	집단-내	179.581	664	.270		
	합계	202.883	668			
책무성	집단-간	22.204	4	5.551	19.086	.000
	집단-내	194.570	669	.291		
	합계	216.774	673			

나.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한 공무원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앞서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에 대한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산분석을 통해서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른 평가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법인 유형별 순수한 책무성의 평가수준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두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내부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내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과 근무연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과 근무연수와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모델에서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무연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무원으로 근무기간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비교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비영리유형별 책무성의 평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야를 보면, 의료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그리고 문화예술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교법인의 경우는 학교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3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21.063 ^a	6	3.510	12.278	.000	.099
절편	135.212	1	135.212	472.895	.000	.415
연령	.741	1	.741	2.592	.108	.004
분야	2.331	1	2.331	8.154	.004	.012
오차	17.773	4	4.443	15.540	.000	.085
합계	190.711	667	.286			
수정 합계	9016.974	674				

a. R 제곱 = .099 (수정된 R 제곱 = .091)

19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36〉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오차	t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곱
					하한값	상한값	
절편	3.702	.188	19.712	.000	3.333	4.071	.368
연령	-.009	.005	-1.610	.108	-.020	.002	.004
[분야=1]	.013	.005	2.855	.004	.004	.022	.012
[분야=2]	-.139	.094	-1.487	.137	-.323	.045	.003
[분야=3]	.123	.092	1.344	.180	-.057	.304	.003
[분야=4]	.392	.100	3.938	.000	.197	.588	.023
[분야=5]	.088	.095	.930	.353	-.098	.274	.001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3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4012	3.401	.040	3.322	3.480
사회복지	3.6642	3.663	.038	3.589	3.738
교육	3.9108	3.932	.055	3.825	4.040
문화예술	3.6403	3.628	.044	3.541	3.715
종교	3.5427	3.540	.084	3.376	3.704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연령 = 42.70, 근무년수 = 16.24.

〈표 4-38〉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263*	.056	.000	-.419	-.106
	학교법인	-.531*	.069	.000	-.726	-.337
	문화예술	-.227*	.060	.002	-.397	-.057
	종교법인	-.139	.094	1.000	-.403	.124
사회복지	의료법인	.263*	.056	.000	.106	.419
	학교법인	-.269*	.066	.001	-.456	-.082
	문화예술	.035	.058	1.000	-.129	.200
	종교법인	.123	.092	1.000	-.135	.382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학교법인	의료법인	.531*	.069	.000	.337	.726
	사회복지	.269*	.066	.001	.082	.456
	문화예술	.304*	.071	.000	.106	.503
	종교법인	.392*	.100	.001	.112	.673
문화예술	의료법인	.227*	.060	.002	.057	.397
	사회복지	-.035	.058	1.000	-.200	.129
	학교법인	-.304*	.071	.000	-.503	-.106
	종교법인	.088	.095	1.000	-.178	.354
종교법인	의료법인	.139	.094	1.000	-.124	.403
	사회복지	-.123	.092	1.000	-.382	.135
	학교법인	-.392*	.100	.001	-.673	-.112
	문화예술	-.088	.095	1.000	-.354	.178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Bonferroni

2) 외부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외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과 근무연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과 근무연수와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모델에서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무연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비교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비영리유형별 외부책무성의 인식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야는 내부적 책무성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19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39〉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채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수정 모형	25.833a	6	4.306	16.099	.000	.127
절편	136.375	1	136.375	509.916	.000	.435
연령	.808	1	.808	3.022	.083	.005
분야	2.123	1	2.123	7.940	.005	.012
오차	22.266	4	5.566	20.813	.000	.112
합계	177.050	662	.267			
수정 합계	8947.502	669				

a. R 제공 = .127 (수정된 R 제공 = .119)

〈표 4-40〉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채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공
					하한값	상한값	
절편	3.672	.182	20.136	.000	3.314	4.030	.380
연령	-.009	.005	-1.738	.083	-.020	.001	.005
근무년수	.013	.004	2.818	.005	.004	.021	.012
[분야=1]	-.111	.091	-1.219	.223	-.291	.068	.002
[분야=2]	.187	.090	2.083	.038	.011	.363	.007
[분야=3]	.474	.097	4.871	.000	.283	.665	.035
[분야=4]	.172	.092	1.864	.063	-.009	.353	.005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41〉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채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3694	3.372	.039	3.295	3.449
사회복지	3.6715	3.670	.037	3.598	3.743
교육	3.9394	3.957	.053	3.853	4.061
문화예술	3.6675	3.655	.043	3.571	3.740
종교	3.4896	3.483	.082	3.322	3.644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연령=50.74.

〈표 4-42〉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299*	.054	.000	-.451	-.146
	학교법인	-.585*	.067	.000	-.774	-.396
	문화예술	-.284*	.059	.000	-.448	-.119
	종교법인	-.111	.091	1.000	-.369	.146
사회복지	의료법인	.299*	.054	.000	.146	.451
	학교법인	-.287*	.064	.000	-.468	-.105
	문화예술	.015	.056	1.000	-.144	.174
	종교법인	.187	.090	.376	-.066	.440
학교법인	의료법인	.585*	.067	.000	.396	.774
	사회복지	.287*	.064	.000	.105	.468
	문화예술	.302*	.068	.000	.110	.494
	종교법인	.474*	.097	.000	.200	.748
문화예술	의료법인	.284*	.059	.000	.119	.448
	사회복지	-.015	.056	1.000	-.174	.144
	학교법인	-.302*	.068	.000	-.494	-.110
	종교법인	.172	.092	.627	-.088	.432
종교법인	의료법인	.111	.091	1.000	-.146	.369
	사회복지	-.187	.090	.376	-.440	.066
	학교법인	-.474*	.097	.000	-.748	-.200
	문화예술	-.172	.092	.627	-.432	.088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 Bonferroni

3) 전체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을 모두 합한 전체 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연령과 근무연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과 근무연수와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전체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모델에서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무연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무원 근무기간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체 책무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전체 책무성에 대한 평

가점수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비교를 통한 담당공무원의 비영리유형별 전체책무성의 인식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야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에서와 같이, 의료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그리고 문화예술법인과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과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과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학교법인과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교법인의 경우는 학교법인과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4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수정 모형	24.962 ^a	6	4.160	14.467	.000	.115
절편	134.109	1	134.109	466.346	.000	.411
연령	.723	1	.723	2.513	.113	.004
근무년수	2.175	1	2.175	7.563	.006	.011
분야	21.571	4	5.393	18.752	.000	.101
오차	191.812	667	.288			
합계	8959.135	674				
수정 합계	216.774	673				

a. R 제공 = .115 (수정된 R 제공 = .107)

〈표 4-44〉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공
					하한값	상한값	
절편	3.635	.188	19.301	.000	3.265	4.005	.358
연령	-.009	.005	-1.585	.113	-.019	.002	.004
근무년수	.013	.005	2.750	.006	.004	.022	.011
[분야=1]	-.103	.094	-1.098	.273	-.287	.081	.002
[분야=2]	.178	.092	1.932	.054	-.003	.359	.006
[분야=3]	.475	.100	4.750	.000	.278	.671	.033
[분야=4]	.171	.095	1.806	.071	-.015	.357	.005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4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3674	3.368	.040	3.288	3.447
사회복지	3.6494	3.649	.038	3.574	3.723
교육	3.9251	3.945	.055	3.837	4.053
문화예술	3.6539	3.642	.044	3.555	3.729
종교	3.4736	3.471	.084	3.306	3.636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연령 = 42.70, 근무년수 = 16.24.

〈표 4-46〉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281*	.056	.000	-.438	-.124
	학교법인	-.578*	.069	.000	-.773	-.382
	문화예술	-.274*	.061	.000	-.445	-.104
	종교법인	-.103	.094	1.000	-.367	.161
사회복지	의료법인	.281*	.056	.000	.124	.438
	학교법인	-.297*	.067	.000	-.484	-.109
	문화예술	.007	.058	1.000	-.158	.171
	종교법인	.178	.092	.538	-.081	.437
학교법인	의료법인	.578*	.069	.000	.382	.773
	사회복지	.297*	.067	.000	.109	.484
	문화예술	.303*	.071	.000	.104	.502
	종교법인	.475*	.100	.000	.193	.756
문화예술	의료법인	.274*	.061	.000	.104	.445
	사회복지	-.007	.058	1.000	-.171	.158
	학교법인	-.303*	.071	.000	-.502	-.104
	종교법인	.171	.095	.713	-.096	.438
종교법인	의료법인	.103	.094	1.000	-.161	.367
	사회복지	-.178	.092	.538	-.437	.081
	학교법인	-.475*	.100	.000	-.756	-.193
	문화예술	-.171	.095	.713	-.438	.096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Bonferroni

제3절 비영리법인 직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 조사대상기관의 특성

본 연구의 비영리법인의 조사대상 표본집단은 2,000여개였으며, 이 중 조사완료 된 비영리법인 수는 1,107개였다. 이 중 의료법인이 25.4%, 사회복지법인이 34.2%, 학교법인이 20.2%, 문화예술법인이 11.7%, 그리고 종교법인이 8.5%로 구성되었다. 설립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법인이 설립한 경우가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19.0%), 국가(8.9%) 순으로 구성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조직의 규모별로 보면, 먼저 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99명 이하가 24.9%, 100~999명이 31.9%, 1,000~3,999명이 18.1%, 4,000명 이상이 25.1%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직원규모를 보면, 법인과 기관을 포함한 전체인력이 14명 이하는 21.8%, 15~39명은 28.7%, 40~99명은 22.2%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00명 이상은 27.4%였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산별 규모는 9천만 원 미만이 23.5%, 9천만~4억 원 미만이 27.1%, 4억~40억 미만이 22.9%, 그리고 40억 이상인 경우는 26.5%였다. 비영리법인의 수입분포는 5천만 원 미만이 20.7%, 5천만 원~10억 원 미만이 33.7%, 10억 원~50억 원 미만이 21.0%,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 24.6%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 확보의 측면을 수익배분정도,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로 살펴보았다. 우선 수익배분실태를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영리법인이 58.0%로 조사되었다. 비영리법인을 해산 할 때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 등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응답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경우가 동일하게 35.0%로 나타났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증여하겠다는 비영리법

인의 경우가 21.8%, 그리고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에 증여하겠다는 경우도 8.2%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법률이나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수익추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영리법인이 58.7%였고, 반면 수익추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영리법인인은 41.3%였다.

〈표 4-47〉 조사대상 비영리법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조직특성	비영리법인 분야	의료법인	281	25.4
		사회복지	379	34.2
		학교법인	224	20.2
		문화법인	129	11.7
		종교법인	94	8.5
	설립주체	국가설립	98	8.9
		법인설립	799	72.2
		개인설립	210	19.0
	조직규모	월평균 이용자수	0~99명	276
100~999명			353	31.9
1,000~3,999명			200	18.1
4,000명 이상			278	25.1
인력규모 (법인+기관)		0~14명	241	21.8
		15~39명	317	28.7
		40~99명	245	22.2
		100명 이상	303	27.4
조직규모		출연자산규모	9천만원 미만	260
	9천만~4억원 미만		299	27.1
	4억~40억원 미만		253	22.9
	40억원 이상		293	26.5
	수입규모 (정부+민간+법인 등)	5천원 미만	224	20.7
		5천~10억원 미만	364	33.7
		10억~50억원 미만	227	21.0
		50억원 이상	266	24.6

구분		빈도	백분율(%)	
비영리성 확보	수익분배정도	없음	641	58.0
		1~9%	130	11.8
		10~49%	161	14.6
		50%이상	173	15.7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91	8.2
		정관의 규정에 따름	387	35.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88	35.0
		다른 법인에 증여	241	21.8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	예	17	41.3
		아니오	74	58.7

2. 비영리법인 직원의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크게 2가지 개념인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되어있다. 이를 다시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이라는 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세부 항목은 각 6가지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전에 조사항목인 책무성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여 책무성의 항목별로 Cronbach- α 를 포함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책무성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인 검증분석 하였다.

가. 신뢰성 분석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조사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신뢰성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Cronbach- α 를 추정하였다. 먼저 내부적 책무성의 신뢰도는 0.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적 책무성의 각 항목들도 가장 낮은 민주성(0.784)에서부터 가장 높은 투명성(0.880)까지 전반적으로 높았다. 외부적 책무성의 신뢰도 역시 0.9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외부적 책무성의 각 항목들 역시 가장 낮은 전문성(0.838)에서 가장 높은 대표성(0.863)까지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모든 항목을 합한 책무성의 신뢰도 역시 0.96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4-48〉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요인명	설문항목 수	Cronbach- α
민주성	6	0.784
투명성	6	0.880
효율성	6	0.869
형평성	6	0.871
내부적 책무성	24	0.935
합법성	6	0.841
대표성	6	0.862
전문성	6	0.837
반응성	6	0.789
외부적 책무성	24	0.928
책무성	48	0.960

나. 비영리법인 조직특성별 책무성 차이 분석

비영리 법인의 설립주체별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국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4.0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3.97를 나타냈으며, 이에 비해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3.87로 가장 낮은 책무성을 보였다. 책무성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

성과 외부 책무성은 국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았고, 반면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외부책무성 중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만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국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의 책무성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순으로 책무성의 평가점수가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형태에 따른 책무성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ANOVA)결과를 보면, 설립형태별 내부책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내부책무성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민주성과 형평성을 제외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설립형태별 외부책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내부책무성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합법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세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설립형태별 내부책무성과 외부책무성을 합한 전체책무성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설립형태별로 책무성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책무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개인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책무성의 세부항목별로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특히 감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49) 설립주체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국가	98	3.86	.579	.058	3.74	3.97	3	5
	법인	799	3.77	.591	.021	3.73	3.81	2	5
	개인	210	3.69	.651	.045	3.61	3.78	2	5
	합계	1107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국가	98	4.19	.509	.051	4.09	4.29	3	5
	법인	798	4.10	.613	.022	4.05	4.14	1	5
	개인	210	3.82	.704	.049	3.73	3.92	2	5
	합계	1106	4.05	.632	.019	4.01	4.09	1	5
효율성	국가	98	3.93	.475	.048	3.84	4.03	3	5
	법인	799	3.83	.586	.021	3.79	3.87	2	5
	개인	210	3.69	.681	.047	3.60	3.79	2	6
	합계	1107	3.81	.599	.018	3.78	3.85	2	6
형평성	국가	98	4.07	.538	.054	3.96	4.17	2	5
	법인	799	4.02	.608	.022	3.98	4.07	1	5
	개인	210	4.00	.630	.043	3.91	4.08	2	5
	합계	1107	4.02	.606	.018	3.99	4.06	1	5
내부 책무	국가	98	4.01	.445	.045	3.92	4.10	3	5
	법인	799	3.93	.498	.018	3.89	3.96	2	5
	개인	210	3.80	.575	.040	3.72	3.88	2	5
	합계	1107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국가	98	4.42	.475	.048	4.32	4.52	3	5
	법인	799	4.38	.506	.018	4.35	4.42	2	5
	개인	210	4.25	.538	.037	4.18	4.32	3	5
	합계	1107	4.36	.512	.015	4.33	4.39	2	5
대표성	국가	98	4.06	.499	.050	3.96	4.16	3	5
	법인	799	4.08	.518	.018	4.04	4.11	3	5
	개인	210	4.05	.607	.042	3.96	4.13	2	6
	합계	1107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국가	98	3.68	.530	.053	3.57	3.79	2	5
	법인	799	3.70	.614	.022	3.66	3.74	2	5
	개인	210	3.63	.646	.045	3.54	3.71	2	6
	합계	1107	3.68	.613	.018	3.65	3.72	2	6
반응성	국가	98	3.97	.520	.053	3.87	4.08	3	5
	법인	798	3.85	.517	.018	3.82	3.89	2	5
	개인	210	3.82	.581	.040	3.74	3.90	2	5
	합계	1106	3.86	.531	.016	3.83	3.89	2	5

20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외부적 책무성	국가	98	4.03	.425	.043	3.95	4.12	3	5
	법인	799	4.00	.454	.016	3.97	4.03	3	5
	개인	210	3.94	.488	.034	3.87	4.00	2	5
	합계	1107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국가	98	4.02	.413	.042	3.94	4.10	3	5
	법인	799	3.97	.452	.016	3.93	4.00	3	5
	개인	210	3.87	.507	.035	3.80	3.94	2	5
	합계	1107	3.95	.461	.014	3.93	3.98	2	5

<표 4-50> 설립주체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민주성	집단-간	13.636	4	3.409	10.345	.000
	집단-내	220.462	669	.330		
	합계	234.098	673			
투명성	집단-간	41.015	4	10.254	22.622	.000
	집단-내	303.241	669	.453		
	합계	344.256	673			
효율성	집단-간	18.302	4	4.575	12.033	.000
	집단-내	254.387	669	.380		
	합계	272.688	673			
형평성	집단-간	8.786	4	2.196	6.335	.000
	집단-내	231.277	667	.347		
	합계	240.062	671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856	2	.928	2.563	.078
	집단-내	399.708	1104	.362		
	합계	401.564	1106			
합법성	집단-간	14.199	2	7.099	18.306	.000
	집단-내	427.750	1103	.388		
	합계	441.948	1105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대표성	집단-간	4.655	2	2.327	6.543	.001
	집단-내	392.725	1104	.356		
	합계	397.379	1106			
전문성	집단-간	.345	2	.172	.469	.626
	집단-내	406.065	1104	.368		
	합계	406.410	1106			
반응성	집단-간	3.718	2	1.859	7.180	.001
	집단-내	285.844	1104	.259		
	합계	289.562	1106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3.427	2	1.714	6.603	.001
	집단-내	286.501	1104	.260		
	합계	289.928	1106			
책무성	집단-간	.172	2	.086	.302	.740
	집단-내	314.939	1104	.285		
	합계	315.111	1106			

다. 비영리법인의 조직규모별 책무성 차이분석

비영리법인의 조직규모별 책무성의 차이는 시설의 이용자수의 측면에서 보았다. 시설의 이용자수에 따른 내부책무성과 외부책무성을 합한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시설이용자수가 99명 이하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4.0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시설 이용자수가 1,000~3,999명 이하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 3.91로 가장 낮은 책무성을 보였다. 책무성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의 경우도 시설 이용자 수가 99명 이하인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았지만, 내부 책무성의 경우는 시설이용자 수가 1,000~3,999명 이하인 비영리법인의 경우가, 외부 책무성의 경우는 100~999명 이하인 비영리법인의 경우가 책무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부책무성의 경우 모두 99명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명성의 경우만

100~999명 이하일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고, 모두 1,000~ 3,999명 이하일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99명 이하로 이용자수가 가장 적은 편인 경우에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더 잘 갖추어져 있고, 재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활동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계획된 대로 더 잘 진행하는 하고, 구성원간의 차별 또한 더 적은 것이다. 한편 외부 책무성의 경우는 합법성과 대표성의 경우 99명 이하가 가장 높고, 전문성과 반응성은 4,000명 이상일 경우가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수가 적은 경우에 좀 더 합법적으로 각 비영리 분야의 활동을 하고,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법인이나 타 기관 및 정부, 언론사와의 교류나 협력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성과 반응성을 제외하고는 99명 이하일 경우 책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요인별로 보면, 민주성과 형평성을 제외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은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적 책무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세부 요인을 보면, 합법성만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책무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 의료법인, 학교법인 기관이 각각 34.2%, 25.4%, 20.2%를 차지하고, 종교법인나 문화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이 종교법인나 문화 분야의 경향성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다소 감안하여 결과를 볼 필요성이 있다.

〈표 4-51〉 월 이용자수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0~99	276	3.82	.620	.037	3.74	3.89	2	5
	100~999	353	3.73	.586	.031	3.67	3.79	2	5
	1,000~3,999	200	3.71	.628	.044	3.62	3.80	2	5
	4,000이상	278	3.79	.584	.035	3.72	3.86	2	5
	합계	1107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0~99	276	4.15	.613	.037	4.08	4.22	3	5
	100~999	353	3.99	.606	.032	3.93	4.06	1	5
	1,000~3,999	200	4.01	.663	.047	3.92	4.10	2	5
	4,000이상	277	4.06	.652	.039	3.98	4.14	2	5
	합계	1106	4.05	.632	.019	4.01	4.09	1	5
효율성	0~99	276	3.89	.577	.035	3.82	3.96	3	5
	100~999	353	3.81	.615	.033	3.75	3.88	2	5
	1,000~3,999	200	3.73	.617	.044	3.64	3.81	2	5
	4,000이상	278	3.80	.582	.035	3.73	3.87	2	6
	합계	1107	3.81	.599	.018	3.78	3.85	2	6
행평성	0~99	276	4.07	.639	.038	3.99	4.15	1	5
	100~999	353	4.03	.609	.032	3.97	4.09	2	5
	1,000~3,999	200	3.96	.583	.041	3.88	4.04	2	5
	4,000이상	278	4.01	.584	.035	3.94	4.08	2	5
	합계	1107	4.02	.606	.018	3.99	4.06	1	5
내부책무	0~99	276	3.98	.509	.031	3.92	4.04	3	5
	100~999	353	3.89	.511	.027	3.84	3.94	2	5
	1,000~3,999	200	3.85	.531	.038	3.78	3.93	2	5
	4,000이상	278	3.91	.496	.030	3.85	3.97	3	5
	합계	1107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0~99	276	4.43	.528	.032	4.37	4.49	2	5
	100~999	353	4.32	.525	.028	4.27	4.38	3	5
	1,000~3,999	200	4.33	.485	.034	4.26	4.40	3	5
	4,000이상	278	4.36	.494	.030	4.31	4.42	3	5
	합계	1107	4.36	.512	.015	4.33	4.39	2	5

20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대표성	0~99	276	4.11	.542	.033	4.05	4.18	3	5
	100~999	353	4.05	.548	.029	3.99	4.11	2	6
	1,000~3,999	200	4.10	.505	.036	4.03	4.17	3	5
	4,000이상	278	4.04	.526	.032	3.97	4.10	3	5
	합계	1107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0~99	276	3.71	.622	.037	3.64	3.78	2	5
	100~999	353	3.65	.632	.034	3.58	3.71	2	5
	1,000~3,999	200	3.66	.572	.040	3.58	3.74	2	5
	4,000이상	278	3.73	.608	.036	3.66	3.80	2	6
	합계	1107	3.68	.613	.018	3.65	3.72	2	6
반응성	0~99	276	3.84	.569	.034	3.78	3.91	2	5
	100~999	353	3.86	.538	.029	3.80	3.91	2	5
	1,000~3,999	200	3.82	.501	.035	3.75	3.89	3	5
	4,000이상	277	3.90	.501	.030	3.84	3.96	3	5
	합계	1106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재무무성	0~99	276	4.02	.469	.028	3.97	4.08	3	5
	100~999	353	3.97	.470	.025	3.92	4.02	2	5
	1,000~3,999	200	3.98	.427	.030	3.92	4.04	3	5
	4,000이상	278	4.00	.456	.027	3.95	4.06	3	5
	합계	1107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0~99	276	4.00	.466	.028	3.95	4.06	3	5
	100~999	353	3.93	.467	.025	3.88	3.98	2	5
	1,000~3,999	200	3.91	.453	.032	3.85	3.98	3	5
	4,000이상	278	3.96	.453	.027	3.90	4.01	3	5
	합계	1107	3.95	.461	.014	3.93	3.98	2	5

〈표 4-52〉 월 이용자수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민주성	집단-간	1.972	3	.657	1.814	.143
	집단-내	399.592	1103	.362		
	합계	401.564	1106			
투명성	집단-간	4.324	3	1.441	3.629	.013
	집단-내	437.624	1102	.397		
	합계	441.948	1105			
효율성	집단-간	3.251	3	1.084	3.033	.028
	집단-내	394.128	1103	.357		
	합계	397.379	1106			
형평성	집단-간	1.478	3	.493	1.342	.259
	집단-내	404.932	1103	.367		
	합계	406.410	1106			
내부책무	집단-간	2.258	3	.753	2.890	.034
	집단-내	287.304	1103	.260		
	합계	289.562	1106			
합법성	집단-간	2.078	3	.693	2.654	.047
	집단-내	287.850	1103	.261		
	합계	289.928	1106			
대표성	집단-간	1.113	3	.371	1.303	.272
	집단-내	313.998	1103	.285		
	합계	315.111	1106			
전문성	집단-간	1.402	3	.467	1.243	.293
	집단-내	414.549	1103	.376		
	합계	415.950	1106			
반응성	집단-간	.831	3	.277	.985	.399
	집단-내	310.160	1102	.281		
	합계	310.991	11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569	3	.190	.901	.440
	집단-내	232.059	1103	.210		
	합계	232.627	1106			
책무성	집단-간	1.199	3	.400	1.882	.131
	집단-내	234.250	1103	.212		
	합계	235.449	1106			

다음 표에서는 인력별 책무성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 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인력 규모에 따른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이 3.99로 가장 높고, 40명 이상 99명 이하일 경우가 3.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으로 나뉘 본 경우에도 100명 이상의 경우가 가장 높고, 40명 이상 99명 이하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무성 요인별로는 먼저 내부 책무성의 경우 민주성, 투명성은 100명 이상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효율성은 15명 이상 39명 이하일 경우 형평성의 경우는 14명 이하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은 모두 40명 이상 99명 이하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난데 비해 형평성은 100명 이상일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인력이 많아질수록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력 규모가 가장 많은 편인 경우에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더 잘 갖추어져 있고, 재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활동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계획된 대로 더 잘 진행하는 경우는 15명 이상 39명 미만의 인력이 종사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인원이 14명 이하로 가장 적은 경우에, 구성원간의 차별 또한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책무성의 요인별로는 대표성만 14명 이하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은 100명 이상일 경우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합법성은 14명 이하일 경우가 가장 낮고, 대표성은 40명 이상 99명 이하일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전문성과 반응성은 15명 이상 39명 이하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경우는 인원이 가장 적은 14명 미만일 경우이지만, 종사 인원이 가장 많은 경우에 좀 더 합법적으로 각 비영리 분야의 활동을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

한 학교법인이나 타 기관 및 정부, 언론사와의 교류나 협력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 전체 책무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요인별로 보면, 내부 책무성의 투명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외부적 책무성의 전문성은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규모와 책무성의 차이는 각 책무성 요인별로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 의료법인, 학교법인, 문화, 종교법인 각 분야 별로 차별성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그 차이성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 4-53〉 인력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0~14	241	3.75	.614	.040	3.67	3.83	2	5
	15~39	317	3.76	.603	.034	3.70	3.83	2	5
	40~99	245	3.70	.593	.038	3.62	3.77	2	5
	100이상	303	3.82	.599	.034	3.75	3.89	2	5
	합계	1106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0~14	241	4.04	.694	.045	3.95	4.13	1	5
	15~39	317	4.11	.597	.034	4.04	4.17	2	5
	40~99	245	3.90	.607	.039	3.83	3.98	3	5
	100이상	302	4.12	.620	.036	4.05	4.19	2	5
	합계	1105	4.05	.632	.019	4.01	4.09	1	5
효율성	0~14	241	3.82	.619	.040	3.74	3.90	2	5
	15~39	317	3.85	.590	.033	3.79	3.92	2	5
	40~99	245	3.75	.593	.038	3.68	3.83	2	5
	100이상	303	3.82	.598	.034	3.75	3.89	2	6
	합계	1106	3.81	.599	.018	3.78	3.85	2	6
형평성	0~14	241	4.05	.586	.038	3.97	4.12	2	5
	15~39	317	4.02	.633	.036	3.95	4.09	2	5
	40~99	245	4.03	.555	.035	3.96	4.10	1	5
	100이상	303	4.00	.636	.037	3.93	4.07	2	5
	합계	1106	4.02	.606	.018	3.99	4.06	1	5

2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내부 책무	0~14	241	3.91	.540	.035	3.85	3.98	2	5
	15~39	317	3.93	.501	.028	3.88	3.99	2	5
	40~99	245	3.85	.477	.030	3.79	3.91	2	5
	100이상	303	3.94	.525	.030	3.88	4.00	2	5
	합계	1106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0~14	241	4.34	.521	.034	4.27	4.40	3	5
	15~39	317	4.35	.546	.031	4.29	4.41	2	5
	40~99	245	4.34	.489	.031	4.28	4.41	3	5
	100이상	303	4.40	.487	.028	4.35	4.46	3	5
	합계	1106	4.36	.512	.015	4.33	4.39	2	5
대표성	0~14	241	4.09	.545	.035	4.02	4.16	3	6
	15~39	317	4.08	.553	.031	4.02	4.15	2	5
	40~99	245	4.03	.489	.031	3.97	4.09	3	5
	100이상	303	4.07	.540	.031	4.01	4.13	3	5
	합계	1106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0~14	241	3.68	.614	.040	3.60	3.76	2	5
	15~39	317	3.64	.611	.034	3.57	3.70	2	5
	40~99	245	3.64	.576	.037	3.57	3.72	2	5
	100이상	303	3.77	.638	.037	3.70	3.85	2	6
	합계	1106	3.68	.614	.018	3.65	3.72	2	6
반응성	0~14	241	3.87	.562	.036	3.80	3.94	2	5
	15~39	317	3.82	.528	.030	3.76	3.88	2	5
	40~99	245	3.83	.503	.032	3.77	3.89	3	5
	100이상	302	3.91	.528	.030	3.85	3.97	3	5
	합계	1105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 책무성	0~14	241	3.99	.455	.029	3.94	4.05	3	5
	15~39	317	3.97	.469	.026	3.92	4.02	2	5
	40~99	245	3.96	.420	.027	3.91	4.02	3	5
	100이상	303	4.04	.480	.028	3.98	4.09	3	5
	합계	1106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0~14	241	3.95	.472	.030	3.89	4.01	3	5
	15~39	317	3.95	.463	.026	3.90	4.01	2	5
	40~99	245	3.90	.424	.027	3.85	3.96	3	5
	100이상	303	3.99	.480	.028	3.93	4.04	3	5
	합계	1106	3.95	.462	.014	3.92	3.98	2	5

〈표 4-54〉 인력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민주성	집단-간	2.112	3	.704	1.943	.121
	집단-내	399.289	1102	.362		
	합계	401.401	1105			
투명성	집단-간	7.799	3	2.600	6.598	.000
	집단-내	433.771	1101	.394		
	합계	441.570	1104			
효율성	집단-간	1.377	3	.459	1.278	.280
	집단-내	395.733	1102	.359		
	합계	397.110	1105			
형평성	집단-간	.368	3	.123	.333	.801
	집단-내	406.041	1102	.368		
	합계	406.409	1105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380	3	.460	1.760	.153
	집단-내	288.037	1102	.261		
	합계	289.418	1105			
합법성	집단-간	.782	3	.261	.994	.395
	집단-내	289.127	1102	.262		
	합계	289.909	1105			
대표성	집단-간	.568	3	.189	.664	.574
	집단-내	314.380	1102	.285		
	합계	314.948	1105			
전문성	집단-간	3.531	3	1.177	3.145	.024
	집단-내	412.418	1102	.374		
	합계	415.950	1105			
반응성	집단-간	1.547	3	.516	1.834	.139
	집단-내	309.424	1101	.281		
	합계	310.971	1104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945	3	.315	1.499	.213
	집단-내	231.681	1102	.210		
	합계	232.626	1105			
책무성	집단-간	.918	3	.306	1.438	.230
	집단-내	234.501	1102	.213		
	합계	235.419	1105			

다음 표에서는 출연자산별 책무성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출연자산 규모에 따른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9천만 미만 일 경우가 3.82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억 이상이 3.81, 1천만 이상 4억 미만일 경우가 3.77, 그리고 4억 이상 40억 미만의 경우가 3.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으로 나뉘 본 경우에도 9천만 미만일 경우가 가장 높고, 4억 이상 40억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무성 요인별로는 내부 책무성의 형평성만 1천만 원 이상 4억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 요인별로 모두 9천만 미만일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요인 모두 4억 이상 40억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출연자산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더 잘 갖추어져 있고, 재정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활동의 효율성도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합법적으로 종교법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법인 등이 더 용이하며, 일반 공익을 대표한다든지, 타 기관 및 언론사와의 교류 등에 있어서도 출연자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 전체 책무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 보면, 내부적 책무성은 형평성을 제외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외부적 책무성의 경우는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은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55〉 출연자산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9천만 미만	260	3.82	.647	.040	3.74	3.90	2	5
	1천만~4억 미만	299	3.77	.584	.034	3.70	3.83	2	5
	4억~40억 미만	253	3.64	.598	.038	3.56	3.71	2	5
	40억 이상	293	3.81	.573	.033	3.75	3.88	2	5
	합계	1105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9천만 미만	260	4.13	.642	.040	4.05	4.21	2	5
	1천만~4억 미만	298	4.02	.647	.037	3.94	4.09	1	5
	4억~40억 미만	253	3.93	.625	.039	3.85	4.01	2	5
	40억 이상	293	4.12	.599	.035	4.05	4.19	2	5
	합계	1104	4.05	.633	.019	4.01	4.09	1	5
효율성	9천만 미만	260	3.92	.632	.039	3.84	4.00	2	6
	1천만~4억 미만	299	3.84	.632	.037	3.77	3.91	2	5
	4억~40억 미만	253	3.70	.574	.036	3.63	3.77	2	5
	40억 이상	293	3.79	.541	.032	3.73	3.86	2	5
	합계	1105	3.81	.600	.018	3.78	3.85	2	6
형평성	9천만 미만	260	4.03	.649	.040	3.95	4.11	2	5
	1천만~4억 미만	299	4.06	.576	.033	4.00	4.13	1	5
	4억~40억 미만	253	3.95	.584	.037	3.88	4.02	2	5
	40억 이상	293	4.04	.615	.036	3.97	4.11	2	5
	합계	1105	4.02	.607	.018	3.99	4.06	1	5
내부 책무	9천만 미만	260	3.97	.554	.034	3.91	4.04	2	5
	1천만~4억 미만	299	3.92	.509	.029	3.86	3.98	2	5
	4억~40억 미만	253	3.81	.487	.031	3.75	3.87	3	5
	40억 이상	293	3.94	.485	.028	3.89	4.00	2	5
	합계	1105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9천만 미만	260	4.42	.518	.032	4.36	4.49	2	5
	1천만~4억 미만	299	4.34	.528	.031	4.27	4.40	3	5
	4억~40억 미만	253	4.30	.520	.033	4.23	4.36	3	5
	40억 이상	293	4.39	.478	.028	4.34	4.45	3	5
	합계	1105	4.36	.512	.015	4.33	4.39	2	5

21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대표성	9천만 미만	260	4.16	.521	.032	4.09	4.22	3	5
	1천만~4억 미만	299	4.08	.545	.032	4.02	4.15	3	5
	4억~40억 미만	253	4.00	.537	.034	3.93	4.07	3	5
	40억 이상	293	4.04	.522	.030	3.98	4.10	2	6
	합계	1105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9천만 미만	260	3.75	.638	.040	3.68	3.83	2	6
	1천만~4억 미만	299	3.66	.598	.035	3.60	3.73	2	5
	4억~40억 미만	253	3.60	.610	.038	3.52	3.67	2	5
	40억 이상	293	3.72	.603	.035	3.65	3.79	2	5
	합계	1105	3.68	.614	.018	3.65	3.72	2	6
반응성	9천만 미만	260	3.93	.552	.034	3.86	4.00	2	5
	1천만~4억 미만	298	3.83	.508	.029	3.77	3.89	3	5
	4억~40억 미만	253	3.80	.507	.032	3.74	3.87	3	5
	40억 이상	293	3.87	.550	.032	3.80	3.93	2	5
	합계	1104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 책무성	9천만 미만	260	4.07	.470	.029	4.01	4.12	3	5
	1천만~4억 미만	299	3.98	.448	.026	3.93	4.03	3	5
	4억~40억 미만	253	3.92	.451	.028	3.87	3.98	3	5
	40억 이상	293	4.00	.460	.027	3.95	4.06	2	5
	합계	1105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9천만 미만	260	4.02	.489	.030	3.96	4.08	3	5
	1천만~4억 미만	299	3.95	.454	.026	3.89	4.00	3	5
	4억~40억 미만	253	3.86	.445	.028	3.81	3.92	3	5
	40억 이상	293	3.97	.449	.026	3.92	4.02	2	5
	합계	1105	3.95	.462	.014	3.92	3.98	2	5

〈표 4-56〉 출연자산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민주성	집단-간	5.473	3	1.824	5.073	.002
	집단-내	395.872	1101	.360		
	합계	401.344	1104			
투명성	집단-간	7.298	3	2.433	6.162	.000
	집단-내	434.269	1100	.395		
	합계	441.568	1103			
효율성	집단-간	6.256	3	2.085	5.876	.001
	집단-내	390.755	1101	.355		
	합계	397.011	1104			
형평성	집단-간	1.857	3	.619	1.686	.168
	집단-내	404.323	1101	.367		
	합계	406.180	1104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4.150	3	1.383	5.340	.001
	집단-내	285.259	1101	.259		
	합계	289.410	1104			
합법성	집단-간	2.477	3	.826	3.163	.024
	집단-내	287.431	1101	.261		
	합계	289.908	1104			
대표성	집단-간	3.642	3	1.214	4.298	.005
	집단-내	310.950	1101	.282		
	합계	314.592	1104			
전문성	집단-간	3.716	3	1.239	3.309	.020
	집단-내	412.233	1101	.374		
	합계	415.950	1104			
반응성	집단-간	2.291	3	.764	2.722	.043
	집단-내	308.644	1100	.281		
	합계	310.934	1103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2.702	3	.901	4.313	.005
	집단-내	229.916	1101	.209		
	합계	232.618	1104			
책무성	집단-간	3.268	3	1.089	5.167	.002
	집단-내	232.143	1101	.211		
	합계	235.411	1104			

다음 표에서는 수입별 책무성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 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입 규모에 따른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가 3.80으로 가장 높고,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3.78, 50억 이상이 3.74,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이 3.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으로 나뉘 본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가 가장 높고, 5천만 원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무성 요인별로는 모든 요인별로 다 5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 책무성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50억 이상이, 외부 책무성의 대표성은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각각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그 외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모두 5천만 원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수입이 5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 정도 되는 경우에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더 잘 갖추어져 있고, 재정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활동의 효율성이나 구성원 간 차별성에 있어서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합법적으로 종교법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법인 등이 더 용이하며, 일반 공익을 대표한다든지, 타 기관 및 언론사와의 교류 등에 있어서도 출연자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요인별로 보면, 민주성을 제외하고,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책무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요인별로는 전문성을 제외하고, 합법성, 대표성, 반응성은 5% 오차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책무성은 5% 오차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모에 따라 책무성을 분석해본 결과 5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 정도 되는 경우에 모든 요인별로 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일정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 의료법인, 학교법인 기관이 각각 34.2%, 25.4%, 20.2%를 차지하고, 종교법인나 문화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이 종교법인나 문화 분야의 경향성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다소 감안하여 결과를 볼 필요성이 있다.

〈표 4-57〉 수입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5천 미만	224	3.69	.595	.040	3.62	3.77	2	5
	5천~10억 미만	364	3.80	.617	.032	3.73	3.86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78	.609	.040	3.70	3.86	2	5
	50억 이상	266	3.74	.581	.036	3.67	3.81	2	5
	합계	1081	3.76	.603	.018	3.72	3.79	2	5
투명성	5천 미만	224	3.93	.675	.045	3.84	4.02	1	5
	5천~10억 미만	364	4.11	.627	.033	4.05	4.18	3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4.06	.604	.040	3.98	4.14	2	5
	50억 이상	265	4.05	.626	.038	3.97	4.12	2	5
	합계	1080	4.05	.635	.019	4.01	4.08	1	5
효율성	5천 미만	224	3.74	.620	.041	3.66	3.83	2	5
	5천~10억 미만	364	3.90	.609	.032	3.84	3.96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84	.583	.039	3.76	3.92	2	5
	50억 이상	266	3.73	.582	.036	3.66	3.81	2	6
	합계	1081	3.81	.603	.018	3.78	3.85	2	6
형평성	5천 미만	224	4.00	.631	.042	3.92	4.09	1	5
	5천~10억 미만	364	4.11	.587	.031	4.05	4.17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4.01	.594	.039	3.94	4.09	2	5
	50억 이상	266	3.94	.613	.038	3.87	4.02	2	5
	합계	1081	4.02	.607	.018	3.99	4.06	1	5

22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내부채무	5천 미만	224	3.84	.529	.035	3.77	3.91	2	5
	5천~10억 미만	364	3.98	.507	.027	3.93	4.03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92	.502	.033	3.86	3.99	2	5
	50억 이상	266	3.86	.509	.031	3.80	3.92	2	5
	합계	1081	3.91	.513	.016	3.88	3.94	2	5
합법성	5천 미만	224	4.27	.502	.034	4.20	4.33	3	5
	5천~10억 미만	364	4.40	.530	.028	4.35	4.46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4.38	.514	.034	4.32	4.45	3	5
	50억 이상	266	4.37	.489	.030	4.32	4.43	3	5
	합계	1081	4.36	.513	.016	4.33	4.39	2	5
대표성	5천 미만	224	4.06	.524	.035	3.99	4.13	3	5
	5천~10억 미만	364	4.15	.547	.029	4.09	4.20	3	6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4.02	.519	.034	3.96	4.09	3	5
	50억 이상	266	4.03	.523	.032	3.97	4.10	2	5
	합계	1081	4.08	.532	.016	4.04	4.11	2	6
전문성	5천 미만	224	3.66	.598	.040	3.58	3.74	2	5
	5천~10억 미만	364	3.71	.643	.034	3.64	3.77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67	.587	.039	3.59	3.74	2	5
	50억 이상	266	3.69	.612	.038	3.62	3.77	2	6
	합계	1081	3.69	.614	.019	3.65	3.72	2	6
반응성	5천 미만	224	3.78	.558	.037	3.70	3.85	2	5
	5천~10억 미만	364	3.92	.525	.027	3.87	3.98	2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85	.507	.034	3.79	3.92	3	5
	50억 이상	265	3.85	.520	.032	3.79	3.91	2	5
	합계	1080	3.86	.529	.016	3.83	3.89	2	5
외부적채무성	5천 미만	224	3.94	.443	.030	3.88	4.00	3	5
	5천~10억 미만	364	4.04	.463	.024	4.00	4.09	3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98	.453	.030	3.92	4.04	3	5
	50억 이상	266	3.98	.459	.028	3.93	4.04	2	5
	합계	1081	4.00	.457	.014	3.97	4.02	2	5
채무성	5천 미만	224	3.89	.458	.031	3.83	3.95	3	5
	5천~10억 미만	364	4.01	.462	.024	3.96	4.06	3	5
	10억 이상~50억 미만	227	3.95	.456	.030	3.89	4.01	3	5
	50억 이상	266	3.92	.461	.028	3.87	3.98	2	5
	합계	1081	3.95	.462	.014	3.93	3.98	2	5

〈표 4-58〉 수입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민주성	집단-간	1.618	3	.539	1.488	.216
	집단-내	390.534	1077	.363		
	합계	392.153	1080			
투명성	집단-간	4.673	3	1.558	3.895	.009
	집단-내	430.370	1076	.400		
	합계	435.043	1079			
효율성	집단-간	5.497	3	1.832	5.101	.002
	집단-내	386.852	1077	.359		
	합계	392.348	1080			
형평성	집단-간	4.407	3	1.469	4.025	.007
	집단-내	393.030	1077	.365		
	합계	397.437	1080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3.349	3	1.116	4.278	.005
	집단-내	281.092	1077	.261		
	합계	284.441	1080			
합법성	집단-간	2.666	3	.889	3.402	.017
	집단-내	281.346	1077	.261		
	합계	284.013	1080			
대표성	집단-간	2.866	3	.955	3.393	.017
	집단-내	303.234	1077	.282		
	합계	306.100	1080			
전문성	집단-간	.402	3	.134	.355	.786
	집단-내	406.669	1077	.378		
	합계	407.071	1080			
반응성	집단-간	2.940	3	.980	3.528	.015
	집단-내	298.837	1076	.278		
	합계	301.777	1079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1.560	3	.520	2.500	.058
	집단-내	224.062	1077	.208		
	합계	225.622	1080			
책무성	집단-간	2.274	3	.758	3.583	.013
	집단-내	227.799	1077	.212		
	합계	230.073	1080			

라.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 확보 정도별 책무성 차이분석

다음 표에서는 수익분배정도별로 차이를 보이는 책무성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익분배정도에 따른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50 이상의 경우가 3.98로 가장 높고, 이어서 10~49의 경우가 3.97, 수익분배가 없는 경우가 3.96이었고, 1~9의 경우가 가장 낮은 3.88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 50이상일 경우가 가장 높고, 1~9일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외부 책무성의 경우에는 10~49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1~9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책무성 요인별로는 먼저 내부 책무성의 경우, 내부 책무성의 네 가지 요소 모두 50이상의 경우 가장 높고, 1~9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즉 수익분배 정도가 가장 큰 50이상의 경우에 적절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고, 재정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 예산 사업 집행의 효율성 구성원들 간의 평등은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외부 책무성의 네 가지 요소 모두 1~9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1~9의 경우는 모두 최하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50이상의 경우가 높았다. 1~9 정도의 수익분배가 허용된 경우에 가장 합법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반 공익을 대표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법인, 또는 타 비영리기관 및 정부, 언론사와의 교류나 협력정도 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수입분배정도에 따른 책무성의 각 요인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기관의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본질이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분배 정도가 가장 큰 경우에 있어 대체적으로 책무성 각 요소들이 높게 나온 것은 특이할 점이다.

〈표 4-59〉 수익분배정도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없음	641	3.75	.630	.025	3.70	3.80	2	5
	1~9	130	3.69	.607	.053	3.58	3.79	2	5
	10~49	161	3.79	.526	.041	3.71	3.87	2	5
	50이상	173	3.84	.560	.043	3.75	3.92	2	5
	합계	1105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없음	640	4.05	.655	.026	4.00	4.10	2	5
	1~9	130	3.98	.644	.056	3.86	4.09	2	5
	10~49	161	4.05	.586	.046	3.96	4.14	3	5
	50이상	173	4.11	.580	.044	4.02	4.19	1	5
	합계	1104	4.05	.633	.019	4.01	4.09	1	5
재무건정성	없음	641	3.82	.633	.025	3.77	3.87	2	6
	1~9	130	3.74	.587	.051	3.64	3.85	2	5
	10~49	161	3.83	.514	.041	3.75	3.91	3	5
	50이상	173	3.85	.554	.042	3.76	3.93	2	5
	합계	1105	3.81	.600	.018	3.78	3.85	2	6
경영평성	없음	641	4.03	.624	.025	3.99	4.08	1	5
	1~9	130	3.91	.641	.056	3.80	4.03	2	5
	10~49	161	4.04	.516	.041	3.96	4.12	2	5
	50이상	173	4.04	.589	.045	3.95	4.13	2	5
	합계	1105	4.02	.607	.018	3.99	4.06	1	5
내부책임	없음	641	3.91	.540	.021	3.87	3.95	2	5
	1~9	130	3.83	.505	.044	3.74	3.92	2	5
	10~49	161	3.93	.434	.034	3.86	3.99	3	5
	50이상	173	3.96	.475	.036	3.89	4.03	3	5
	합계	1105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없음	641	4.39	.522	.021	4.35	4.43	2	5
	1~9	130	4.31	.529	.046	4.22	4.40	3	5
	10~49	161	4.32	.470	.037	4.24	4.39	3	5
	50이상	173	4.33	.498	.038	4.26	4.41	3	5
	합계	1105	4.36	.512	.015	4.33	4.39	2	5

22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대표성	없음	641	4.07	.537	.021	4.03	4.11	2	6
	1~9	130	4.01	.582	.051	3.91	4.11	3	5
	10~49	161	4.09	.491	.039	4.01	4.17	3	5
	50이상	173	4.09	.524	.040	4.02	4.17	3	5
	합계	1105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없음	641	3.68	.625	.025	3.63	3.73	2	6
	1~9	130	3.63	.640	.056	3.52	3.74	2	5
	10~49	161	3.73	.559	.044	3.64	3.82	2	5
	50이상	173	3.70	.604	.046	3.61	3.79	2	5
	합계	1105	3.68	.614	.018	3.65	3.72	2	6
반응성	없음	640	3.86	.526	.021	3.82	3.91	2	5
	1~9	130	3.78	.579	.051	3.68	3.88	2	5
	10~49	161	3.87	.489	.039	3.80	3.95	3	5
	50이상	173	3.88	.548	.042	3.80	3.96	2	5
	합계	1104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 책무성	없음	641	4.00	.468	.018	3.96	4.04	2	5
	1~9	130	3.93	.488	.043	3.85	4.02	3	5
	10~49	161	4.00	.418	.033	3.94	4.07	3	5
	50이상	173	4.00	.441	.034	3.93	4.07	3	5
	합계	1105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없음	641	3.96	.481	.019	3.92	3.99	2	5
	1~9	130	3.88	.477	.042	3.80	3.96	3	5
	10~49	161	3.97	.399	.031	3.90	4.03	3	5
	50이상	173	3.98	.430	.033	3.91	4.04	3	5
	합계	1105	3.95	.462	.014	3.92	3.98	2	5

〈표 4-60〉 수익분배 정도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민주성	집단-간	1.912	3	.637	1.757	.154
	집단-내	399.432	1101	.363		
	합계	401.344	1104			
투명성	집단-간	1.280	3	.427	1.066	.363
	집단-내	440.287	1100	.400		
	합계	441.568	1103			
효율성	집단-간	.869	3	.290	.805	.491
	집단-내	396.142	1101	.360		
	합계	397.011	1104			
형평성	집단-간	1.708	3	.569	1.550	.200
	집단-내	404.472	1101	.367		
	합계	406.180	1104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275	3	.425	1.625	.182
	집단-내	288.134	1101	.262		
	합계	289.410	1104			
합법성	집단-간	1.323	3	.441	1.682	.169
	집단-내	288.585	1101	.262		
	합계	289.908	1104			
대표성	집단-간	.653	3	.218	.763	.515
	집단-내	313.940	1101	.285		
	합계	314.592	1104			
전문성	집단-간	.728	3	.243	.643	.587
	집단-내	415.222	1101	.377		
	합계	415.950	1104			
반응성	집단-간	.970	3	.323	1.147	.329
	집단-내	309.965	1100	.282		
	합계	310.934	1103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526	3	.175	.831	.477
	집단-내	232.092	1101	.211		
	합계	232.618	1104			
책무성	집단-간	.810	3	.270	1.267	.284
	집단-내	234.601	1101	.213		
	합계	235.411	1104			

다음 표에서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자별로 차이를 보이는 책무성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에 따른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가 4.00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르는 경우가 3.99, 동일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가 3.88이었고,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가장 낮은 3.81을 보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으로 나뉜 본 경우에도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내부 책무성의 경우는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르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외부 책무성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책무성 각 요인별 봤을 때도 모두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우는 요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내부 책무성의 민주성, 효율성은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이 가장 높았고, 그 외 투명성과, 형평성을 비롯해 외부 책무성의 네 가지 요인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았다. 즉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내부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는 데 있어서나, 재정 관리의 체계성, 사업의 장기적 계획 하의 진행, 구성원 간의 평등 모두 다 미흡한 편이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법인, 그리고 타 기관 및 정부, 언론사와의 교류나 협력정도에 있어서도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부족해 보인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 전체 책무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 보면 내부적 책무성

은 형평성의 경우만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부적 책무성은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을 제외하고, 합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별로 책무성을 분석한 것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비영리 법인의 지배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분석임에 의미가 있다. 특히 잔여재산 귀속을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가 설립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지배구조의 비효율성에서 재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 문제시 되었던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좀 더 민주적이고, 형평적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관의 운용을 통한 미션 수행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일정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 의료법인, 학교법인 기관이 각각 34.2%, 25.4%, 20.2%를 차지하고, 종교법인나 문화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이 종교법인나 문화 분야의 경향성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다소 감안하여 결과를 볼 필요성이 있다.

〈표 4-61〉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자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설립자등	91	3.55	.573	.060	3.43	3.67	2	5
	정관규정	387	3.81	.560	.028	3.76	3.87	2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3.80	.593	.030	3.74	3.86	2	5
	다른법인증여	241	3.70	.672	.043	3.62	3.79	2	5
	합계	1107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설립자등	91	3.81	.739	.078	3.66	3.96	1	5
	정관규정	387	4.11	.596	.030	4.06	4.17	3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4.12	.599	.030	4.06	4.18	2	5
	다른법인증여	240	3.93	.661	.043	3.84	4.01	2	5
	합계	1106	4.05	.632	.019	4.01	4.09	1	5
후원성	설립자등	91	3.62	.646	.068	3.49	3.76	2	5
	정관규정	387	3.88	.524	.027	3.83	3.93	2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3.84	.590	.030	3.78	3.90	2	5
	다른법인증여	241	3.74	.683	.044	3.65	3.82	2	6
	합계	1107	3.81	.599	.018	3.78	3.85	2	6
형평성	설립자등	91	3.88	.680	.071	3.74	4.02	2	5
	정관규정	387	4.05	.568	.029	3.99	4.11	2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4.06	.588	.030	4.00	4.12	2	5
	다른법인증여	241	3.97	.656	.042	3.88	4.05	1	5
	합계	1107	4.02	.606	.018	3.99	4.06	1	5
내부책무	설립자등	91	3.72	.564	.059	3.60	3.83	3	5
	정관규정	387	3.97	.467	.024	3.92	4.01	2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3.96	.494	.025	3.91	4.00	2	5
	다른법인증여	241	3.83	.560	.036	3.76	3.90	2	5
	합계	1107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설립자등	91	4.24	.596	.063	4.12	4.36	2	5
	정관규정	387	4.38	.493	.025	4.33	4.43	3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4.41	.493	.025	4.36	4.46	3	5
	다른법인증여	241	4.30	.528	.034	4.23	4.36	3	5
	합계	1107	4.36	.512	.015	4.33	4.39	2	5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대표성	설립자등	91	3.99	.538	.056	3.88	4.10	3	5
	정관규정	387	4.09	.520	.026	4.03	4.14	3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4.11	.516	.026	4.05	4.16	2	5
	다른법인증여	241	4.02	.577	.037	3.95	4.09	3	6
	합계	1107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설립자등	91	3.59	.635	.067	3.46	3.72	2	5
	정관규정	387	3.70	.581	.030	3.64	3.76	2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3.73	.593	.030	3.67	3.79	2	5
	다른법인증여	241	3.63	.680	.044	3.55	3.72	2	6
	합계	1107	3.68	.613	.018	3.65	3.72	2	6
반응성	설립자등	91	3.79	.553	.058	3.67	3.90	3	5
	정관규정	387	3.87	.511	.026	3.82	3.92	2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3.90	.521	.026	3.85	3.95	2	5
	다른법인증여	240	3.79	.561	.036	3.72	3.86	2	5
	합계	1106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 책무성	설립자등	91	3.90	.475	.050	3.80	4.00	3	5
	정관규정	387	4.01	.444	.023	3.97	4.05	3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4.04	.446	.023	3.99	4.08	2	5
	다른법인증여	241	3.93	.487	.031	3.87	3.99	3	5
	합계	1107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설립자등	91	3.81	.492	.052	3.71	3.91	3	5
	정관규정	387	3.99	.431	.022	3.94	4.03	3	5
	국가지방자치단체	388	4.00	.450	.023	3.95	4.04	2	5
	다른법인증여	241	3.88	.496	.032	3.82	3.94	3	5
	합계	1107	3.95	.461	.014	3.93	3.98	2	5

23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62〉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자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민주성	집단-간	6.471	3	2.157	6.022	.000
	집단-내	395.092	1103	.358		
	합계	401.564	1106			
투명성	집단-간	12.519	3	4.173	10.709	.000
	집단-내	429.429	1102	.390		
	합계	441.948	1105			
효율성	집단-간	6.830	3	2.277	6.430	.000
	집단-내	390.549	1103	.354		
	합계	397.379	1106			
형평성	집단-간	3.379	3	1.126	3.082	.027
	집단-내	403.031	1103	.365		
	합계	406.410	1106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6.955	3	2.318	9.048	.000
	집단-내	282.607	1103	.256		
	합계	289.562	1106			
합법성	집단-간	3.447	3	1.149	4.424	.004
	집단-내	286.481	1103	.260		
	합계	289.928	1106			
대표성	집단-간	1.830	3	.610	2.148	.093
	집단-내	313.281	1103	.284		
	합계	315.111	1106			
전문성	집단-간	2.181	3	.727	1.938	.122
	집단-내	413.769	1103	.375		
	합계	415.950	1106			
반응성	집단-간	2.178	3	.726	2.591	.052
	집단-내	11117.275	1102	10.088		
	합계	11195.682	11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1420.521	3	473.507	3.940	.008
	집단-내	132572.830	1103	120.193		
	합계	133993.351	1106			
책무성	집단-간	9908.966	3	3302.989	6.841	.000
	집단-내	532566.109	1103	482.834		
	합계	542475.075	1106			

다음 표에서는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로 차이를 보이는 책무성 정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에 따른 전체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수익추구를 하지 않는 하는 경우가 3.98로 수익추구를 하는 경우인 3.91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의 각 요인별로 봤을 때도 모두 수익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 전체 책무성 모두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별로 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외하고,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형평성은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적 책무성의 경우도 합법성과 전문성을 제외하고, 대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반응성은 5%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상 수익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관상 수익추구를 하는 경우보다 미션에 더 충실하며, 수익추구보다는 비영리 법인들의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원래 목적에 더 충실하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미션에 더 가깝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각 책무성 요인들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은 추정할 수 있지만, 비영리 기관의 각 분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4-63〉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예	457	3.73	.599	.028	3.68	3.79	2	5
	아니오	650	3.78	.605	.024	3.74	3.83	2	5
	합계	1107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예	456	4.03	.656	.031	3.97	4.09	1	5
	아니오	650	4.07	.615	.024	4.02	4.11	2	5
	합계	1106	4.05	.632	.019	4.01	4.09	1	5
효율성	예	457	3.75	.602	.028	3.69	3.80	2	6
	아니오	650	3.86	.593	.023	3.82	3.91	2	5
	합계	1107	3.81	.599	.018	3.78	3.85	2	6
형평성	예	457	3.97	.598	.028	3.91	4.02	2	5
	아니오	650	4.06	.610	.024	4.01	4.11	1	5
	합계	1107	4.02	.606	.018	3.99	4.06	1	5
내부책무	예	457	3.87	.512	.024	3.82	3.92	2	5
	아니오	650	3.94	.509	.020	3.90	3.98	2	5
	합계	1107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예	457	4.33	.519	.024	4.29	4.38	3	5
	아니오	650	4.38	.507	.020	4.34	4.42	2	5
	합계	1107	4.36	.512	.015	4.33	4.39	2	5
대표성	예	457	4.01	.527	.025	3.96	4.06	2	6
	아니오	650	4.11	.535	.021	4.07	4.15	3	5
	합계	1107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예	457	3.66	.613	.029	3.60	3.71	2	6
	아니오	650	3.70	.613	.024	3.66	3.75	2	5
	합계	1107	3.68	.613	.018	3.65	3.72	2	6
반응성	예	456	3.82	.529	.025	3.77	3.87	2	5
	아니오	650	3.88	.531	.021	3.84	3.93	2	5
	합계	1106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 책무성	예	457	3.95	.456	.021	3.91	4.00	2	5
	아니오	650	4.02	.459	.018	3.99	4.06	3	5
	합계	1107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예	457	3.91	.460	.022	3.87	3.95	2	5
	아니오	650	3.98	.460	.018	3.95	4.02	3	5
	합계	1107	3.95	.461	.014	3.93	3.98	2	5

〈표 4-64〉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민주성	집단-간	.604	1	.604	1.664	.197
	집단-내	400.960	1105	.363		
	합계	401.564	1106			
투명성	집단-간	.292	1	.292	.730	.393
	집단-내	441.656	1104	.400		
	합계	441.948	1105			
효율성	집단-간	3.504	1	3.504	9.831	.002
	집단-내	393.875	1105	.356		
	합계	397.379	1106			
형평성	집단-간	2.125	1	2.125	5.808	.016
	집단-내	404.285	1105	.366		
	합계	406.410	1106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1.435	1	1.435	5.504	.019
	집단-내	165960.993	1105	150.191		
	합계	166787.659	1106			
합법성	집단-간	20.517	1	20.517	2.176	.140
	집단-내	10416.894	1105	9.427		
	합계	10437.411	1106			
대표성	집단-간	101.200	1	101.200	9.946	.002
	집단-내	11242.791	1105	10.174		
	합계	11343.991	1106			
전문성	집단-간	22.168	1	22.168	1.638	.201
	집단-내	14952.040	1105	13.531		
	합계	14974.208	1106			
반응성	집단-간	40.062	1	40.062	3.965	.047
	집단-내	11155.619	1104	10.105		
	합계	11195.682	11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699.752	1	699.752	5.801	.016
	집단-내	133293.599	1105	120.628		
	합계	133993.351	1106			
책무성	집단-간	3047.550	1	3047.550	6.243	.013
	집단-내	539427.525	1105	488.170		
	합계	542475.075	1106			

3.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가.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책무성 인식 차이분석

다음 표에서는 법인조직 특성 중 법인조직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책무성 수준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과 최대값과 같은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법인기관 유형별 책무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4.1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종교법인이 3.98, 학교법인이 3.95였으며, 문화예술법인은 3.84로 낮은 편이고, 의료법인이 3.8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책무성을 보였다. 책무성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부 책무성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 4.06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의료법인이 3.72로 가장 낮은 책무성을 보였다. 내부 책무성의 세부 항목별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의 책무성은 종교법인이 가장 높았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보였고, 민주성과 형평성의 책무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형평성의 책무성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민주성, 투명성과 효율성의 내부책무성에서는 모두 의료법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종교법인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더 잘 갖추어져 있고, 구성원 간의 차별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분야의 법인에 비해 재정 관리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책무성의 모든 항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은 책무성을 보였고, 대표성의 외부책무성은 의료법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합법성, 전문성과 반응성의 외부책무성은 문화예술법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민주성과 형평성을 제외하고, 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책무성을 보였으며, 전반적인

책무성이 가장 높은 비영리 법인으로 조사되었다.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비해 합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법인의 경우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나 언론사 등과의 교류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분석(ANOVA)의 결과에 따르면, 책무성과 세부 항목별 모든 책무성의 수준은 비영리 법인 분야별 차이는 모두 1% 오차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65〉 조직유형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민주성	의료	281	3.60	.608	.036	3.53	3.67	2	5
	사회복지	379	3.85	.604	.031	3.79	3.91	2	5
	교육	224	3.81	.575	.038	3.73	3.88	2	5
	문화예술	129	3.68	.547	.048	3.59	3.78	2	5
	종교	94	3.90	.612	.063	3.77	4.02	2	5
	합계	1107	3.76	.603	.018	3.73	3.80	2	5
투명성	의료	281	3.69	.629	.038	3.62	3.76	2	5
	사회복지	379	4.26	.577	.030	4.20	4.32	1	5
	교육	223	4.24	.555	.037	4.17	4.32	3	5
	문화예술	129	3.91	.591	.052	3.81	4.01	2	5
	종교	94	4.03	.548	.057	3.92	4.15	3	5
	합계	1106	4.05	.632	.019	4.01	4.09	1	5
효율성	의료	281	3.60	.595	.035	3.53	3.67	2	6
	사회복지	379	4.01	.557	.029	3.95	4.07	2	5
	교육	224	3.73	.573	.038	3.65	3.80	2	5
	문화예술	129	3.74	.605	.053	3.64	3.85	2	5
	종교	94	3.96	.558	.058	3.85	4.08	2	5
	합계	1107	3.81	.599	.018	3.78	3.85	2	6

23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형평성	의료	281	3.98	.569	.034	3.92	4.05	2	5
	사회복지	379	4.10	.613	.031	4.04	4.16	1	5
	교육	224	3.91	.612	.041	3.83	4.00	2	5
	문화예술	129	3.97	.630	.055	3.86	4.08	2	5
	종교	94	4.15	.589	.061	4.03	4.27	3	5
	합계	1107	4.02	.606	.018	3.99	4.06	1	5
내부적 책무성	의료	281	3.72	.508	.030	3.66	3.78	2	5
	사회복지	379	4.06	.494	.025	4.01	4.11	2	5
	교육	224	3.92	.493	.033	3.85	3.98	2	5
	문화예술	129	3.83	.476	.042	3.74	3.91	3	5
	종교	94	4.01	.482	.050	3.91	4.11	3	5
	합계	1107	3.91	.512	.015	3.88	3.94	2	5
합법성	의료	281	4.26	.496	.030	4.20	4.32	3	5
	사회복지	379	4.49	.513	.026	4.44	4.54	2	5
	교육	224	4.37	.503	.034	4.30	4.43	3	5
	문화예술	129	4.25	.488	.043	4.17	4.34	3	5
	종교	94	4.29	.504	.052	4.19	4.39	3	5
	합계	1107	4.36	.512	.015	4.33	4.39	2	5
대표성	의료	281	3.90	.536	.032	3.84	3.96	2	6
	사회복지	379	4.24	.495	.025	4.19	4.29	3	5
	교육	224	4.01	.519	.035	3.94	4.08	3	5
	문화예술	129	4.01	.546	.048	3.91	4.10	3	5
	종교	94	4.12	.499	.051	4.02	4.22	3	5
	합계	1107	4.07	.534	.016	4.04	4.10	2	6
전문성	의료	281	3.56	.595	.035	3.49	3.63	2	6
	사회복지	379	3.85	.594	.030	3.79	3.91	2	5
	교육	224	3.72	.628	.042	3.64	3.81	2	5
	문화예술	129	3.47	.541	.048	3.38	3.56	2	5
	종교	94	3.58	.629	.065	3.45	3.71	2	5
	합계	1107	3.68	.613	.018	3.65	3.72	2	6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반응성	의료	281	3.81	.499	.030	3.75	3.87	3	5
	사회복지	379	3.99	.508	.026	3.93	4.04	2	5
	교육	223	3.83	.545	.036	3.75	3.90	2	5
	문화예술	129	3.70	.545	.048	3.60	3.79	2	5
	종교	94	3.79	.559	.058	3.68	3.91	3	5
	합계	1106	3.86	.531	.016	3.83	3.89	2	5
외부적 책무성	의료법인	281	3.88	.445	.027	3.83	3.93	2	5
	사회복지	379	4.14	.433	.022	4.10	4.18	3	5
	학교법인	224	3.98	.478	.032	3.91	4.04	3	5
	문화예술	129	3.86	.428	.038	3.78	3.93	3	5
	종교법인	94	3.95	.433	.045	3.86	4.04	3	5
	합계	1107	3.99	.459	.014	3.97	4.02	2	5
책무성	의료법인	281	3.80	.451	.027	3.75	3.85	2	5
	사회복지	379	4.10	.441	.023	4.05	4.14	3	5
	학교법인	224	3.95	.463	.031	3.89	4.01	3	5
	문화예술	129	3.84	.425	.037	3.77	3.92	3	5
	종교법인	94	3.98	.437	.045	3.89	4.07	3	5
	합계	1107	3.95	.461	.014	3.93	3.98	2	5

〈표 4-66〉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민주성	집단-간	13.573	4	3.393	9.638	.000
	집단-내	387.991	1102	.352		
	합계	401.564	1106			
투명성	집단-간	64.430	4	16.108	46.976	.000
	집단-내	377.518	1101	.343		
	합계	441.948	1105			
효율성	집단-간	31.976	4	7.994	24.108	.000
	집단-내	365.404	1102	.332		
	합계	397.379	1106			

항목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형평성	집단-간	7.107	4	1.777	4.903	.001
	집단-내	399.303	1102	.362		
	합계	406.410	1106			
내부적 책무성	집단-간	20.248	4	5.062	20.714	.000
	집단-내	269.313	1102	.244		
	합계	289.562	1106			
합법성	집단-간	11.233	4	2.808	11.104	.000
	집단-내	278.695	1102	.253		
	합계	289.928	1106			
대표성	집단-간	20.683	4	5.171	19.353	.000
	집단-내	294.428	1102	.267		
	합계	315.111	1106			
전문성	집단-간	21.517	4	5.379	15.029	.000
	집단-내	394.433	1102	.358		
	합계	415.950	1106			
반응성	집단-간	10.744	4	2.686	9.849	.000
	집단-내	300.247	1101	.273		
	합계	310.991	1105			
외부적 책무성	집단-간	14.362	4	3.590	18.128	.000
	집단-내	218.266	1102	.198		
	합계	232.627	1106			
책무성	집단-간	16.197	4	4.049	20.352	.000
	집단-내	219.252	1102	.199		
	합계	235.449	1106			

나.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한 책무성 인식 차이분석

앞서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책무성의 인식도에 대한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산분석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조직유형별 특성 따라 책무성의 인식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유형별 순수

한 책무성의 인식도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책무성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인 조직특성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체인력 변수를 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내부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내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조직특성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체인력 변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인력과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델에서 전체인력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전체인력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의 내부적 책무성 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내부적 책무성의 점수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비교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의 비영리유형별 책무성의 인식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야를 보면, 의료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그리고 종교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그리고 문화예술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교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4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4-6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수정 모형	23.191 ^a	5	4.638	19.164	.000	.080
절편	12005.725	1	12005.725	49605.507	.000	.978
전체인력	2.947	1	2.947	12.178	.001	.011
분야	20.975	4	5.244	21.666	.000	.073
오차	266.226	1100	.242			
합계	17211.731	1106				
수정 합계	289.418	1105				

a. R 제공 = .080 (수정된 R 제공 = .076)

〈표 4-68〉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공
					하한값	상한값	
절편	3.995	.051	78.359	.000	3.895	4.095	.848
P14	.000	.000	3.490	.001	0.000	.000	.011
[분야=1]	-.292	.059	-4.989	.000	-.407	-.177	.022
[분야=2]	.054	.057	.950	.342	-.057	.165	.001
[분야=3]	-.119	.061	-1.950	.051	-.238	.001	.003
[분야=4]	-.171	.067	-2.555	.011	-.302	-.040	.006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69〉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임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72	3.719	.029	3.661	3.776
사회복지	4.06	4.065	.025	4.015	4.115
교육	3.92	3.893	.034	3.826	3.959
문화예술	3.83	3.841	.043	3.755	3.926
종교	4.01	4.011	.051	3.912	4.111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연령 = 42.70, 근무년수 = 16.24.

〈표 4-70〉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346*	.039	.000	-.456	-.237
	학교법인	-.174*	.045	.001	-.300	-.048
	문화예술	-.122	.052	.204	-.269	.026
	종교법인	-.292*	.059	.000	-.457	-.128
사회복지	의료법인	.346*	.039	.000	.237	.456
	학교법인	.173*	.043	.001	.053	.293
	문화예술	.225*	.050	.000	.084	.366
	종교법인	.054	.057	1.000	-.106	.214
학교법인	의료법인	.174*	.045	.001	.048	.300
	사회복지	-.173*	.043	.001	-.293	-.053
	문화예술	.052	.055	1.000	-.104	.208
	종교법인	-.119	.061	.514	-.290	.052
문화예술	의료법인	.122	.052	.204	-.026	.269
	사회복지	-.225*	.050	.000	-.366	-.084
	학교법인	-.052	.055	1.000	-.208	.104
	종교법인	-.171	.067	.107	-.359	.017
종교법인	의료법인	.292*	.059	.000	.128	.457
	사회복지	-.054	.057	1.000	-.214	.106
	학교법인	.119	.061	.514	-.052	.290
	문화예술	.171	.067	.107	-.017	.359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Bonferroni

2) 외부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외부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조직특성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체인력 변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인력과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델에서 전체인력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전체인력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무성 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외부적 책무성의 점수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비교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의 비영리유형별 외부적 책무성의 인식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야를 보면, 의료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문화예술법인과 종교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법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교법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71〉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수정 모형	16.463 ^a	5	3.293	16.755	.000	.071
절편	12364.033	1	12364.033	62917.464	.000	.983
P14	2.102	1	2.102	10.697	.001	.010
분야	15.057	4	3.764	19.155	.000	.065
오차	216.163	1100	.197			
합계	17864.684	1106				
수정 합계	232.626	1105				

a. R 제공 = .071 (수정된 R 제공 = .067)

〈표 4-72〉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공
					하한값	상한값	
절편	3.932	.046	85.601	.000	3.842	4.022	.869
P14	.000	.000	3.271	.001	.000	.000	.010
[분야=1]	-.063	.053	-1.192	.233	-.167	.041	.001
[분야=2]	.203	.051	3.971	.000	.103	.303	.014
[분야=3]	.010	.055	.181	.857	-.098	.118	.000
[분야=4]	-.078	.060	-1.289	.198	-.196	.041	.002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7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88	3.883	.026	3.831	3.935
사회복지	4.14	4.149	.023	4.104	4.194
교육	3.98	3.956	.030	3.897	4.016
문화예술	3.86	3.869	.039	3.792	3.945
종교	3.95	3.946	.046	3.857	4.036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전체인력 = 167.03.

〈표 4-74〉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266*	.035	.000	-.364	-.168
	학교법인	-.073	.040	.708	-.186	.040
	문화예술	.015	.047	1.000	-.118	.148
	종교법인	-.063	.053	1.000	-.212	.086
사회복지	의료법인	.266*	.035	.000	.168	.364
	학교법인	.193*	.038	.000	.085	.301
	문화예술	.281*	.045	.000	.154	.408
	종교법인	.203*	.051	.001	.059	.347
학교법인	의료법인	.073	.040	.708	-.040	.186
	사회복지	-.193*	.038	.000	-.301	-.085
	문화예술	.088	.050	.800	-.053	.228
	종교법인	.010	.055	1.000	-.144	.164
문화예술	의료법인	-.015	.047	1.000	-.148	.118
	사회복지	-.281*	.045	.000	-.408	-.154
	학교법인	-.088	.050	.800	-.228	.053
	종교법인	-.078	.060	1.000	-.247	.092
종교법인	의료법인	.063	.053	1.000	-.086	.212
	사회복지	-.203*	.051	.001	-.347	-.059
	학교법인	-.010	.055	1.000	-.164	.144
	문화예술	.078	.060	1.000	-.092	.247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Bonferroni

3) 전체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을 모두 합한 전체 책무성 모형에서 혼란변수인 조직특성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전체인력 변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인력과 비영리법인 분야가 포함된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모델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델에서 전체인력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전체인력이 증가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 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전체 책무성의 점수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중비교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의 비영리유형별 전체 책무성의 인식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야를 보면, 의료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그리고 종교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화예술법인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교법인의 경우는 의료법인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7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공
수정 모형	18.706 ^a	5	3.741	18.989	.000	.079
절편	12184.221	1	12184.221	61844.871	.000	.983
P14	2.507	1	2.507	12.725	.000	.011
분야	16.917	4	4.229	21.467	.000	.072
오차	216.714	1100	.197			
합계	17510.783	1106				
수정 합계	235.419	1105				

a. R 제곱 = .079 (수정된 R 제곱 = .075)

〈표 4-76〉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모수	B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부분 에타 제곱
					하한값	상한값	
절편	3.964	.046	86.171	.000	3.873	4.054	.871
P14	.000	.000	3.567	.000	.000	.000	.011
[분야=1]	-.178	.053	-3.360	.001	-.281	-.074	.010
[분야=2]	.129	.051	2.509	.012	.028	.229	.006
[분야=3]	-.054	.055	-.991	.322	-.162	.053	.001
[분야=4]	-.124	.060	-2.060	.040	-.243	-.006	.004
[분야=5]	0 ^a

a. 이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4-7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분야	실제평균	추정평균 ^a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료	3.80	3.801	.026	3.749	3.853
사회복지	4.10	4.107	.023	4.062	4.152
교육	3.95	3.924	.030	3.865	3.984
문화예술	3.84	3.855	.039	3.778	3.931
종교	3.98	3.979	.046	3.889	4.069

a. 모형에 나타나는 공변량은 다음값에 대해 계산됩니다.

〈표 4-78〉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의료법인	사회복지	-.306*	.035	.000	-.405	-.208
	학교법인	-.123*	.040	.023	-.237	-.010
	문화예술	-.054	.047	1.000	-.187	.080
	종교법인	-.178*	.053	.008	-.326	-.029
사회복지	의료법인	.306*	.035	.000	.208	.405
	학교법인	.183*	.038	.000	.075	.291
	문화예술	.253*	.045	.000	.125	.380
	종교법인	.129	.051	.122	-.016	.273

(I) 분야	(J) 분야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 ^a	
					하한값	상한값
학교법인	의료법인	.123*	.040	.023	.010	.237
	사회복지	-.183*	.038	.000	-.291	-.075
	문화예술	.070	.050	1.000	-.071	.211
	종교법인	-.054	.055	1.000	-.209	.100
문화예술	의료법인	.054	.047	1.000	-.080	.187
	사회복지	-.253*	.045	.000	-.380	-.125
	학교법인	-.070	.050	1.000	-.211	.071
	종교법인	-.124	.060	.396	-.294	.045
종교법인	의료법인	.178*	.053	.008	.029	.326
	사회복지	-.129	.051	.122	-.273	.016
	학교법인	.054	.055	1.000	-.100	.209
	문화예술	.124	.060	.396	-.045	.294

주: 추정된 주변평균을 기준으로 *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a. 다중비교에 대한 조정: Bonferroni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일반국민은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의료법인(3.447)으로 평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3.328), 교육법인(3.262), 종교법인(3.253)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문화예술법인으로 3.1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법인 유형간 책무성 점수의 차이는 커지 않았다. 다음으로 담당공무

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60으로 일반 국민과 같이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일반국민들보다는 책무성 점수가 높았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교육법인(3.945)으로 평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3.649), 문화예술법인(3.642)과 종교법인(3.47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의료법인으로 3.36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법인 유형간 책무성 점수의 차이는 일부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당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95로 일반국민과 공무원과는 달리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사회복지법인(4.107)으로 평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종교법인(3.979), 교육법인(3.925), 문화예술법인(3.855)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의료법인으로 3.8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법인 유형간 책무성 점수의 차이는 일부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사대상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의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5장 비영리법인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제1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

제3절 조사대상자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비교분석

5

비영리법인 책무성 << 우선순위 분석

제1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1. AHP 분석과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요소의 우선순위

가.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AHP 기법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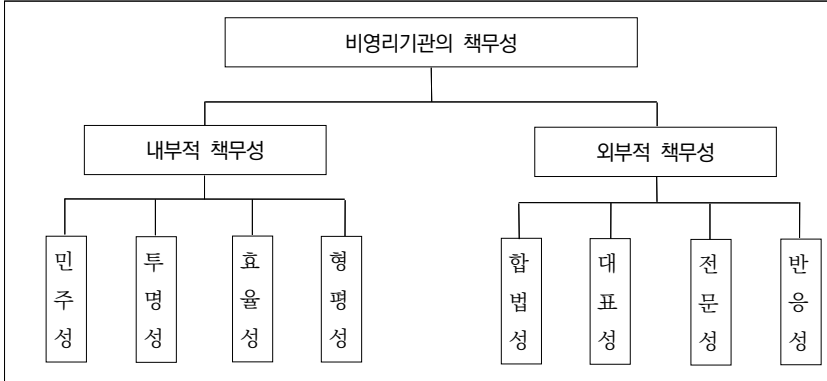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다양한 변수 및 지표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제 1수준에서 기관 내적 책무성과 기관 외적인 책무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으며 제 2수준에서 기관 내부적 책무성은 다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기관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2차 변수 들은 다시 각 6개의 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 중에서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우선순위 선정은 항목 간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오영호, 2012).¹⁾

1) •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책무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2012년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와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의 계층적 구조 설정 단계를 2012년도의 연구와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하여 2012년도 분석틀과 동일하게 구분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제 1수준에서 기관 내적 책무성과 기관 외적인 책무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으며 제 2수준에서 기관 내부적 책무성은 다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기관 외부적 책무성

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2차 변수 들은 다시 각 6개의 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 중에서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우선순위 선정은 항목 간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분석을 위하여 1차 수준에서는 책무성을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였고 2차 수준에서는 내외부적 책무성을 각각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은 6개씩의 지표로 구성하여 총 48개의 비영리법인 책무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인용한 중요도는 201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년차)”와 2008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공공기관의 책무성 제고방안(권오성 외, 2008)”이라는 선행연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를 선별 후 검증을 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1차 수준의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한 1차 수준의 구성 요소인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이 0.6608의 중요도를 나타냈고 내부적 책무성은 0.3392로 나타나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본 분석에서의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은 0.018로서 설문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으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오영호, 2012, p.587).
- 2차 수준의 분석을 위하여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으로 세분화 하였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으로 구분하여 두 번째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수준의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한 1차 수준의 구성 요소인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2차 구성 요소의 네 가지 항목(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비영리법인의 내부적 책무성에 대하여 형평성 항목이 0.2772의 가중치를 나타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율성 항목은 0.1913으로 나타나 4가지 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의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CR)은 0.056로서 설문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으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한 1차 수준의 구성 요소인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2차 구성 요소의 네 가지 항목(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하여 대표성 항목이 0.2975의 가중치를 나타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성 항목은 0.2027로 나타나 4가지 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의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은 0.007로서 설문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으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오영호, 2012).
- 비영리법인 책무성에 대한 AHP 종합분석결과를 2012년도에 이루어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 및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세분화하는 2차 구성 요소의 8 가지 항목(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간의 전체 구성 요소들의 종합적인 중요도 및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하여 1차 수준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요소들이 상대적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부적 책무성 중 대표성의 중요도가 0.1966으로 8개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그림 5-1]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계층구조도



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항목별, 지표별 분석결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AHP분석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영리 법인을 6개 유형별(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로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요도 및 상대적 우선순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 요소들은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의 순으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나타내고 있으며 투명성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대표성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약 3배 이상의 책무성에 대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오영호, 2012).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종합순위

구분	2차 변수 명칭	중요도	우선순위
내부적 책무성	민주성	0.0930	7
	투명성	0.0873	6
	효율성	0.0649	8
	형평성	0.0940	5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0.1682	2
	대표성	0.1966	1
	전문성	0.1339	4
	반응성	0.1621	3

자료: 오영호, 2012, p.590.

위를 분석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 대상 전체 설문 응답은 694부로서 문화예술 151부, 사회복지 203부, 종교 44부, 교육 103부, 의료 193부를 대상으로 유형별 책무성의 중요도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 비영리법인의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내부적 책무성을 네 가지 항목별 평균을 살펴 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형평성이 3.679, 민주성이 3.626, 효율성이 3.623이며 투명성이 3.5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 항목과는 상대적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항목의 지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민주성 항목에서 “사업운동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문항이 4.2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내부 규정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261로 나타났다. 민주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이 3.4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의료분야와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투명성 항목에서 “재정 관리의 체계화” 문항이 3.8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재정 관리는 체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211로 나타났다. 투명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이 3.2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종교와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효율성 항목에서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여부를 묻는 문항

이 3.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425로 나타났다. 효율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이 3.3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종교와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형평성 항목에서 “성에 따른 차별여부” 여부를 묻는 설문에 3.8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성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났으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391로 나타났다. 효율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8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이 3.4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1〉 비영리법인의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구분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종교	교육	의료	문항 평균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86	4.340	3.864	4.612	4.383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821	3.877	3.682	4.126	3.767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583	3.586	3.432	3.748	3.425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543	3.591	3.318	3.641	3.456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450	3.360	3.159	3.592	3.047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278	3.369	3.159	3.456	3.041	3.261
유형 평균		3.627	3.687	3.436	3.862	3.520	3.626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3.872	3.805	3.810	4.098	3.589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3.574	3.785	3.357	4.167	3.184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588	3.545	3.429	3.951	3.195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3.791	3.795	3.548	4.039	3.526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081	3.410	3.024	3.804	2.737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520	3.695	3.262	3.833	3.384	3.539	
유형 평균		3.571	3.673	3.405	3.982	3.269	3.580

구분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종교	교육	의료	문항 평균
효 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510	3.573	3.488	3.859	3.340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918	3.603	3.732	3.869	3.319	3.688
	연간 기관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810	3.618	3.829	3.960	3.346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735	3.698	3.659	3.919	3.372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639	3.673	3.634	3.949	3.500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340	3.492	3.244	3.717	3.330	3.425
유형 평균		3.659	3.610	3.598	3.879	3.368	3.623
형 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898	3.818	3.707	3.929	3.599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3.810	3.828	3.854	3.879	3.594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3.898	3.838	3.829	3.960	3.66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3.844	3.773	3.732	3.838	3.535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449	3.525	3.659	3.636	3.310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367	3.394	3.415	3.596	3.182	3.391
유형 평균		3.711	3.696	3.699	3.806	3.481	3.679

2)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외부적 책무성을 네 가지 항목별 평균을 살펴 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합법성 3.881, 대표성 3.662, 반응성이 3.644이며 전문성이 3.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성과 전문성 항목의 지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합법성 항목에서 “기관설립의 적법성” 문항이 4.1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설립의 적법성이 나타났으며 “기관의 위법행위”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630으로 나타났다. 합법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4.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이 3.6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문화예술, 의료, 그리고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 보

다 낮게 나타났다.

대표성 항목에서 “기관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문항이 3.8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이 목적에 맞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457로 나타났다. 대표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이 3.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종교와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성 항목에서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를 묻는 문항이 3.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267로 나타나 기관 내의 실무자들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이 2.9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종교와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응성 항목에서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문항이 4.1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사기관과 협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여부를 묻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364로 나타나 공무원들은 비영리법인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 항목에서 6개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이 3.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이 3.4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이나 종교와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25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5-2〉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구분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종교	교육	의료	문항 평균
한 편 영 향	기관설립의 적법성	4.102	4.208	3.875	4.606	4.177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3.952	3.995	3.675	4.364	3.930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3.884	3.898	3.600	4.192	3.785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3.714	3.843	3.475	4.121	3.677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3.837	3.949	3.600	4.242	3.586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728	3.716	3.475	3.838	3.392	3.630
영 향 평 균		3.870	3.935	3.617	4.227	3.758	3.881
대 표 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571	3.497	3.325	3.747	3.145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626	3.640	3.650	3.879	3.522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3.796	3.802	3.675	4.071	3.425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3.905	3.878	3.625	4.182	3.484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3.755	3.802	3.525	4.091	3.231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605	3.695	3.550	3.960	3.199	3.602
영 향 평 균		3.710	3.719	3.558	3.988	3.334	3.662
전 면 영 향	대중예의 인지도	3.401	3.418	3.275	3.727	2.892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177	3.459	3.075	3.697	2.925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361	3.429	3.225	3.667	3.011	3.338
	기관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503	3.388	3.275	3.515	2.99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517	3.393	3.325	3.404	2.973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456	3.536	3.425	3.576	3.102	3.419
영 향 평 균		3.402	3.437	3.267	3.598	2.983	3.337
산 외 영 향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여부	4.088	4.232	3.875	4.576	4.188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816	3.742	3.700	4.091	3.538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592	3.515	3.375	3.889	3.237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741	3.629	3.525	3.768	3.425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435	3.474	3.375	3.707	2.968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456	3.418	3.250	3.636	3.059	3.364
영 향 평 균		3.688	3.668	3.517	3.944	3.402	3.644

다. AHP 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항목별, 지표별 중요도 분석결과

1)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을 통합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이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인력의 배치 여부”가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책무성을 구성하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1차 수준 및 2차 분야 및 항목 중에서 외부적 책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부적 책무성에서 항목별로는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그리고 전문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26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5-3〉 전체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959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585	27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306	32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265	34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090	39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033	41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347	31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153	37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090	38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264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802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089	40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306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393	44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409	43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386	46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여부	0.2387	45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222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564	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3566	28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610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520	30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306	33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188	36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053	6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6698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6512	10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333	12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6463	11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6105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6796	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201	4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380	2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7500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7236	3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081	5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4478	20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376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471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467	2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450	23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580	19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6795	8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6122	13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5709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5865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5498	17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5453	18	

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4〉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800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554	30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332	32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295	34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209	36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049	41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379	31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119	39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131	38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309	3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689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072	40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278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542	43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472	44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424	45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361	46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167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665	27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3582	29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665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614	28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243	35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166	37

26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6898	7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6646	8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6532	10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246	13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6453	11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6270	12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020	6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128	4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462	2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7677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7382	3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087	5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4555	22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255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502	23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692	20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711	19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629	21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6626	9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6186	14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5822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064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5568	18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5602	17

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4037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606	27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335	32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340	31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125	40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133	39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321	33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303	36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094	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312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976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225	37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318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338	46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348	45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400	43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여부	0.2383	44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266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590	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3599	28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609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548	30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314	34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191	38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077	6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6719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6555	11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463	12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6641	10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6249	13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6875	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156	5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474	2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7624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7474	3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264	4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4578	22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633	20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593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538	24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545	23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736	19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6860	8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6066	14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5698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5882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5631	17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5540	18

4)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석과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594	2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425	31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192	34
		특정개인의 견직 여부	0.3086	36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2938	39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2938	38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325	32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2930	40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2993	37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097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639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2847	41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여부	0.2263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422	44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485	43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374	45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여부	0.2358	46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105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486	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3624	25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600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509	28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440	30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211	33

27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6517	7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6180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6054	11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5844	13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6054	10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5844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6537	6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175	2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225	1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7126	3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6930	5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6979	4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4387	21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119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320	23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387	2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454	20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588	19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6281	8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5997	12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5471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5714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5471	17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5268	18

5)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 분석과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5-7〉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4290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838	26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486	34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386	37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341	40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214	42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577	32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637	30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448	35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525	3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3320	4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345	39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504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511	46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570	43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543	45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여부	0.2562	44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412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694	2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3647	29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723	27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609	31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419	3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381	38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746	5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339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050	11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930	12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134	10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6455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366	8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626	6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8003	3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221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8042	2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785	4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0.4992	19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952	20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912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708	23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559	24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790	22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7417	7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6631	13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304	15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108	16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5894	18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6273	16

6) 의료분야 비영리법인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설립의 적법성”이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가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8〉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4077	20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504	26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186	32
		특정개인의 견직 여부	0.3214	31
		내부의견 수립의 활성화 정도	0.2834	38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2828	39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132	33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2779	41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2788	40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077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389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2953	37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167	46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154	4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171	45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188	44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271	43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161	47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384	2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3379	29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449	27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324	30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112	34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2992	36

27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025	1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6609	6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6365	7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184	10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6031	12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5704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6183	11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6924	2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6733	5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6849	3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6352	8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6289	9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3874	25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3918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033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012	2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3982	23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155	19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6789	4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5735	13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5247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5552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4811	18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4958	17	

2. 소결

AHP 분석을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를 구성하는 4개씩의 항목별로는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5개 유형의 설문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는 점수를 기준으로 합법성, 효율성, 민주성, 대표성, 반응성, 형평성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명성, 전문성 항목이 3.6점미만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AHP 분석결과의 중요도와 비교하면 합법성, 형평성, 대표성 항목 등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 항목에 대한 제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2개 분야가 각 4개씩의 항목이 있으며 6개씩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총 48개의 지표 중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서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은 “기관설립의 적법성”지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4개 분야 비영리법인에서 “상근 인력의 배치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라고 동일한 우선순위로 응답했으며 종교,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그리고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이라고 응답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관련 공무

원들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비영리법인에서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

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의 지표별 특성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중 민주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2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지는 않으나 5개 비영리법인의 유형 중에서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즉 비영리법인은 사람을 집단의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산을 집단의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두 법인 형태 모두 개인적인 기부나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에 의해 법인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규모이며 영세한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하고 기관설립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여 기관운영의 민주성을 향상시키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9〉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화평균
내 부 적 책 임 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86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821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583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543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450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278	3.261
	유형평균		3.627	3.626

투명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71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민주성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소수의 기부자에 의존하며 소규모 형태로 영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정보공개 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문화진흥정책으로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거나 소규모 형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5-1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내 부 적 책 임 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3.872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3.574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588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3.791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081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520	3.539
	유형평균		3.571	3.580

효율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59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소규모인 특징을 강점으로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즉 인력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이나 상근인력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활동의 일정을 준수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510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918	3.688
		연간 기관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810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735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639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340	3.425
	유형평균		3.659	3.623

형평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11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민주성, 투명성은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중간정도의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형평성 항목에서는 효율성 항목과 같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내부적 책무성 분야에서 기관의 규모와 크게 관련이 없는 항목이며 대부분의 지표가 기관 운영과정에서 차별이 없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898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3.810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3.89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3.844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449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367	3.391
	유형평균		3.711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외부적 책무성 분야에서 합법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70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내부적 책무성 분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영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설립의 적법성, 법적의무의 준수, 조직운영의 합법성 등에서 타 유형의 법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관이 위법행위는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표 5-13〉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102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3.952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3.884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3.714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3.837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728	3.630
	유형평균		3.870	3.881

대표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10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교하여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순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표 5-14〉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571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626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3.796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3.905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3.755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605	3.602
	유형평균		3.710	3.662

전문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02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교하여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력과 예산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내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외부 전문가의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5-15〉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401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177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361	3.338
		기관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503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517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456	3.419
	유형평균		3.402	3.337

반응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88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력과 예산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유사기관에 대하여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문분석 결과 나타났다.

〈표 5-1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문화예술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4.088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816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592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741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435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456	3.364
	유형평균		3.688	3.644

2.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지표별 특성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중 민주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87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 부당 집행 등의 사회문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문 분석결과는 그동

안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 정비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다른 측면으로는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사업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이 있으며 의사결정시 실무자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5-1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340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877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586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591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360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369	3.261
	유형평균		3.687	3.626

투명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73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그리고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등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문 분석결과는 그동안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 정비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다른 측면으로는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설문응답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관련 자료의 외부공개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5-18〉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3.805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3.785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545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3.795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410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695	3.539
	유형평균		3.673	3.580

효율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10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장기적 계획 아래 기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문 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5-19〉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573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603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618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698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673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492	3.425
	유형평균		3.610	3.623

형평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96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복지시설 이용자수 허위 작성, 보조금 과다 부정 수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과는 다른 설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설문분석결과 법인 내 업무배분이나 출신지역 및 성 등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818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3.828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3.83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3.773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525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394	3.391
	유형평균		3.696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외부적 책무성 분야에서 합법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35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은 그동안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고보조금 불법 부당집행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켰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등으로 합법성 항목에서 높은 설문분

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분석에 따르면 기관설립 및 운영 그리고 법적의무의 준수 등 모든 지표에서 타 유형의 법인과 비교하여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표 5-21〉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208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3.995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3.898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3.843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3.949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716	3.630
	유형평균		3.935	3.881

대표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19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에서 그동안 사회문제화 되어 왔었던 복지시설 수용인원의 허위 신고나 보조금 과다수령 등의 사회적 문제점들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설문분석결과 사회문제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르게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지표와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지표에서 타 유형과 비교하여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2〉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497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640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3.802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3.878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3.802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695	3.602
	유형평균		3.719	3.662

전문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37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높으며 또한 기관에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문분석결과가 나타내고 있다.

〈표 5-2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418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459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429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388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393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536	3.419
	유형평균		3.437	3.337

반응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68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유사기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고객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요구를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분석은 나타내고 있다.

〈표 5-2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사회복지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 여부	4.232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742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515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629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474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418	3.364
	유형평균		3.668	3.644

3.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지표별 특성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종교 분야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중 민주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36을 나타내어 타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교의와 같은 이념적 요소, 예식·행사와 같은 관행적 행위·양식적 요소, 인적·조직적요소 등으로 인해 책무성의 항목 중에서 민주성 항목이 타 법인에 비해 낮은 설문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5〉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864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682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432	3.555
		특정개인의 검직 여부	3.318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159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159	3.261
	유형평균		3.436	3.626

투명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05를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낮은 중하위의 점수를 받았다. 종교법인의 경우 재정 관리의 체계화에서는 비교적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으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나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분야 비영리 법인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3.810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3.357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429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3.548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024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262	3.539
	유형평균		3.405	3.580

효율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98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인력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이나 상근인력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즉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 법인들과는 달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소규모 종교 비영리법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규모이며 영세한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27〉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동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488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732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829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659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634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244	3.425
	유형평균		3.598	3.623

형평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99를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출신지역, 업무능률 등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종교 교리와 관행화된 행위양식 등으로 인하여 평등한 기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8〉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707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3.854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3.829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3.732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659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415	3.391
	유형평균		3.699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외부적 책무성 분야에서 합법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17을 나타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률이 타 유형의 법인에 비하여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설립이 적법하며 기관의 위법행위가 적고 또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종교 교리 등의 원인으로 종교단체의 내부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폭력과 강제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9〉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3.875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3.675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3.600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3.475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3.600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475	3.630
	유형평균		3.617	3.881

대표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58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대표성 항목 전부에서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는

데 특히 기관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과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목적에 맞는 일관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고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5-30〉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외 부 적 책 임 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325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650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3.675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3.625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3.525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550	3.602
	유형평균		3.558	3.662

전문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67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종교주재자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종교주재자는 기관 내부에서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보다는 외부 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종교주재자로 볼 수 있는 실무자의 전문성이 타 지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3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275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075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225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27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325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425	3.419
	유형평균		3.267	3.337

반응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종교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17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특징 중의 하나인 관행적 행위양식적 요소와 종교교리 등으로 인하여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 항목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2〉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종교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3.875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700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375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525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375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250	3.364
	유형평균		3.517	3.644

4. 교육분야 비영리 법인의 지표별 특성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중 민주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62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업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신분상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겸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의사결정 시 참여도가 높고 의견의 수렴도가 높은 것으로 설문결과 나타났다.

〈표 5-33〉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612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126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748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641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592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456	3.261
	유형평균		3.862	3.626

투명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82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는 다르게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교직원, 학생 등으로 부터의 지도·감독과 견제를 받기 때문에 재정관리가 체계화, 내부통제, 정보공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5-34〉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4.098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4.167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951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4.039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804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833	3.539
	유형평균		3.982	3.580

효율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79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교수)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인하여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5〉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업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859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869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960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919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949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717	3.425
	유형평균		3.879	3.623

형평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06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공무원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분석 결과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와 성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929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3.879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3.960	3.839
		구성원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3.838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636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596	3.391
	유형평균		3.806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외부적 책무성 분야에서 합법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27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는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때문에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학교 운영목적은 건학목적에 따른 학교 운영과 사학의 자율성과의 논란은 있으나 대부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표 5-37〉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606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4.364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4.192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4.121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4.242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838	3.630
	유형평균		4.227	3.881

대표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88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모든 지표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모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고 학교가 가진 명확한 대표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법으로써만 가능할뿐더러 목적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목적과 활동이 명확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5-38〉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747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879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4.071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4.182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4.091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960	3.602
	유형평균		3.988	3.662

전문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98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대중에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기관 내에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일반인들에게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의 평균보다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들은 외부전문가들의 활용 시 실질적인 도움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30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5-39〉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727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697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667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51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404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576	3.419
	유형평균		3.598	3.337

반응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44를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응성 항목의 6개의 지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학교법인과 차별되는 사설학원과의 인지도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또한 타 기관 및 국가 기관과의 협력도 타 유형의 법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부와 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교육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4.576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4.091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889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768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707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636	3.364
	유형평균		3.944	3.644

5.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지표별 특성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의료 분야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중 민주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20을 나타내어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는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상당수의 비영리 의료법인이 종교기관, 학교, 복지재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의 정비 정도가 타 유형의 법인 평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낮고 내부의견의 수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사회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표 5-41〉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방향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383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767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425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456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047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041	3.261
	유형평균		3.520	3.626

투명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69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는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의료수익의 증대에만 관심을 갖는 영리병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관리와 이에 대한 외부공개가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로 인하여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사 지표가 타 기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표 5-42〉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3.589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3.184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195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3.526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2.737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384	3.539
	유형평균		3.269	3.580

효율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368을 나타나 5개 유형의 비영리법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장기적 계획의 수립이나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상근인력의 배치 등에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 평균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즉 의료법인의 특성상 고객서비스 업무인 의료행위를 장기적 계획이나 연간계획대로 할 수 없는 업무 특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3〉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340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319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346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372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500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330	3.425
	유형평균		3.368	3.623

형평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81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든 문항에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배분, 출신지역, 성, 구성원 간 위계,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등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조차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는 의료분야 비영리법인들이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공익적 기능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수익 증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5-44〉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599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3.594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3.66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3.535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310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182	3.391
	유형평균		3.481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외부적 책무성 분야에서 합법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58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는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지표상으로 기관설립의 적법성, 법적의무의 준수, 고객관련활동의 합법성, 조직운영의 합법성에서 전체 유형의 평균과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과 기관의 위법행위 지표에서 타 유형 비영리법인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는 이미 지적된 비영리 의료 법인의 설립자에 의한 의사결정, 공익적 기능을 소홀히 하고 의료수익의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5〉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외 부 적 책 임 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177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3.930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3.785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3.677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3.586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392	3.630
	유형평균		3.758	3.881

대표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334를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았다. 이는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대표성 항목의 모든 지표에서 타 유형 비영리법인의 평균보다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센터의 실효성, 기관 설립목적과 사업 활동의 일관성, 사회적 기여, 그리고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분야 비영리법인 들이 고객요구에 대한 이해 정도나 사회적 기여도가 낮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5-46〉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145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522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3.425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3.484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3.231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199	3.602
	유형평균		3.334	3.662

전문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983을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점수는 대중의 인지도가 낮고 전문지식의 외부제공,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 협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문 분석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관련 공무원들은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47〉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2.892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2.925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011	3.338
		기관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2.99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2.973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102	3.419
	유형평균		2.983	3.337

반응성 항목은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02를 나타내어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협력 혹은 경쟁상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보건소 등 지휘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과의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의료	전체 문항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4.188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538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237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425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2.968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059	3.364
	유형평균		3.402	3.644

6. 소결

일부 기관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문제점과는 다르게 항목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은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대다수의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체 법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분석항목 중에서 전문성의 경우 의료,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서의 상대적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정량적 비교 시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유형에 대한 평균에서는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성과 형평성 항목,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는 합법성 항목의 세 항목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합법성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내부적 책무성의 민주성, 효율성 항목,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의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문성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 법인의 경우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고 보조금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다양한 문제점에 비하여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에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설문 응답 점수를 받았다.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에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항목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최하위

는 아니었으나 외부적 책무성에서 대표성을 제외한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 소규모로서 내부적인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 분야의 구성 항목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항목에서 타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종교의 이념적 특성, 예식과 행사의 관행, 그리고 신자 등의 인적 요소 등이 결합하여 외부적 책무성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항목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성, 대표성 반응성 항목에서 타 유형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설문 분석결과가 나타나 책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성 항목의 상대적 낮은 점수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학교법인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응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타 유형 비영리법인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분석되었으며 특히 투명성항목에서 타 유형 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보공개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는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자나 실질적인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조사대상자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비교분석

1. 책무성 유형별 AHP 비교분석

가.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 비교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간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5가지 비영리법인 유형을 통합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49>과 같다.

내부구성원과 공무원간의 AHP 분석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 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두 모집단의 AHP 비교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중요한 지표로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냈으나 관련 공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인력의 배치 여부”의 지표가 48개 지표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49〉 전체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내부 책 임 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677	31	0.3959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690	30	0.3585	27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558	34	0.3306	32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473	36	0.3265	34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391	39	0.3090	39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238	41	0.3033	41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789	29	0.3347	31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612	33	0.3153	37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515	35	0.3090	38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616	32	0.3264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3174	42	0.2802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396	38	0.3089	40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431	47	0.2306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432	46	0.2393	44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483	45	0.2409	43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551	44	0.2386	46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554	43	0.2387	45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383	48	0.2222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811	28	0.3564	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4132	25	0.3566	28
		성에 따른 차별여부	0.4050	26	0.3610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924	27	0.3520	30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408	37	0.3306	33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375	40	0.3188	36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외부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545	6	0.7053	6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539	7	0.6698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330	9	0.6512	10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7007	11	0.6333	12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293	10	0.6463	11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7004	12	0.6105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431	8	0.6796	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954	4	0.7201	4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8076	3	0.7380	2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470	1	0.7500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8186	2	0.7236	3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738	5	0.7081	5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4898	21	0.4478	20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761	23	0.4376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968	20	0.4471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847	22	0.4467	2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729	24	0.4450	23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5024	19	0.4580	19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	0.6182	17	0.6795	8
	반응성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5887	18	0.6122	13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455	13	0.5709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199	16	0.5865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6215	15	0.5498	17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6238	14	0.5453	18	

나.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 비교

비영리법인의 책무성과 관련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간 설문에 대한 AHP 분석결과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5

0)와 같다.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중요한 지표로 내부구성원은 전체 분석과 달리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냈으나 관련 공무원은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지표는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내부 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내어 전체 분석과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0〉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599	31	0.3800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608	30	0.3554	30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543	32	0.3332	32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422	35	0.3295	34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190	41	0.3209	36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199	40	0.3049	41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632	29	0.3379	31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509	33	0.3119	39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413	36	0.3131	38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509	34	0.3309	3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3152	42	0.2689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265	38	0.3072	40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427	46	0.2278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505	44	0.2542	43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525	43	0.2472	44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492	45	0.2424	45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414	47	0.2361	46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207	48	0.2167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863	28	0.3665	27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4070	25	0.3582	29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995	26	0.3665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929	27	0.3614	28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224	39	0.3243	35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318	37	0.3166	37

31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434	6	0.6898	7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334	8	0.6646	8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149	11	0.6532	10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694	12	0.6246	13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165	9	0.6453	11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7165	10	0.6270	12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549	5	0.7020	6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8021	2	0.7128	4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903	4	0.7462	2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493	1	0.7677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7962	3	0.7382	3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373	7	0.7087	5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0.4258	23	0.4555	22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138	24	0.4255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740	22	0.4502	23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928	20	0.4692	20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780	21	0.4711	19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5035	19	0.4629	21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여부	0.6127	13	0.6626	9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5690	18	0.6186	14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127	14	0.5822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063	15	0.6064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6014	16	0.5568	18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5981	17	0.5602	17

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 비교

비영리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대한 AHP분석결과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51>과 같다.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를 해보면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그 다음 지표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5-51〉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832	31	0.4037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757	33	0.3606	27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581	36	0.3335	32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553	37	0.3340	31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488	38	0.3125	40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283	42	0.3133	39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929	28	0.3321	33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859	30	0.3303	36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693	34	0.3094	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789	32	0.3312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3431	40	0.2976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623	35	0.3225	37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564	47	0.2318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602	46	0.2338	46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615	45	0.2348	45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700	43	0.2400	43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693	44	0.2383	44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460	48	0.2266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863	29	0.3590	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4202	25	0.3599	28
		성에 따른 차별여부	0.4117	26	0.3609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4033	27	0.3548	30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469	39	0.3314	34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431	41	0.3191	38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720	8	0.7077	6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788	7	0.6719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586	9	0.6555	11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7384	11	0.6463	12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552	10	0.6641	10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7283	12	0.6249	13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864	6	0.6875	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8218	5	0.7156	5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8513	2	0.7474	2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670	1	0.7624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8493	3	0.7474	3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8277	4	0.7264	4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0.5048	22	0.4578	22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5289	20	0.4633	20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5235	21	0.4593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5048	23	0.4538	24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994	24	0.4545	23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5316	19	0.4736	19
	반이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	0.6435	15	0.6860	8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6516	14	0.6066	14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792	13	0.5698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435	16	0.5882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6225	18	0.5631	17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6354	17	0.5540	18

라.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의 설문을 AHP 분석한 결과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52>과 같다.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나 관련 공무원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지표에서도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나 관련 공무원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표는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으로 나타났다.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2〉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748	31	0.3594	2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804	30	0.3425	31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739	32	0.3192	34
		특정개인의 견직 여부	0.3739	33	0.3086	36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478	39	0.2938	39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236	41	0.2938	38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876	29	0.3325	32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649	36	0.2930	40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658	35	0.2993	37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693	34	0.3097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959	42	0.2639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291	40	0.2847	41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499	47	0.2263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551	46	0.2422	44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615	45	0.2485	43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687	43	0.2374	45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622	44	0.2358	46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466	48	0.2105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882	28	0.3486	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4249	25	0.3624	25
		성에 따른 차별여부	0.4174	26	0.3600	26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4033	27	0.3509	28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553	37	0.3440	30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544	38	0.3211	33

32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317	8	0.6517	7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266	10	0.6180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283	9	0.6054	11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6812	12	0.5844	13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165	11	0.6054	10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7451	6	0.5844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412	7	0.6537	6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8120	4	0.7175	2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8238	3	0.7225	1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591	1	0.7126	3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8454	2	0.6930	5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825	5	0.6979	4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4861	21	0.4387	21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660	23	0.4119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901	20	0.4320	23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767	22	0.4387	2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606	24	0.4454	20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994	19	0.4588	19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0.6225	15	0.6281	8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6014	17	0.5997	12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127	16	0.5471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014	18	0.5714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6241	14	0.5471	17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6257	13	0.5268	18

마. 교육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의 설문을 AHP 분석한 결과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53>과 같다.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비영리 법인 분석과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5-5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757	31	0.4290	25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794	29	0.3838	26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441	38	0.3486	34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0.3422	39	0.3386	37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525	37	0.3341	40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320	41	0.3214	42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876	27	0.3577	32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798	28	0.3637	30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649	34	0.3448	35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736	32	0.3525	3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3571	36	0.3320	4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614	35	0.3345	39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336	46	0.2504	47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330	47	0.2511	46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434	45	0.2570	43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570	43	0.2543	45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538	44	0.2562	44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310	48	0.2412	48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732	33	0.3694	2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4070	25	0.3647	29
		성에 따른 차별여부	0.3910	26	0.3723	27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0.3779	30	0.3609	31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328	40	0.3419	3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252	42	0.3381	38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804	5	0.7746	5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754	6	0.7339	9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367	9	0.7050	11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7081	11	0.6930	12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502	8	0.7134	10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6560	13	0.6455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117	10	0.7366	8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864	4	0.7626	6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982	3	0.8003	3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513	1	0.8221	1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8139	2	0.8042	2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687	7	0.7785	4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5195	19	0.4992	19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5008	21	0.4952	20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5088	20	0.4912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874	22	0.4708	23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861	24	0.4559	24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874	23	0.4790	22
	반이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	0.5852	17	0.7417	7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5738	18	0.6631	13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760	12	0.6304	15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306	14	0.6108	16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6289	15	0.5894	18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6273	16	0.6273	16

바. 의료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문을 AHP 분석한 결과 5개의 비영리법인 유형 중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지표의 종합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5-54>과 같다.

전체 비영리법인에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는 달리 내부구성원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지만 관련 공무원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설립의 적법성”이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지표 또한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지만 관련 공무원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표에서는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가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책무성을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로 구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

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4〉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450	33	0.4077	20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0.3488	30	0.3504	26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0.3488	31	0.3186	32
		특정개인의 견직 여부	0.3227	38	0.3214	31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0.3274	36	0.2834	38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0.3153	41	0.2828	39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0.3632	29	0.3132	33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0.3248	37	0.2779	41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0.3160	40	0.2788	40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0.3352	34	0.3077	35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0.2759	42	0.2389	4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0.3186	39	0.2953	37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0.2330	45	0.2167	46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0.2174	48	0.2154	4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0.2226	47	0.2171	45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0.2304	46	0.2188	44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0.2505	43	0.2271	43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0.2473	44	0.2161	47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0.3713	28	0.3384	2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0.4070	25	0.3379	29
		성에 따른 차별여부	0.4051	26	0.3449	27
		구성원 간 위치에 따른 차별여부	0.3845	27	0.3324	30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0.3469	32	0.3112	34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0.3328	35	0.2992	36

32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1차 수준	2차 수준	측정 지표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종합 중요도	전체 우선 순위
외부적 책무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0.7451	7	0.7025	1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0.7552	4	0.6609	6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0.7266	8	0.6365	7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0.7064	11	0.6184	10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0.7081	10	0.6031	12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0.6560	12	0.5704	14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0.7215	9	0.6183	11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0.7549	5	0.6924	2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0.7746	3	0.6733	5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0.8080	1	0.6849	3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0.7884	2	0.6352	8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0.7530	6	0.6289	9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0.5128	19	0.3874	25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0.4713	22	0.3918	24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0.4874	21	0.4033	21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0.4620	23	0.4012	22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0.4405	24	0.3982	23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0.4901	20	0.4155	19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	0.6273	16	0.6789	4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0.5479	18	0.5735	13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0.6468	13	0.5247	16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0.6176	17	0.5552	15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0.6306	15	0.4811	18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0.6322	14	0.4958	17

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특성 비교분석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의 민주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85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2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의 설문 결과 점수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점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내부구성원의 관대화 경향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된다.

민주성 항목에 대한 지표 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내부구성원은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관련 공무원은 “의사결정 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표 5-55〉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870	3.954	4.086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880	3.968	3.821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810	3.826	3.583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680	3.734	3.543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430	3.646	3.450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440	3.482	3.278	3.261
	유형 평균		3.685	3.768	3.627	3.62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투명성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1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71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투명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의 평균점수가 관련 공무원의 평균점수보다 약 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항목에 대한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관리의 체계화” 지표에 가장 높은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는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4.1600	4.3400	3.872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4.0200	4.1380	3.574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9100	4.0260	3.588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4.0200	4.1420	3.791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6100	3.6360	3.081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7400	3.8900	3.520	3.539
	유형 평균		3.9100	4.0287	3.571	3.58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의 효율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41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59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항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순위와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지표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지표로 나타났다.

〈표 5-57〉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내부 적 책 임 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7400	3.7460	3.510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8600	3.7480	3.918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8900	3.8260	3.810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8400	3.9300	3.735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7200	3.9360	3.639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4000	3.6720	3.340	3.425
	유형 평균		3.7417	3.8097	3.659	3.623

문화예술분야에 비영리 법인의 형평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71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11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형평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성에 따른 차별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내부구성원은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8〉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4.1100	4.0540	3.898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4.3300	4.3960	3.810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4.2500	4.3080	3.89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4.1800	4.1740	3.844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4300	3.6260	3.449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5300	3.5900	3.367	3.391
	유형 평균		3.9717	4.0247	3.711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문화예술분야에 비영리 법인의 합법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55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합법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관설립의 적법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9〉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임 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4200	4.4860	4.102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4.3600	4.4820	3.952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4.2500	4.3580	3.884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3.9800	4.1660	3.714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4.2600	4.3360	3.837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4.2600	4.1640	3.728	3.630
	유형 평균		4.2550	4.3320	3.870	3.881

문화예술분야에 비영리 법인의 대표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1을 나타내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1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대표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8400	3.7800	3.571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4.0800	4.0460	3.626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4.0200	4.1080	3.796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4.3200	4.3080	3.905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4.0500	4.1640	3.755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7500	3.9360	3.605	3.602
	유형 평균		4.0100	4.0579	3.710	3.662

문화예술분야에 비영리 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02를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전문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임 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1800	4.0579	3.401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0900	3.5560	3.177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5400	3.7100	3.361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6800	3.6200	3.503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5700	3.5320	3.517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7600	3.7520	3.456	3.419
	유형 평균		3.4700	3.6830	3.402	3.337

문화예술분야에 비영리 법인의 반응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01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88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반응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문화 예술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3.7800	3.8140	4.088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5100	3.6320	3.816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7800	3.9820	3.592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7400	3.8240	3.741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7100	3.8340	3.435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6900	3.8480	3.456	3.364
	유형 평균		3.7017	3.8223	3.688	3.644

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특성 비교분석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민주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51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8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민주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지표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 5-6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1200	3.9540	4.340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400	3.9680	3.877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8500	3.8260	3.586	3.555
		특정개인의 견직 여부	3.8200	3.7340	3.591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7500	3.6460	3.360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5300	3.4820	3.369	3.261
	유형 평균		3.8517	3.7683	3.687	3.626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617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73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투명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재정 관리의 체계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지표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 5-6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4.5000	4.3400	3.805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4.4200	4.1380	3.785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4.2300	4.0260	3.545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4.3400	4.1420	3.795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9300	3.6360	3.410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4.1500	3.8900	3.695	3.539
	유형 평균		4.2617	4.0287	3.673	3.58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효율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15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1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항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에서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5〉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9500	3.7460	3.573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4.0100	3.7480	3.603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4.0300	3.8260	3.618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4.1600	3.9300	3.698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4.1500	3.9360	3.673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7900	3.6720	3.492	3.425
	유형평균		4.0150	3.8097	3.610	3.62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형평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983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96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형평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성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6〉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4.1100	4.0540	3.818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4.4700	4.3960	3.828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4.3800	4.3080	3.83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4.2900	4.1740	3.773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6900	3.6260	3.525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6500	3.5900	3.394	3.391
	유형 평균		4.0983	4.0247	3.696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합법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49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35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합법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설립의 적법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지표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표 5-6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입 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5900	4.4860	4.208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4.6300	4.4820	3.995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4.5100	4.3580	3.898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4.3900	4.1660	3.843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4.4900	4.3360	3.949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4.3300	4.1640	3.716	3.630
	유형 평균		4.4900	4.3320	3.935	3.881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대표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416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19를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대표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8〉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4.0000	3.7800	3.497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4.1800	4.0460	3.640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4.3300	4.1080	3.802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4.4100	4.3080	3.878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4.3200	4.1640	3.802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4.2100	3.9360	3.695	3.602
	유형 평균		4.2416	4.0579	3.719	3.662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5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3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전문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9〉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직책 책임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7700	4.0579	3.418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9500	3.5560	3.459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9100	3.7100	3.429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7700	3.6200	3.388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7300	3.5320	3.393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9700	3.7520	3.536	3.419
	유형 평균		3.8500	3.6830	3.437	3.33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반응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85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68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반응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내부구성원은 “국가기관과의 협력” 지표에 최고 점수를 주었는데 관련 공무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지표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사회 복지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임 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부	3.9700	3.8140	4.232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4.0200	3.6320	3.742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4.1900	3.9820	3.515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9700	3.8240	3.629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8400	3.8340	3.474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9200	3.8480	3.418	3.364
	유형 평균		3.9850	3.8223	3.668	3.644

4.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특성 비교분석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민주성 지표는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지표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967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지표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36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민주성 지표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사업운동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와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내부 적 책임 성	민주성	사업운동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300	3.9540	3.864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900	3.9680	3.682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4.0200	3.8260	3.432	3.555
		특정개인의 견직 여부	4.0200	3.7340	3.318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7400	3.6460	3.159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4800	3.4820	3.159	3.261
	유형 평균		3.8967	3.7683	3.436	3.626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333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05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투명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재정 관리의 체계화”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2〉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4.4400	4.3400	3.810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4.1800	4.1380	3.357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및 감사 여부	4.1900	4.0260	3.429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4.2300	4.1420	3.548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3900	3.6360	3.024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7700	3.8900	3.262	3.539
	유형 평균		4.0333	4.0287	3.405	3.580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효율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65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98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항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3〉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내부 적 책 임 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8500	3.7460	3.488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9300	3.7480	3.732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4.0300	3.8260	3.829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4.1400	3.9300	3.659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4.0400	3.9360	3.634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8000	3.6720	3.244	3.425
	유형 평균		3.9650	3.8097	3.598	3.623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형평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본 형평성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155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본 형평성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99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형평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지표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표 5-74〉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4.1300	4.0540	3.707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4.5200	4.3960	3.854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4.4400	4.3080	3.829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4.2900	4.1740	3.732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7800	3.6260	3.659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7700	3.5900	3.415	3.391
	유형 평균		4.1550	4.0247	3.699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합법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9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17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합법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기관의 위법행위 여

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설립의 적법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과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5〉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3500	4.4860	3.875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4.3200	4.4820	3.675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4.3300	4.3580	3.600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4.0500	4.1660	3.475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4.2600	4.3360	3.600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4.4300	4.1640	3.475	3.630
	유형 평균		4.2900	4.3320	3.617	3.881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대표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123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58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대표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7700	3.7800	3.325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4.1300	4.0460	3.650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4.1900	4.1080	3.675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4.3700	4.3080	3.625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4.3000	4.1640	3.525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9800	3.9360	3.550	3.602
	유형 평균		4.1233	4.0579	3.558	3.662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833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6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전문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7〉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책임 인성	전문성	대중예의 인지도	3.6300	4.0579	3.275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4800	3.5560	3.075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6600	3.7100	3.225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5600	3.6200	3.27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4400	3.5320	3.325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7300	3.7520	3.425	3.419
	유형 평균		3.5833	3.6830	3.267	3.337

종교분야 비영리 법인의 반응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917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1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반응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와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8〉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종교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책 임 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도여부	3.8400	3.8140	3.875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7100	3.6320	3.700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7800	3.9820	3.375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7100	3.8240	3.525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8500	3.8340	3.375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8600	3.8480	3.250	3.364
	유형 평균		3.7917	3.8223	3.517	3.644

5.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특성 비교분석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민주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1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62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사업운명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9〉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400	3.9540	4.612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4.0800	3.9680	4.126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7000	3.8260	3.748	3.555
		특정개인의 겸직 여부	3.6800	3.7340	3.641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7900	3.6460	3.592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5700	3.4820	3.456	3.261
	유형 평균		3.8100	3.7683	3.862	3.626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46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82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투명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재정 관리의 체계화”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0〉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내부 적 책 임 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4.4400	4.3400	4.098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4.3500	4.1380	4.167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4.1800	4.0260	3.951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4.2800	4.1420	4.039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4.0900	3.6360	3.804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4.1400	3.8900	3.833	3.539
	유형 평균		4.2467	4.0287	3.982	3.580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효율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283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관련 공무원에서는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79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항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1〉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지표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내부 적 책 임 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6000	3.7460	3.859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5900	3.7480	3.869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7500	3.8260	3.960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9600	3.9300	3.919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9100	3.9360	3.949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5600	3.6720	3.717	3.425
	유형 평균		3.7283	3.8097	3.879	3.623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형평성 지표는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지표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133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지표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06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형평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형평성 지표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성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2〉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무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9700	4.0540	3.929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4.3300	4.3960	3.879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4.1600	4.3080	3.960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4.0200	4.1740	3.838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5400	3.6260	3.636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4600	3.5900	3.596	3.391
	유형 평균		3.9133	4.0247	3.806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합법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366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27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합법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기관설립의 적법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외 부 적 책 입 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6400	4.4860	4.606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4.6100	4.4820	4.364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4.3800	4.3580	4.192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4.2100	4.1660	4.121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4.4600	4.3360	4.242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9000	4.1640	3.838	3.630
	유형 평균		4.3667	4.3320	4.227	3.881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대표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01을 나타내어 근소한 차이로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88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4〉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임 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6200	3.7800	3.747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4.0000	4.0460	3.879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4.0600	4.1080	4.071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4.3300	4.3080	4.182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4.1400	4.1640	4.091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9100	3.9360	3.960	3.602
	유형 평균		4.0100	4.0579	3.988	3.662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21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98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대중의 인지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5〉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임 성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3.8800	4.0579	3.727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7400	3.5560	3.697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8000	3.7100	3.667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6400	3.6200	3.51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6300	3.5320	3.404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6400	3.7520	3.576	3.419
	유형 평균		3.7217	3.6830	3.598	3.337

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의 반응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26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44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응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6〉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교육	전체 문항 평균	교육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3.6100	3.8140	4.576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5400	3.6320	4.091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4.1700	3.9820	3.889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8900	3.8240	3.768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8800	3.8340	3.707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8700	3.8480	3.636	3.364
	유형 평균		3.8267	3.8223	3.944	3.644

6.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특성 비교분석

가. 내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민주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983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2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민주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와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7〉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내부 적 책 임 성	민주성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7100	3.9540	4.383	4.257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3.7500	3.9680	3.767	3.855
		의사결정 시 실무자의 참여	3.7500	3.8260	3.425	3.555
		특정개인의 검직 여부	3.4700	3.7340	3.456	3.510
		내부의견 수렴의 활성화 정도	3.5200	3.6460	3.047	3.322
		의사결정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정도	3.3900	3.4820	3.041	3.261
	유형 평균		3.5983	3.7683	3.520	3.626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917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69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명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재정 관리의 체계화”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8〉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화	4.1600	4.3400	3.589	3.835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3.7200	4.1380	3.184	3.613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3.6200	4.0260	3.195	3.541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3.8400	4.1420	3.526	3.74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3.1600	3.6360	2.737	3.211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3.6500	3.8900	3.384	3.539
	유형 평균		3.6917	4.0287	3.269	3.580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효율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983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368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효율성 항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89〉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효율성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3.5900	3.7460	3.340	3.554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3.3500	3.7480	3.319	3.688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3.4300	3.8260	3.346	3.712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3.5500	3.9300	3.372	3.677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3.8600	3.9360	3.500	3.679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	3.8100	3.6720	3.330	3.425
	유형 평균		3.5983	3.8097	3.368	3.623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형평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85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다소 낮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81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형평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성에 따른 차별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0〉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내부적 책임성	형평성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3.9500	4.0540	3.599	3.79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	4.3300	4.3960	3.594	3.793
		성에 따른 차별여부	4.3100	4.3080	3.668	3.839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여부	4.0900	4.1740	3.535	3.744
		업무능률에 따른 차별 여부	3.6900	3.6260	3.310	3.516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	3.5400	3.5900	3.182	3.391
	유형 평균		3.9850	4.0247	3.481	3.679

나. 외부적 책무성 항목: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합법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2583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758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합법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법적의무의 준수 여

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기관설립의 적법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1〉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 부 적 책 임 성	합법성	기관설립의 적법성	4.4300	4.4860	4.177	4.194
		법적의무의 준수 여부	4.4900	4.4820	3.930	3.983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4.3200	4.3580	3.785	3.872
		기관 내 조직 운영의 합법성	4.2000	4.1660	3.677	3.766
		기관설립과 운영목적의 일관성	4.2100	4.3360	3.586	3.843
		기관의 위법행위 여부	3.9000	4.1640	3.392	3.630
	유형 평균		4.2583	4.3320	3.758	3.881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대표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9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334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을 나타냈다.

〈표 5-92〉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대표성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3.6700	3.7800	3.145	3.457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3.8400	4.0460	3.522	3.663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3.9400	4.1080	3.425	3.754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4.1100	4.3080	3.484	3.815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	4.0100	4.1640	3.231	3.681
		고객과 소통을 위한 활동	3.8300	3.9360	3.199	3.602
	유형 평균		3.9000	4.0579	3.334	3.662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전문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65를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983을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대중에의 인지도”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대중에의 인지도”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3〉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외부 적 책 임 성	전문성	대중에의 인지도	3.8300	3.7523	2.892	3.34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여부	3.5200	3.5560	2.925	3.267
		일반인에게 기관의 전문지식 제공여부	3.6400	3.7100	3.011	3.338
		기관 활동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여부	3.4500	3.6200	2.995	3.335
		외부전문가 활용 시 실질적 도움 여부	3.2900	3.5320	2.973	3.322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	3.6600	3.7520	3.102	3.419
	유형 평균		3.5650	3.6380	2.983	3.337

의료분야 비영리 법인의 반응성 항목은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분석하였다. 내부구성원은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8067을 나타내어 문항평균보다 낮은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관련 공무원에서도 이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비영리기관과 비교하여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402를 나타내어 타 분야의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응성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내부구성원보다 관련 공무원의 평균이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내부구성원은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지표에, 관련 공무원은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지표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4〉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와 비교분석

분야	항목	지표 구분	내부구성원		관련 공무원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의료	전체 문항 평균
외부적 책임성	반응성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여부	3.8700	3.8140	4.188	4.192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3.3800	3.6320	3.538	3.777
		국가기관과의 협력여부	3.9900	3.9820	3.237	3.522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3.8100	3.8240	3.425	3.618
		고객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3.8900	3.8340	2.968	3.392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정도	3.9000	3.8480	3.059	3.364
	유형 평균		3.8067	3.8223	3.402	3.644

7. 소결

내부구성원과 공무원간의 AHP 분석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 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두 모집단의 AHP 비교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중요한

지표로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냈으나 관련 공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냈다. 내부구성원 및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인력의 배치 여부”의 지료가 48개 지표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는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중요한 지표로 내부구성원은 전체 분석과 달리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냈으나 관련 공무원은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지표는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내부 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어 전체 분석과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는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각 항목의 지표별로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간 비교를 해보면 전체 분석과 같이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그 다음 지표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석과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는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각 항목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내부구성원은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

의 일관성”이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나 관련 공무원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지표에서도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나 관련 공무원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표는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는 전체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 같이 내부 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비영리 법인 분석과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지표별 중요도는 전체 비영리법인에 지표별 중

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가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항목별 중요도는 외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의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항목인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의 순으로 전체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분석과 동일하게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 구성항목이 내부적 구성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각 항목의 지표별로는 전체 분석과는 달리 내부구성원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지만 관련 공무원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설립의 적법성”이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 지표 또한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나타났지만 관련 공무원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지표에서는 내부구성원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연간사업계획의 완수 여부”가 48개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제1절 조사대상기관의 일반특성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 종합분석

제4절 소결

6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 지수분석

제1절 조사대상기관의 일반특성

1. 활동분야별 분포

먼저 분석대상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비영리기관은 모두 1,107개로 5개의 활동분야별로 분류되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379개 기관으로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의료분야가 281개 기관 25%, 다음이 교육분야 224개 기관, 20%, 문화예술 분야가 129개 기관, 약 12%, 그리고 종교분야가 94개 기관, 8%를 차지하고 있다.

〈표 6-1〉 활동분야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활동분야	빈도	비율(%)	누적비율
문화예술	129	11.65	11.65
사회복지	379	34.24	45.89
종교	94	8.49	54.38
교육	224	20.23	74.62
의료	281	25.38	100
Total	1,107	100	

먼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예술단체가 5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은 기타시설로 분류된 기관이 가장 많고, 다음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분야에서는 개신교가 다수를 점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대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

료분야에서는 병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분야와 의료분야는 지배적 기관유형인 대학교와 병원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른 활동분야의 기관들과는 달리 이들 지배적 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설립주체별 분포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법인이 설립한 기관이 전체의 2/3가 넘는 7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설립주체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기관 설립주체	빈도	비율(%)	누적비율
국가	35	3.16	3.16
지방자치단체	63	5.69	8.85
법인	799	72.18	81.03
개인	175	15.81	96.84
기타	35	3.16	100
Total	1,107	100	

3. 법인 유형별 분포

법인의 유형은 법률상 법인유형과 기능상 법인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법률상 법인으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있는데, 법인의 형태가 아닌 비법인이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재단법인이 34%, 그리고 사단법인이 22%, 특수법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 법률상 법인 분류에 따른 비영리법인 수

법인종류	빈도	비율(%)	누적비율
비법인	417	37.67	37.67
재단법인	378	34.15	71.82
사단법인	240	21.68	93.5
학교법인	55	4.97	98.46
특수법인	17	1.54	100
Total	1,107	100	

이 법인들을 다시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비법인의 경우 법인이 설립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이 33.6%로 많았다.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경우 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6-4〉 설립주체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유형

법인종류\ 설립주체	비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Total
국가	16	8	8	2	1	35
	3.84	2.12	3.33	3.64	5.88	3.16
지방자치단체	36	19	5	0	3	63
	8.63	5.03	2.08	0	17.65	5.69
법인	206	327	204	50	12	799
	49.4	86.51	85	90.91	70.59	72.18
개인	140	16	16	3	0	175
	33.57	4.23	6.67	5.45	0	15.81
기타	19	8	7	0	1	35
	4.56	2.12	2.92	0	5.88	3.16
Total	417	378	240	55	17	1,107
	100	100	100	100	100	100

각 활동분야의 법인 유형을 살펴보면 의료분야는 비법인이 가장 많아 의료분야 기관 중 59%가 비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비법인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단법인 32%, 재단법인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는 재단법인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비법인으로 30%에 달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사단법인이 가장 많은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단법인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활동분야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하면 비법인이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형태가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비영리기관은 대부분이 사단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비법인은 3.1%에 불과하였다.

〈표 6-5〉 활동분야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유형

법인종류\ 활동분야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Total
비법인	4	149	29	68	167	417
	3.1	39.31	30.85	30.36	59.43	37.67
재단법인	35	99	49	95	100	378
	27.13	26.12	52.13	42.41	35.59	34.15
사단법인	90	123	15	5	7	240
	69.77	32.45	15.96	2.23	2.49	21.68
학교법인	0	1	0	54	0	55
	0	0.26	0	24.11	0	4.97
특수법인	0	7	1	2	7	17
	0	1.85	1.06	0.89	2.49	1.54
Total	129	379	94	224	281	1,107
	100	100	100	100	100	100

조사대상 기관을 기능상 법인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의료법인 24%, 학교법인 20%, 문화예술법인 18%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6〉 기능상 법인유형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기능상법인종류	빈도	비율(%)	누적비율
사회복지법인	355	32.07	32.07
종교법인	101	9.12	41.19
학교법인	226	20.42	61.61
의료법인	266	24.03	85.64
문화예술법인	131	11.83	97.47
기타	28	2.53	100
Total	1,107	100	

4. 비영리기관의 수익추구 가능성

조사대상 비영리 기관들 중에서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전체의 41%로 의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분야별로 보면 교육분야 기관의 68%는 수익추구가 가능하며, 의료와 문화예술 분야도 각각 45%와 4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은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 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7〉 조사대상 비영리기관의 수익추구 가능성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Total
예	57	100	20	153	127	457
	44.19	26.39	21.28	68.3	45.2	41.28
아니오	72	279	74	71	154	650
	55.81	73.61	78.72	31.7	54.8	58.72
Total	129	379	94	224	281	1,107
	100	100	100	100	100	100

5. 조사대상 기관의 규모

활동분야별로 각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월평균)를 살펴보면 역시 의료분야의 이용자수가 월평균 약 24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교육분야, 다음이 종교분야,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0〉 비영리법인 활동분야별 월평균이용자수

활동분야	월평균이용자수
의료	23,959
교육	6,136
종교	3,327
사회복지	2,836
문화예술	1,047
Total	8,699

보다 직접적으로 비영리 기관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수를 조사한 결과 사단법인이 가장 많은 439개, 다음이 재단법인 20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유형의 기관수를 고려하여 기관당 평균 운영기관수를 계산해 보면 사단법인 유형의 기관은 평균 1.8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유형의 기관은 평균 0.5개 기관을, 특수법인은 평균 2.5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 비영리법인의 운영기관 수

법인 유형(법적)	법인 수	법인 운영 기관수	법인당 운영기관수
사단법인	240	439	1.8
재단법인	378	200	0.5
비법인	417	84	0.2
특수법인	17	42	2.5
학교법인	55	24	0.4
Total	1107	197	0.2

기능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교법인이 가장 많은 725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문화예술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법인당 운영기관 수 또한 종교법인이 가장 많은 법인당 7.2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은 문화예술법인으로 법인당 2.2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2〉 기능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운영기관 수

법인 유형(기능)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수	법인 수	법인당 운영기관수
종교법인	725	101	7.178218
문화예술법인	283	131	2.160305
사회복지법인	253	355	0.712676
학교법인	68	226	0.300885
의료법인	4	266	0.015038
Total	197	1,107	0.177958

다음으로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직원을 포함한 구성인력을 살펴보면 학교분야 개인 기관 또는 시설의 구성인력이 가장 많은 평균 1,385명에 달하고 다음으로 종교분야 개인 기관 또는 시설이 779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기관유형들은 보통 50여명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13〉 기관 세부유형별 법인 구성인력

기관유형(법인이나 기관의 유형)	법인구성 평균인력
사회복지법인	43
종교법인	50
학교법인	12
의료법인	58
문화예술법인	24
Total	8,699

법인 구성인력은 법인유형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법인의 경우 가장 많은 법인 구성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4〉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 법인 구성인력

법인유형\ 설립주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비법인	51	245	34	52	5
재단법인	15	46	45	19	15
사단법인	27	26	30	15	20
학교법인	11		14	10	
특수법인	10	55	34		15

그리고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구성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5〉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법인 구성인력

법인유형\ 설립주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사회복지법인	13	20	42	6	5
종교법인	38	27	59	439	11
학교법인	18	665	12	11	18
의료법인	159	91	55	12	
문화예술법인	42	11	23	16	18
기타	0	0	15	7	0

다음으로 기관인력을 살펴보면, 기관 평균인력은 사회복지 분야가 2명으로 가장 작고 다음이 문화예술 3명, 종교분야 3명, 의료분야가 12명, 교육분야가 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규모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기관이 가장 영세한 규모이고, 상대적으로 교육과 의료기관은 인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활동분야별 평균 기관인력

분야	기관인력(평균)
문화예술	3
사회복지	2
종교	3
교육	14
의료	12

기관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교법인, 종교기관 또는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7〉 기관 세부유형별 평균인력

기관유형(법인이나 기관의 유형)	기관인력
사회복지법인	2
종교법인	2
학교법인	17
의료법인	8
문화예술법인	3

설립주체와 법인 기능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이 가장 인력이 많고 다음으로 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기관 평균인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8〉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기관인력

법인 기능유형\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	기타
사회복지법인	2	0	2	1	1
종교법인	5	0	2	11	3
학교법인	8	1	15	2	1
의료법인	0	46	12	1	
문화예술법인	7	5	3	2	2

다음은 기관 세부유형별로 법인과 기관의 겸직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 소속 학교분야 기관 및 시설이 45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및 의료분야 기관이었다.

〈표 6-19〉 기관 세부유형별 겸직인력

기관유형(법인이나 기관의 유형)	평균겸직인력
사회복지법인	39
종교법인	65
학교법인	350
의료법인	92
문화예술법인	13

법인 기능유형과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설립한 학교법인이 겸직인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설립의 의료법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0〉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겸직인력

법인 기능유형\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사회복지법인	19	20	36	10	5
종교법인	2	8	70	16	60
학교법인	699	41	362	139	53
의료법인	175	186	92	96	
문화예술법인	86	17	9	2	3
기타	183	51	8	30	1

다음으로 기관 세부유형별로 출연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분야 개인 기관 또는 시설의 출연자산이 약 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교법인이 약 42억원, 사회복지분야 개인기관 또는 시설이 34억원, 학교법인이 28억원, 사회복지법인이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기관 세부유형별 평균 출연자산 규모

기관유형(법인이나 기관의 유형)	출연자산규모(천원)
사회복지법인	2,152,597
종교법인	4,187,889
학교법인	2,809,094
의료법인	109,943
문화예술법인	641,300

법률상 법인유형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인이 설립한 비법인 기관과 개인이 설립한 비법인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법인 법률상 유형별 설립주체별 출연자산 규모

출연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비법인	4,628	3,218	4,510,333	3,984,692	294,892
재단법인	43,085	199,933	662,718	8,601	14,980
사단법인	23	8,128,195	703,659	2,328	43
학교법인	170,090		22,531	6,517	
특수법인	75,485	11,742	87,249		10

기능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예술법인의 자산이 가장 큰 규모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개인이 설립한 의료법인과 법인이 설립한 종교법인,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3〉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출연자산 규모

기능유형\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사회복지법인	340	47,844	1,653,690	3,648,422	509,167
종교법인	106	367	4,361,743	194	8,492
학교법인	51,115	2,184	2,453,618	21,425	2,000
의료법인	3,333	103,073	125,703	4,824,112	
문화예술법인	607	13,546,703	352,497	2,791	1,096

6. 비영리기관 수입 및 지출 구성

다음으로 기관의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국가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수입이 가장 많은 3,189억원 수준이고, 다음이 국가가 설립한 재단법인, 법인이 설립한 학교법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4〉 법인 법률상 유형별 설립주체별 수입 규모

(단위: 천원)

출연자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비법인	33,864,381	8,512,097	12,846,376	3,762,093	30,697,606
재단법인	64,827,278	7,964,842	15,904,074	4,033,885	688,343
사단법인	519,602	1,952,150	10,710,141	3,242,396	151,407
학교법인	318,950,340		45,416,867	4,626,454	
특수법인	23,578,478	16,274,060	3,169,014		15,000

다음으로 각 기관의 수입구성을 살펴보자. 먼저 총수입 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문화예술 22%, 교육분야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

후원금은 종교분야가 가장 많았고, 법인전입금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의료분야는 총수입의 89%가 사업수입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분야는 57%, 문화예술분야도 29%에 달했다.

〈표 6-25〉 활동분야별 총수입 구성비율

활동분야	정부보조금	민간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기타	합계
문화예술	0.22	0.19	0.13	0.29	0.17	1
사회복지	0.58	0.17	0.07	0.12	0.06	1
종교	0.00	0.63	0	0.22	0.15	1
교육	0.11	0.05	0.09	0.57	0.18	1
의료	0.04	0	0.02	0.89	0.05	1

사회복지와 문화예술분야의 법인은 모두 정부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민간후원금은 비법인은 낮은 편이었으나 재단법인은 좀 더 높고 사단법인은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 전입금은 재단법인의 경우는 10%이상이었으나 사단법인의 경우 문화예술분야는 11%를 나타내었으나, 사회복지분야는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법인유형에 따라 10%에서 33%사이로 조사되었다. 종교분야는 법인유형에 상관없이 민간후원금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육분야는 법인유형에 상관없이 사업수입이 대부분 50%이상을 차지하였고 비법인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20%, 법인전입금이 12%를 차지하였다. 교육분야 특수법인은 정부보조금이 총수입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분야도 사업수입이 법인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80%이상 97%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법인 종류별 총수입 구성비율

법률상 법인종류	수입구성	활동분야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비법인	정부보조금	0.39	0.6	0	0.2	0.05
	민간후원금	0.08	0.14	0.74	0.02	0
	법인전입금	0	0.04	0	0.12	0.01
	사업수입	0.18	0.13	0.18	0.47	0.89
재단법인	정부보조금	0.22	0.63	0	0.06	0.02
	민간후원금	0.15	0.15	0.53	0.07	0
	법인전입금	0.19	0.11	0	0.07	0.04
	사업수입	0.33	0.11	0.29	0.62	0.89
사단법인	정부보조금	0.21	0.52	0	0.01	0
	민간후원금	0.21	0.21	0.73	0.02	0
	법인전입금	0.11	0.08	0	0	0
	사업수입	0.28	0.1	0.11	0.79	0.95
학교법인	정부보조금		0.25		0.06	
	민간후원금		0.08		0.04	
	법인전입금		0.07		0.07	
	사업수입		0.53		0.6	
특수법인	정부보조금		0.64	0	0.79	0.06
	민간후원금		0.06	1	0.01	0
	법인전입금		0.09	0	0	0
	사업수입		0.1	0	0.15	0.86

설립주체별로 수입구성을 살펴보면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업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도 정부보조금의 비율이 큰데 학교법인은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이 50%를 조금 넘었고, 의료법인은 사업수입이 80%이상을 차지하였다. 개인과 법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각각 48%, 60%를 차지하였으며 문화예술법인은 18%와 1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인과 학교

39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법인은 정부보조금의 비율이 낮았고, 사업수입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6-27〉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수입구성비율

기능별 법인유형	수입구성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사회복지 법인	정부보조금	0.6	0.52	0.6	0.48	0.43
	민간후원금	0.1	0.14	0.16	0.25	0.32
	법인전입금	0.01	0.01	0.09	0.01	0.02
	사업수입	0.15	0.29	0.1	0.18	0
종교법인	정부보조금	0	0.26	0.06	0.09	0.05
	민간후원금	1	0.15	0.55	0.57	0.62
	법인전입금	0	0.06	0	0	0.02
	사업수입	0	0.07	0.25	0.28	0.08
학교법인	정부보조금	0.45	0.3	0.09	0.02	0
	민간후원금	0.01	0	0.05	0.1	0.32
	법인전입금	0.03	0.31	0.08	0	0.45
	사업수입	0.27	0.26	0.6	0.7	0.22
의료법인	정부보조금	0.56	0.16	0.03	0.01	
	민간후원금	0	0	0.01	0	
	법인전입금	0	0	0.04	0	
	사업수입	0.44	0.81	0.89	0.92	
문화예술 법인	정부보조금	0.46	0.45	0.19	0.18	0.18
	민간후원금	0.02	0.31	0.2	0.17	0.22
	법인전입금	0.14	0	0.15	0	0.01
	사업수입	0.21	0	0.3	0.37	0.32
기타	정부보조금	0.23	0	0.45	0.17	0
	민간후원금	0	0	0.07	0.04	1
	법인전입금	0	0	0	0	0
	사업수입	0.42	1	0.36	0.67	0

다음으로 정관상 수익추구 가능성에 따른 수입구성을 살펴보면 수익추구가 가능한 법인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추구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과 가능한 법인의 정부보조금 비율이 21%와 8%로 차이가 있었다.

〈표 6-28〉 법인 기능유형별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수입구성 비율

기능별 법인유형	수입구성	수익추구가능성	
		예	아니오
사회복지 법인	정부보조금	0.47	0.62
	민간후원금	0.17	0.18
	법인전입금	0.09	0.07
	사업수입	0.16	0.1
종교법인	정부보조금	0	0.09
	민간후원금	0.35	0.6
	법인전입금	0	0.01
	사업수입	0.38	0.18
학교법인	정부보조금	0.08	0.21
	민간후원금	0.05	0.04
	법인전입금	0.09	0.08
	사업수입	0.59	0.5
의료법인	정부보조금	0.04	0.05
	민간후원금	0	0.01
	법인전입금	0.03	0.02
	사업수입	0.91	0.86
문화예술 법인	정부보조금	0.25	0.18
	민간후원금	0.14	0.23
	법인전입금	0.07	0.18
	사업수입	0.37	0.23
기타	정부보조금	0.24	0.18
	민간후원금	0.04	0.11
	법인전입금	0	0
	사업수입	0.67	0.53

다음으로 기관의 지출규모 및 지출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출규모는 교육분야가 가장 크고 다음이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유형별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단법인의 지출규모가 크고, 교육분야에서는 학교법인이 의료분야에서는 재단법인의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9〉 법인 유형별 활동분야별 비영리법인 지출규모

(단위: 천원)

법인유형 \\활동분야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비법인	451,175	10,987,631	1,650,178	21,751,263	6,438,607
재단법인	1,815,513	1,176,559	2,931,830	48,619,303	10,641,643
사단법인	4,559,364	13,956,732	1,569,584	46,530,226	1,825,250
학교법인		507,099		65,079,889	
특수법인		1,702,091	15,000	11,426,530	9,912,474

기관의 지출구성을 활동분야별로 살펴보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운영비는 의료분야가, 사업비비율은 문화예술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0〉 활동분야별 지출구성

활동분야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문화예술	0.28	0.23	0.44
사회복지	0.52	0.17	0.30
종교	0.36	0.25	0.32
교육	0.35	0.2	0.22
의료	0.52	0.3	0.11

7. 비영리기관 내부 이해관계자(stakeholder) 수익배분비율

다음으로 기관의 내부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0%에서 30%의 수익이 내부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분야와 교육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비율이 높고 의료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1〉 법인유형별 활동분야별 내부구성원 수익배분율(%)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비법인	17.5	10.52	20.83	29.21	9.31
재단법인	15.94	13.06	34.65	29.07	9.05
사단법인	16.41	12.4	23.2	18.6	11.86
학교법인		0		32.26	
특수법인		5.57	50	20	10.43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내부구성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국가설립 학교법인의 경우 100% 내부구성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2〉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 내부구성원 수익배분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기타
비법인	26.69	3.75	16.61	12.32	3.95
재단법인	19.25	9.95	19.95	17.44	8.5
사단법인	22.5	32.2	13.89	21.56	1
학교법인	100		28.84	33.33	
특수법인	35	6.67	8.08		50

8. 비영리기관 잔여재산 귀속권

다음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펴보자. 잔여재산 귀속은 대부분 이사회 정관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립자나 설립자와 특별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의료분야만 10%가 넘게 나타났다.

〈표 6-33〉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권자

잔여재산 귀속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종교	교육	의료	Total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5.4	7.1	5.3	7.1	12.8	8.2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45.7	38.3	46.8	33.9	22.4	35.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0.2	36.2	13.8	37.5	40.9	35.1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14.7	7.7	16.0	15.2	1.1	9.0
기타	3.9	10.8	18.1	6.3	22.8	12.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권이 있고, 법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이 설립한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설립자나 설립자와 특수관계인이 다음으로 많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도 10%에 달했다.

〈표 6-34〉 설립주체별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권자

잔여재산 귀속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	기타	Total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0.0	1.6	5.9	24.6	0.0	8.2
당시 이사회의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8.6	4.8	42.3	17.1	37.1	35.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85.7	84.1	34.5	10.3	31.4	35.1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2.9	4.8	10.9	4.6	2.9	9.0
기타	2.9	4.8	6.4	43.4	28.6	12.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1. 분석의 틀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의 비영리기관 책무성분석 틀은 선행연구인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적용해서 조사대상 비영리법인간에 책무성 지수의 차이가 있는지,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비영리기관의 문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을 크게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고,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의 네 가지 요소로 파악한다. 아래의 표는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의 측정지수와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설문을 통해 조사된 이러한 책무성 구성요소의 측정지수

값을 살펴보고 각 기관의 유형, 활동분야, 설립주체, 내부 이해관계자 수익배분정도, 수익추구가능성 등의 요인이 각 기관의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실태를 분석한다.

〈표 6-35〉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측정지표 및 설문문항

평가 항목	측정치표	설문문항
민주성	규정의 정비정도	•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가?
	규정 준수 정도	•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얼마나 준수 하는가?
	의사결정 참여정도	•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얼마나 그 과정에 참여하는가?
	직위의 고른 분포도	• 의사결정구조에 인원의 배치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가?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빈도	•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의 개최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
	내부 의견권의 다양성 정도	• 논의나 안건의 주도는 누가 하는가?
투명성	재정 관리의 체계성	• 재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재정 관리의 공개 정도	• 수입·지출 내역은 얼마나 공개되는가?
	재정 관리에 대한 통제 정도	• 내부통제와 감사제도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서류 관리에 대한 통제 정도	• 관련 서류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 정도	• 정보의 공시를 위한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가?
	정보 공개에 대한 반응성	•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효율성	사업의 장기적 계획성	• 활동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되는가?
	사업 성취도	• 계획한 사업을 완수하였는가?
	사업 진행 정도	• 계획된 일정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	•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 정도	• 분야별 책임자가 존재하는가?
	상근 인력의 활용도	• 상근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형평성	업무에 대한 차별	• 소속된 기관의 업무 차별이 있는가?
	구성원간의 지역차별	• 구성원 간의 지역차별은 없는가?
	구성원간의 성차별	• 구성원 간의 성차별은 없는가?
	구성원간의 계층차별	• 구성원 계층 간 차별은 없는가?
	능률에 따른 차별여부	• 업무능률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가?
	형평성 제고제도 운영여부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잘 운영되는가?

〈표 6-36〉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측정지표 및 설문문항

평가 항목	측정지표	설문문항
합법성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의 일치	•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과 기관의 목적은 일치하는가?
	설립목적의 이행	•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는가?
	법적 의무의 이행	• 해당기관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가?
	조직운영의 합법성	•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고객관련 활동의 합법성	• 고객과의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위법에 따른 제재유무	• 위법행위 관련 정부 제재를 받은적 있는가?
대표성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 해당 단체가 일반 시민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가?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정도	•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한가?
	활동의 실효성	• 활동이 대상 집단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가?
	목적 적합성	•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
	사회적 기여도	•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회원 기대 적합성	• 회원의 바람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전문성	외부 인식의 정도	• 일반인들이 해당 단체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가?
	내부 교육 정도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외부 교육의 제공 정도	• 외부에 전문적 지식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전문가 교류 정도	• 외부 자원의 활용에 적극적인가?
	전문가 활용 성과	•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 도움을 가져오는가?
	실무자들의 전문성	• 실무자들은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반응성	타 비영리기관에 대한 반응도	•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가?
	타 비영리기관과의 교류정도	• 다른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
	정부와의 교류정도	• 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
	언론사와의 협력 정도	• 언론의 보도가 적극적으로 대응되는가?
	고객 요구에 대한 수렴 정도	• 고객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는가?
	사회 일반적 요구 수렴 정도	•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질문항목을 이용하여 책무성 구성요소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내부적 책무성의 네 가지 지수(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와 외부적 책무성의 네 가지 지수(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를 구성하였다.

2. 내부적 책무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가. 민주성

내부적 책무성의 첫 번째 지수인 민주성을 나타내는 지수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6개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첫 번째 공통요인을 민주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보고, 이때 얻어진 요인값(factor score)을 각 응답기관의 민주성 지수 값으로 해석하여 민주성 지수에 차이를 가져 오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6-37〉 민주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104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16393	2.26534	0.5273	0.5273
Factor2	0.89859	0.18428	0.1498	0.6771
Factor3	0.71431	0.20006	0.1191	0.7961
Factor4	0.51425	0.05660	0.0857	0.8818
Factor5	0.45765	0.20637	0.0763	0.9581
Factor6	0.25128	.	0.0419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2333.89$ Prob> $\chi^2 = 0.0000$

비영리기관의 민주성 지수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 그룹 간의 차이를 검정할 때 사용한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은 하나의 특정한 요인이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각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두 가지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발생시키는 차이를 분석할 때에는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을 요인실험(factorial experiment)이라고 한다. 분산분석에서는 관심대상인 요인이외의 요인들은 해당 그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 신용도가 학력에 따라 다른지 검증할 때, 학력이외의 다른 요인은 개인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소득수준 또한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면 올바른 실험을 위해서는 학력그룹마다 소득수준에 따라 랜덤하게 실험대상자들이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득수준도 다른 영향 요인으로 구분해서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르고, 학력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이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비영리기관의 책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성변수들로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수익추구가능성, 지출규모, 내부이해관계자 수익배분정도, 잔여재산귀속권 등을 선정해서 이들 특성에 따라 민주성 지수의 값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지출규모와 수익

40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배분정도는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해 10분위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성 지수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활동분야, 설립주체, 지출규모, 잔여재산귀속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활동분야별 차이를 보면 의료기관의 민주성 지수값이 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8〉 활동분야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rob > F
Between groups	34.893	4	8.723	8.98	0.00
Within groups	1068.107	1099	0.972		
Total	1103	1103	1		

〈표 6-39〉 활동분야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의료	차이	-0.1284	-0.4053	-0.4606	-0.3549
	유의도	0.827	0.000	0.004	0.003

다음으로 설립주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지자체나 법인이 설립한 기관에 비해 민주성 지수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0〉 설립주체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rob > F
Between groups	14.216	4	3.554	3.59	0.0065
Within groups	1088.784	1099	0.991		
Total	1103	1103	1.000		

〈표 6-41〉 활동분야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지자체	법인
개인	차이	-0.4229	-0.2476
	유의도	0.081	0.068

다음으로 지출규모별로도 민주성 지수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중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산 귀속여부 또한 민주성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다중비교 결과 잔여재산 귀속이 '설립자나 설립자와 특수관계인'로 정해진 기관이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으로 정해진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진 기관에 비해 민주성 지수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42〉 잔여재산 귀속여부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rob > F
Between groups	20.034	4	5.009	5.08	0.0005
Within groups	1082.966	1099	0.985		
Total	1103	1103	1.000		

〈표 6-43〉 잔여재산 귀속여부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차이	-0.4378	-0.4175
	유의도	0.007	0.011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비영리기관의 내부적 책무성의 한 지수인 민주성은 활동분야별, 설립주체별, 잔여재산 귀속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 민주성 지수값은 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설립하고, 기관해 산시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기관일수록 민주성 관점에서 파악한 내부적 책무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투명성

비영리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의 두 번째 지수인 투명성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의 관련 문항은 하나의 공통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공통요인의 요인값을 투명성 지수값으로 만들어 투명성 지수값이 관련 요인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조사된 비영리 기관의 투명성 지수는 분산분석의 결과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지출규모, 잔여재산 귀속권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4〉 투명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102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81297	3.08775	0.6355	0.6355
Factor2	0.72522	0.28489	0.1209	0.7564
Factor3	0.44033	0.05288	0.0734	0.8298
Factor4	0.38745	0.03510	0.0646	0.8943
Factor5	0.35235	0.07066	0.0587	0.9531
Factor6	0.28169	.	0.0469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3364.97 Prob>chi2 = 0.0000				

먼저 활동분야별 투명성 지수의 차이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은 문화예술, 종교, 의료분야 비영리기관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분야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기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분야 비영리기관은 다른 활동분야 기관보다 투명성 지수값이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45〉 활동분야별 투명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차이	0.558651***			
	유의도	0.000			
종교	차이	0.224188	-0.334462***		
	유의도	0.528	0.044		
교육	차이	0.519608***	-0.039043	0.29542	
	유의도	0.000	0.993	0.152	
의료	차이	-0.347927***	-0.906578***	-0.572116***	-0.867535***
	유의도	0.015	0.000	0.000	0.000

참고: 95% 유의수준 기준

설립주체별로는 개인 설립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설립 기관에 비해 투명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6〉 설립주체별 투명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국가	지방자치	법인
개인	차이	-0.769444	-0.623667	-0.525008
	유의도	0.001	0.001	0.000

법인유형별로도 투명성 지수값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재단법인이 사단법인보다 투명성 점수가 높고, 학교법인이 사단법인보다 투명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7〉 법인유형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차이	-0.2583	-0.4635
	유의도	0.043	0.046

지출규모별 투명성의 차이는 지출규모를 10분위수로 나눈 그룹별로 비교하였는데, 8분위 그룹의 기관들이 다른 그룹의 기관들에 비해 투명성 점수가 적는데 특히 6분위 그룹 기관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0분위 그룹의 기관들은 8분위와 9분위 그룹의 기관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8〉 지출규모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6분위그룹	8분위그룹	9분위그룹
8분위그룹	차이	-0.6854		
	유의도	0.002		
10분위그룹	차이	0.0743	0.7598	0.5302
	유의도	1.000	0.000	0.070

잔여재산 귀속권에 따라 투명성 지수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잔여재산 귀속권이 '기타'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의 투명성이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르는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목적의 다른 법인'으로 규정된 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이 잔여재산 귀속권을 가진 기관은 잔여재산이 '이사회 의결 등 정관'에 귀속되는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관에 비해 투명성 지수값이 낮게 분석되었다.

〈표 6-49〉 잔여재산 귀속여부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동일목적의 다른법인에 증여
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차이	0.492645			
	유의도	0.0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이	0.513931	0.021286		
	유의도	0.001	0.999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차이	0.113026	-0.37962	-0.400906	-0.159383
	유의도	0.949	0.005	0.002	0.825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은 일반적으로 의료분야의 비영리기관이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일수록 투명성이 낮았다. 법인유형별로 보면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이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 형태에 비해 투명성이 낮았다. 지출규모별로 보면 8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이 지출규모가 더 적은 6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보다 투명성이 낮았으며, 지출규모가 가장 큰 10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은 8분위나 9분위 그룹의 기관보다 투명성이 높았다. 또한 잔여재산 귀속이 '기타'로 규정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에 따르는 기관이나 귀속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있는 기관보다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효과성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의 세 번째 지수인 효과성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6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공통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값을 측정하여 효과성 지수를 만들었다.

〈표 6-50〉 효과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102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68418	2.86953	0.6140	0.6140
Factor2	0.81465	0.30337	0.1358	0.7498
Factor3	0.51128	0.11181	0.0852	0.8350
Factor4	0.39946	0.05107	0.0666	0.9016
Factor5	0.34839	0.10634	0.0581	0.9597
Factor6	0.24205	.	0.0403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3256.26 Prob>chi2 = 0.0000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효과성 지수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지출규모, 수익성 추구가능성, 그리고 잔여재산 귀속권을 선정하여 실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인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6-51〉 활동분야별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차이	0.43872			
	유의도	0.000			
종교	차이	0.354175	-0.084544		
	유의도	0.112	0.964		
교육	차이	-0.042986	-0.481706	-0.397161	
	유의도	0.997	0.000	0.022	
의료	차이	-0.324786	-0.763506	-0.678962	-0.2818
	유의도	0.037	0.000	0.000	0.029

활동분야별 기관의 효과성 차이를 살펴보면 의료분야의 비영리기관은 다른 분야의 기관에 비해 효과성 지수의 값이 낮았다. 다음으로 교육분야 비영리기관도 사회복지나 종교분야에 비해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기관은 문화예술분야 기관에 비해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설립주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이 설립한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기관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2〉 법인유형별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국가	지방자치	법인
개인	차이	-0.526094	-0.512177	-0.346804
	유의도	0.086	0.016	0.002

분산분석의 결과 수익추구 가능성에 따라 효과성의 값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익추구가 가능하지 않은 기관은 가능한 기관에 비해 효과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3〉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예
아니오	차이	0.208716
	유의도	0.001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출규모도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데, 8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은 다른 그룹에 속한 기관에 비해 효과성 점수가 낮은

편인데, 특히 4분위 그룹과 6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2분위와 3분위 그리고 5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에 비해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의 결과 잔여재산 귀속권은 비영리기관의 효과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잔여재산 귀속권 변수에 따른 그룹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산분석의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비영리기관의 효과성에 대해 요약하면 의료분야 기관의 경우 다른 분야 기관에 비해 효과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보다는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이, 수익추구가 어려운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의 지출규모에 따라서도 효과성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8분위수 그룹에 속한 기관의 경우 2분위, 3분위, 그리고 5분위 그룹에 속한 기관에 비해 효과성이 낮았다.

라. 형평성

비영리기관 책무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지수로 형평성을 요인분석하여 요인값을 구하였다. 그러나 형평성과 관련된 문항들에서는 앞의 세 가지 지수의 경우와는 달리 두 가지 공통요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기본권적 형평성을 나타내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제도적 형평성(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 형평성 감독 및 조정제도)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구분된다.

〈표 6-54〉 형평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105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2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11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72058	2.70639	0.6201	0.6201
Factor2	1.01419	0.60562	0.1690	0.7891
Factor3	0.40857	0.09090	0.0681	0.8572
Factor4	0.31767	0.02113	0.0529	0.9102
Factor5	0.29654	0.05410	0.0494	0.9596
Factor6	0.24244	.	0.0404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3688.31$ Prob> $\chi^2 = 0.0000$				

〈표 6-55〉 요인회전 결과

Variable	Factor1	Factor2	Uniqueness
Q4_01	0.6209	0.5305	0.3331
Q4_02	0.9078	0.0996	0.1660
Q4_03	0.8705	0.2464	0.1815
Q4_04	0.7749	0.4160	0.2265
Q4_05	0.2078	0.8813	0.1801
Q4_06	0.2071	0.8826	0.1781

형평성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권적 형평성 지수는 활동분야, 법인유형, 지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모든 결과에서 등분산 가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제도적 형평성 지수는 수익추구 가능성과 잔여재산 귀속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잔여재산 귀속권은 5% 유의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6〉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제도적 형평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예
아니오	차이	0.131152
	유의도	0.032

결국 형평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제도적 형평성의 경우에만 정관상 수익추구가 불가능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형평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비영리 기관 자체의 특성보다는 다른 사회적, 제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부적 책무성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외부적 책무성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외부적 책무성 요인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의 지수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잠재요인의 요인값으로 각 지수를 나타내고, 도출된 요인에 영향을 주는 비영리기관의 특성변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기로 한다.

가. 합법성

먼저 외부적 책무성요인을 나타내는 지수로 합법성을 들 수 있다. 합법성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요인분석할 결과 하나의 공통 잠재요인이 도출되었고, 이 요인의 요인값을 합법성 지수값으로 설정하였다.

〈표 6-57〉 합법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104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64808	2.81802	0.6080	0.6080
Factor2	0.83006	0.26132	0.1383	0.7464
Factor3	0.56874	0.18641	0.0948	0.8411
Factor4	0.38234	0.04778	0.0637	0.9049
Factor5	0.33456	0.09834	0.0558	0.9606
Factor6	0.23622	.	0.0394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3254.80 Prob>chi2 = 0.0000				

합법성 지수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 기관의 특성변수들에 따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합법성 지수는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지출규모, 잔여재산 귀속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규모와 잔여재산 귀속권과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본의 등분산 가정이 성립되지 않아 분산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 따른 차이를 Scheffe 다중비교 결과를 이용해 검토해보자.

먼저 합법성 지수는 사회복지분야 기관의 값이 가장 크고, 문화예술분야, 종교분야, 의료분야와 비교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교육분야 비영리기관은 문화예술분야 기관에 비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1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표 6-58〉 활동분야별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차이	0.488475			
	유의도	0.000			
종교	차이	0.039956	-0.448519		
	유의도	0.999	0.004		
교육	차이	0.318076	-0.170399	0.27812	
	유의도	0.073	0.376	0.258	
의료	차이	0.075567	-0.412908	0.035611	-0.242509
	유의도	0.971	0.000	0.999	0.109

기관설립주체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의한 차이는 개인이 설립한 기관과 법인이 설립한 기관간에 발생하며,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유의수준 5%에서 법인 설립기관보다 합법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9〉 기관 설립주체에 따른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법인
개인	차이	-0.25848
	유의도	0.049

다음으로 법인유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이로는 사단법인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 기관에 비해 합법성 점수가 1% 유의수준하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60〉 법인 유형에 따른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차이	-0.355668
	유의도	0.001

이상으로 대외적 책무성 지수의 하나인 합법성은 사회복지분야의 기관과 법인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의 합법성 관련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법인 중에서도 재단법인의 합법성 점수가 더욱 높게 분석되었다. 나머지 특성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표성

비영리기관의 대표성과 관련된 설문문항도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공통 요인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 계산된 요인값을 이용하여 외부적 책무성의 대표성 지수의 값을 계산하고 각 기관들의 특성 변수들에 따른 차이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6-61〉 대표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095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64755	2.98001	0.6079	0.6079
Factor2	0.66754	0.03873	0.1113	0.7192
Factor3	0.62881	0.23712	0.1048	0.8240
Factor4	0.39169	0.01875	0.0653	0.8893
Factor5	0.37294	0.08149	0.0622	0.9514
Factor6	0.29146	.	0.0486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2982.15$ Prob> $\chi^2 = 0.0000$

분석결과 대표성은 활동분야, 수익추구가능성, 지출규모 등의 특성변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규모는 등분산 가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먼저 활동분야별 차이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기관은 문화예술, 종교, 교육, 의료 등 기타 기관에 비해 대표성 지수의 값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의료분야 비영리기관의 경우 문화예술을 제외한 타 분야 비영리기관에 비해 대표성 지표의 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교육분야와 비교해서는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62〉 활동분야별 대표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차이	0.437571			
	유의도	0.001			
종교	차이	0.207822	-0.229749		
	유의도	0.644	0.377		
교육	차이	0.016154	-0.421417	-0.191668	
	유의도	1	0	0.629	
의료	차이	-0.239511	-0.677082	-0.447333	-0.255664
	유의도	0.251	0	0.005	0.072

다음으로 정관상의 수익추구 가능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에도 대표성 지수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익추구가 가능하지 않은 기관이 수익추구가 가능한 기관에 비해 대표성 지수 값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전문성

비영리기관의 전문성 관련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예상대로 하나의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공통요인의 요인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전문성 지수와 비영리기관 특성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6-63〉 전문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103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35309	2.45576	0.5588	0.5588
Factor2	0.89733	0.31859	0.1496	0.7084
Factor3	0.57875	0.06018	0.0965	0.8049
Factor4	0.51857	0.10765	0.0864	0.8913
Factor5	0.41092	0.16957	0.0685	0.9598
Factor6	0.24135	.	0.0402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2654.60 Prob>chi2 = 0.0000				

분산분석을 통하여 전문성 지수에 영향을 주는 특성변수로는 활동분야, 법인유형, 그리고 지출규모의 세 가지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출규모의 경우 그룹간 등분산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64〉 활동분야별 전문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차이	0.586522			
	유의도	0.000			
종교	차이	0.140382	-0.44614		
	유의도	0.891	0.004		
교육	차이	0.362946	-0.223576	0.222564	
	유의도	0.023	0.117	0.490	
의료	차이	0.09353	-0.492991	-0.046851	-0.269415
	유의도	0.937	0.000	0.997	0.051

Scheffe 다중비교 결과 전문성 지수는 사회복지분야 비영리기관이 문화예술분야, 종교분야, 의료분야의 비영리기관보다 값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분야 비영리기관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기관에 비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법인유형에 따른 비교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재단법인의 전문성이 사단법인의 전문성 지수 값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반응성

반응성 관련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도 다른 외부적 책무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통요인으로 요약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반응성 지수와 각 기관의 특성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6-65〉 반응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Factor analysis/correlation		Number of obs = 1093		
Method: principal-component factors		Retained factors = 1		
Rotation: (unrotated)		Number of params = 6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Factor1	3.00930	2.10617	0.5016	0.5016
Factor2	0.90313	0.17705	0.1505	0.6521
Factor3	0.72607	0.15815	0.1210	0.7731
Factor4	0.56793	0.08079	0.0947	0.8677
Factor5	0.48714	0.18071	0.0812	0.9489
Factor6	0.30643	.	0.0511	1.0000

LR test: independent vs. saturated: $\chi^2(15) = 1949.24$ Prob> $\chi^2 = 0.0000$

분산분석 결과 반응성 지수는 활동분야, 지출규모, 그리고 잔여재산 귀속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법인유형과 수익추구가능성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규모에 따른 차이는 등분산가정이 위배되어 분산분석 결과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활동분야별 차이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기관의 반응성 지수 값이 다른 분야 기관의 지수값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기관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6-66〉 활동분야별 전문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구분		문화예술	사회복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차이	0.515641			
	유의도	0.000			
종교	차이	0.150565	-0.365077		
	유의도	0.869	0.039		
교육	차이	0.249189	-0.266453	0.098624	
	유의도	0.266	0.037	0.957	
의료	차이	0.202777	-0.312865	0.052212	-0.046412
	유의도	0.448	0.003	0.996	0.992

다음으로 잔여재산 귀속권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는 귀속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된 기관과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참여’함으로 설정된 기관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5% 유의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10% 유의수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귀속권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 종합분석

1. 특성변수별 내부적 책무성 지수 분석 요약

이상의 분석을 통해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활동분야인데, 각 특성변수별로 책무성 지수의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분야별로 보면 내부적 책무성 요인들의 지수 값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와 종교분야임을 알 수 있고 문화예술과 의료분야의 기관들이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6-67〉 활동분야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I	형평성 II
문화예술	-0.1363	-0.2281	-0.0903	-0.0042	-0.106
사회복지	0.1407	0.3305	0.3484	0.1217	0.0555
종교	0.196	-0.0039	0.2639	0.1399	0.1645
교육	0.0902	0.2915	-0.1333	-0.1419	-0.1057
의료	-0.2646	-0.5761	-0.4151	-0.0966	0.003

다음으로 아래의 표에서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의 값이 크고 개인이나 기타 주체가 설립한 기관의 책무성 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68〉 설립주체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I	형평성 II
국가	0.117	0.3159	0.2164	0.1526	-0.1844
지방자치단체	0.1936	0.1701	0.2024	0.0945	0.0753
법인	0.0183	0.0714	0.0371	-0.0066	0.0147
개인	-0.2293	-0.4536	-0.3097	-0.0323	-0.0721
기타	0.2428	-0.0197	0.0871	-0.0115	0.0703

법인유형별로 보면 재단법인 유형의 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 책무성 지수 값이 크고 비법인과 사단법인 유형의 기관 책무성 지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 기관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지수 값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69〉 법인유형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I	형평성 II
비법인	-0.0586	-0.073	-0.0524	0.0058	0.0334
재단법인	0.0896	0.1139	0.0631	0.1052	0.0464
사단법인	-0.0711	-0.1444	0.0107	-0.0919	-0.1465
학교법인	0.1243	0.319	-0.1213	-0.3618	0.0341
특수법인	0.0376	0.2657	0.1117	-0.0111	0.1095

〈표 6-70〉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I	형평성 II
예	-0.0355	-0.0351	-0.1227	-0.0508	-0.0771
아니오	0.025	0.0247	0.086	0.0355	0.054

5분위 지출규모별로 보면 지출규모가 하위 1분위에 속하는 기관이 가장 낮은 책무성 점수를 보였고, 2, 3분위에 속하는 기관들의 점수가 높고 상위 4, 5분위에 속하는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점수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71〉 지출규모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I	형평성 II
1	-0.0361	-0.1373	-0.0255	-0.168	0.1637
2	0.0491	0.0402	0.1231	0.0834	0.028
3	0.0199	0.1535	0.1692	0.1903	0.0192
4	-0.1555	-0.1924	-0.2353	0.0212	-0.1539
5	0.1094	0.1226	-0.0382	-0.1209	-0.0589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로 보면 귀속자가 설립자나 설립자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된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하는 기관의 점수가 낮았다.

〈표 6-72〉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I	형평성 II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0.3497	-0.3921	-0.3193	-0.1486	-0.1881
당시 이사회의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0.0882	0.1005	0.1233	0.0176	0.053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0.0678	0.1218	0.0426	0.0594	0.0309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0.1828	-0.1197	-0.1864	-0.1862	-0.2719
기타	-0.0749	-0.2791	-0.1235	0.0153	0.0817

2. 내부적 책무성 지수 군집분석

이상에서 분석된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별 지수를 이용하여 의료분야 비영리기관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관들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석대상 기관들의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지수별 점수를 대상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척도는 평균거리방법(average link method)을 사용하였다.

〈표 6-73〉 내부적 책무성 그룹분류를 위한 Duda/Hart 기준

Number of clusters	Duda/Hart	
	Je(2)/Je(1)	pseudo T-squared
1	0.9889	12.24
2	0.9501	57.31
3	0.6072	10.35
4	0.7432	371.01
5	0.9963	3.35
6	0	.
7	0.6338	5.2
8	0.8926	109.58
9	0.8338	31.89
10	0.5306	5.31
11	0.1255	6.97
12	0.7211	332.66
13	0.5795	3.63
14	0.8072	11.7
15	0.8234	2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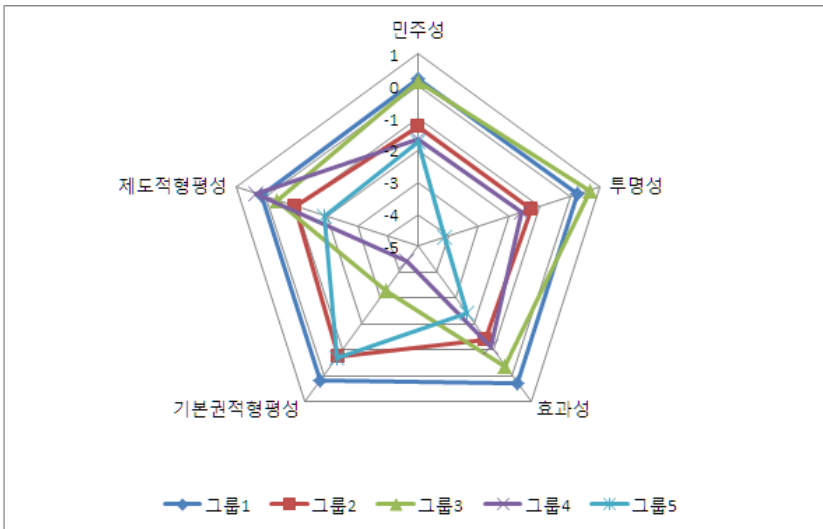
Duda-Hart 기준에 따르면 전체 비영리기관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분류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4〉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류	빈도	비율	누적비율
그룹1	914	83.39	83.39
그룹2	162	14.78	98.18
그룹3	11	1	99.18
그룹4	7	0.64	99.82
그룹5	2	0.18	100
Total	1,096	100	

대부분의 기관은 그룹1에 속하고 약 15%의 기관이 그룹2에 속하고, 그룹3은 1%의 기관으로, 그룹4는 7개 기관으로, 그룹5는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의 radar plot은 각 그룹별 내부적 책무성 지수 평균값을 이용해 그린 것으로 그룹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 내부적 책무성 지수의 그룹별 특성



〈표 6-75〉 그룹별 내부적 책무성 지수 평균 값

군집분류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기본권적형평성	제도적형평성
그룹1	0.234	0.245	0.259	0.199	0.171
그룹2	-1.242	-1.288	-1.387	-0.722	-0.949
그룹3	0.139	0.646	-0.344	-3.286	-0.347
그룹4	-1.659	-1.593	-1.102	-4.43	0.357
그룹5	-1.719	-4.136	-2.421	-0.703	-1.933

1) 그룹1

전체 분석대상 기관의 83.4%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부적 책무성의 구성요소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는 집단이다. 따라서 다른 그룹과 비교하기 위한 준거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그룹2

전체 분석대상의 14.8%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에서 그룹1에 비해 지수 값이 작다. 따라서 그룹1에 비해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3) 그룹3

전체 분석대상의 1%가 포함되며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는 그룹1과 별 차이가 없으나 기본권적 형평성 지수는 그룹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룹3에 속한 기관은 무엇보다 기본권적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 그룹4

그룹4는 7개 기관에 불과하여 전체의 0.64%를 차지한다. 이 그룹의 특징은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그룹1과 차이가 없으나,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측면에서는 책무성 점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 점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룹4에 속한 기관들은 무엇보다 시급히 기본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그룹5

그룹5는 전체의 0.18%에 불과한 두 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의 특징은 무엇보다 취약한 투명성이다. 타 그룹에 비해 특히 낮은 투명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주성, 효과성 제도적 형평성도 다른 그룹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그나마 기본권적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룹5는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특성변수별 외부적 책무성 지수 분석요약

앞서 분석한대로 비영리기관의 외부적 책무성 지수 값도 활동분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사회복지 분야 기관은 모든 외부적 책무성 지수 값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 분야에 비해 우수한 외부적 책무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와 교육분야 기관은 구성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의료분야와 문화예술분야 기관이 지수 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합법성은 의료분야, 대표성은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과 반응성은 의료분야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76〉 활동분야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문화예술	-0.254	-0.112	-0.31	-0.292
사회복지	0.234	0.325	0.276	0.224
종교	-0.214	0.096	-0.17	-0.141
교육	0.064	-0.096	0.053	-0.042
의료	-0.179	-0.352	-0.217	-0.089

설립주체별로 외부적 책무성 요소를 살펴보면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모두 국가가 설립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인이 설립한 기관이 지수 값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하면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모든 요소의 지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의 외부적 책무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77〉 설립주체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국가	0.278	0.058	0.106	0.203
지방자치단체	0.02	-0.036	-0.065	0.235
법인	0.048	0.024	0.031	0.0
개인	-0.211	-0.153	-0.085	-0.089
기타	-0.371	0.196	-0.287	-0.212

다음으로 법인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법인의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지수 값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단법인이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의 값이 특수법인 다음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8〉 법인유형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비법인	-0.006	-0.057	-0.014	0.017
재단법인	0.143	0.085	0.086	0.078
사단법인	-0.213	0.005	-0.171	-0.16
학교법인	-0.08	-0.201	0.184	-0.03
특수법인	0.231	0.08	0.265	0.211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외부적 책무성 요소 지수 값은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요소의 지수값이 수익추구가 가능한 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기관의 책무성 수준이 더 우수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표 6-79〉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예	-0.027	-0.116	-0.051	-0.069
아니오	0.019	0.081	0.036	0.048

외부적 책무성 각 구성요소의 지수 값도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지출규모가 증가하면 지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일정 규모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규모가 큰 기관이라고 해도 외부적 책무성 수준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6-80〉 지출규모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1	-0.156	0.024	-0.039	-0.116
2	0.013	0.148	0.058	0.092
3	0.1	0.073	0.074	0.034
4	-0.074	-0.235	-0.221	-0.107
5	0.123	0.007	0.136	0.104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로도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의 지수 값이 달리 나타났는데,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모두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그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경우보다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에 따르는 기관의 지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관의 지수 값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도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의 지수 값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81〉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활동분야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
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0.2341	-0.1547	-0.1531	-0.122
당시 이사회의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0.0414	0.0349	0.0271	0.029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0.1077	0.0704	0.07	0.0841
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0.211	-0.1361	-0.2056	-0.261
기타	-0.1115	-0.0975	-0.0227	-0.0562

4. 외부적 책무성 지수 군집분석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의 값이 유사한 집단별로 비영리기관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각 그룹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6-82〉 외부적 책무성 그룹분류를 위한 Duda/Hart 기준

Number of clusters	Duda/Hart	
	Je(2)/Je(1)	pseudo T-squared
1	0.9966	3.68
2	0.7347	390.63
3	0.9271	9.44
4	0.9968	3.04
5	0.9345	8.27
6	0.6232	579.86
7	0.9803	15.07
8	0.9748	19.17
9	0.91	72.6
10	0.9776	2.65
11	0.8741	16.56
12	0	.
13	0.9313	15.42
14	0.5091	6.75
15	0.7483	10.43

위의 Duda-Hart 기준에 따르면 내부적 책무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른 5개 그룹별 소속 기관의 수(빈도)와 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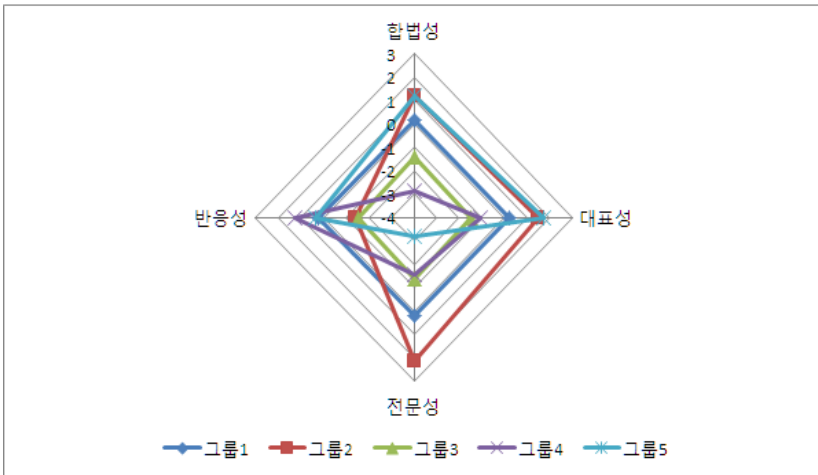
그룹1은 대다수 기관들이 소속된 그룹이며 전체 기관의 88.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그룹3이 11%의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룹2, 그룹4,

그룹5는 소수 특징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그룹 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radar plot을 살펴보자.

〈표 6-83〉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류	빈도	비율	누적비율
그룹1	961	88.57	88.57
그룹2	1	0.09	88.66
그룹3	120	11.06	99.72
그룹4	2	0.18	99.91
그룹5	1	0.09	100
Total	1,085	100	

[그림 6-2] 외부적 책무성 지수의 그룹별 특성



1) 그룹1

전체 분석대상 기관의 88.6%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적 책무성의 각 구성요소들의 값이 전반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그룹2

그룹2는 한 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양호한 점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반응성 지수의 점수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3) 그룹3

그룹3은 전체 분석대상 기관의 11%가 포함된 그룹으로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점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외부적 책무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그룹4

그룹4는 2개의 기관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응성 지수를 제외한 다른 요소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합법성 지수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반응성 지수의 점수는 다른 어느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룹3에서는 합법성 측면에서 책무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성,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책무성 제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그룹5

그룹5은 1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기관은 합법성, 대표성, 반응성 지수의 점수는 우수하지만 전문성의 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4절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요인을 더욱 분명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적 책무성의 5가지 요소들을 요인분석하여 특성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두 가지 요인, 즉 내부적 책무성 지수I과 내부적 책무성 지수II를 도출하였다.

〈표 6-84〉 내부적 책무성 지수 요인 적재값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내부적 책무성 지수I	내부적 책무성 지수II	Uniqueness
민주성	0.8447	0.2271	0.235
투명성	0.761	0.3668	0.2864
효과성	0.8215	0.33	0.2162
기본권적형평성	0.1191	0.9259	0.1285
제도적 형평성	0.816	-0.2935	0.248

회전된 요인의 요인 적재값을 살펴보면 내부적 책무성 지수I은 민주성, 투명성 효과성, 제도적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내부적 책무성 지수II는 기본권적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내부적 책무성 지수에 영향을 주는 특성변수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의 분석에서 비영리기관을 사회적 책무성 수준이 유사한 기관들끼리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그룹별 차이를 각 기관이 속한 그룹의 고유한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그룹별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한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부적 책무성 지수I의 분석결과를 보면 그룹 더미는 대부분 유의

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룹1에 비해 그룹2와 그룹4의 내부적 책무성 수준이 약하며 특히 그룹5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룹5는 두 개의 기관이 속해있으며 내부적 책무성 지수1의 수준이 가장 열악한 그룹이다. 아래의 표는 더미변수를 포함한 경우(모형 2)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모형1)를 비교하고 있다.

〈표 6-85〉 내부적 책무성 지수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활동분야(N2)	-0.104***	-0.0476**
	-0.022	-0.018
설립주체(P9)	-0.119**	-0.015
	-0.046	-0.036
법인유형(P10)	-0.043	-0.030
	-0.032	-0.026
지출수준(P16_1)	0.000	0.000
	0.000	0.000
이해관계자수익배분율(P18)	0.00182***	0.001
	-0.001	-0.001
잔여재산귀속유형(P19)	-0.008	0.017
	-0.029	-0.023
그룹2(d_ia2)		-1.601***
		-0.062
그룹3(d_ia3)		0.195
		-0.220
그룹4(d_ia4)		-0.646*
		-0.269
그룹5(d_ia5)		-3.175***
		-0.449
_cons	0.766***	0.435**
	-0.197	-0.156
N	1094	1094
R-sq	0.033	0.360
adj.R-sq	0.028	0.354

주: 추정계수 아래칸은 표준오차

* p<0.05, ** p<0.01, *** p<0.001

모형1과 모형2는 모두 robust 추정식이며 모형1의 경우 모형구성 테스트 결과 생략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2가 더 완전한 모형(full model)임을 알 수 있다.²⁾ 그룹별 더미를 포함하지 않으면 설립주체나 이해관계자 수익배분율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더미를 포함하면 활동분야만 유의한 변수가 된다. 활동분야가 내부적 책무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보다 의료분야가 책무성 수준이 낮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주체도 음의 영향을 주는데 설립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다 개인일 경우 책무성 수준이 낮음을 암시한다. 이해관계자 수익배분율은 법인의 수익이 법인 관계자나 구성인력에게 많이 배분될수록 책무성 수준이 개선됨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내부적 책무성 지수II에 대해 살펴보면 내부적 책무성 지수I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내부적 책무성 지수II는 기본권적 형평성과 관련된 요소들만 의미하기 때문에 책무성 지수I과 같은 중요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내부적 책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의미에서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책무성 지수I에 대한 분석 결과와의 차이점은 그룹 더미를 포함한 모형에서 지출수준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출규모가 큰 비영리기관일수록 기본권적 형평성과 관련된 책무성 수준이 높아진다. 활동분야나 설립주체는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기관들이 소속된 그룹1에 비해 다른 그룹들의 책무성 지수 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 Ramsey reset test 결과 모형(1)는 $F(3,1084)=12.74$, $\text{Prob}>F = 0.000$ 이고, 모형(2)는 $F(3,1080)=1.35$, $\text{Prob}>F=0.2554$

〈표 6-86〉 내부적 책무성 지수II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활동분야(N2)	-0.106***	-0.0826***
	-0.0230	-0.0198
설립주체(P9)	-0.119**	-0.0616
	-0.0425	-0.0396
법인유형(P10)	-0.0757*	-0.0369
	-0.0370	-0.0300
지출수준(P16_1)	1.33e-09***	1.17e-09***
	0.0000	0.0000
이해관계자수익배분율(P18)	0.0003	-0.0004
	-0.0005	-0.0005
잔여재산귀속유형(P19)	-0.0006	-0.0126
	-0.0280	-0.0237
그룹2(d_ia2)	-0.723***	
	-0.0786	
그룹3(d_ia3)	-2.624***	
	-0.3280	
그룹4(d_ia4)	-4.435***	
	-0.2140	
그룹5(d_ia5)	-0.896*	
	-0.3720	
_cons	0.846***	0.725***
	-0.194	-0.174
N	1094	1094
R-sq	0.031	0.274
adj.R-sq	0.025	0.267

주: 추정계수 아래칸은 표준오차

* p<0.05, ** p<0.01, *** p<0.001

외부적 책무성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공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외부적 책무성 지수로 명명하였다. 내부적 책무성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설명변수들로 그룹더미를 포함한 모형과 제외한 모형을 추정할 결과를 살펴보자.

그룹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이해관계자 수익배분율이 외부적 책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

었다. 계수의 부호는 앞의 분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룹특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활동분야와 법인유형만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법인유형은 비법인(1), 재단법인(2), 사단법인(3), 학교법인(4), 특수법인(5)을 의미하며 재단법인에 비해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일수록 외부적 책무성 지수 값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87〉 외부적 책무성 지수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활동분야(N2)	-0.0957***	-0.0461*
	-0.0220	-0.0191
설립주체(P9)	-0.121**	-0.0261
	-0.0444	-0.0366
법인유형(P10)	-0.0775*	-0.0565*
	-0.0337	-0.0280
지출수준(P16_1)	0.0000	0.0000
	0.0000	0.0000
이해관계자수익배분율(P18)	0.00163**	0.0007
	-0.0006	-0.0008
잔여재산귀속유형(P19)	-0.0075	0.0021
	-0.0281	-0.0243
그룹2(d_ia2)		-1.408***
		-0.0727
그룹3(d_ia3)		-0.4430
		-0.2620
그룹4(d_ia4)		-1.755***
		-0.2830
그룹5(d_ia5)		-1.578***
		-0.2260
_cons	0.817***	0.540***
	-0.188	-0.161
N	1083	1077
R-sq	0.029	0.287
adj.R-sq	0.024	0.28

주: 추정계수 아래칸은 표준오차

* p<0.05, ** p<0.01, *** p<0.0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책무성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기관의 특성별로도 차이가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조직운영의 내부적 관점에서 파악한 내부적 책무성과 기관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외부적 책무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내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보면 분석대상 기관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83.4%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전체의 약 14.8%는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는 기관들은 내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다소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관들로 특정 요소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이 분류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분석대상의 1%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다른 요소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기본권적 형평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기본권적 형평성은 업무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해당 그룹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7개 기관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제도적 형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 중에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의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룹은 두 개의 기관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내부적 책무성 요소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었다. 전체 기관의 내부

적 책무성 요소별 지수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수를 기준으로 투명성 지수값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기본권적 형평성, 다음으로 민주성, 다음으로 효과성,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룹별로 기본권적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전체 기관들의 투명성 지수값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투명성, 형평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외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전체 분석대상 기관은 5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88.6%의 기관이 포함된 첫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외부적 책무성 요소들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소별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들도 있어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기관만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은 반응성이 타 그룹에 비해 낮고 다른 요소들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은 타 비영리기관과의 교류, 정부와의 협력, 고객이나 사회일반의 요구수렴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세 번째 그룹은 첫째 그룹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포함된 그룹으로 전체의 11%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외부적 책임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개 기관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반응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수준이하이며, 다섯 번째 그룹은 전문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책무성의 경우에도 그룹별로 책무성 수준이 상이하며 상당한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룹 전체로 보면 외부적 책무성은 대표성 점수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합법성, 다음으로 반응성, 전문성 점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수의 기관들은 사회적 책무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에게서 기대되는 보통 수준의 책무성

수준을 보여준 반면 분석대상의 10%가 넘는 일부 기관들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여러 요소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부적 책무성 수준에 비해 외부적 책무성은 비교대상 준거 그룹(첫 번째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수준이 모든 요소에서 양호한 편이 아니어서 준거 그룹으로서의 역할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은 내부적 책무성보다 외부적 책무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지출수준, 이해관계자수입분배율 등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일수록 책임성에 긍정적 영향을, 교육, 의료분야일수록 책임성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도 국가, 지자체는 책임성에 긍정적 영향을 개인인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유형은 비법인인 부정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수준과 내 이해관계자 수익배분율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룹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면 대부분의 그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룹분류가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1년 보고서에서 제시된 비영리기관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책무성 구성 요소들에서 확인하고 있다. 의료분야 비영리기관의 문제점으로 법인 설립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익중심의 운영 등은 책무성 지수로 평가할 때 의료분야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조직운영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본 분석에서도 투명성이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기관은 13개 인데 그 중 사회복지분야가 5개(38.5%), 의료분야가 7개(53.8%)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설문조사는 기관 내부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소 기관편향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 친인척 개입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분석에서는 교육부문의 형평성 관련 점수가 매우 낮은 것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은 능력에 따른 인사나 처우, 성별·지역별 차별금지와는 반대되는 따라서 형평성 관점에서 내부적 책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법인은 소규모이고 아직은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투명성, 민주성 등의 내부적 책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외부적 책무성에 있어서도 합법성 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 가족적 기관운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부적 책무성 요소 중 전문성은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장 비영리법인의 질적조사 분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화된 측면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맥락적 측면

제4절 소결

7

비영리법인의 질적조사 분석 <<

제1절 조사대상자 일반특성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26~67세 사이로 평균 43.9세였고, 20대가 2명, 30대가 12명, 40대가 14명, 50대가 8명, 60대가 3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20명, 여자 19명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 6명, 이혼 1명을 제외한 32명은 모두 결혼상태였다. 연구참여자 중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15명, 대졸자가 22명, 고졸자가 2명으로 대부분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근무기관은 5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균형 있게 탐색하기 위해 선정한 결과, 의료법인 8명, 사회복지법인 8명, 학교법인 8명, 문화예술법인 8명, 그리고 종교법인 7명이었다.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18명, 충청과 전라지역이 각각 6명씩이었고, 경상지역이 7명, 그리고 강원지역이 2명이었다. 비영리법인 담당자로 근무한 기간은 1.5~26.3년까지 다양한 실무기간을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 10.5년이었다.

〈표 7-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연령	20~29세	2(5.1)
	30~39세	12(30.8)
	40~49세	14(35.9)
	50~59세	8(20.5)
	60~69세	3(7.7)

44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20(51.3)
	여	19(48.7)
결혼상태	결혼	32(82.0)
	미혼	6(15.4)
	이혼	1(2.6)
교육수준	고졸	2(5.1)
	대졸	22(56.4)
	대학원졸	15(38.5)
근무기관	의료법인	8(20.5)
	사회복지법인	8(20.5)
	학교법인	8(20.5)
	문화예술법인	8(20.5)
	종교법인	7(18.0)
근무지역	서울	13(33.3)
	경기도	5(12.8)
	충청도	6(15.4)
	전라도	6(15.4)
	경상도	7(18.0)
	강원도	2(5.1)
근무연수	1~5년 미만	10(25.6)
	5~10년 미만	10(25.6)
	10~15년 미만	9(23.0)
	15~20년 미만	5(12.8)
	20년 이상	5(12.8)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화된 측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었으며, 패턴은 다음의 주제와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표 7-2). 본고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패턴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표 7-2〉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패턴

패턴	주제	하위주제
법적 근거 확보	설립을 위한 법적절차 준수	· 목적 설정 및 이사진 구성 · 등기 및 과세
	존속을 위한 법적 의무이행	· 사회적 공익의 지속적 추구 ·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감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특정단체로서의 자부심	·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 · 구성원 및 대상고객의 구심점 · 단독 공간 확보
	사회적 기여	· 일반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
	실무자의 전문성	· 전공과 일치된 인력 확보 · 업무습득을 위한 자기노력 · 순환적 총괄업무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민주적 운영	의사결정의 형태	· 수평적 결정 · 수직적 결정
	의견수렴의 정도	· 원활한 분위기 · 제한된 분위기 · 차단된 분위기
	외부 의존도 정도	· 정권의 지배적인 영향력 · 정권 교체 시 홍보 치중

44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패턴	주제	하위주제
효율적인 자원 활용	규정화된 자원과 활동	· 규정에 정해진 사업과 활동완수에 집중 · 주어진 예산집행
	예산확보 및 운영	· 주무관청 및 외부기관 · 특별기획사업 운영의 어려움
	인적자원의 활용	·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 · 특별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 외부전문가의 조인 ·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 기관장의 리더십
차별 없는 대우	성적 평등	· 제한된 업무분장 · 임신, 출산에 따른 부담
	생활권의 보장	· 중앙-지역/지부 간 차이 · 기관별 급여차이
	우수인력에 대한처우	· 승진의 기회 부재 · 보상체제의 부재
투명한 관리	내부통제 및 감사	· 규정화된 제도 운영 · 합리적 제도로 인식
	공개의 정도	· 의무적이면서 형식적임 · 개방적이면서 불완전함
외부와의 관계 형성	시민과의 관계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 · 요구에 따른 즉각적 반응
	관련기관과의 관계	· 협력의 대상 · 경쟁의 대상
	국가·정부·지자체와의 관계	· 완벽한 협력과 협조 제공 · 관리·감시자로서 인식

1. 법적 근거 확보

비영리법인은 법적 근거 하에 설립되고 기관으로서 유지, 존속을 위해 법적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2차년도 연구에서 외부적 책무성 내 합법성에 해당

되며,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의 일치, 설립목적의 이행, 법적 의무의 이행, 기관의 행위 합법성이라는 지표로 측정된 책무성이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부적 책무성 중에서 합법성 항목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오영호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존속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책무성의 하나로 보았다.

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준수

연구에 참여한 교육, 사회복지,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자격을 획득하였다. 관련 근거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나, 조세적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국세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미등록 비영리법인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적 정관에 따라 이사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즉 비영리법인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와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민법상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정해졌다(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이사회 역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에 참여하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 기구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영기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어 이사장이나 회장의 개인적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저희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러니까 생긴 거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생긴 거라서요,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하고 기능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곳이라서,

예전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사장,,그 이사 구성의 요건이 그렇게 제한이 세지 않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저희 구성을 보면, 이사장님의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으로 충분히 이사회를 구성했었던 거 같고, 지금은 약간 이제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처음 설립도 법률에 근거해서 신고하고,, 세금 뭐 이런 건 다 규정대로,

그러나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사업 활동, 예산과 관련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법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나 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입법에 반영되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음 아까 말씀드린 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영화진흥법인가 어딘가에 근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안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만에 들어간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거가 있으면 사업을 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늘리기도 좀 더 편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죠,.. 네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필요하더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금방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은 다 아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입법에 반영되는 건 다른 문제라서,

한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법인 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인이 정한 헌법과 정관에 따라 윤리성과 도덕성을 판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단에 불복할 경우에는 사회법을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종교 법인은 종교적 믿음 내에서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종교 법인과 관련된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결국에는 사회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저희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준해서 하고, 그 헌법 아래에 이제 아 개교회마다 정관이 있어요, 교회 정관,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정관보다는 사실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좋게, 서로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합당하도록, 그러니까는 비윤리적 이거나 부도덕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어,, 개교회들이 몇 개 모인 감찰회라는 게 있고, 그 상위에 지방회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총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조정을 하게 돼 있죠, 문제 발생 하면 감찰회에서 그 다음에 지방회에서, 그 지방회에서 불복하면 총회에서, 이래서 이제 최상위 안에서 결정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개교회 중심주의가 좀 너무 강하게 개신교 안에는 있어서 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상위 기관의 결정도 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세상 법으로 나가는 거죠, 사회법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창피한 일이고,

나. 존속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법적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야 함을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는 법인의 이사나 이사회 구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사업을 유지하

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법인 담당자들은 법인세, 부가세, 기부금과 관련된 모든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존속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비영리법인이 계속 유지, 존속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근무여건, 복지 부분까지도 법적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단은,, 법인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 저기,,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했잖아요? 법인을 설립을 했으면,, 어,, 그,, 어떤,, 개인의 영리가 아닌 사회,,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사회적 책무? 어떤 공익을 위한 거? 그런 것을 다해,, 법인격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게 음,,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영리 법인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원이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그 이제 고유한,, 그,, 자기의 법인격을 갖고 고유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그니까 거기에 뭐 이사가 바뀐다든지 어떤 대표가 바뀐다든지 해도 내 법인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가야된다는 거죠,, 그게 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서에 법인,, 공익법인 이라는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는 한 해에 들어온 돈이 얼마고 쓴 돈이 얼마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출자가 얼마고,, 뭐 어디에서 지원금을 받은 게 얼마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거는 요즘 잘되어 있으니까 홈텍스상,, 전산상로는 신고가 되니까 그건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이면서 예술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을 얼마 끊어줬는지 보통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음,, 그럼 뭐,, 하어튼 세무신고에 관한 거는 거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법인세 내고, 부가세 신고하고,, 안하면 요새는 뭐 전산이라서 바로 바로 나오거든요, 뭐 10원짜리 하나 틀려도 다 날라오니깐,, 요새 이거는,,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안 해놓고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거든요, 세금 안내고는,, 일도 못해요,, 뭐든지,, 프로젝트를 하나 맡려도,, 음,, 국세,, 뭐 지방세,, 완납증명서 당연히 발급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이거는 100%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95%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수나 의사 수나,, 정신 보건요원 수나 다 맞추고 있구요,,또,, 저희들,, 직원들의,, 그,, 노무관계에서도,,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육아휴직이나,, 음,, 음,, 산전휴가, 출산휴가 뭐 다,, 물론 하게 되면,, 병원에 피해가 되죠, 어렵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허가나 신고부분도 이제 그,, 우리가 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허가 받을 일 있거나,, 있으면,, 다 이사회 동의를 통해서 허가 받고 했었구요,

한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의 개인 자산에 의해 설립이 된 이후 학교 운영과 구성원들을 위해 지출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 지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학교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법인이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세에 대한 부담금 완화를 위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요구하였다.

저희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총장님은 매월 월급 받아가지만 이사장님은 에 그냥 제로예요, 네 그런데 법인에서는 그런 법정 부담 비율을 계속 이제 국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근데 못내요, 현실은 또 그래요, 못내요, 못 내서 학교에서 낼 수밖에 없는 처지,, 지금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돼 있는 것들을 거의 이제 좀 현실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법정 부담 비율,, 금이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빚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주셔야,,

한편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법인의 이사회 구성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하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인 입장에서 재등기를 할 경우 비용이 발생되므로 법인의 변경사항에 따른 재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법인체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등기관계는 장소,, 그니까 장소가 옮겨지거나 그다음에 이사가 바뀌거나 이러면 다 새로 등기를 내야 되요, 근데 우리 초창기에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바꿨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려면 한 등록세가 한 20몇만원 들면 되고,, 안그러면은,, 법인에다가 뭐,, 뭐,, 세무? 법무사? 거기에 맞기면 한 40만원인가 든다고,, 60만원인가 40만원인가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그게 안 해도 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안하고 넘어,, 근데 1년에 그 돈을 내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그니까 이사가 바뀌고 하면은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게 새로 등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못하고 있고,, 진짜 이제 마음잡고 할려고 하면,, 이사가 바뀔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까,,

또한 두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자 역시 주무부서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대학의 교육법인과 대학부속병원의 의료법인을 함께 설립한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와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두 부서에서 관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에서 벗어난 상황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었다.

우리나라 모든 그,, 비영리 법인, 네, 비영리 법,, 학교 법인이든 어떤 뭐 병원을 소유한데든 이게 그 양적 확장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도 그 뭐냐,, 어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그,,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법안 발의도 되고 했었는데 뭐 안됐을 것 같아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음,, 양적 확장에만 너무 치중해있고, 기사에도 계속 나잖아요, 그 30초 진료 보고 한 시간 기다린다, 그런 거라든지,, 좀 그,, 재정이 충분하냐 부족하냐의 문제보다는 확보된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그냥 너무 양적 확대에만 매몰돼있지 않나, 모든 법인들이, 네, 그거를 감시하거나 어떤, 정부에서는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왜냐면은 대학병원은 대학교 소속이고 대학교의 관할은 교과부고 근데 행위 자체는 의료 행위고, 의료 행위에 관한 부서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양쪽에 걸쳐있어서 음,,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관련된 걸 관리 감독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또 교과부 감독을 받는데 교과부는 이,, 대학병원까지 할 여력이 안돼요, 거의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은 대학병원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예,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은 받지만 어떤 의료수가든, 뭐,, 그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 외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그,, 관리감독이 좀 많이 부족하죠,

2.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문에 법인의 대표적 활동을 가장 먼저 밝혔다. 그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공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법인으로서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자 개인의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대표

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인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은 2차년도 연구(오영호 외, 2012)에서 제시된 외부적 책무성 내 대표성과 전문성의 두 항목을 포함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대표성은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정도,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정도, 활동의 실효성, 목적 적합성, 사회적 기여도, 회원 기대 적합성으로 측정된 항목이며, 전문성은 외부 인식의 정도, 내부 교육의 정도, 외부 교육의 제공 정도, 전문가 교류 정도, 전문가 활용 성과라는 지표로 측정된 항목이다. 2차년도에서는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 두 번째 우선순위를, AHP 분석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분리하기 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차별화할 수 있겠다.

가. 특정 단체로서의 자부심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대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성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의료,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은 각 분야별 특정한 사업에 따른 활동을 통해 대표할 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의료 분야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 분야는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종교 분야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지향성을 제시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유형별로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비영리 법인은 설립자에서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헌신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최초 설립 취지 자체는 이제 의료 법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내의 의료 발전과 그 지역주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의료 혜택을 좀 더 보장하고, 아무래도 본원이 이제 뇌졸중 수술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급성 병원이다 보니까 재활 분야에 대한 게 사실 미흡해서 지역 내 요양병원은 많지만 재활병원이 없어서 그런 치료의 사이클을 완성시키고자 본원 원장님께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립하신 곳이고 그러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협의 조정사업, 그리고 뭐 교육훈련사업, 조사연구사업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출판 홍보는 대부분 사회복지 기관 쪽이 다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 기관 자체적으로, 한국 사회복지협의회랑 지역별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단독 법인으로 돼 있긴 한데, 업무 협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푸드뱅크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관련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축제,, 뭐 축제를 하면서 사단법인 이게 문화예술,, 그니까,, 진짜 거창 같은 데서는,,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그 국제연극제라는 게 거의 시발,, 지역에서 거의 선두주자였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 척박한데 와서,, 이 연극제를 이만큼 이끌어 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혜택을 줬다 뭐 이,, 이런데 자부심도 있고 그런 힘이 이태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음,, 그렇게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 너가,, 우리,, 그,, 어떤,, 같음을 뭐,, 많이 해소해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역사회에 뭐 저희 본질이 저희 복음을 증거 하는 거니까, 복음을 증거 하면서 어,, 그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네, 바른 목표겠죠.

저희,, 설립,, 그,, 뭐냐 이념이 저희 홈페이지 봐도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구성원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그거를 뭐,, 그거를 위해서 좀 많이 헌신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저희 법인의 경영진이든 의사결정권자든 어떠한 그 유지를 받들려는 의지는 강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헌신하는 부분도 있어요, 높이 사요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의 소규모 법인 담당자는 법인체 단독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 이사회뿐 아니라 소속 회원들 역시 법인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립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법인의 경우 담당자는 법인의 대표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독립된 건물이나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리고 법인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체적 해결 방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저희는 이제 이용자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자료 빌리면서 뭐 이렇게 한 두 마디 하시는 것도 다 이제 다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서비스 방식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시설이 너무 후지다 의자 다 바꿔주세요, 이런 것은 맘대로 못하죠,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독립 청사, 독립국가 수장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기증해 주시겠다는 이제 나이 드신 원로 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받아오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디지털로 받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무 자료가 중요

하거든요, 그쵸, 저희가 무슨 좋은 그 조선시대의 이제 명,, 뭐 누구의 그림을 한 장 이제 일본에 있고, 우리는 파일을 하나 갖고 있는 거랑 원본을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요,

나. 사회적 기여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특정 단체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단체로서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 의료 및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인 탈북민과 재외국민, 생활기초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 및 진료, 지역 주민 중 좋은 이웃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역사회 내 노인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자 법인의 전문적 특성이나 재능을 기부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하고, 법인의 공간 대여 등 사회를 위해 환원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뭐 저런 거 하고 있죠, 탈북민들,,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 무료 진료,,이런 걸 이제 **경찰서하고 해서 하고 있고,,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책보내기 같은 거 하고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두 개나 열었어요, 콜센터라는 사업 이랑,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서 콜센터는 정말,, 이렇게 미흡한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좋은 이웃들은 저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뭐 서비스, 도배나 뭐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연결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번 년도부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많이,, 어 그거(사회적 기여의),, 영역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나아가서는, 어,, 가까이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그 봉, 사회봉사 개념, 예, 사회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능기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 많이 환원해 줄 수 있게끔,, 하물며 뭐 예를 들자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는 실버복지과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제,,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 그 노인복지라든지 또 환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제 강제 조항은 없지만 네, 요즘 뭐 평가,,인증제도에서 그 부분이, 사회적인 책무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한편 한 종교법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종교법인의 담당자는 법인의 양적 팽창보다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그들의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인적, 재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교회의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법인은 기관의 유형과 목적이 다를지라도 사회적 요구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 교회들이,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런 장애인 재활센터나 혹은 수용시설을 소규모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

웃들은 다 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따로 사회복지 시설을 맡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은 좀 적어지고,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장애인을 같이 집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예,, 케어 하기는 힘드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면서 내 집 가까이에서, 내 식구, 내가 품지 못하는 장애인 식구 쉽게 만나면서 또 마음의 안도를 갖고, 생활에도 전념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좀 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이 좀 소규모로라도 조금 조금씩 하면 그 지역사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감당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더 커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정도면은 차라리 떼어서, 이만큼 교인을 떼어서 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 부대시설을 이렇게 확충해주면서 지역사회를 좀 섬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여는 기관 측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비영리법인 담당자 개인 측면에서도 삶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비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서는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기관의 사회적 기여 부분의 실적으로 삼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개인은 점차 봉사정신이 퇴색되고 근무의 연장선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다.

제가 평소에 좀 수화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가끔씩 공연, 봉사도 가끔씩 가고,, 어,, 해외아동 후원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끼리, 네 뭐 근데,, 저는 직원들끼리 그냥 하고 마는 게 또 좋은데 하고나면 또 보고서 제출해라, <웃음> 그렇게 돼서 그게 업무처럼 비춰지는 게 굉장히 조금 싫은데 저희 직원들끼리 그냥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이럴 때 한창 추울 때 시장 이런데 새벽에 가서 차도 놔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직원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것도 이제 결과 보고서를 써라 어쩌라 하다보니까 업무처럼 돼서 그게 조금 굉장하긴 안 좋긴 한데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하려고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 실무자의 전문성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에서는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법인의 특정분야를 전공한 자를 채용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 문화예술법인은 예술분야 전공자, 학교 및 의료법인은 경영학 전공자가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반대로 담당자의 전공과 비영리법인의 분야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가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법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극복하고 노력해야 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법인 산하 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수차례 이수했으며, 관련 서적을 읽어 보고 자기학습을 경험하였다. 회계 업무를 습득하는 데 가장 도움을 받았던 방법은 1:1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였다. 멘토는 회계 업무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담당자인 멘티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 훨씬 효율적이었음을 경험하였다.

제가 원래는 사회복지 대학교를, 이제 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니다가 저희는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이제 사회복지 1급을 따는 거랑 또 사회봉사, 몇 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돼서 2학년 때부터 조금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여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좀 1년 정도 하다가, 좀 제가 원하는 사회복지 좀 일이라곤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서 실습도 하고 졸업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와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그래도 회계 업무를 좀 많이 아셨던 슈퍼바이저가 두 분이냐
계셨어요, 부장님하고 그 전에 회계 업무를 하셨던 팀장님, 이렇게 두 분
이서 항상 제가 물을 때마다 오셔서 친절히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그것
만으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 업무 맡고서는 6개월간
은 어,, 동네에서 열리는 회계 교육이란 회계 교육은 다 참석했던 것 같
아요, 회계 교육도 참석하고,, 또 그 슈퍼바이저분들이 이제 책도 선물
많이 해주셨어요, 회계에 대한 책 선물해 주시면 그것도 하고, 근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추경이랑, 추경이랑 예산 결산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추경 할 때는 거의 2주 동안 새벽에
퇴근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힘들어하니까 저희 다른 팀장
님께서 또 자기가 아시는 회계 업무를 한 10년 동안 잘 보셨던 분을 1대
1 멘토를, 이렇게 멘토링을 연결 해주셨어요, 연락처를 주면서 한번 배
워봐라 하면서, 그 분한테 가서 한 이틀, 삼일 계속 찾아뵈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게 효과도 그렇고 빨리 배
우는 습득력도 저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업무를 잘 아
는 분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걸 굉장히 좋아 했었어요, 그렇게 1대1
로 교육을 해주는 곳은 없죠, 없어서 제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 중에 제가
직접 그냥 시간, 여쭙봐서 시간 언제 되시냐고 여쭙봐서 직접 찾아가서
배우는 게 다예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업무를 파악하고 익숙해지는데 약 1
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이후 2~3년 간격으로 새로운 업무를 순환적
으로 담당하면서 보다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일 년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일련의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일 년
은 그렇게 부딪히고 배우면서 하는 것 같고요, 2년, 3년 때까지는 뭐가

좀 새로운 것도 생각해 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업무를 배우면 또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회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교육팀이라 해서 교육만 하다보면 회계에 대한 일을 너무 모르거나 또 회계라고 해서 회계만 하면 다른 업무를 너무 모르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다보니까 다른 사람의 업무도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뭐,, 상담을 하러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특별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막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설명드릴 수 있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의 많은 담당자들은 법인의 유형과 상관없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처음 받았던 교육프로그램은 짧은 시간동안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1년의 경력이 쌓이면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법인에 관련된 그런 교육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어디지? 대한병원협회지 어딘지에서 법인 업무에 대한 한 시간인가 두 시간짜리 교육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 들었던 적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차피 일 년 정도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뭔가 이제 더 개선하고 발전하고 쪽 가야될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3년 동안 접해본 바로는 그런 교육이 그 때 받은 그 한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법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 법인에 대한 교육이요 그러니까, 인사나 노무는 어떤 사업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분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배울 데가 많고, 뭐 공통적인 세무나 회계 같은 부분도 볼게 많이 있는데 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 다른 법인은 그나마 또 법, 법령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비해서 의료법인은 민법에 조금 나와 있고 별 특별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구청이든 보건소든 관공서에 물어봐서 문의를 또 해야 되고, 그분들도 좀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케이스도 적다보니까,

이러한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분야의 한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법인이 실습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전공분야의 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자신이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실습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길 원했다.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과 겹쳐서 교육에 참석할 경우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리게 되는 부담을 주게 되며, 법인에서 교육비 지원이 없거나 개인이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은 업무적으로 여러 역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만능의 실무자를 원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밝혔다.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기를 기대하였다.

사회복지 실습,,쪽은 실습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실습, 이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슈퍼바이저 관련된 교육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업무적으로 하면서 아 이런 것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열려 있으셔서, 네 뭐 업무적으로 겹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사무실에서 지원이, 또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요, 일이 겹쳐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

니까 그건 외부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좀 비싼 것은 사실 좀 부담이기도 하고요, 또 사무실 비우고 일이 있을 경우엔 겹쳐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 훈련 사업이건 뭐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전문성을 따지면 조사 연구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좀 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출판 쪽으로 좀 더,, 홍보 쪽이나 이런 쪽을 해봤던 사람, 모금회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뭐,, 광고 공부를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사만 다 와서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가 만능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장은 너무 만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도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손쉽게 어떤 거기 접할,,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평가나 뭐 그런 부분,, 그,, 지표관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좀 어떤 자발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구색맞추다보면 도움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우리 기관이 어떤 설립 이념이나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관만의 차별화를 갖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교육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봐요,

3. 민주적 운영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책무성을 갖춰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경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때 법인의 구성원

간에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운영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정부의 권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민주적 운영은 2차년도 연구(오영호 외,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중에서 민주성에 해당되며, 규정의 정비 정도 및 준수 정도, 의사결정 참여 정도, 직위의 고른 분포도,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빈도, 내부 의결권의 다양성 정도로 측정된 항목이다.

가. 의사결정의 형태

비영리법인은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그 형태를 나눌 수 있었다. 비영리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표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수평적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루어지는 결정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저희 기관에 좀,, 중요한 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런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어,, 회장님하고 거의 직원들하고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편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수직적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의료, 사회복지, 학교,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최고의 결기구인 이사회, 운영위원회 또는 당회, 이사장, 병원장이나 회장 등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최고의

결기구의 구성 위원들이 책임 맡고 있는 영역에서 의견을 합의한 후 결정권자에게 보고된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최종 결정사항은 모든 구성원에게 하달하는 방식의 하향식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일지라도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근거로 최고결정권자까지 안전이 제안되었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았다.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사진들이, 결정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

상가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는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당회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치리기관은 당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당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당회원들이 이제 각 분야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저한테 보고한 후에 함께 합의해서, 협의해서 어 결.. 어..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어 나머지 이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회원들이 분담해서 지고 있죠.

재산, 설립자가 재산을 출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병원도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고유목적 사업의 이제 법인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다를 거고요, 법인에서 갖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거고, 산하 기관에서 갖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건데, 법인은 우선 인사권을 갖잖아요, 예산 심의.. 그.. 예산권을 갖고 그 가장..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그리고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면은 그 임명된 기관장은 그 기관을 경영하는 거죠, 총장이나 병원장이나, 네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사실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음... 저희는.. 그... 그게... 글썄요, 의사결정이 그.. 어떤.. 그 하향식에서 위인지, 위로 가면서 어떤 권한을 갖는 그런 것들이.. 그.. 다..

그,, 순차적으로 결정돼서 된다고 보진 않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예, 주로 이제 하향식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내려가진다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최종 승인자라든지 결정자 이런 분들, 병원장님이나 이제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근데 어차피 밑에서부터 구체적인 좀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원장님, 행정원장님 정도까지 가면 뭐 거의 합리성이 있다는 걸 기반으로 이제 안건이 올라가니까,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할 당시의 대표나 이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대표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사회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대표나,, 연극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거의 승인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사회는 어떤 정말 주 기능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들이 대표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대개의 이사회,, 법인들이 그렇지 싫어요,, 아주 크지 않으면,, 저희가,, 이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2002년도든가, 1년도엔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도 바뀌고 이사회도 이렇게 막 대폭적으로 막 자주 이래 바뀌고 이러면 성격도 틀려지고 이 법인 자체의 어떤 그게,, 가질 텐데 아직까지는,, 대표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이사회죠,

나. 의견수렴의 정도

비영리법인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법인 내 구성원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는지에 따라 민주적 운영 여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비영리법인이나 산하기관 및 센터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자유롭거나 원활한 경우도 있으며 제한되거나 단절된 경우도 있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도가 달랐다. 종교 분야의 법인은 법인 내 원활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시간과 기회를 자주 가졌는데, 예를 들면 식사나 면담 등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의료, 사회복지, 학교, 문화예술 분야의 법인 담당자들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까지 결재선상에서 만나게 되는 단계별 상사와 실무자 간 의견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뭐 어차피 제가,, 의사결정을 제 단독적으로 안하고 항상 당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인들의 이제 의견을 개인적으로도 듣고 또 그분들이 들어서 회의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니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회는 이제 당회원들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개별적인 식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단체로 회의를 벗어나서 당회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이제 모이기 힘들 때는 뭐 서면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주지해야 되거나, 공지해야 될 것들은 서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그 뭐 사업 계획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관계자나 뭐 아니면 자문단 이런 데서 의견 수렴을 할 순 있겠지만 일단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 3자들은 뭐 빠지는 거잖아요, 그 결재 라인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수준이지, 예를 들어 결재가 올라가는데 팀장은 오케이 했고 이제

뭐 그 위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실장급이라든가 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맘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때 이제 계획하는 사람과 먼저 팀장과 실장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순 있겠죠.

반면에 비영리법인 내 구성원 간의 의견 교환이나 의견 수렴이 완전히 단절된 기관도 있었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이러한 단절된 의견수렴의 분위기를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보다 직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실무자가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직된 분위기가 남아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향이 좀 더 강한 법인에서는 실무자에서 관리자, 최고결정권자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법인 담당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 동기나 의욕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모아 상향식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좀 많이 좀 단절되었다고 느껴져요, 우리나라의 문화 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일반기업체도 그럴 거고 좀,, 그,, 실무자, 그 실무자 위에 중간 관리자, 관리자, 뭐 임원급, 최고 의사 결정권자 각 그 단계별로 어떤 권한과 책임 선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건의가 되고, 의사 결정까지의 그,,게 좀 상향식으로 결정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 져요, 업무상 애로 사항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동기 저하가 되죠,

우리나라의 문화자체가 어떤 바른 소리를 하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 조직 문화자체가 또 경직 돼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의견 개진이나 그런 창구가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면

서도 다른데서 또 보람을 찾고 그 하다,, 하다보니까 예, 근데 비단 이게 우리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 외부 의존도 정도

비영리법인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비영리법인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비영리법인의 예산 분배나 책정, 핵심사업의 방향 설정과 결정 등은 당시의 정권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어느 정당이 우세한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존속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바뀌는 것에 따라 흐름을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 정부 때는 좀,, 그 복지를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복지 예산도 굉장히 늘고 해서 쳐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 000 정부가 들어서고서 부터는 그리고 저희 국회,,도 의원도 바뀌면서 굉장히 저희가 그 작년 4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자꾸 센터 없애야 된다, 예산을 깎아야 된다, 법인이랑 우리랑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합산 병합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이런 흐름을 너무 많이 탔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핵심 사업이 되기가 쉽진 않아요, (중략) 지난 정권부터 뭐 이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이제 지원이 되게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예를 들어 50만원 짜리 음악회를 가는데, 누구는 도대체 평생 클래식 음악을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자기가 관심 없어서 안가는 게 아니라 접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런 기회라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문화 예술 바우처도 있고 이런 지원들이 많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그 각 정부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뭐 지난 정권에선 이렇게 소의 계층을 갖다 지원하는 거라면 문화 예술뿐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이제 그 쪽으로 우선이 가잖아요,

**당이 정권을 잡을지, 000당이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000당 측 관련자, 그 때는 뭐 그 사람들이 누구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책으로 해서 예,, 어,, 보급되려면은 상당한 뒷사람들이 이거 관심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힘들죠,

4.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으로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란 규정화된 자원을 통해 계획된 사업 활동만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며, 업무에 따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은 2차년도 연구(오영호 외, 2012)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 여부, 연간 사업계획의 완수 여부, 연간 기관 활동의 일정 준수 여부, 기관 예산 활용의 적정성 여부,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 상근 인력 배치의 적정성의 지표로 측정된 항목이다. 특히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내부 구성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법인의 효율성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가. 규정화된 자원과 활동

연구에 참여한 모든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법인의 법적 근거에 준하는 활동을 위해 규정화된 자원을 활용한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과 정관에 정해진 기본 사업과 활동을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기존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서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인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예산과 직결된다고 인식하며,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거의 일 년에 돌아가는 사이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보니까 일 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좀 특별한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연 초에 이제 뭐 계획을 세우면, 거의 그대로,,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정해 준 사업들이 있어요, 그건 해야 되거든, 안 할 수가 없고,, 그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 이외에 이제 뭐를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그 사업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것은 예산과 이제 연결되는 문제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인건비만 줘요, 사업비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은 결국에는 이제 벌어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나. 예산 확보 및 운영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앞서 제기된 규정화된 자원과 활동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면서 법인 설립 당시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 운영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나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고 기존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인력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백화점 등 기업체의 외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업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도해보고 싶었던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외부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운영, 집행 및 보고단계까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로서 자존감과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해야 될 일은 무척 많은데,,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기관이라면 이런 이런 일쯤은 해줘야 된다고 기대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너무 조그만 한 기관이니까 그 기대에 부응 못하고 되게 한정된 업무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조그만 기관이라서, 그러니까,, 예산도 적고, 뭐 인력도 적고, 그래서 사업도 얼마 못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느끼는 이제 아쉬움은 있죠,

저희 예산 규모가 일 년에 한,, 30억이 안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은 뭐 임대료 하고, 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고 사업비는 정말 적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뭐,, 이런 이런 뭐 정관에 보면 어느 기관이든 그렇겠지만 다 엄청난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다,

도에서 저희가 항상 받는 것은 저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이렇게 이런,, 공,, 사회공헌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계획서를 작성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안감도 많고 그거에 대한 조금 계획이라고 하나요? 계획서도 철저하지가 못해요,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요, 하게 하다해서 그게 만약에 선택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매달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딱딱 정해서 나오는 거는 1년 전부터 저희가 쪽 계획을 하고 전문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거에 필요한 인력확보도 다 돼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순 있어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도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창의성이 굉장히 들어간, 저희가 해 보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고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부터, 계획부터 해서 모든 걸 진행을 해 온 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업무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쉽게 받아서 하는 사업보다 자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진행을 한 거에 대한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또 높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나 업무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운영과정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자체나 주무관청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감독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간혹 예산 운영의 문제가 드러난 몇 몇 법인으로 인해 관련 법인의 전체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의도치 않은 타격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이는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법인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사업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것은 예산과 이제 연결되는 문제고,, 이제 **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줘요, 사업비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은 결국에는 이제 벌어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또, 영리를 추구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실비로 이용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그 쓸 수 있는 것도 제한을 삼고 있는 거죠, 요거에만 써라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재정 면에서는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융통성 같은 것이 전혀 없다.

그동안 이제 많은 사회복지 법인들이 (비리가)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일부죠 일부, 이런 법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모든 법인들을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일일이 간섭해서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는 건가 이런 그,, 사회사업을 하면서 도 어, 도둑질하는 사업인가? 이게? 감독을 안 하면 우리가 도둑질 하는 건가? 그런 나름대로 자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일부 그렇게 생기는 그런 법인들은 왜 그렇게 생기겠어요? 그게 지자체나 감독관청 잘못 아니에요? 지네들이 그런 일 벌어질 때까지 손 놔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는 뭐 안면 때문에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잘하겠지 그러다가 터지면 그때서야 이제 모든 법인을 싸잡아서 때려잡듯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는 그 행정 관청에 자기 직무 유기에 해당하죠, 자기네들이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감독 못 한 거고,, 그걸 다 선량한 모든 법인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범죄 집단 만들듯이 이렇게 다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죠,

다. 인적 자원의 활용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기본 사업을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인력이 배정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수행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이처럼 현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편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특별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저하됨을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걸 제안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윗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 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갖고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양이 좀 많은 편이라서 새로운 걸해서 추진하긴 여력이 없는 편이에요, 직원들이, 그런 편이기도 하고, 행정적인 처리가 저희가 특히나 좀 많은 편이라서 네, 업무 여유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는 편이에요,

저희가 워낙 인원수가 적다보니까는 기관이, 예,,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거기서 정해진 인원수는 워낙 적고 해서 사실 새로운 걸 생각해 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한다거나 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부담이거든요, 이제 계약직으로 있는 분 빼고는 한 명이 지금 그만 둔 상태라 세명에서 하고 있어요 일을, 그래서 실은 아까 말을 드렸듯이 조사 연구나 협의 조정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고, 출판 업무나 뭐 이런 것도 혼자서 하고 있고, 거의 한,, 팀, 한,, 뭐,, 한 사업 당 한 사람이 맡고 있거나 두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돼서 뭐 조사연구도 포럼이나 조사연구를 해야 되고 뭐 협의 조정사업도 회의라던가 뭐 직무단체를 모이게 하는 거나 뭐 대외행사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이 하는 거라서 사실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하기에는 좀 이게 그 인력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편이에요,

현행업무, 그러니까 싸이클처럼 돌아가는 현행업무에 대한 대처는 가능한데, 순간 순간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렇게 뭐가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현행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말 그대로 최소편성이니까, 최소 편성은 당연히 그 의미하는 바가 이제 업무도

덜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 부담, 부담이라든지 가중도 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와 다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언을 듣고 있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 특정 인력을 선정해야 할 경우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였고, 마케팅과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었다.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 수준에서 실질적인 도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의 효율성을 보였다. 특히 사업을 계획, 진행 및 운영하는데 있어 컨설팅을 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받은 자문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그 개개인의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 공연 영상 쪽 담당하는 학예사 분은 연극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극 쪽으로 해야 자기가 그나마 잘 알지만 어 상대적으로 무용, 음악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에 이제 구술채록사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구술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분야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관련하신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뽑는다가나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요,

축제 기획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서울에 계시는,, 전문 연극인들,, 음,, 뭐,,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일단은 그걸,, 들어요, 자문을 듣기는 하는데,, 그렇다 해서 뭐,, 참고는 할 뿐이지마는 어떤 기획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우리 마케팅 할 때,, 마케팅을 위해서,, 그 뭐,, 할 때는,, 좀 모셔와 가지고 어떻게,, 음,, 어디,, 어디를 치고 들어가면 티켓을 많이 팔겠는

가? 그런 거를 합니다,, 음,, 기관의 활동에 외부활동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그니까 마케팅,, 그니까 티켓을 파는 경우에는 그게 딱 보이,, 나오죠 이게 수치가 나오니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음,, 그 다음에 축제 뭐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다 용역을 주거든요, 컨설팅이나 뭐 우리가,, 그 보고서가 참 이,, 없애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거의 해마다 그 틀에 박혀 가지고,,

한편 교육 분야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인적 자원의 선택이나 활용을 위해 중요한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어떤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좋을까를 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정서사업 이런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다 나뉘져 있다고 하면,,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강사를 위촉해서 나랑 평생교육 강사님들하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을 줄 수 있는 생활체육협회,,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체육 강사들이 올 수 있구요,, 뭐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아니면 각 대학 뭐 이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좋은 강사님을 소개 받을 수도 있구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느꼈다. 만약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리더십을 가진 기관장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면서 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업무를 하는데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역할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업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한편 담당자와 소통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며 권위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기관장의 경우,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재정적인 비리가 발생되기도 하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동기를 차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처음에 와서 센터장님이 너는 하는 일이 뭐니 했을 때 회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싫어하셨어요, 너는 경영을 하는 거지 어디 가서 회계라는 말 절대 쓰지 말아라, 경영을 하는 업무를 짊어 내리는 말이니깐 절대 그런 얘기를 쓰지 마라, 이런 단어부터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이 너는 경리가 아니니까 경영자답게 굴어라 <웃음>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처음부터 그 업무가 바뀌었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들었다면, 소진은 안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뭘까? 라는 생각을 덜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음,, 그런 것은 있어요, 자부심이 좀 더 커지긴 했어요, 저한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업무,, 업무량은 많아서 힘든 것은 있지만 제가 회사에서 가지게 된,, 좀,, 위치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많이 커져서 만족감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 이예요,

그 때는 계시던 분이 지금하고는 또 다른 분이라서 그 때 계실 때 저도 입사한지 얼마 안됐었고 한참 이제 일을 배우면서 할 때라서 그 때 제가 뭘 제안했던 걸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거나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밀고가시는 게 있으셔서 그렇게 그렇게 뭐 제안이 되,, 좀 안되게 하거나 그러시면 조금,, 열심히 하려다가도 꺾이죠, 한풀 꺾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전에 있던 직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회장님은 반대로 좀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좀 있으신 편이라서 제안해 주시거나 이런 건 신선한 게 있으신 편이에요, (회장님이) 제안해 주시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끔 이제 놓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좀 깨우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극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인 영향력에서는 담임목사가 제일 권한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에 목사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게 목회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야 제 통솔을 받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김의 개념으로 통솔해야 될 부분이지, 주도권을 쥐고, 뭐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정서상 어,, 권위라는 것들을 지도자에게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좀,, 변질된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련의 교회들에 인재들, 뭐 목사가 무슨 부도덕한 일을 했다, 물질을 뭐 유형했다든지 뭐,, 자기가 너무 어,, 교회 실적과는 어긋나도록 큰 사업을 벌려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연령대가 이제 30대 초반, 제가 제일 그나마 나이가 많은 건데, 저 말고 그 위에 분들하곤 나이차이가 굉장히 커요, 거의 50대, 60대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가본 길이고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겪어가야 될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안을 해도,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차단되니까 다들 이제 안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 꺼고,

5. 차별 없는 대우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법인의 책무성의 한 패턴으로 차별 없는 대우를 제시하였다. 즉 담당자들은 성에 대한 평등, 기초생활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우수인력에 대한 처우를 통해 차별 없는 대우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차별 없는 대우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외,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내 형평성에 해당되며, 업무배분에 따른 차별 여부,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여부, 성에 따른 차별 여부, 구성원 간 위계에 따른 차별 여부, 업무 능력에 따른 차별 여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운영 여부를 지표로 측정된 항목이다.

가. 성적 평등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의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담당자들 중 대부분은 성적 차별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제한된 업무, 즉 중요도가 낮은 정도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여성 담당자는 결혼과 함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함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의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도 여자스님보다 남자스님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제한으로 비영리법인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많이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이 해야 될 업무,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좀,, 암묵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업무를 하면은 어떤 인사고과든 승진이든 좀 제한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알게 모르게 누구나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게 있죠,

어떤 단순 업무,, 네, 그런 것들, 뭐,, 이제 인사 쪽에서도 보면은 급여 업무랑 인사업무가 있는데 급여는 대부분 여자가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사고과나 승진에 있어서 이쪽(급여업무)보다는 이쪽(인사업무)이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우리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분위기가,, 어,, 여성의 출산이 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존재하거든요,,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원론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어야 된다고 현실 속에서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사회가 전문화되어가는 것처럼 종교집단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화 사업을 하는 스님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인 비구스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우리 불교집단 안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 생활권의 보장

본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서울과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서울 또는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소도시 간의 지역 간 또는 지부 간 차이로 인해 불평등함을 겪고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사업비 내 인건비, 사례비 또는 급여의 수

준이 지역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드러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며,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심각한 건 서울이나 이렇게 지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왜냐면 그 보통 도로 나눠서 하면, 도가 90% 그 다음에 시군, 시군수가 10%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전라도나 저쪽 가면 시에서 그 돈(인건비)을 못 줘요, 10%를,, 그러면 이제 도에서만 딱 정해진 거를 주죠, 근데 도도 돈이 없으면 그것도 제대로 못 줘요, 자기 뭐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더 심각하지, 그래서 우리 자꾸 다시 이거 중앙정부로 환원해 달라 그래야 이 복지 지역 간의 불균형..

저희가 받는 월급을 사례비라고 표현하는데, 사례비만이라도 총회에서 지정을 딱 해 놓으면 목사 몇 년차 그러면 어느 정도선, 거기서 이제 큰 편차 없이, 물론 큰 교회를 맡으시면 그,, 뭐 직함,, 뭐죠? 유지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판공비나 뭐 이런 게 필요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영역 빼고 기본 생활비만큼은 총회에서 좀 일괄적으로 정해서,, 시골교회에 있든 도시교회에 있든 그런 삶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큰 교회 가려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고, 시골에서도 뭐 생활에 대한 부담 없이 잘 목회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2011년도인가 한 거 보니까,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는 148만원이예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높겠죠? 뭐 한 150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 이제 복지관에 이제 150 정도 받으려면, 한 2호봉 3호봉,,2,3년 정도 근무해야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버리면,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맞벌이를 안 하면, 최저 생계비로 사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를

왜 만드냐면, 수급권자 그 분류하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와 결혼하면, 수급권자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그런,, 대우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돈 얘기, 인건비 얘기만 나오면 설레설레 흔들죠, 지금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급여 수준이 좋은 편에 해당된다고 느끼는 담당자도 있고,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거나 적은 급여이지만 복지후생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지역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가 책정되기를 기대하였다.

월급은,, 월급은 작아요,, 월급은 작고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음,, 다른데,, 다른데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나 이런 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챙겨서 쓸 수 있게,,

공무원,,의 대우는 아니지만 준 공무원의 대우도 어느 정도 처우도 복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월급도 복지관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 센터에 와서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회사원이면 어느 정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는 어 그래 내가 여기,,를 떠나서 더 좋은 직장을, 직장도 없거니와 여기가 제일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그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다 주관적인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적으면 솔직히 뭐 조금 아쉬운 할 텐데 저는 사회복지 쪽 다른 분들 일하시는 것 들어봐도 뭐 저보다 많이 받는 분은 많이 받고 계시는 거고 적게 받는 분들은 또 적게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저는 제 선에서 만족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건 아니고요 이제 얘기하다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들어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여비 지급이라든가 출장, 그러니까 출장비나 아니면 뭐,, 그 외의 것들이 다른데 보다는 비교적,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의료법인에서 행정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한 담당자는 의사, 간호사, 치료기사와 같이 전문직종자들과 비교했을 때 행정직의 대우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행정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특정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제 간호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뭐 어쨌든 전문 직종은 그 수요자체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우가 괜찮은 직종에 속한다고 보이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행정직이라든지 그런 쪽은 특별한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원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건행정학과가 이렇게 세상에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그 상위 직책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과를 나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뭐 이후에 이제 대학원이, 야간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니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 행정 부분은 아직 뭐 그렇게 썩 괜찮은 대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우수 인력에 대한 처우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눈에 띄는 업무성과를 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길 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업무를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

한다 해도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한 부서에 인원도 그 열네 명이 세 개부서로 지금 쪼개져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부서의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업무에 바쁘지, 그리고 저희 올라갈 자리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승진을 위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럴만한 아직 라인이 만들어 지기엔 너무 작아요,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할려고 하고는 있어요, 재단에서,, 근데 인센티브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은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 기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 기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인센티브라든가 사실 업무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차별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구요,, 아마 추후,, 한 1년 안에는 이런 식으로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저희 업무능률에 따라서 도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6. 투명한 관리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재정과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주무부서, 감독관청에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한 패턴으로서 투명한 관리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외,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내 투명성에 해당되며, 재정 관리의 체계화 여부, 재정관련 내역의 외부 공개 여부,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여부, 기관운영 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여부,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로 측정된 항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 내부 통제 및 감사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화된 내부기관으로서 통제와 감사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합리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구성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화되어 있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사회가 음,,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일어난 모든 것들 음,, 하물며 어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이사회를 통해서 다,,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사회가, 그래서 이사회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사회를 할 때는 뭐 친척의 몇%는 못 들어가고, 네 그게 다 이렇게 룰이 돼 있어요, 그래야 어,, 족벌체제가 안되고요, <웃음> 네, 그리고 다양한, 뭐 거기에는 교육경험이 몇 년 이상인가가 뭐 몇 분의 몇 이상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것조차도, 그래서 이사회가 뭐 그냥 친하다고 이사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교육경험이 몇 년 이상이 돼 있는 분들은 몇%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친척의 몇 분의 몇 이상은 안 되고, 또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오너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은 대학은 이사회가 활성화되면 그 대학의 발전하고 직결되더라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대해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의 기능이 법적으로는 규정화 되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담당자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영리성이라는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해도 비영리법인의 감사가 내부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담당하고 있지 않음

며 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형식적인 내부감사 체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인 자체적으로 견제장치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제안하였다.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지만, 저희는 사람학교잖아요? 설립자가 있는 거고, 재산을 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비영리 법인인지 아니면은 설립자가 출현해서 어떤 그,, 개인 소유의 성격이 얼마만큼 있는 건지, 법상으로는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 설립자의 설립정신이나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니까 어떤 그 제한권도 많이 주거든요,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근데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이사회나 이런 법적인 제도는 다 마련돼 있지만 그게 기능은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제가 느끼기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도 이 사람학교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목적에 있는 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가 있고 그,, 뭐냐 설립자의 어떤 그 가문에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사설 기관인지 예, 그런 정체성이 좀 모호하지 않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도 음,, 좀 관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비영리 법인의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세워지고 집행됐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할텐데 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네, 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법적으로는 감사를 두게 돼있죠, 이사회에 감사가 두 명이 있어요, 한명은 회계사, 한명은 그냥 외부 감사데, 뭐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이 감사가 감사역할을 한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감사가,, 그 경영진하고 어떤 뭐,, 그런 감시를 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감사가, 회계감사는 매년 한 번씩 해요, 법상으로 하게 돼있거든요, 네, 저희 이사회에 계신 감사분이 각 기관 감사를 해요,

일 년에 한 3일정도 감사를 하는데,..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뭐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은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예산도 기관에서 세우면은 이사회에서 이게 진짜로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꽤 심도 있게 논의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사회가 형식적이지 않나, 네, 법에서 정한 어떤 그런 견제장치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정책이 국가에서 필요하다, 근데 좀 많이 요원하지 않나...

학교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한 참여자는 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이나 관련 인물이 아닌 제 3의 인물이 이사장이 되어 법인의 사업이나 활동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사회에 활발한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이사회 기능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이게 오너의 문제거든요, 네, **대학교가,.. 뭐 이걸 뭐 제 추측일 수도 있고 한데, 음,.. ***대학교가 000 라는 분이 네, 이사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 잠시 나와 계시고 다른 분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사회가 굉장히 활성화 돼있어요, ***대학교가 이사회 회의를 4시간, 뭐 5시간 이렇게 한 대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사회에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오너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 이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본인도 이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은 그런 사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 공개의 정도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법인의 예·결산,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사업운영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는 정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법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했으며,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여러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체로서 존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비영리법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 산정의 제한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법인의 이사회나 지자체, 주무부서에 지면으로 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공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법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또 결산이 이제 되면은 예,, 그게,,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예산 세워서 법인에서 취합을 해서 이사회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있어요, 학교는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학 평의원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요, 이제 이사회로 안건이 와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 5년인가?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결산도 마찬가지로 네,

이사회라는 것을 예전에는 음,, 거의 이제 폐이퍼,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회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하더라도 그 이사회 모든 회의록이 있잖아요, 그걸 다 그 기관에서만 보관 하게끔 돼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100% 공개해요, 100% 공개해요, 어,,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그걸 안했을 경우에는 또 제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사회 회의록은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공개 여부를 따지자면 당연

이 공개돼 있는 셈이고, 뭐 부서장회의,, 같은 데를 거쳐서 주로 진행되는 사항이 각 부서장들한테 서로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정책적이거나 금액적인 부분 다 공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제 관리하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이제 공공기관에 이 기관들을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사전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경우 저희 같은 이제 너무 조그만 기관은 어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서 해당은 되지만 너무 작아서 이제 그 소관 부처의 감독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죠, 저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는 할 인원이 너무 없고, 이제 그,, 적은 인원으로 사업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꽤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이제,, 정보 공개를 한다든가 뭐 경영공시 매년 바꾼다든가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공개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숨기는 것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갖다 저희는 그런 정도로까지의 어,, 돈을 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음>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정보 공개까진 하지 않아요.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관련 법인의 정보나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즉 법인의 경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병원계 자체가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자체도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는, 예를 들어서 심평원 홈페이지 가면은 그 병원이 간오등급이 몇 등급이고, 뭐 그런 건 이미 다 볼 수 있는데도 막상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줍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있겠죠, 대차대조표가 공개된다면은, 좀 더 세부적인 항목까지 공개 된다면 병원들도 상호간의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더 합리적인 경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7. 외부와의 관계 형성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마지막 패턴으로 외부와의 관계 형성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법인은 시민, 관련 기관, 국가·정부·지자체라는 법인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부와의 관계 형성은 2차년도 연구(오영호 외, 2012)에서 외부적 책무성 내 반응성에 해당되며, 유사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타 기관과의 공동 활동 여부, 국가기관과의 협력 여부, 기관에 대한 언론 보도 시 대응 여부, 고객 요청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관 내 수렴 정도를 지표로 측정한 항목이다.

가. 시민과의 관계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주요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돈독히 형성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나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다 수집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또 저희 열람실마다 이제 그 집어넣는 통 있죠, 의견함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뭐지? 그

리고 하다못해 저희는 이제 이용자분들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자료
빌리면서 뭐 이렇게 한 두 마디 하시는 것도 다 이제 다 관리는 하고 있
고요,

나. 관련 기관과의 관계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유사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적인 관계이기도 하였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련 업무에 따라 협력이나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비영리법인 단독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보다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즉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가 증진되며 자료나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결국에는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사기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이제 서로 노력은 해요, 근
데 아시다시피 기관들마다 서로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협력도 하고, 이제 어떤 쪽이 앞서나가 있으면 이제 자
문도 구하고 그런 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만 잘되자가 아니라 뭔가 다 같이 연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이런 기관이나 법인들이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다
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
연합하는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 유관기관
과 그런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예방
적인 그,, 미리 확보된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사
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자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주시고,, 인력을 줄 수도 있고,, 그 분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업들로 확장되기도 하고,,

국공립미술관에서 하는 레지던시라던지, 그런 거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작가를 지원하는 기관은 많지만, 비영리기관이면서 이런 저희랑 비슷한 활동을 하는 이런 교집합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도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들끼리 뭔가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고,, 각 기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각개전투로는 슬슬 움직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더 가능한 게,,이제 정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서,,뭉쳐야 산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저희는 아까 이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링크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관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종단들, 그다음에 군소종단이면 군소종단 나름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7월달에 있는 사업 중에 종교문화 체험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웃종교 이웃종단들,, 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뭐,, 작년에 첫 해 했고 이제 올해 두 번째 하는 건데,, 음,, 그런 계기성들,, 을 통해 이제 서로 교류하고,, 어,, 좀 이해를 좀 돕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암튼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오히려 관련 기관이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며, 어떤 사업과 예산 선정 시 어느 한 법인이 선정되면 관련 기관인 다른 법인은 선정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끊임없이 경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연합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 및 자원 투자나 활용에 있어 기득권에 대한 우월이 발생되므로 강력하게 연합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연계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법인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단순히 기관장이나 지자체의 단체장 개인의 실적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이 지역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이 꽤 있어요, 네, 작지는 않아요, 예 가까이요,, 꽤 있지만 음,, 뭐 끈끈한 뭐 이런 이렇게 정이 있다거나 반대로 어 재네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어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좀 알려고 이러면은,, 아주 키포인트는 안 가르쳐줘요,, 결정적인 그,,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웃음> 또 어찌보면은 굉장히 경쟁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외적인 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극촌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 갖고 뭐 지원을 확 받으면 그쪽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교단 안의 연합사하고 많이 묶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 안에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서 그런 교류는 좀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어,, 개교회 중심주의를 좀 극복하면서 연합 사업을 하면 좋은 부분이 상당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기득권 포기죠, 목사님들이 <웃음> 이렇게 어,,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인데, 혹은 내가 더 목회 경력이 많은데,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은 다 좀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 포기, 내가 얼마 했는데 이만큼은 내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넣었으

니, 투자 했으니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버려야죠, 그런데 그런 기득권이나 이익 부분에서 포기를 잘 못하셔서 연합 사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다 왕모래들이라고,, 네, 하나가 나름대로 굶직해 보이는데 그 래봐야 모래는 모래데, 몽쳐 놓으면 절대 안 몽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는 진흙은 알갱이는 작지만 몽치면 잘 몽쳐지는데, 우리는 왕모래들이라 몽쳐지지를 않는다고

작년부터 다목적 복지회관이 몽친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몽치는 게 좀 강압적? 시에서 이렇게 하달이 되니까, 연합회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아, 성남에 이런 다목적 복지회관도 있고? 왜냐면 시장님이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싫어해요, 직원들이 사회복지 고생하고, 시장님 실적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년엔 선거래요, 그니까 이렇게 몽치기는 하는데, 관장님마다 다 제각기 성격들이니까 이 건 이렇게 했음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음 좋겠는데 다 해달라는 대로 해야만 하니까,,또 이제 친한 분들끼리만 이렇게 좀 유대관계가 조금 있고,,

다. 국가·정부·지자체와의 관계

모든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국가와 정부, 또는 지자체에 대해 법인은 완벽한 협력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나 정부, 국회의 원으로부터 자료나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입장이었다. 간혹 국회의원이 촉박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일지라도 충실히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일단 그쪽 관공서는 저희가 당연히 따라야 될 기관이니까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다른 병원들과의 관계도 직종이 같고 그렇

다면 이제 경쟁관계가 되겠지만 특별히 관계를 따질 만큼 그렇게 뭐가 이렇게 극한적으로 좋거나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안에서 서로 잘해나가는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혹시 뭐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료요청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운동장 대여라든지,, 해드려야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뭐 국회의원 한 명 두 세 번 하면 구의원이 두 세 번 하고, 시의원이 두 세 번 하고, 어떨 때는 매달을 똑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터무니없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몇 년 치,, 지난번에 하도,, 제일 정말 터무니없었던 것이 오년 치 후원자 명단하고 후원금, 후원품 하고 한 거를 오년 치를 이틀 안에 다 파일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런 요청을 국회의원이나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그래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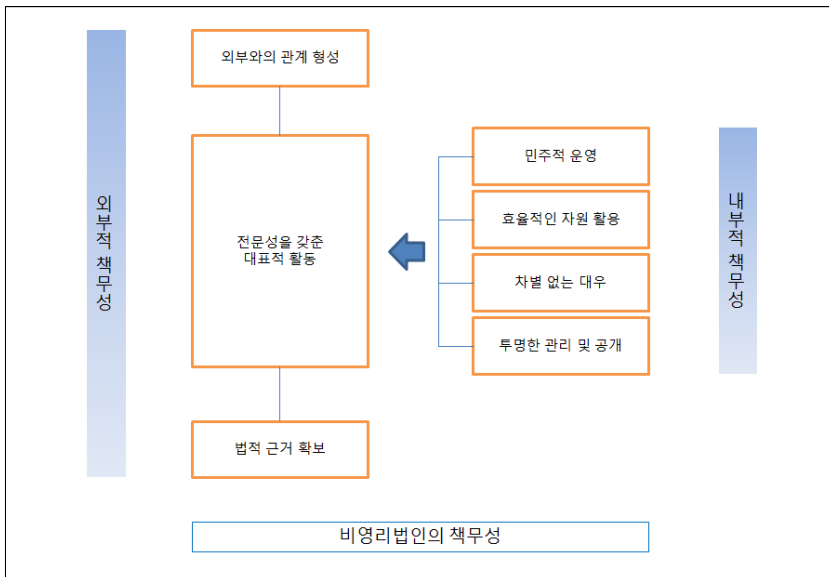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맥락적 측면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이 경험한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패턴화된 측면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보여준 증거자료를 토대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패턴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면서 맥락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다.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

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였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관리 측면에서 투명해야 하며, 외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겠다. 비영리법인의 맥락적 측면에서의 책무성을 [그림 7-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7-1]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맥락적 이해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첫 번째 패턴은 “법적 근거 확보”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외부적 책무성 중 “합법성”에 해당되는 패턴이며, 기관설립의 적법성과 법적 의무의 준수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설립의 적법성이나 법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음

을 의미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존속을 위해 대부분의 법인은 법적 절차를 잘 준수하고 법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따라 설치 및 존속유지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받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 의료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지 못한 소규모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입법 절차에 따라 법제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었고 법인으로서의 존속을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공익을 위한 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고나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공개하였다. 이는 법인의 사업이나 활동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대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경영 또한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영리가 아닌 사회,,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회적 책무? 어떤 공익을 위한 거? 그런 것을 다해 법인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음,,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영리법인이라면,

사회복지시설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제반의 어떤 윤리적인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르신의 인권,, 여러 사람의 인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게 법적 의무냐고 했을 때는,, 뭐 세금 잘 내고 원하는,, 뭐 다 신고하고,, 이런 게 다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 경영하고,,인권,,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윤리적,, 윤리 경영하는 거 하고,, 어르신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의 재단에서 단독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법인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각 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나 부서에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완전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나 부서에서는 각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규정화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한 재단이 복합 법인을 운영한다면 주무부서 간 교차점검(cross checking)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병원은 대학교 소속이고 대학교의 관할은 교과부고 근데 행위 자체는 의료 행위고, 의료 행위에 관한 부서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걸쳐있어서 음,,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 외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이,, 어떤 책무성에 대한 그,, 관리감독이 좀 많이 부족하죠,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두 번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외부적 책무성 중 “대표성”, “전문성”에 해당되는 패턴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주제 패

턴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대표성에서는 기관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 가장 높은 문항이었으며,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은 유형이었다. 전문성에서는 실무자의 전문성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이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적 연구결과와는 달리 모든 법인 담당자들이 자신이 속한 법인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대표할만한 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자신이 속한 법인에 대해 특정 단체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실무자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모든 유형의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자신이 속한 법인의 책무성으로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교 분야는 사회의 정신적 측면을 이끌고 사회 정화나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실천적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었다. 의료 분야의 모든 비영리법인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법인별로 특별 전문분야를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설립)하기 전에는 전부 서울로 보냈었거든요, (절단) 환자들을,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충북지역이나 음성, 진천, 고흥 어,, 뭐 하여튼 여기 충주 근교만 해도 전부 서울로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수접합술을) 하면서 그 환자들이 이제 전부 충주,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크로 병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지 않나,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소비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뇌졸중 수술이 끝난 다음에 급성기 치료가 완료되면, 저희는 표현하자면 아급성기 정도 되는데 그런 걸 담당하고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치료보다는 장기간 그런 관리 위주로 가게 되죠,

장애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진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소화기 쪽으로만,, 다른 것도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칠팔 십 프로가 소화기 주축이 돼서 식도부터 이제 거의 항문까지의 장기를,, 그렇죠,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쪽 거의 40년 동안 하다 보니 직장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병원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연령층이 좀 높아요,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별로 전문적이고 대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서비스 대상자별로 법인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법인과 센터 등 다양한 하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만 본다고 하면 저희는,, 우선,, 재단의 미션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꿈을 함께 가꿔가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 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전에 아동학대라는 것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해가는,, 뭐,, 복구를 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저희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재활센터를 수탁해서,, 1층에 보시면 재활운동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구요, 장애인단체가 많아요, 여섯 개가, 일곱 개가? 농아인협회도 있고,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협회도 있고, 선

체장애인협회도 있고, 뭐 대구 다운회도 있고, 되게 많아요,, 척수장애인 협회도 있고,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 지체장애인협회가 그래도 회원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행사를 하는 규모나, 그리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저희를 믿어주고 저희가 주관단체로 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저희는 밑에 경로당, 여기 뭐지? 3층에 주간보호센터 해가지고 노인 쪽만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이 대다수고, 2010년부터는 이쪽 지역이 다문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와 가지고 뭐 취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지역사회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 쉼터랑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뭐 한글 수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그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이제 뭐 협의 조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사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 기관 자체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랑 지역별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단독 법인으로 돼 있긴 한데, 업무 협조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센터에서는 도내에 사회복지사분들 이제 소진되지 않게 예방하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업무 하는 것도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또한 법인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93년 2월 4일자로 문화체,,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처로 등록이 돼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처로,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 서예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 시, 도에 그 지회가 있고, 또는 시,

군에는 지부까지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매년 신인 발굴을 위한 서예 공모전을 해요, (중략) 우리가 21년째 사단 법인으로 발족을 해서 순수 전통, 예술인에게 보급, 발전시키면서 또 자기 습작능력을 향상하고 거기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애쓰고 있죠),

우리 나름대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 척박한데 와서 이 연극제를 이만큼 이끌어 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혜택을 줬다 뭐 이,, 이런 데 자부심도 있고 그런 힘이 이태까지 끌고 왔는데,

잘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날개 달아가지고 밀어주고 하는 게 저희 일 이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략)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술계는 저희 인지도는 위상은 확실히 섰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가고 있는 입장인 게, 저희가 전시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거든요, 전시랑 연계해서 부대 프로그램으로 뭔가 강연회를 한다던지,, 그리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뭐 기획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전문성이랑도 이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우리 재단은 이충무공 정신 계승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써 재단 사무국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한산대첩 축제 기획과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모든 걸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체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재단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100주년 끝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사업,, 알리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잘 동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세 번째 패턴은 “민주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중 “민주성”에 해당되는 패턴이며, 내부적 책무성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이었다. 민주성의 문항 중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유형에 따라 민주성 항목을 살펴보면,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민주적 운영은 의사결정의 형태, 의견수렴의 정도, 외부 의존도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법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표와 구성원의 수가 적고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수평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서 중간관리자, 상위관리자, 최종결정권자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은 실무자에게 전달되어 활동이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계별 민주적 의사결정의 형태라고 하였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느냐에 대해서는 원활한 정도에서 제한되고 차단된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정권과 관련 주무부서 등 외부로부터 의존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양적과 질적 연구를 통해 볼 때, 법인의 운영상태가 민주적이지 못함을 드러냈으며, 향후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보완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최종 승인자라든지 결정자 이런 분들, 병원장님이나 이제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근데 어차피 밑에서부터 구체적인 좀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원장님, 행정원장님 정도까지 가면 뭐 거의 합리성이 있다는 걸 기반으로 이제 안건이 올라가니까,

사회복지 기관이 경직되어 있어요, 다른 직종보다는 경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좀 수장에,, 그러니까 센터장, 기관장에 따라서 조금 휘둘리는 것도 있고 아래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말이 나,, 이런 게 조금 묵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조금,, 뭐라고 하죠?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이 좀 창의성을 발휘하고 좀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각 정부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뭐 지난 정권에선 이렇게 소외 계층을 갖다 지원하는 거라면 문화 예술뿐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이제 그 쪽으로 우선이 가잖아요,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네 번째 패턴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중 “효율성”에 해당되는 패턴이며, 내부적 책무성 중에서 민주성 다음으로 낮게 나온 항목이었다. 효율성 항목에서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 여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주어진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과 활동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특별 기획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뿐 아니라 외부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 사업과는 달리 특별 사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일 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뭔가 이제 좀 특별한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이 다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보조금 뭐 넉넉하게 충분히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때문에 저희만 뭐 인력을 더 늘려 달라 이럴 순 없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력적으로 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야지 그 좀 운영이, 좀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한 사람이 맡는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중략) 기업이나 기업을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곤 있는데요, 아직까진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등록금은 또 계속 동결 또는 인하,, 를 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구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떻게 또 대학을 운영해야 되니까, (중략)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찾는 게 이게 관건인데,

양적 연구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의 문항은 기관 활동에 대한 분야별 책임자 배정이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원의 활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비영리법인은 최소한의 인력을 배정함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하고 특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분야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사업보고서 작성과 같이 통상적인 절차인 경우에는 형식에 그치고 마는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전문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싸이클처럼 돌아가는 현행업무에 대한 대처는 가능한데, 순간 순간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렇게 뭐가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현행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말 그대로 최소편성이니까, 그러니까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 돼 있어서, 업무도 세분하게 굉장히 돼 있잖아요, 근데 최소 편성은 당연히 그 의미하는 바가 이제 업무도 멀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 부담, 부담이라든지 가중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기관의 활동에 외부활동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그니까 마케팅,, 그니까 티켓을 파는 경우에는 그게 딱 나오죠 이게 수치가 나오니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음,, 그 다음에 축제 뭐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다 용역을 주거든요, 음,, 이제,, 컨설팅이나 뭐 우리가,, 그 보고서가 참 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없어야 되는데,, 거의 해마다 그 틀에 박혀가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에서 비영리법인 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한 하위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는 기관장의 권위적이고 무시하는 유형의 리더십을 가진 경우라면 업무의 동기가 저하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담당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리더십의 기관장과 함께 일을 할 경우 자존감과 업무의 만족도가 향상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가본 길이요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겪어가야 될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안을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될 하려고 해도 차단되니까 다들 이제 안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꺼고, 연륜이 있으시다보니까 그 간에 경력으로 그런 건 필요 없다, 뭐 그런 건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다섯 번째 패턴은 “차별 없는 대우”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중 “형평성”에 해당되는 패턴이며,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항이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지역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출신지역 간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중앙과 지역/지분 간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은 차별적 대우,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고 특별 업무에 대한 보상체제의 부재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급여업무랑 인사업무가 있는데 급여는 대부분 여자가 하고 있어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중략) 좀 불합리하다고 보죠, 네, 근데 암묵적으로 형성된 그 어떤 조직 내에서의 동의가 그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낙인처럼 작용을 해요,

종교집단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교화,, 사업을 하는,, 스님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인 비구스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우리 불교집단 안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형평성과, 보장,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냐 시골이냐 이 차이도 크고, 대형이냐 소형이냐 교회의 규모가, 그 거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다보니까 그런 괴리감들도 있고 어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도 강하게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 인원도 그 열네 명이 세 개부서로 지금 쪼개져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부서의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업무에 바쁘지, 그리고 저희 올라갈 자리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승진을 위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럴만한 아직 라인이 만들어 지기엔 너무 작아요.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여섯 번째 패턴은 “투명한 관리”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내부적 책무성 중 “투명성”에 해당되는 패턴이다. 내부적 책무성 중에서 투명성은 형평성과 함께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재정 관리의 체계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내에서 재정 관리는 체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통제 및 감사가 규정화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일부 비영리법인 담당자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통제되고 감사가 이루어지므로 좀 더 강력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양적 연구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가 가장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모든 법인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규모의 법인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법인

내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사회와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철저한 내부 통제 및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와, 아 이사장과 이사와, 이사장도 이사라고 봐야죠, 이사와 감사로 나누어지는데 감사가 예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바꿨죠, 잘 바꾼 거죠, 학교는 힘들지만 법인은 또 선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반대로 그 감사,,라는 그 직책은 얼마나 잘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감사를 두게 돼있죠, 이사회에 감사가 두 명이 있어요, 한명은 회계사, 한명은 그냥 외부 감사데, 뭐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이 감사가 감사역할을 한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감사가,, 그 경영진하고 어떤 뭐,, 그런 감시를 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일곱 번째 패턴은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년도 연구(오영호 등, 2012)에서 외부적 책무성 중 “반응성”에 해당되는 패턴이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가장 높은 반응성을 보여주었고, 반응성의 문항 중에서 국가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높은 문항으로 나타나 국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영리법인은 국가,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완벽한 수준에서 협력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이 국가, 정부, 지자체와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법인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면 당연히 협력하고 협조해야 하는 관계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종교 분야만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조직되길 요구하였다.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은 국가, 정부, 지자체에서 법인의 정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배려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과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법인과 유사한 타 기관과의 관계는 협력적이면서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관공서는 저희가(의료재단이) 당연히 따라야 될 기관이니까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다른 병원들과의 관계도 직종이 같고 그렇다면 이제 경쟁관계가 되겠지만 특별히 관계를 따질 만큼 그렇게 뭐가 이렇게 극한적으로 좋거나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안에서 서로 잘해나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법부에서도 이제 교회문제를 처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제는 종교만을 특별히 다루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좀 있으면 네, 뭐 사법, 행정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렇게 종교만 다루어서, 뭐 기독교에만, 개신교에만 분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얼마 전에는 뭐 스님들이 뭐 돌 던지면서 싸우고 그러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 법부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만 좀 딱 처리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신설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바램이죠,

어떨 때는 뭐 터무니없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몇 년 치,, 지난 번에 하도,,제일 정말 터무니없었던 것이 오년 치 후원자 명단하고 후원금, 후원품하고 한 거를 오년 치를 이틀 안에 다 파일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런 요청을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외적인 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극촌 같은
경우에는 **에 있던 말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을 해 갖고 뭐 지원을 확 받으면 그쪽은(관련 기관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산이) 한정 되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 잘 지내
면서도 경쟁관계죠,

제4절 소결

비영리법인 제도와 관련된 1차년도와 2차년도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비영리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8가지 책무성의 특징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책무성의 내용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으므로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탐색이 요구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해석적 작업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담당자의 역할 경험과 관련된 패턴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주관성이 반영된 해석적 기술 접근의 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전문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책무성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

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과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이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인터뷰에 의한 연구진행 방법, 연구참여의 이점 또는 해로운 점과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 자료를 다룰 것이라는 점,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장, 연구 참여 및 중단에 대한 자유로움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또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이 양식에 기입된 자료를 보면서 원활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참고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4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석적 기술은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한다(Thorne, 2008).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었다.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

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다.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여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하며,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각 패턴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에 따른 책무성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8장 외국사례 고찰 및 시사점

제1절 내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제2절 외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제3절 시사점

8

외국사례 고찰 및 시사점 <<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목적이 공익추구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더욱 높은 사회적 책무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비영리기관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책무성을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책무성을 제고시킨 사례를 문헌고찰을 통해 각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제1절 내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1. 민주성: 미국의 데이톤 허드슨(Daton Hudson)

대규모 소매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데이톤 허드슨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지역의 주거지 환경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1946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익의 5%(Five Percent Club)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정윤미, 2010).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육 및 예술관련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기부 등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 비영리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은 데이톤 허드슨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톤 허드슨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 결과 데이톤 허드슨은 업체가 입주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1987년 다트 그룹에서 데이톤 허드슨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의 반대활동이 일어났다. 투기 목적의 매수일 가능성으로 인하여 다트 그룹이 인수 후에 현재의 데이톤 허드슨이 지속해온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지원으로 인하여 주의회와 주주들의 높은 지지로 인하여 다트그룹의 매수를 저지하였다. 이러한 민주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으로 연결되어 경영위기를 극복하였다.

2. 투명성: 독일의 바이엘(Bayer)

1863년 작은 염료회사로 설립된 독일의 바이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 Better Life)이라는 기업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 정직한 거래, 대외무역법 준수, 적절한 서류관리와 재정 리포트의 투명성 등의 10대 기본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성장하여 왔다. 독일의 레버쿠젠 지역은 바이엘의 사회적인 책무성을 지향하는 기업 활동으로 100년 이상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이엘의 사회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활동은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으로 시작 되었다. 독일의 가장 큰 스포츠 후원사 중 하나인 바이엘은 현재 레버쿠젠시 중심부에 있는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경기장을 설립하였고 지역민들의 직·간접적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바이엘은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친환경 공정

과 폐기물 감소 활동, 이산화탄소 저감 프로그램 추진, 상업용 친환경 빌딩 구축, 국제연합 환경계획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감축, 세계 식수 보호를 위한 세계탐험기금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바이엘의 사회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활동은 10대 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효율성: 영국의 더바디샵(The Body Shop)

1976년 영국에서 설립된 더바디샵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며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한숙연, 2007).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더바디샵은 공정거래, 개인 존중, 인권보호, 환경보호, 동물실험반대 등의 5가지 가치관을 경영에 반영하며 수많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가치실현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더바디샵은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로서 제품생산과정에서 자원낭비의 최소화, 온실가스의 방출 저감, 및 환경에너지 사용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또한 5가지 가치관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을 작성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실현 노력은 사회적 책무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외부 비영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형평성: 독일의 바우데(Vaude Sport)

바우데는 1974년 독일에서 Albrecht von Dewitz에 의해서 설립된 기능성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제조 기업이다(<http://www.vaude.com>,

2013). 바우데는 형평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들의 기회균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바우데는 2001년부터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성 직원의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기업 내 형평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으로 인하여 바우데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바우데는 모든 법률적 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종, 나이,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코트라, 2010).

또한 바우데는 친환경 경영시스템(Vaude Ecosystem)을 구축하여 자사 제품의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인 블루사인(Bluesign)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납품업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며 좋은 기업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제2절 외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1. 합법성: 미국의 코카콜라(Coca Cola)

1886년 발명된 코카콜라는 ‘Live Positively’라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다(www.company.cocacola.co.kr, 2013).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의된 환경 경영시스템인 ISO14001:2004의 요구

조건에 맞춰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시스템을 개선해 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코카콜라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환경성과를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물 자원관리, 탄소배출량 감소와 같은 에너지 기후보호, 재활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포장방법 개발 등과 같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보호를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제정하였다. 이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하는 녹색기업기준을 사업장에 도입하고 운영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고 전 사업장에 ISO14001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여 전사업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기준의 10% 미만으로 유지하여 합법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대표성: 미국의 에스티로더(Estee Lauder)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는 1946년 조셉 로더(Joseph Lauder)와 그의 아내(Estee Lauder)가 뉴욕에서 설립하였다. 에스티로더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대표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1992년 시작된 에스티로더의 "핑크리본 캠페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캠페인 중 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코트라, 2010). 핑크리본 캠페인은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현재 7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핑크리본과 유방암 자가진단카드가 배포되고 있다. 또한

이 캠페인의 성공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에스티로더 뿐만 아니라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은 핑크색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금 일부를 유방암연구재단에 기부하여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핑크리본 캠페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의 결과로서 여성들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도 매출 증가나 기업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3. 전문성: 일본의 KDDI

일본의 종합통신서비스회사인 KDDI는 1984년 아나모리 가즈오가 이 동통신서비스, 국제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센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토탈네트워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KDDI는 2008년 안전한 정보통신 사회 실현,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 지구환경보전, 다양한 인재 육성 등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사회적인 책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코트라, 2010).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부 통제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그 활동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주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 경영을 위하여 전력공급을 다원화한 시스템 구축,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많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개발도상국 통신환경정비를 통해 현지 지자체와 함께 무선 광대역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 있다.

4. 반응성: 미국의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1887년에 설립된 존슨앤존슨은 1930년대부터 고객, 종업원, 주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존슨앤존슨의 공동창업자인 R.W. Johnson이 1935년 “우리의 신조(Our Credo)”라는 기업윤리 강령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경영에 도입하였다(박철용, 2009). “우리의 신조”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둘째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책임, 셋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넷째는 주주에 대한 기업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며 이를 오랫동안 기업 경영에 반영하여 왔다. 이러한 존슨앤존슨의 노력으로 인하여 1982년과 1986년 두 차례에 걸쳐 존슨앤존슨 제품을 복용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독극물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 독극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제품회수 명령과 변조할 수 없는 포장방법의 개발,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건해결 노력, 제조과정의 공개 등 소비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윤리경영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존슨앤존슨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제3절 시사점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적 책무성에서 민주성향 목의 데이튼 허드슨 사례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이나 기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의 경영위기도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항목은 독일의 바이엘 사례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본 강령에 체계적인 재정관리, 재정 관련 내역의 공개, 재정 활동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및 감사,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예술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항목에서 영국의 더바디샵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이를 장기적인 경영계획과 단기적인 연도별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항목에서 독일의 바우데는 기업 내 인종, 나이, 성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업 내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바우데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성의 코카콜라 사례는 국제적으로 협의된 기준에 맞춰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코카콜라는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사업장에서 정부의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기준의 10% 미만을 유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성에서 제시한 에스티로더는 “핑크리본”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

회적 책무성을 향상시켰다. 즉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고객센터의 실효성, 사회적 기여여부, 고객과의 소통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 세계로 확대하였으며 참여 기업을 늘려 왔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왔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들은 기업이미지 개선과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항목의 KDDI사례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는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강조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통신환경정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 항목은 타 기관과의 공동활동, 국가기관과의 협력, 고객요청에 대한 대응,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렴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사례는 기업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이 발생 후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제품회수 명령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변조가 불가능한 포장방법 개발, 그리고 제조과정의 공개 등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업의 내·외부 책무성 구성요소를 통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 차원의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무화 하거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방향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9

요약 및 정책방향 <<

제1절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서,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 제도와 관련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비영리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해 8가지 유형의 책무성 항목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인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책무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탐색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양적인 평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해석적 작업과정이 필요하였다.

먼저 질적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그리고 외

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었다.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고,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였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공개를 해야 하며,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각 패턴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에 따른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내부직원에 대한 양적인 평가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

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질적인 조사와 양적인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2절 정책방향

1. 책무성 평가를 통한 책무성 제고방안

앞서 제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패턴, 즉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외부와의 관계 형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법적 근거 확보

비영리법인의 법적 근거 확보의 책무성은 법인 설립과 존속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

인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인 설립 허가 이후 제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의 책무성은 특정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은 공적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특성을 대표할만한 기관으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더 많은 일반 시민에게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위상 정립을 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제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초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경력에 따라 실무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이사 및 경영진들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법인 업무의 자가평가 척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수준과 요구사항에 따라 개별교육 또는 집단교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특히 멘토링

교육을 받은 담당자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체계적인 멘토십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예산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배정과 책정이 연간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 민주적 운영

비영리법인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책무성은 의사결정의 형태, 의견수렴의 정도,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하향식의 의사결정 형태와 구성원들의 제한되거나 단절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인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식이 부각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정권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하였기에 앞으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완수해야 한다.

라. 효율적인 자원 활용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라는 책무성은 규정화된 자원과 활동, 예산 확보 및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활용 정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해야 할 사업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공적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규모와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적인 물가를 반영한 예산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인의 실무자와 관리자들은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과 이용 고객들에게 더욱 공익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이 내외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각 분야별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나 주무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예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나 주무부서는 비영리법인을 단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대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관리 규정이 요구되며 지나친 감시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의 사업이 아닌 특별 사업이나 특별 상황에 따른 인력 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언과 자문을 얻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에 해당되는 전문가집단의 인력풀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나 관리자, 이사나 최고경영자 모두에게 리더십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라 법인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과 사기, 업무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 차별 없는 대우

비영리법인의 차별 없는 대우라는 책무성은 성적 평등, 생활권의 보장, 그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처우로서 이해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여성의 성적 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급 제도의 적용에 앞서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바. 투명한 관리 및 공개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의 책무성은 내부 통제 및 감사, 공개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사. 외부와의 관계 형성

비영리법인의 외부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책무성은 시민, 관련 기관, 그리고 국가·정부·지자체와의 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서의 담당자는 비영리법인을 감시하는 감시자보다는 비영리법인의 협조자로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관련 기관 모두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

서나 담당자를 확보하여 배치토록 한다. 비영리법인은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의식을 더욱 굳건히 갖춰야 한다.

2.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따른 제고 방안

지금까지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은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법인으로서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제안하는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화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의료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의사, 간호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담당자를 위한 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직종의 담당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므로 행정직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령체계 상호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하여는 상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제도화 하여 감사기능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한다. 자발적 내부통제 기능을 위해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감독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회계기준 등 제반 보고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세제 혜택 또는 정부 지원의 기준을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 병원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 평가시 이러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오영호 외, 2012).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자본력이 부족하여 의료시설이나 장비를 위한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인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제한된 인원으로 최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뒤따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화된 역할만 완수할 뿐 질적인 측면에서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수행정도를 평가할 때 질적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만능 실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업무의 동기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많

이 제공해 줌으로써 담당자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로만 책정되어 담당자들의 인건비로 책정할 수 없거나 인건비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이용비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필요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남발로 인해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회복지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무너졌음을 실감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유관기관과의 지나친 경쟁관계,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이 아닌 최고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관리모델이 개발되고, 또한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돼야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의 공시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의 기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이사 정수의 확대와 감사기능 강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확대 강화 등이 되어야 한다(오영호 외, 2012).

다.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객관적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설립자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이사회로 선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법인제도 이외에 영미법계의 교육신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신탁제도는 재산출연자와 학교의 설치·경영자 사이의 동일성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사립학교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출연자와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긴밀함에서 오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위축 문제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침해 등의 문제를 비롯한 오늘날 대두된 문제점의 상당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오영호 외, 2012).

라.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예산과 인력 확보, 사업 진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 예를 들면 영상 자료의 경우 영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될 수 있지만 예술 자료의 경우는 관련 근거법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법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기록원이 설립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법인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입법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입법에 반영되기 위한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법인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문화 보존의식을 떠나서 향후 문화산업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토양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한 바 있다(오영호 외, 2012).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중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 기준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우리의 전통문화적 가치보다는 공연매출액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학생들의 의무교육 과정 내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강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마.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삶의 희망찬 메시지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종교라는 명목 하에 개인적인 직업으로 인식하여 재산을 축적하거나 운영상의 비리를 일삼는 신흥종교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성이 상실됨에 따라 더 이상 종교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종교집단의 관련 법 규정이 절실하다. 종교법인법은 종교집단의 규제가 아닌 법인으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을 포함

한 선진국의 경우 종교법인과 관련된 법이 규정화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법인화된 종교단체와 비법인 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면세나 지원을 한다면 종교법인제도는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정치와 분리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종교법인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조직되어 교단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능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종교단체의 사적인 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른 길을 세워가야 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단체의 성립과 활동에 대한 법적 자율영역을 제시함으로써 불법적 종교단체의 규율이나 종교단체내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 앞서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주요 선진국가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고찰을 통해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찾았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문제점들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평가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2차년도 연구에 이어 본 3차년도 연구는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해석학적 기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시도한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개발,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 가이드를 이끌어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와 차별화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도했으나 양적 연구의 결과 범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경영진, 법인 대표가 포함되었는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참여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고해야 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까지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할 책무성을 밝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영리법인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이 무엇이고, 책무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존재의미와 책무성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 감신(2004).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37(2), pp.104~110.
- 강경근(2005).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헌법학연구, 11(2), pp.243~275.
- 강금지·노성윤·류혜숙·이혜숙·최성숙(2008). 쉽게 배우는 영양판정, 수학사.
- 강기찬(2010). 사학의 자유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명구(2000). 정부와 NGO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 기획세미나 발표집. 한국행정학회.
- 강삼춘(2008).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감사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상경(2008). 사회복지 실천의 민영화.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 강영숙(2004). 사회복지기관 운영법인의 경영특성과 조직성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영혜·박재윤·황준성(2008). 사립학교법 체제개편 방향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인수·한상진·이시우·이명균·황준성(2004).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운영 구조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강인애(1989). 조세법과 종교단체 下. 변호사 20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강정대(1985). 현대경영조직론. 박영사. p.200.
- 강철희·김희성(2001). 복지 비영리 조직의 이사회 기능 효과성과 조직성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한국사회복지학회.
- 강태균·이성균(2009).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6집.
- 계획열(1997). 헌법상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 8집.

- 고상현(2010).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103~129.
- 고석근(200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예산회계제도 분석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남(2007). 상지대 판결과 교육개혁; 학교법인 임시의사의 권한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4, pp.15~43.
- 고은지(2007).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 LG Business Insight 958호. LG경제연구원.
- 공은배(2007).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공은배·김이경·장수명·김규태(2003). 사학기관 건전육성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9).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제도개선 방향.
- 구논희 외(2004).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열린우리당 교육위원 공동자료집 1).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200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 국민생활체육회(2009). 2009 생활체육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 국세청(2011.12). 국세통계연보.
- 권기창(2004).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창간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권오균(200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성·안혁근·황혜신(2008). 공공기관 책무성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성·황혜신·박석희·김철희(2009). 공공기관의 책임성 유형과 우선순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pp.51~74
- 권오성·황혜신·안혁근·박석희(2009). 공공기관 유형별 책임성 차이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2), pp.231~261.
- 권옥희(2001).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형준(2001). 대학자치와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 권형준(2005).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 연구.
- 기획예산처(2006).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개발 연구. 기획예산처.
- 길용수(2010). 수익용 부동산의 운영성과 영향요인 연구,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욱(2008). 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200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관수(2008). 중등사학의 이념적 특성과 미래 발전 방향 탐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관중(2005).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의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윤·전장식(1999).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병원경영학회지, 4(2), pp.330~353.
- 김광윤·전장식(2001).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 실증연구. 경영학 연구, pp.719~743.
- 김교성(2003).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규태(2001).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한국교육행정학연구, 19(2), pp.287~307.
- 김규태·김무성·정우일·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2), pp.233~241; 2004에서 재인용
- 김기경(2004). 책무성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2), 233-241.
- 김기열(200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식(2009). 대학의 자유와 국립대학법인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대영(1999). 과세쟁점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개선방향. 재정정책

논집, pp1~19.

김대인(2005).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 계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통권 1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대인(2006).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덕근(2011).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분석. Allison Model의 적용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9(1), pp.145~165.

김동복(2006).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3집.

김만준(2003).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돌(2010). 종교단체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명수(2006). 사학 고등교육기관 회계와 세무 실태 및 그 개선 방안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식(2001).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명연(2008).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 비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주최. 2008.4.14.

김명연(201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법학논총, 31(1), pp.377~414.

김명용(2004). 인에 의한 행정의 한계와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자(1992). 과학 혁명의 구조. 서울: 동아출판사.

김미란(2009). 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비교교육연구, 19(2), pp.193~217.

김민철박영규(2003).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세무회계연구, 13, pp.29~51.

김민호(2005).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2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병주·김은아·안장자(2008). 사립학교법에 나타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교육관련집단의 인식. 동아인문학회, 13, pp.463~509.
- 김병호(2006). 중등사학 재정 건전화 방향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제주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엽(2006). 사학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3), pp.165~191.
- 김보엽(200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분석. 교육법학연구, 20(1), pp.1~25.
- 김보엽(2008).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6(3), pp.1~23.
- 김봉주(2000). 사립학교 부동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수익용재산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조(2004).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석원(2007). 사립학교의 사유재산성과 공공재산성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10).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2009).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순(2000).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성열(1999).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립학교 행정체계의 재구조화.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 김성열(2000).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사학의 자율성과 이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 김소연, 윤미은, 승정자(2002). 케어복지사를 위한 노인영양, 교육과학사.
- 김순양(2004).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0(2), 통권30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순양(2006).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집문당.

- 김순양·고수정(2004).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out)과정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서울행정학회.
- 김승열(2000).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법제 513. 법제처.
- 김승현(2002).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1).
- 김시영·노인만·이명숙(2004). 지방 NGO의 책임성 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신열(2004). 한국과 미국의 민간복지기관의 거버넌스 비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정관에 나타난 이사회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및 Workshop.
- 김연수(2001).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세무회계. 서울: 광교TNS.
- 김영용(2008).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과 과제. 자유기업원보고서.
- 김영종(2002).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0.
- 김용(2006).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구제. 교육법학연구, 18(1), pp.71~89.
- 김용(2011).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한 토론. KEDI·대한교육법학회 공동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쟁점(2011.7.12. 한국교육개발원). pp.91~92.
- 김용관(2009).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 김용민(2007).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3).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12
- 김용익(2002).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김용일(2001). 대학평의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정치학연구, 8(1), pp.42~64
- 김용호·황준성·김숙이(2003). 중등사학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례법령의 타당성 분석 연구. 한국사학교육연구소.
- 김옥(2000). 공공재이론의 관점에서 본 패권안정이론. 한계와 대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집, 40(4), pp.27~44.
- 김원철(2006). 학교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2008). 대학경영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사립대학을 중

심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 김은아(2008). 자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본 제38차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및 내용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02). 학교법인 경영자가 기대하는 학교장의 지도성.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성(2002). 한국과 일본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1990). 사회복지법상에 나타난 공사 사회복지실천체계간의 관계.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제. 인석 장인협박사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김정국(2004). 학교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덕(2005).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김정은(2008).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배경의 정치학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4(1), pp.153~180.
- 김종해(2000). 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 김준기(2000). 비영리부분의 성장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획세미나 발표집. 한국행정학회.
- 김준기(2004). 한국 시민사회의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중권(2008). 민간화와 국가유보. 지방자치법연구, 8(3), (통권 제19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진곤(2007). 사립학교법인의 연대교섭의무와 헌법적 문제. 교육법학연구, 19(2), pp.27~48.
- 김진숙(2001).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 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진우(200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법비교적 고찰. 비교사법, 10(3).

- 김진현(1987). 교회의 법적 성질.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석 고창현 박사 회갑기념). 박영사.
- 김진현(1988).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보(2009). 의료법을 통해 본 '의료법인'의 변천사.
- 김창엽(2001).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 김창환(2006). 독일의 사립학교 경영 동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17, pp.58~62.
- 김철희(1998). 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연구 -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환(2008).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소고. 영산법률논총, 5(1), pp.139~156.
- 김태성(1992). 사회복지부문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 pp.57~80.
- 김태완 외(2001). 중등 사학법인과 학교의 재정 운영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 김필동(2008).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사회과학연구, 19(2), pp.1~30.
- 김하열(2009).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52, pp.65~102.
- 김학문(2005).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관련 법령의 바람직한 해석과 적용. 시정연구논총, 12, 통권 제39호. 서울특별시.
- 김형구(2002). 한국 중등사학의 성격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구(2003). 한국사회복지법인의 의료수익 사업운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구(2005).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한국교육, 32(1), pp.301~325.
- 김형수(2007).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 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인운영시설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수·조원탁(2007).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 한국사

- 회복지행정학, 9(2). pp.29~52.
- 김호정(2007). 개정사립학교법의 위헌성. 외법논집, 25. pp.323~355.
- 김희대(1998). 학교책무성 체제와 교사의 인식. 경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궁(2005). 대학의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혁신역량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노경식(2006).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와 각종 의료규제와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 김·장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
- 노병성(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 위논문.
- 노병성·이우창(2010).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한국국제회계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pp.13~578.
- 노연희(2003). 비영리조직의 이사회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37(3), pp.357~377.
- 노연희·이용표·박정수(2006).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노재성(2000). 비영리법인 과세체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노진석(2008). 사립학교법상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정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위논문.
- 노태일(2004).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태일·박연희(2006). 사립대학 외부감사제도의 실태분석. 국제회계연구, 15, pp.265~289.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라영재(2009).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한국정책연구, 9(1), pp.235~265
- 류동선(2007). 사학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등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모창환(2005). 책무성을 적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상위평가: 대구도시철도 공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 문순영(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분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부분의 협조관계 유형 모색 -. 연세사회복지연구. Vol. pp.6~7.
- 문연식(2006). 종교단체의 과세제도 연구. 전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옥륜·감산·권순만이·상이·윤태호·김창엽(2004). 국립대학교 병원의 기능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문정주 외(2009). 의료기관 공공성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박거용(2005).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부산교육연구소. 삶과 교육, 4, pp.57~72.
- 박경수(2008).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서의 변화추이와 관련집단의 저해요인 인식요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양(2000).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 사립학교법 개정과 민주적 사항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0.10.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박기병(2004). 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사회과학논총. 관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동기(2008). 한국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서(1994). 한국행정의 연구. 법문사.
- 박동훈(2002). 학교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립대학 회계제도 중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식(2005). 비영리 공연예술조직의 전략경영 도입과 적용을 위한 방안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박민(1999). 의료기관의 조세부담에 대한 법리해석.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6(1).

- 박민(2002). 의료법인세제에 관한 합리적 개편. 조세법연구, 8(1), pp.62~83. 한국세법학회.
- 박민·이시우(2011).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9(3), pp.144~168.
- 박민서(2009). 비영리조직에서의 BSC의 적용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8(1), pp.127~150.
- 박병진(2004). 한국중등사학의 발전추이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철(1999).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민사법연구 제7집. 대한민사법학회.
- 박부권(2008).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교육사회학연구, 18(1), pp.21~38.
- 박상임(1994). 현행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 생산성연구 (생산성논집), 9(1), pp.243~272.
- 박상임(1996).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7, pp.291~326.
- 박상필(1999). 비영리단체(NPO)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8(2), pp.159~182.
- 박상필(2000). 비영리단체의 발생원인과 발달배경. 현상과 인식. 2000년 봄/여름. pp.86~108.
- 박상필(2005). NGO학 - 자율·참여연대의 동학. 아르케.
- 박상필(2011). NGO와 현대사회. 서울: 아르케.
- 박성수(2002). 사립대학 재정 운영합리화와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택(2001). 복지정책과정의 비영리조직 참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승일(2005).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란·홍백의(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자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박영서(2005). (학교법인·학교)회계·감사와 세무대책. 한국행정연구소.
- 박용수(2000). 사회복지시설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6.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2
- 박우석(1994). 과학적 발견의 논리. 서울: 고려원.
- 박원순(2004).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 아름다운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 비영리연구, 3(1), pp.173~193.
- 박윤흔·박재운 외(1998). 학교법인의 법적 위상과 사립학교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 박은양(2005). 사회복지모금기관의 투명성 인지도 향상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용(2005). 의료서비스 육성. 바람직한 방안. 나라경제, 16(7), pp.38~41.
- 박재우(1975).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운 외(2003). 다양한 학교법인정관 모델 개발 연구. 교육법학연구.
- 박재운 외(2005). 학교교육법 편람. 서울: 교육과학사.
- 박재운(1987). 학교 법인과 교육 실태. 한국교육, 14(2).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운(1998). 교육을 위한 공익적 출연제도(I) - 영국의 교육신탁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1.
- 박재운(1998). 사립대학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사립학교법개정자문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1998.10.19.
- 박재운(2004). 사학의 운영구조에 관한 검토. 학교법인 정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운·고전·황준성(1999). 사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 공익이사제도 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운·김학추·박호근·염철현·황준성(2003). 다양한 학교법인 정관 모델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운·오원선·황홍규·황준성(2006).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원영상·한승희·황준성(2000). 초·중등 사학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정일환·황준성·문성모·신지수(2008). 가톨릭 학교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서울: 가톨릭문화원.
- 박재윤·황준성(2006). 2006년판 사립학교법 편람. 서울: 한국문화사.
- 박정선(2007). 민간자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1집. 한국지역사회학회.
- 박정우·육운복·윤주영(2004).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학연구, 21(1), pp.33~73.
- 박찬임(2009).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월간노동리뷰. pp.39~49, 한국노동연구원
- 박찬주(2009).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주요쟁점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1(2), pp.115~114.
- 박창제·이영호·조덕래(2000). 보건경제학. 서울: 형설.
- 박채돌(2004).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일·김선엽(2011).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4, pp.153~178.
- 박철현(2010).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임용 교원소청. 서울.: 헛튼.
- 박충환(1990). 비영리법인의 회계. 법문사.
- 박충환(2002).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룡(2000). 사회복지행정론. 홍익출판사.
- 박태승(2004). 학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13(1), pp.113~140.
- 박해성(1997).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민사판례연구 19권.
- 박형근(2008). 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복지동향. 2008년 6월호. pp.9~12.
- 박혜련(1996). 연령층별 영양상태, 지역사회영향학회지. 1(2), pp.301~332.

- 박호근(2002).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비교 연구 - 제16대 국회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14(1).
- 박호근(2002). 사립학교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정희 정부의 교원 임면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 박훈-허원(2008).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14(2). pp.266~288.
- 박흥식(2001). 투명행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반부패국민연대.
- 배병일(2000). 사학법인 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재정 관련 법령 중심으로. 교육부.
- 배병일(2002). 사립대학 수익사업의 법적 문제점. 교육법학연구, 14(2).
- 배병일(2003).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적 문제점. 교육법학연구, 15(1).
- 배병일(2005). 사립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7(1).
- 배병일(2006).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연구, 6, pp.39~64.
- 배병일(2008). 사립대학 설립자의 법적 지위. 교육법학연구, 20(1).
- 배인구(2006).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호순(1966). 교육적 책무성 확립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학연구, 34(5), pp.23~34.
- 백경희(2007).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pp.291~328.
- 백상운(2005).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인생 백세시대 대응 전략.
- 백종만(1994).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유형 개발과 적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용찬(1999).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과제. 서울 한국복지법인경영연구소.
- 변창남(1986). 한국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8).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 보건복지부(2010). 2009 국민건강통계.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12).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 방문건강관리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한국건강증진재단.
- 보건의료미래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 서상원(2004).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현·김교정(2006).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경성대학교.
- 서용범(2002). 사립학교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복지재단(2007). 사회복지법인 표준 운영모델 개발.
- 서장석(1977). 종교법인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점순(1996). 비영리법인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화·김병찬·권순환·황준성·조옥경(2006). 사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서정화·김병찬·권순환·황준성·조옥경(2008).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20(2), pp.47~70.
- 성지화(2010).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학행정직원의 인식연구.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명세 외(2001). 한국 의료기관 산업의 사회기여도 평가 및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 손명세(2001).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손원익(2000). 비영리법인의 세제 선진화 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손원익(2001). 정책연구.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재정포럼. 한국조

세연구원.

손원익(2004).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201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손한기(2004). 사학분쟁조정제도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손희권(2005). 사립학교이사장 친족의 교장취임 배제의 위헌성. 교육법학연구, 17(1).

손희권(2005). 사립학교장 임기제 및 연임 제한의 위헌성. 교육행정학연구, 23(1).

손희권(2006). 개정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4(1), pp.167~196.

송경련(2002). 학교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기창(2004). 사학의 재정구조와 정부의 지원방안. 한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역할. 한국교육행정학회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공동세미나. 2004.5.25.

송병춘(2006). 개정사립학교법 위헌 소원에 부쳐; 공교육법제 하에서 사립학교의 역할 및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 교육비평, 20, pp.64~77.

송영식(2006).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토론. 제1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송지광(2005). 한국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기구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지광·한상연(2005). 한국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교육행정학연구, 23(3), pp.353~378

송현자(2000). 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경림(1998). 인터뷰: 내면으로 보는 눈. 서울: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신경림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봉기(2005).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헌법포럼 주최 사립학교 관련 개정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인가?(2005.2.1.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pp.59~84.
- 신봉기(2007). 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법학논고, 27, pp.263~315.
- 신영전(2010).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9, pp.45~90.
- 신중섭(1999).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자유기업센터.
- 신재철(2004). “대학의 책무성. 한국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107~130
- 신평(2007). 일본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 국립대학법인화 작업의 평가. 세계헌법연구, 13(2), pp.63~100.
- 신현석(2002). 학교단위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8(1), pp.77~114
- 신현석(2004). 사립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신현직(1989).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사회과학논총 8.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민석 의원실(2007). (사학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실태 분석.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감사자료집.
- 안민석 의원실(2010). 이명박 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 안복현(2006). 중등사학의 재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옥(2007). 초등학교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책무성 수준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포(2004).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법학논총, 28권, pp.277~308.
- 양건(1982). 국가와 종교에 관한 법적 고찰. 국가권력과 기독교. 민중사. 51면
- 양동현·정두채(1998). 도산병원 실태와 대책.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

- 료집. pp.152~167.
- 양성관(2011). 중등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59차 학술대회자료집, pp.119~151 재인용
- 양재모(2004).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법과정책연구, 4(2), pp.405~429.
- 양재모(2006). 사법: 종교법인관련입법의 필요성의 검토. 법학논총, 23(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pp.471~487.
- 양재남·조준(2003). 사회복지사업에서 정부와 민간비영리 부분과의 협조관계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논문집.
- 양효석(2010).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예술경영연구, 17. 한국예술경영학회.
- 오경희(200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영호·안덕선(2009).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호·손원익·황준성·전광현·양재모·윤강재 외(2011).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호 외(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정우(2002). 종교법인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용호성·이진아(2004). 한국에서의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pp.197~223. 한국비영리학회.
- 우종구(1998).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상 외(2008). 사학정책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법인협의회.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현숙(2004). 미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교육행정학연구, 22(4). 한국교육행정학회.
- 육승돈(2004).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 교육종합연구, 2, pp.181~195.

- 윤승용(2002). 외국의 종교법인법 시행형태 및 현황 - 한국의 종교현실과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하여. 불교와 문화.
- 윤용해(2009).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행정실장의 운영인식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일(2004). 기초강연: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3~23
- 윤종건(2006).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과제와 전망. 서울.: 원미사.
- 윤종화(200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법령과 자원배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찬영(2000).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 윤철홍(2008).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 15(4). 한국비교사법학회. pp.129~168.
- 윤철홍(2009).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47, pp.719~756.
- 윤희숙·고영선(2009).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01.
- 윤희숙·고영선(2010).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Focus, 2호. pp.1~6.
- 은상호(2008).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훈(2008).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법적·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경남·이훈화·이동숙(2010).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유형 분석. 사회보장연구, 26(3), pp.309~329.
- 이경운(2004). 대학의 법적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법학연구, 16(2), pp.163~184.
- 이국형(2001). 사립학교법과 법인 이사회의 위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이군현 의원실(2009). 국정감사 요구자료.
- 이규식(1995). 한국 의료산업의 성장에 관한 고찰. 보건경제연구, 1, pp.92~120.
- 이기우(2008).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규제인가 비리근절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참여정부 대못빼기 연속토론회2. 2008.5.9.
- 이근찬(2011). 의료기관의 조직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보건행정학회.
- 이달곤(2004). 지방행정의 과제와 전망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 이동규(2001). 사립대학의 경영과 회계. 서울: 선학사.
- 이동규(2006). 사립대학 결산 경영진단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이동규(2008). 대학의 전략적 재무분석. 한국사학진흥재단.
- 이동수(2004). 미국 행정법상 행정의 민영화. 공법연구, 32(5). 한국공법학회.
- 이면우(1998). 일본 NGO. NPO. 이면우 편. 일본의 NGO활동 연구. 1-14. 세종연구소.
- 이명균(2001). 사립학교 법제 개편방안.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명식(2001). 한일 비영리단체에 관한 비교연구,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백규(1997). 사찰의 실체와 종단변경. 민사판례연구. 18면.
- 이병기(2008).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병록(2004).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서울. 청목출판사.
- 이분화(2008).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사립학교법과 학교선택권의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철(2006).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pp.192~223.
- 이상철(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 이석연·강경근(2004).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제도 및 그 운영의 위험성 연구. 한국

대학법인협의회.

- 이성호·박재운·조석훈·유용식(1998). 사립학교법의 현황과 개정과제. 사립학교법 연구위원회.
- 이순태(2008).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의 PPP(공사협동). 공법연구, 36(4). 한국 공법학회.
- 이숙종·양세진(2007).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p.1~27
- 이승진(2002). 사립학교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사립중등학교 재정구조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우(1994). 사립대학의 자유에 관한 연구. 균제 양승두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 이시우(1997).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법인이사회의 위상. 한국교육법연구, 3.
- 이시우(2001).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교육법학연구, 13.
- 이시우(2004).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법인의 역할.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7대 대학교육 정책포럼. 2004.9.23.
- 이시우(2004). 헌법에 비추어 본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황과 과제. 헌법학연구, 10(4), pp.339~385
- 이시우(2005). 사립학교법 개정의 헌법적 제문제. 학교법인 및 이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1(1), pp.179~221.
- 이시우(2007).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I). 독일 비교법제연구 07-09.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이시우·박기병·박민(2010). 사학 정책 방향 정립 및 사학 관련 법제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영련(2007).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학평가체제 비교와 한국의 대학평가 개선 방안. 사회과학연구, 46(1).
- 이영수(2001). 비영리법인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우(2004).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음악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균(2007).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pp.78~95.
- 이용주(2003). 중등사학재정의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덕(2002).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자성(2004). 정보공개제도와 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비교: 시민단체의 예산지출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38(5)
- 이진구(2008). 해방이후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한국종교, 32. pp.7~3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이원우(2002).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31(1). 한국공법학회.
- 이윤환(2006). 개정사립학교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 22, pp.47~67
- 이은주(1997).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자성(2004). 정보공개제도와 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 비교. 한국행정학보.
- 이전오·박정우(2006). 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 이종국(1982). 사립학교법축조해설. 서울: 재동문화사.
- 이종만(2002). 사립학교법 분석 및 그 쟁점에 대한 논의. 교육학연구, 40(4).
- 이종만(2002). 사립학교법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논의. 경인논집, 9. 경인여자대학.
- 이종만(2003). 사립학교법 그 제정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수 외(2001).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이종영(2000). 공공사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법학논문집, 24(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주호(2004). 사립학교법의 개정. 자율성과 투명성의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2004.8.4.
- 이주호·박정수(2000).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의제. 한국행정학보, 34(4), pp.139~154.
- 이차영(2008).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법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6(4).

- 이창희(2009). 세법논총(제8판). 박영사.
- 이철순(2010). 전문 인력 활동 및 지위 보장을 위한 국공립 공연장 법인화의 한국형
대안.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제, 3(1). 문화예술경영학회. pp.127~133.
- 이충협(2005). 학교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학수(1991). 교회의 분열 및 그에 따른 교회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현재의 대
법원 판례가 취하는 태도에 대한 검토. 판례연구 1집. 부산판례연구회.
- 이한구(1990). 역사주의와 역사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환범·김태영·이수창(2005). 행정조직문화와 유형에 따른 책무성의 차이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4, 541-558.
- 이해중(2004).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에 대한 의견. 예방의학회지,
37(2), pp.99~103.
- 이현희(2004).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 이혜경(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10(2).
- 이혜영(2004). 사인에 의한 행정수행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의 행정법적 고찰. 한
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광환(2005). 사립대학 부패의 유형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대학원논문집, 34,
pp.206~245.
- 임금자(2010).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대한의사협회지, 53(2),
pp.169~174.
- 임봉재(2008). 종교단체의 기본권과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장주(2006). 한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방안 모색, 해산합병시 재산환원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재홍(2002). 사립학교법 운영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비평. 민주법학, 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임재홍(2004).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토론

- 회. 열린우리당. 2004.9.3.
- 임재홍(2006).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30. 관악사.
- 임재홍(2007). 사립학교법상 임시의사의 정이사 선임권. 서울 고등법원. 2004 나30776에 대한 비평. 민주법학, 33. 관악사.
- 임재홍(2008). 사립학교법상 임시의사제도의 법적성격. 민주법학, 36. pp.199~228.
- 임준(2007). 의료산업화 발전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이 가능한가?
- 임채문(2007). 비영리공익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학교법인·종교법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채석(2003). 중등사학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태수(2000). 중등사학 교육재정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사립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원(2006).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실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감사방향.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과정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장일기(2007).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후경(2008). 교육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광수(1990).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 pp.531~551.
- 전재근(2000). 사립학교법에 나타난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재근(2004). 사학교육재정정책의 법제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창배·윤태호·고민창·문성웅(2006).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6-07.

- 전형준(2007).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업경제연구, 20(1), pp.415~440.
- 정구현(2002).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2002년 가을학술대회.
- 정구현(2003).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2(1).
- 정기택(2006).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 연구. 재정경제부.
- 정대진(2005).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동일(2008). 구조화된 시장과 구성된 시장. 한국 병원의 설립과 도산.
- 정문성·이대로(2006).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비 교법학, 6, pp.333~349.
- 정병수(2010). 교육법령 해설 및 학교법인 재정구조의 이해. 한국사학진흥재단.
- 정봉주(2008). 사립학교법 개정사례에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과정연구, 제17대 국회 1·2차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순원(200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교육법학 연구, 15(2).
- 정영재(2004).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호(2009). 주요 외국 비영리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보건복지포럼, 149, pp.116~129.
- 정영호·고숙자(2005).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미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09, pp.65~75.
- 정영호·조형원·감신·고숙자(2006). 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환(2004). 헌법정신과 사학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법인협의회.
- 정우일(1996). 관료제의 책임성과 책무성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사회 과학론집, 15, 215-270.

- 정재욱(2007).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독교학교의 위기.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2002). 정부지원 NGO의 조직특성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6(2).
- 정하중(2001). 민간에 의한 공행정연구. 공법연구, 30(1). 한국공법학회.
- 제철웅(2001).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할청의 감독권한 간의 상호관계,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 조 준(2004).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역할분담모형과 실제 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동섭·김성기·박호근(2009).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대한민국 국회.
- 조병희(1992). 국가의 의료통제와 의료의 전문화. 한국의료체계의 갈등구조와 역사적 배경. 한국사회학, 24.
- 조병희(1997). 재벌병원과 의료체계의 변화. 보건과 사회과학, 1(1). pp.65~84.
- 조상희(2010). 학교법인의 임원해임청구 대표소송 도입 검토. 미국의 모델 비영리법인법(NCA 2008)과 영국의 공익자선법(CharitiesAct 2006)에 비추어 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교육법학연구, 22(2), pp.219~238.
- 조석훈(2004).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법학연구, 16(2), pp.257~281.
- 조석훈·김용(2007). 학교와 교육법.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성한(2002).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 육성 및 규제정책. 한국정책논집, 2. pp.30~47.
- 조성한(2006). 정부인가 시장인가. 선택인가 조화인가. 한국행정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pp.909~918.
- 조순옥(2002). 사립중등학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우연(2009).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승(2007).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산업경제, 통권 109호. 산업연구원.
- 조현연·전수연(2002). 종교법인의 회계 및 재무보고 설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 조형원(2007). 보건의료분야의 법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연구, 7(2), pp.485~512.
- 조호식(2006). 사립대학 재정의 운영건전성과 재무안전성 분석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흥식 외(2011).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한국NPO공동회의. pp.39~40
- 주성광(2006).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분석, 목포지역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성수(2001).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한국 NGO 학회 학술발표회.
- 주인기(2009). 공익법인의 정보공개 현황 및 결산자료 분석. 2009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 주중남(2004). 단위학교 책무성 증진을 위한 학교장이 변혁적 지도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규철(1992). 미국에서의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주연(2008). 사회복지법인 설립·지도감독 및 시설 지도감독. 경기도인재개발원.
- 채은경(2004). 한국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채재은(2008). 외국 영리학교법인 실태조사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채형복(2007). 프랑스의 대학자치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세계헌법연구, 13(2), pp.339~372.
- 채형복(2011).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법학논고,

35, pp.81~114.

책임기획(1980). 역사주의의 빈곤. 서울: 청하출판사.

천희영(2010).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개발이익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길란(2000). 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덕원(2008). 사립대학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미영(2004).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최삼철(1990).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부과제도.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순영 의원실(2004).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공공성과 민주화를 위한 길입니다.

최승범(2001).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경기논단, 3(1).

최승원(2006). 행정법과 공익 - 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 -. 행정법연구 제1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최승원(2008).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행정법연구 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최식(1974). 교회가 분파된 경우의 재산귀속. 사법행정.

최운실 외(1998). 사학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유진(2005). 무용공연예술지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영(2009).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행정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인수(2010). 사회복지법인 회계정보 투명성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성(2002). 조직이론적 접근을 통한 사회복지조직의 집단화(체인화). 연세사회복지연구, Vol.8.

최재성(2005).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 임시이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감사자료집.

- 최준규(2008). NGO 운영과 책무성에 관한 연구=Analysis of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NGOs.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렬(2000).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9(2), pp.93~116.
- 최철호(2006).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철호(2008).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기준의 설정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7회 학술세미나.
- 최철호(2009). 사립대학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특례 규칙 실무적용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청일(2001).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교육재정적 문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0, pp.1~28.
- 최청일·김태완·임연기·천세영·이육범(2001).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재정적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최청일·박부권·박재운·조용환(1984). 사학활성화 방안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홍석(2003).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지방의회. 지방행정연구, 17(3), pp.131~172
- 추일엽(2010). 종교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비과세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신학과 실천, 24(2).
- 통계청(2011), 2010년 생명표.
- 통계청(2012), 2012 고령자통계.
- 표시열(2006). 개정 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18(1), pp.175~204.
- 표시열(2006). 사학법상 관선사학 정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정 사립학교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2006년 제1회 정기학술발표회. 2006.3.11.
- 표시열(2008). 교육법. 서울: 박영사.
- 하승수, 김현수(2007). 공익법인 지배구조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6(2). 한국비영리학회.

- 하홍준(199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재산의 사적유용구제. 조세법연구, 3, pp.276~299
- 하홍준(199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남법학, 4, pp.445~474.
- 한국건강증진재단(2012). 건강증진총서 3호.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권장지침.
- 한국교육정책연구원(2005). 사립학교 관련 개정 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 인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고령사회대책. 정책참고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2007년 의료기관 회계기준자료 운영사업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11.
- 한국사학법인연합회(2000).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반론.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척결을 위한 운동본부의 주장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진흥재단(2006). 사학기관 조세판례 및 예규모음.
- 한국사학진흥재단(2007). 사학기관 구조조정 실행방안, 자산관리를 통한 한계사학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진흥재단(2007).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극대화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8).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역할과 공공책임성의 강화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 연구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2003). 병원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2003.12.
- 한국조직학회(2006).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 한문식·원윤희(2000). 학교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 한창근(2007).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학교회계·산학협력단·학교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병기(1994). 교직성격 고찰. 교직 전문직성에 관한 반성적 논의. 교육학연구, 32(1), pp.40~45.
- 허원(2011a).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 허원(2011b).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 허용 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비영리법인

- 세제의 문제점. 이슈와 논점, 185호.
- 허재욱(1985). 한국 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자주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종렬(1993). 독일기본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감독. 교육법학연구, 5.
- 허종렬(2000). 사립학교의 특수성 법리에 대한 헌법재판 동향의 분석. 교육법학연구, 12.
- 허종렬(2001).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그 비판. 교육비평, 6, pp.43~56.
- 허종렬(2004). 구성원의 대학 운영 참여와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학의 발전과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7대 대학교육 정책포럼. 2004.9.23.
- 허종렬(2004). 헌법상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법리 연구.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헌법원리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16(2), pp.313~338.
- 허종렬(2005).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헌법학연구, 11(1).
- 허종렬·김형근·이시우·황준성·윤홍주(2006). 사립대학 재정 지원 실태와 문제점 및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 - 국립대학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 한국지역대학연합.
- 현삼원(2009).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제도 한미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상원(2010).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제도 한미 비교연구: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개선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기용·김광윤·정장식(2003). 의료기관의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 병원경영학회지. pp.1~31.
- 홍기용·박영규·금중갑(2005).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병원경영학회지, 9(4), pp.21~44.
- 홍복기(1988).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주(2001). 사립중등학교의 회계제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식(2003).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창수(2003). 학교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태화(2005). 학교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철(2003). 사회복지기관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황수연(2006). 시장 실패의 이론과 시장의 재발견. 사회과학연구, 22(2), pp.185~202.
- 황준성 외(2007).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
- 황준성(2001). 일본 사학정책의 법제적 연구. 교육법학연구, 13.
- 황준성(2005). 사학교육에 관한 국민의 자유.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준성(2006). 사립학교법제에 관한 기초 연구. 교육법학연구, 18(2).
- 황준성(2006). 한일 사립학교법 비교분석. 제5회 비교교육법 연구포럼(2006. 2. 11.). 대한교육법학회.
- 황준성(2007). 사학의 자유에 대한 재해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19(2).
- 황준성(2007). 사학조성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4(2).
- 황준성(2008).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방향. 2008 사학발전세미나 자료집.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2008.6.26. 한국프레스센터).
- 황준성·신지수(2008). 중등 사학 재정에 대한 규제 해소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사학교육연구소 편. 사학정책의 중요과제와 개선방안. pp.143~287.
- 황창순(1998). 한국 공익법인의 성격과 기능.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8(2), pp.148.
- 황창순(2001). 한국의 의료법인. 비영리조직의 관점. 동서연구, 13(1), pp.171~190.

황홍규(2010).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및 한국.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홍규(2011). 학교법인 제도에 대한 토론. KEDI·대한교육법학회 공동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쟁점(2011.7.12. 한국교육개발원). pp.99~102.

요시타카 모리(2005). 일본의 비정부 단체들과 사회운동, 아시아 시민 문화네트워킹구축포럼 발제문

木下栄蔵 편저, 강진규·민병찬 역, AHP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인터비전. 2008.10

島田(2003). 恒.非営利組織研究—その本質と管理—. 文眞堂.

関川芳孝地方の時代(2010). 社会福祉法人の存在意義. 月刊福祉.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白書(<http://www.nhlw.go.jp>)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main5_a3.htm

<http://www.pref.mie.lg.jp/SEIKATU/HP/shigaku/ninnka/kifukoui.pdf#search> (미에현 심사기준)

<http://www.pref.nagano.jp/kyouiku/shigaku/seido/kihushin.pdf#search> (나가노현 심사기준)

A.Freiherr von Campenhausen, Religionsfreiheit, in: J.Isensee und P.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VI 1989, §136, Rdnr 52.

Alexander J.A.(1990). Governance for Whom? The Dilemmas of Change and Effectiveness in Hospital Board. *Frontiers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6(3), pp.38~41.

Anheier. H.K.(1992). *An Elaborate Network. Profiling the Third Sector in Germany*. In Benjamin Gidonr.

Avenarius. Hermann(2011). *Die Herausforderung des öffentlichen*

- Schulwesens durch private Schulen*. Frankfurt.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 Batey, M., Lewis, F. (1982). Clarify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nursing servic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2(9), 13-18.
- Behn, R. (2001). *Rethin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Bergman, R. (1981). Accountability: Definitions ad dimension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8, 53-59.
- Bezirksregierung Düsseldorf(2011). *Information zur Errichtung und Genehmigung privater Ersatzschulen*. Genehmigungsverfahren. Düsseldorf. Bezirksregierung Düsseldorf.
- Bogdan, R. C.,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5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Brown, L. David, Moore, Mark H.(2001). *Accountabil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paper No.7. pp.1~33
- Burek(1990). *Clergy Malpractic: Making Clergy Accountable to a Lower Power*, 14 Pepp. L. Rew.137
- Burton A. Weisbrod(1979).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an economic analysi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c1977. viii. 179 p.
- Burton A. Weisbrod(1998), *To Profit or Not to Profit: The Commercial Transform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5, 25~28
- Carver J(1991). Boards that make a Difference. *A New Design for Leadership in Nonprofit and Public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oper. T.(1990).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 Ethn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San Francisco. Jossey-Bass.
- Crabtree, B. F., Miller, W. L. (1999). Using codes and code manuals. In B. F. Crabtree & W. L. Miller (Eds.), *Doing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163~177). Thousand Oaks, CA: Sage.
-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London: Sage.
- Dahlgren, G., Whitehead, M. (1991)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 Day, P., Klein, R. (1987). *Accountabilities: Five public service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Delbecq AL(1988). Grill SL. Developing Strategic Direction for Governing Boards. *Hospital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33(1), pp.25~35.
- Department of Health.(2001). *The Government's Expenditure Plans 2001-2001 to 2003-2004 and Main Estimates 2001-2002*.
- Duca DJ(1996). *Nonprofit Boards. Roles. Responsibilities. and performance*. New York. Wiley.
- Dwivedi, O. P., Jabbara, J. G. (1989).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Service Accountability Edited by Jabbara, J. G., & Dwivedi, O. P. 1-16. West Hartford.
- Emanuel, E. J.(1996). A Professional response to demands for accountability: Practical recommendations regarding ethical aspects of patient care. *Ann Intern Med*. 124(2). pp.240~249
- Finer. Herman(1941).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 pp.335~350.
- Fried. P. F., Tangen, C. M., Walston, J., Newman, A. B., Hirsch, C., Gottdiener, J., Seeman, T., Tracy, R., Kop, W. J., Burke, G., and Mcburnie. (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s*, 56A(3).

- Friedrich. Carl Joachim(1940).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C. J. Friedrich and E. S. Mason eds.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 George Johnson(저). 안기성 외(공역)(1999). 미국 교육법제. 서울: 청암미디어.
- Guba, E. G., Lincoln, Y. S. (1981).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bases of naturalistic inquiry. In D. L. Stufflebeam, G. F. Madaus, & T. Kellaghan (Eds.), *Evaluation models*, (pp.363~381). Boston: Kluwer Academic.
- Halstead, M.(1994). Accountability and values. In D. Scott(Ed). *Accountability and Control in Educational Settings*. London: Cassell. pp.146~165
- Hanson, *Clergy Malpractice : Suing Minister, Pastor, and Priests for Ungodly Counseling*, 39 Drake L. Rev.597(1989~1990)
- Harry Blair.(2000).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t the Periphery*. World Development. 28(1), pp.21~39.
- Harris M(1989). The governing Body Role. Problems and Perceptions in Implic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8, pp.317~333.
- Henderson & Pearwon, *The Tort Process 164*(2d ed. 1981)
- Hetty Kovach(2006). *Addressing Accountability at the Global Level. The Challenges Facing International NGOs.NGO Accountability. Politics. Principles and Innovations*. Earthscan.
- Hoek. Freek. Cor van Montfort, Cees Vermeer(2005). Enhancing Public Accountability in the Netherlands. *OECD Journal of Budgeting*, 5(2), pp.69~86.
- Hull, R. (1981).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Nursing Outlook*, 29, 707-712.
- Hunt, M. R. (2009). Strengths and challenges in the use of interpretive

- description: Reflections arising from a study of the moral experience of health professionals in humanitarian work.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9(9), pp.1284~1292.
- Iain Attack.(1999). Four Criteria of Development NGO Legitimacy. *World Development*. 27(5), pp.855~864.
- I.von Munch in: I.von Munch/Ph.Kunig (hrsg.), GG-Kommentar, Bd. I, 4.Aufl. 1992, Art.4 Rdnr.18ff.
- Inglis S. Alexander T. Weaver L(1999). Roles and Responsibility of Community Nonprofit Board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0(2), pp.153~167.
- Innes. D.(2005). United Kingdom. Establishing A Mixed Economy in Health Care. *AIM-HOPE International Conference Paris*. pp.20~21, January 2005.
- JETRO(일본경제정보과)(2005). 의료기관 경영에 주식회사 참가에 대하여. *Japan Economic Monthly*.
- Jordan, Lisa, Tuij, IPeter. Van.(2000). "Political Responsibility in Transnational NGO Advocacy." *World Development*. 28(12), pp.2051~2065.
- Jun BH·Lee HG(2000). An investigation of the intake of the health food among the salarymen in Seoul. *Kor J Soc Food Sci* 16(1), pp.9~16.
- K.Hesse,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Aufl. 1995, Rdnr.380 Anm.16
- Kang MH(1994).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elderly people. *Korean J of Nutr*, 24(6), pp.616~636.
- Katie L. Roeger, Amy Blackwood, Sarah L. Pettijohn(2011),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 Public Charities. Giving and Volunteering*, Urban Institute
- Kearns KP(1994). The Strategic Management of Accountability in

- Nonprofit Organization. An Analytical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2), pp.185~192.
- Kevin P. Kearns(1996). *Managing for Accountability. Preserving the Public Trust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Kim, S. E.(2005). Balancing competing accountability requirements: Challenges in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nonprofit human service agency.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29(2), pp.145~163.
- Koppell G. S. Jonathan(2005). Pathologies of Accountability. ICANN and the Challenge of Multiple Accountabilities disord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1).
- Kovner AR(1990). Improving Hospital Board Effectiveness. An Update. *Frontiers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6(3), pp.3~27.
- Kovner Ar. Martin J. Chin MJ(1992). *Physician Leadership in Hospital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Samuel Levey ed. Hospital Leadership & Accountability. An Anthropology from Hospital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Ann Arbor. Michigan. Health Administration Press.
- Kramer, Ralph M. et al.(1993). *Privatization in Four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Studies in Government-Third Sector Relationships*. Sharpe, M.E.
- Leat, D.(1990). Voluntary Organizations and Accountability: Theory and PRactice in Helmut K. and Wolfgang Seibil(ed.) *The Third sector: c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 Lee YA·Lee HJ·Lee HS·Jang YA·Kim CI (2007). Nutritional status and its improvement strateg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 Community Nutr.* 11, pp.16~34.

-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sa Jordan, Peter Van Tuijl(2006).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Political Landscape of NGO accountability. Introduction and Overview NGO Accountability. Politics. Principles and Innovations*. Earthscan.
- M. McConnell, *The Origins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Free Exercise of Religion*, 103 Harv. L. Rev.1409, 1990, pp.1513~1517.
- Mayan, M. J. (2009). *Essentials of qualit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scisco: Jossey-Bass.
- Miles, W. L.,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iller RD(1996). *Problem in Health Care Law*. 7th ed. Gaithersburg, MD. Aspen Publishers. pp.32~39.
- Montessori-Schule Dietramszell(2008). *Geschäfts- und Schulordnung der Montessori-Schule Dietramszell*. Dietramszell. Montessori-Trägerverein e. V.
- Mosher, Frederick(1982). *D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unro H·Schlif G (1992). *Nutrition of the elderly: Nestle nutrition Workshop Series*. 29, Raven Press.
- Nagi. S. Z,. (1976). An epidemiology of disability amo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54, pp. 439~467
- Oliver C.(1990). Determinant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tegration and Future Direct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2), pp.241~265.

Oliver, D.(1991).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Open University Press

Ospina. Sonia et al.(2004).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Management Improvement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Some Lessons from Latin America. *Public Management Review*, 6(2).

Pieroth/Schlink, Religions-, Weltanschauungs und Gewissensfreiheit, in: Grundrechte Staatsrecht II, 11.Aufl. 1995, Rdnr.562

Pointer DD. Ewell CM(1994). *Really Governing. How Health System and Hospital Boards can make more of a Difference*. New York. Delmar Publisher.

Pointer DD. Orlikoff J(2002). *The High-performance Board. Principl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Priest, H., Roberts, P., Woods, L. (2002). *An overview of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qualitative data*. Part 1: Theoretical issues. *Nurse Researcher*, 10(1), 30-42.

R. Bond. The Man who was Chesterton.(1960)

Richards, L., Morse, J. M. (2007). *Readme first for a user's guide qualitative methods (2nd ed)*. Thousand Oakes, CA: Sage.

Roberts. C. Nancy(2002). Keeping Public Officials Accountable through Dialogue. Resolving the Accountability Parado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6).

Röbke. Thomas(2010). Hürdenlauf für Gründer. DIE ZEIT. 11.02.2010 Nr. 07.

Romzek. Barbara S., Melvin J. Dubnick(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 Romzek, Barbara S., Patricia W. Ingraham(2009). *Cross Pressure of Accountabi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3)
- Rowe, J. W.: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Saaty, T. L.(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 II*, AHP series, RWS Publication.
- Salamon L.M. Anheier HK(1996).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 Revision 1.0. Working papers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Johns Hopkins Universit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Salamon L.M. Anheier HK(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UK.
- Salamon, L.M.(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9(3):213-48.
- Salamon L.M.(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2nd ed.).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 Salamon. L.M.(1999) *The Nonprofit Sector And The Challenge of Renewal: U.S. And Global Perspectives, Annual Conference Coalition of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Ottawa Canada, September 18.
- Salamon. L. M., Anheier. H. K.(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alamon. L.M, S. Wojciech Sokolowski, Stephanie L. Geller(2012), *Holding the Fort: Nonprofit Employment during a Decade of Turmoil*, Nonprofit Economic Data Bulletin #39
- Sandelowski, M. (2000). Whatever happened to qualitative

- descrip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 334-340.
- Simms, L. (1967). Creating an educational climate for nursing practice. *British Journal of Nursing*, 9(9), 549-554.
- Soltz BAB(1997). The Board of Directors. in Connors TD(ed). *The Nonprofit Handbook*. Management. 2nd ed. New York. Wiley.
- Son SM·Park YJ·Koo JO·Lee YN·Yoon HY (1996).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of Korean elderly from low-income, urban area and improving effect of meal service on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 V. The effect of meal service for one year on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 *Korean J Community Nutr.* 2(1), pp. 63~73.
- Sonia Ospina, William Diaz, James F. O'Sullivan(2002). Negotiating Accountability: Managerial Lessons from Identity-Based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1, no.1, March 2002. pp.5~31
- Statisches Bundesamt(2008). *Bildung und Kultur*. Private Schulen(Schuljahr 2007/08). Fachserie 11 Reihe 1.1. Wiesbaden. Statisches Bundesamt.
- Stone, B. (1995).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in the Westminster democracies: Toward a new conceptual framework*. *Governance*, 8(4), 505-526.
- Terrance Adams. Legislative Analyst(2009). REGUL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SELECTED STATES.
- Thorne, S. (2008). Interpretative description.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Thorne, S., Kirkham, S. R., O'Flynn-Magee, K. (2004). The analytic challenge in interpretive descri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1), Article 1.

- U. S. Bureau of the Census(1992). *Census of Service Industries*.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9). *State Regulation of Private Schools*.
- Vance SC(1971). New Dimensions for Boards of Directors. A Speculation in the Changing Role of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The Conference Board RECORD*. p.53.
- Vargas, L. G.(1990), An 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
- Verbrugge, L. M., Jette, A. M. (1994). The disablement proc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s*, 38(1).
- Wagner. R.B.(1989). *Accountability in educ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New York. Routledge.
- Weiß. Manfred(2011). *Allgemein bildende Privatschulen in Deutschland. Schriftenreihe des Netzwerk Bildung*. Bonn. Friedrich Ebert Stiftung.
- <http://nccs.urban.org/index.cfm>
- [http. //www.cesnur.org/testi/irf2000/russia.html](http://www.cesnur.org/testi/irf2000/russia.html)
- <http://www.expertchoice.co.kr>, 2013
- [http. //www.gigabon.com/bbs/tb.php/z003/5](http://www.gigabon.com/bbs/tb.php/z003/5)
- [http. //www.gigabon.com/bbs/tb.php/z008/71](http://www.gigabon.com/bbs/tb.php/z008/71)
- http://www.mext.go.jp/b_menu/shingi/daigaku/002/houkoku/03080703/002.htm

부록 1. 비영리법인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 설문지

연구 설명서

연구주제: 비영리법인 근무자의 책무성 탐색

연구자: oo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담당하는 역할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개인면담(1회당 1.5~2시간 내외)에 의해 이루어지며,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분석될 것입니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귀하의 편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주로 근무지의 소회의실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3회의 재면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운영 및 평가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면담에 따른 위험이나 해는 없을 것입니다.

본 연구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의 이름과 그 밖의 개인적인 정보는 지울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할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로 작성될 것이며, 국내외 관련 학술대회와 학회지에 발표 및 출판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담에 참여하신 경우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담 도중 귀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연구에 관해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올림

No. P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비영리법인 근무자의 책무성 탐색

연구자: oo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 | |
|-------------------------------------|-------|
| 연구목적에 이해하십니까? | 네 아니오 |
|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 네 아니오 |
|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 단점을 이해하십니까? | 네 아니오 |
|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 네 아니오 |
|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 네 아니오 |
|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 네 아니오 |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연구목적에 위해 면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연구참여자의 성명 날짜 서명

연구참여자의 휴대폰번호

=====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구자의 성명 날짜 서명

* 본 참여동의서는 참여자에게 복사하여 드릴 것입니다.

No. P

일반적배경

연령: _____ 세

성별: 남자 _____ 여자 _____

결혼상태: 결혼 _____ 미혼 _____ 이혼 _____ 사별 _____ 기타 _____

교육수준: 고졸 _____ 대졸 _____ 대학원졸 _____

근무기관: 사회복지법인 _____ 종교법인 _____ 학교법인 _____
의료법인 _____ 문화예술법인 _____

직위: _____

근무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근무연수: _____ 년 _____ 개월

면담질문가이드

■ 개별 심층면담을 위한 개방형 질문지

- 비영리법인/기관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비영리법인/기관 내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비영리법인/기관의 재정적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비영리법인/기관의 제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비영리법인/기관 내 구성원의 대우나 처우 조건은 어떻습니까?
- 비영리법인/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 비영리법인/기관으로서 대표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법인/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타 유사 비영리법인/기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나 기관장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비영리법인/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 설문지

2-1. 일반국민 설문조사지

비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법인은 교육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비영리교육기관 내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1. 비영리교육기관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내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교육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교육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교육기관들이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가 비영리교육기관들이 합리적인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교육기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2. 비영리 교육기관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외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비영리교육기관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교육기관들이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교육기관들이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각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비영리교육기관들이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3. 각 분야에서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교육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의료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종교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비영리기관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외에 귀하가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고견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지 시군구	성별					
	남		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비영리 의료기관 내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1. 비영리 의료기관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내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가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합리적인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의료기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2. 비영리 의료기관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외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각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3. 각 분야에서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u>교육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는 <u>의료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3	귀하는 <u>문화예술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4	귀하는 <u>종교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5	귀하는 <u>사회복지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4. 비영리기관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외에 귀하가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고견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지 시군구		성별	남	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문화·예술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내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1. 문화예술기관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내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가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합리적인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문화예술 기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2. 문화 예술 기관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외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각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들이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문화예술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3. 각 분야의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u>교육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u>의료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u>문화예술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u>종교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u>사회복지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비영리기관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외에 귀하가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고견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지 시군구						
	성별		남	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영리 종교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법인은 종교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1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비영리 종교기관 내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1. 종교기관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내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종교기관들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가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합리적인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종교기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2. 종교기관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외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각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종교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3. 각 분야의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u>교육</u>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u>의료</u>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u>문화예술</u>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u>종교</u>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u>사회복지</u>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비영리기관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외에 귀하가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고견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지 시군구	성별					
	남			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1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내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1. 사회복지 기관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내부 활동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가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합리적인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2. 사회복지 기관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외부 활동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각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3. 각 분야의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문입니다.

비영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는 <u>교육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u>의료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u>문화예술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u>종교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u>사회복지관련</u>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사회복지 기관의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외에 귀하가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고견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지 시군구	성별					
	남			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2.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지

비영리 법인의 역할 평가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역할 평가 설문지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02-380-8202
------------------	-----------	-------------	-------------

■ 비영리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측정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부적 책무성-민주성]

내부적 책무성 - 민주성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 운영 및 변경에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된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대부분 의제설정 및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특정 개인이 대표, 사무국장, 임원, 운영위원, 집행 간사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모임이 자주 개최되는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모임의 논의나 안건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 되는 편입니까?					

2. [내부적 책무성-투명성]

내부적 책무성 - 투명성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지출 내역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소속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사제도(내부/외부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등)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회의록 등)가 잘 정리, 보존 되어 있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활발한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편입니까?					

3. [내부적 책무성-효율성]

내부적 책무성 - 효율성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장기적 계획아래 실행되는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하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활동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상근 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4. [내부적 책무성-형평성]

내부적 책무성 - 형평성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성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 계층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업무의 능률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내에 일어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외부적 책무성 측정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외부적 책무성-합법성]

외부적 책무성 - 합법성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습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과 관련 된 법적 의무(허가, 신고, 세금 등)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과의 행위 혹은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근로 인원수와 기관의 규모, 크기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목적과 기관의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는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편입니까?					

6. [외부적 책무성-대표성]

외부적 책무성 - 대표성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있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 바람을 듣고 그와 관련 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까?					

7. [외부적 책무성-전문성]

외부적 책무성 - 전문성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을 일반인들이 잘 아는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귀하의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까?					

8. [외부적 책무성-반응성]

외부적 책무성 - 반응성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까?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필요시 다른 비영리 기관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하는 편입니까?					
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까?					
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행동해 주는 반응이 빠른 편입니까?					
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하는 편입니까?					

■ 응답자 일반사항

시·도		시군구	
기관명		성별	
나이		근무연수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복수응답)	1.사회복지법인 5.문화예술법인	2.종교법인 6.기타	3.학교법인 4.의료법인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복수응답)	1.사회복지법인 5.문화예술법인	2.종교법인 6.기타	3.학교법인 4.의료법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3. 비영리법인 직원 설문조사지

비영리 의료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비영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 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	-----------	------

■ 비영리기관의 현황 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 운영 및 변경에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된 편입니까?					
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대부분 의제설정 및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특정 개인이 대표, 사무국장, 임원, 운영위원, 집행 간사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편입니까?					
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모임이 자주 개최되는 편입니까?					
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모임의 논의나 안건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 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지출 내역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입니까?					
2-3	귀하는 소속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사제도(내부/외부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등)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62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회의록 등)가 잘 정리, 보존 되어 있는 편입니까?					
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활발한 편입니까?					
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장기적 계획아래 실행되는 편입니까?					
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하는 편입니까?					
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활동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편입니까?					
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편입니까?					
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상근 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성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 계층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업무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편입니까?					
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내에 일어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습니까?					
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과 관련 된 법적 의무(허가, 신고, 세금 등)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입니까?					
5-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과의 행위 혹은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5-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근로 인원수와 기관의 규모, 크기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편입니까?					
5-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목적과 기관의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는 편입니까?					
5-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편입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6-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있는 편입니까?					
6-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6-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6-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6-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 바람을 듣고 그와 관련 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까?					

62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을 일반인들이 잘 아는 편입니까?					
7-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7-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귀하의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입니까?					
7-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편입니까?					
7-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7-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까?					
8-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필요시 다른 비영리 기관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8-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하는 편입니까?					
8-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까?					
8-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행동해 주는 반응이 빠른 편입니까?					
8-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Ⅲ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9-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9-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친인척 등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는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9-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입니까?					
9-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료기관 회계준칙을 성실히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경영공시(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 포함)를 충실히 게재하고 있습니까?					
9-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감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입찰에 공개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9-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9-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9-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까?					

63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16	귀하가 소속된 기관 직무담당자들의 업무량은 적정합니까?					
9-1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9-1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9-1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을 장기적 계획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9-2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은 적절한 수준입니까?					
9-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9-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9-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지역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일정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당합니까?					
9-2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성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30	우리 병원은 의료법 등 의료 관련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합니까?					
9-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 관련법을 준수합니까?					
9-32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목적은 일치합니까?					
9-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적 의무에 따라 충실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분야별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3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9-3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새로운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9-3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료 인력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9-4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료에 대한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9-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방·건강증진·질병관리·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습니까?					
9-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료기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9-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외부에 의료관련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9-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자선의료 등과 같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향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합니까?					
9-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지역사회의 미충족 서비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9-4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료사고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9-4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료사고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9-4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매년 의료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매년 필요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9-5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응급의료, 노인질환 진료, 재활서비스, 혈액관리 등 필수 공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환자들의 접근성(지역)이 용이합니까?					
9-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가 높습니까?					

■ **응답자 일반사항**

시·도		시군구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유형	1. 종합전문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특수병원 5. 의원 6. 치과병원 7. 치과의원 8. 조산원 9. 부속병원 10. 보건소 11. 보건지소 12. 보건진료소 13. 보건의료원 14. 한방병원 15. 한의원		
설립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인 4. 개인 5. 기타		
법인의 종류	법률상	1. 비법인 2. 재단법인 3. 사단법인	
	기능상	1. 사회복지법인 2. 종교법인 3. 학교법인 4. 의료법인 5. 문화예술법인 6. 기타	
수익추구 여부	1. 예 2. 아니오 (법률이나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비스 규모	기관 (월평균 이용자 수)		
	법인 (운영하는 기관 수)		

[인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법인구성인력	명	기관인력	명

[출연자산(재단법인)]

(단위: 천원)

출연자산	
------	--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수입		지출	
정부보조금		인건비	
민간후원금		관리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사업수입		기타	
기타			
계		계	

[기타]

수익분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수익이 법인 관여자나 법인 구성인력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고 있습니까? (장학금, 지원금 등 포함)	()%
간여재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 해산 시 간여재산의 귀속자는 누구입니까?	①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②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④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⑤기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	-----------	-------------

■ 비영리기관의 현황 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 운영 및 변경에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된 편입니까?					
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대부분 의제설정 및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특정 개인이 대표, 사무국장, 임원, 운영위원, 집행 간사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편입니까?					
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모임이 자주 개최되는 편입니까?					
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모임의 논의나 안건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 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지출 내역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입니까?					
2-3	귀하는 소속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사제도(내부/외부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등)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반서류(사업계획서, 회의록, 사업실적 평가서 등)가 잘 정리, 보존 되어 있는 편입니까?					

63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활발한 편입니까?					
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장기적 계획아래 실행되는 편입니까?					
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에 완수하는 편입니까?					
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계획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편입니까?					
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편입니까?					
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상근 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성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 계층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업무의 능률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편입니까?					
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내에 일어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습니까?					
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적 의무(허가, 신고, 세금 등)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입니까?					
5-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용자)와의 행위 혹은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5-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근로 인원수와 기관의 규모, 크기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편입니까?					
5-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설립 목적과 기관의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는 편입니까?					
5-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일반시민(이용자)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6-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있는 편입니까?					
6-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6-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6-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6-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용자)의 바람을 듣고 그와 관련 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까?					

638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을 일반인 또는 이웃들이 잘 아는 편입니까?					
7-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7-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용자)이나 일반인에게 귀하의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입니까?					
7-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편입니까?					
7-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외부 전문가(이사, 운영위원, 감사 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7-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까?					
8-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필요시 다른 복지기관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8-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하는 편입니까?					
8-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까?					
8-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용자)의 욕구를 수시로 조사하여 욕구충족에 대한 반응이 빠른 편입니까?					
8-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9-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9-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친인척 등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자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는 정관에 명시한 임기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9-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입니까?					
9-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의 회계준칙 또는 사회복지재무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성실히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경영공시를 충실히 게재하고 있습니까?					
9-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감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모든 입찰에 공개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640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회의록을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까?					
9-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까?					
9-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15	귀하가 소속된 기관 직무담당자들의 업무량은 적정합니까?					
9-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9-1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9-1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1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9-2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9-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9-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지역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일정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당합니까?					
9-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성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관련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합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2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 관련법을 준수합니까?					
9-3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9-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적 의무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분야별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9-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9-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9-3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9-3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9-3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외부에 관련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9-4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지역사회의 미충족 서비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V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0-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설립의 목적이 근거 법률과 일치하며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0-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근거법률에 따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0-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활동이 조직의 사명진술과 일치하며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10-4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사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규정이나 방침을 위배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이 문서화되고 공개되어 있습니까?					
10-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고유목적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자 또는 감독당국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1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지원받은 자금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1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구축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1-4	귀하는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모든 복지사업과 복지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해 매년 달성목표와 비교해 평가합니까?					
1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각 사업별로 애초에 성과를 영두에 둔 측정 가능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1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각 사업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고객(이용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조직의 편성예산과 결산 결과에 대해 매년 감독당국이나 재정지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까?					
1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담당자는 회계처리 및 재정운용을 위한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통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문서화된 재정정책 및 운용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1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업무수행 등 비용처리를 위한 지급기준이 문서화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까?					
1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까?					
12-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조직의 연간 예·결산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12-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지배구조, 재무상태, 사업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문화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12-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64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이사의 임기와 새로운 이사의 임명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1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중요한 의사결정(이사회 의결사항,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기록을 보호 및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1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의소집, 회의절차, 의결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1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운영위원회는 고객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직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1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3-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회는 예산, 결산, 재정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13-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까?					
13-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매년 법정규모에 따라 공인된 회계기관에 의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3-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각종 구매계약 및 거래는 합법적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3-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의 이해상충거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문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서비스 대상 고객(이용자)들의 인격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까?					
1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까?					
1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문화, 언어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나 시설이용에 차별을 방지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1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회는 자신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권리를 명문화 하고 서비스이용자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1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사업과 조직의 자원 및 서비스내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14-7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전문가나 지역사회 주민이 조직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4-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14-9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조직활동과 관련된 문서화된 윤리기준이 존재하고 공개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후원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조직의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도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까?					

64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6-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용자)의 사적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16-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회는 조직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후원금모집 전략, 재정운용, 평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16-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까?					
16-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나 지역사회 단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16-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내부의 고충처리 시스템과 고객(이용자)의 문제제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16-6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는 지역사회나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16-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적법한 인사고과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 응답자 일반사항

사·도		시·군·구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유형 (이용, 생활)	1.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시설() 5. 정신보건시설() 6. 기타시설()		
설립주체	1. 국가(직영) 2. 지방자치단체(직영) 3. 법인 4. 개인 5. 기타		
법인의 종류	법률상	1. 비법인 2. 재단법인 3. 사단법인	
	기능상	1. 사회복지법인 2. 종교법인 3. 학교법인 4. 의료법인 5. 문화예술법인 6. 기타	
수익추구 여부	1. 예 2. 아니오 (법률이나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비스 규모	기관 (월평균 이용자 수)		
	법인 (운영하는 기관 수)		

[인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법인구성인력	명	기관인력	명

[출연자산(재단법인)]

(단위: 천원)

출연자산	
------	--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수입		지출	
정부보조금		인건비	
민간후원금		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사업수입		잡지출	
기 타		기 타	
계		계	

[기타]

수익 분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수익이 법인 관여자나 법인 구성인력에 게 어느 정도 분배되고 있습니까? (장학금, 지원금 등 포함)	()%
잔여 재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누구입니까?	①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②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④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⑤기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 교육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기관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	-----------	-------------

■ 비영리기관의 현황 I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 계획 및 변경에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된 편입니까?					
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대부분 의제설정 및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특정 개인이 대표, 사무국장, 임원, 운영위원, 집행 간사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편입니까?					
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모임이 자주 개최되는 편입니까?					
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모임의 논의나 안건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 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지출 내역이 임원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입니까?					
2-3	귀하는 소속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사제도(내부/외부 공인회계사 및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등)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회의록 등)가 잘 정리, 보존 되어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활발한 편입니까?					
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장기적 계획아래 실행되는 편입니까?					
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하는 편입니까?					
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활동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편입니까?					
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편입니까?					
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상근 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성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 계층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업무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편입니까?					
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내에 일어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습니까?					
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과 관련 된 법적 의무(허가, 신고, 세금 등)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입니까?					
5-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과의 행위 혹은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5-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근로 인원수와 기관의 규모, 크기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편입니까?					
5-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목적과 기관의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는 편입니까?					
5-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6-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있는 편입니까?					
6-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6-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6-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6-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 바람을 듣고 그와 관련 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을 일반인들이 잘 아는 편입니까?					
7-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7-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귀하의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입니까?					
7-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편입니까?					
7-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7-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까?					
8-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필요시 다른 비영리 기관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8-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하는 편입니까?					
8-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까?					
8-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행동해 주는 반응이 빠른 편입니까?					
8-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I

※ 해당되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의 경영진과 법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9-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상임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9-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친인척 등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자가 법정범위 내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는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9-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입니까?					
9-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의 회계준칙을 성실히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경영공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9-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감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주요 입찰에 공개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9-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까?					
9-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9-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까?					
9-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16	귀하가 소속된 기관 직무담당자들의 업무량은 적정합니까?					
9-1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9-1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9-1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을 장기적 계획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9-2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은 적절한 수준입니까?					
9-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9-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9-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지역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65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일정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당합니까?					
9-2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성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30	우리 기관은 관련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합니까?					
9-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 관련법을 준수합니까?					
9-32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목적은 일치합니까?					
9-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9-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적 의무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분야별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3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9-3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9-3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9-4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V

※ 해당되는 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0-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학사운영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10-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행정운영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10-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관리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학생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편입니까?					
1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학생의 선택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교사들의 연구·연수에 대한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편입니까?					
1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편입니까?					
1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교사들이 다양한 평가방법 및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1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건학이념에 근거한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응답자 일반사항

시·도		시군구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유형	1.유치원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학 6.대학교 7.각종학교 8. 기타		
설립주체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법인 4.개인 5.기타		
법인의 종류	법률상	1.비법인 2.재단법인 3.사단법인	
	기능상	1.사회복지법인 2.종교법인 3.학교법인 4.의료법인 5.문화예술법인 6.기타	
수익추구 여부	1.예 2.아니오 (법률이나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비스 규모	기관 (재학생 수)		
	법인 (운영하는 기관 수)		

[인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법인구성인력	명	기관인력	명

[출연자산(재단법인)]

(단위: 천원)

출연자산	
------	--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수입		지출	
정부보조금		인건비	
민간후원금		관리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사업수입(등록금)		기타	
기타		계	
계		계	

[비영리성 확보]

비영리성		
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수익이 법인 관여자나 법인 구성인력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고 있습니까? (장학금, 지원금 등 포함)	()%
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누구입니까?	①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②당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④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⑤기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	-----------	------

■ 비영리기관의 현황 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 운영 및 변경에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된 편입니까?					
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대부분 의제설정 및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특정 개인이 대표, 사무국장, 임원, 운영위원, 집행 간사 등의 직위를 겸직 하지 않는 편입니까?					
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사 결정기구의 모임이 자주 개최되는 편입니까?					
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모임의 논의나 안건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 되는 편입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지출 내역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입니까?					
2-3	귀하는 소속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사제도(내부/외부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등)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66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회의록 등)가 잘 정리, 보존 되어 있는 편입니까?					
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활발한 편입니까?					
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장기적 계획아래 실행되는 편입니까?					
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하는 편입니까?					
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활동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편입니까?					
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편입니까?					
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상근 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성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 계층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업무의 능률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편입니까?					
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내에 일어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습니까?					
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과 관련 된 법적 의무(허가, 신고, 세금 등)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입니까?					
5-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과의 행위 혹은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5-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근로 인원수와 기관의 규모, 크기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편입니까?					
5-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목적과 기관의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는 편입니까?					
5-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편입니까?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일반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6-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있는 편입니까?					
6-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6-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6-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6-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 바람을 들고 그와 관련 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까?					

66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을 일반인들이 잘 아는 편입니까?					
7-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7-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귀하의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입니까?					
7-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편입니까?					
7-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7-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까?					
8-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필요시 다른 비영리 기관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8-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하는 편입니까?					
8-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까?					
8-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행동해 주는 반응이 빠른 편입니까?					
8-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소유자(설립자)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9-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9-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친인척 등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자가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는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9-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입니까?					
9-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의 회계준칙을 성실히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경영공시를 충실히 게재하고 있습니까?					
9-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감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모든 입찰에 공개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66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회의록을 규정에 맞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9-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9-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15	귀하가 소속된 기관 직무담당자들의 업무량은 적정합니까?					
9-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9-1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9-1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을 장기적 계획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9-1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2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은 적절한 수준입니까?					
9-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9-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9-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일정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습니까?					
9-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성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관련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9-2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29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목적은 일치합니까?					
9-3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9-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적 의무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분야별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9-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9-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9-3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습니까?					
9-3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9-3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외부에 관련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9-4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의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9-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부를 강요 하지 않습니까?					
9-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단체구성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명문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까?					
9-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단체구성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청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응답자 일반사항**

시·도		시군구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유형	1. 예술단체(예) 문화예술법인, 예술단체-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등) 2. 문화재단 3. 문화예술 지원기관 4. 문화예술 협의체		
설립주체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법인 4.개인 5.기타		
법인의 종류	법률상	1.비법인 2.재단법인 3.사단법인	
	기능상	1.사회복지법인 2.종교법인 3.학교법인 4.의료법인 5.문화예술법인 6.기타	
수익추구 여부	1.예 2.아니오 (법률이나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비스 규모	기관 (월평균 이용자 수)		
	법인 (운영하는 기관 수)		

[인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법인구성인력	명	기관인력	명

[출연자산(재단법인)]

(단위: 천원)

출연자산	
------	--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수입		지출	
정부보조금		인건비	
민간후원금		관리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사업수입		기타	
기타			
계		계	

[기타]

수익 분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수익이 법인 관여자나 법인 구성인력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고 있습니까? (장학금, 지원금 등 포함)	()%
잔여 재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누구입니까?	①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②당시 이사회의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④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⑤기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 종교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기관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비영리 종교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 종교기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영리 종교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영리 종교기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조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	-----------	------

■ 비영리기관의 현황 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업 운영 및 변경에 있어 의사 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이 잘 정비된 편입니까?					
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대부분 의제설정 및 결정에 참여 하는 편입니까?					
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특정 개인이 대표, 사무국장, 임원, 운영위원, 집행 간사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않는 편입니까?					
1-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의사결정기구의 모임이 자주 개최되는 편입니까?					
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기구에서 모임의 논의나 안건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 되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관리(수입·지출의 기록, 증빙서류 관리 등)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수입·지출 내역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입니까?					
2-3	귀하는 소속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사제도(내부/외부 감사위원회, 자체평가 등)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회의록 등)가 잘 정리, 보존 되어 있는 편입니까?					
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가 활발한 편입니까?					
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편입니까?					

67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장기적 계획아래 실행되는 편입니까?					
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계획한 사업을 모두 완수하는 편입니까?					
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간 활동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편입니까?					
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된 편입니까?					
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배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상근 인력은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없는 편입니까?					
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의 성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 간 계층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는 편입니까?					
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업무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편입니까?					
4-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내에 일어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5-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습니까?					
5-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과 관련 된 법적 의무(허가, 신고, 세금 등)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입니까?					
5-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과의 행위 혹은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5-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근로 인원수와 기관의 규모, 크기 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편입니까?					
5-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목적과 기관의 실질적 목적이 일치하는 편입니까?					
5-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일반 시민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편입니까?					
6-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대표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있는 편입니까?					
6-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6-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6-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6-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 바람을 듣고 그와 관련 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까?					

674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7-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을 일반인들이 잘 아는 편입니까?					
7-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편입니까?					
7-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이나 일반인에게 귀하의 기관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입니까?					
7-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편입니까?					
7-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입니까?					
7-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들은 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8-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까?					
8-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필요시 다른 비영리 기관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까?					
8-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하는 편입니까?					
8-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까?					
8-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행동해 주는 반응이 빠른 편입니까?					
8-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사회의 일반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행동하는 편입니까?					

■ 비영리기관의 현황 III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소유자(설립자)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편입니까?					
9-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9-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친인척 등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자가 이사 및 종교주재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이사는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9-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실무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9-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입니까?					
9-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의 회계준칙을 성실히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경영공시를 충실히 게재하고 있습니까?					
9-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감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9-1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모든 입찰에 공개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676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1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까?					
9-1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정보공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9-1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9-15	귀하가 소속된 기관 직무담당자들의 업무량은 적정합니까?					
9-1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9-1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직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9-1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을 장기적 계획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9-1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2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예산은 적절한 수준입니까?					
9-2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9-2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9-2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지역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응시자의 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9-2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채용 시 일정 부분을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습니까?					
9-2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승진 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9-2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관련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9-2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용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번호	문항	①	②	③	④	⑤
9-29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목적은 일치합니까?					
9-3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9-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적 의무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3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3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분야별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3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9-3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9-36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인력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9-37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9-3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지역사회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습니까?					
9-39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9-4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외부에 관련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9-4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구성원의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9-4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현금 등 기부를 강요 하지 않습니까?					
9-4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단체구성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명문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까?					
9-44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단체구성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청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45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종교행위의 주재자와 재산관리인을 분리하고 있습니까?					

■ 응답자 일반사항

시·도		시군구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유형	1.개신교 2.천주교 3.불교 4.유교 5.천도교 6.원불교 7.기타		
설립주체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법인 4.개인 5.기타		
법인의 종류	법률상	1.비법인 2.재단법인 3.사단법인	
	기능상	1.사회복지법인 2.종교법인 3.학교법인 4.의료법인 5.문화예술법인 6.기타	
수익추구 여부	1.예 2.아니오 (법률이나 정관상 수익추구가 가능한지 여부)		
서비스 규모	기관 (월평균 이용자 수)		
	법인 (운영하는 기관 수)		

[인력]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법인구성인력	명	기관인력	명

[출연자산(재단법인)]

(단위: 천원)

출연자산	
------	--

[수입 및 지출]

(단위: 천원)

수입		지출	
후원금 (현금, 기부금 등)		인건비	
사업수입		관리운영비	
		사업비 (교육, 선교, 자선 등)	
기타		기타	
계		계	

[기타]

수익 분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의 수익이 법인 관여자나 법인 구성인력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고 있습니까? (장학금, 지원금 등 포함)	()%
잔여 재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누구입니까?	①설립자나 설립자 특별관계인 ②당시 이사회의 의결 등 정관이 정함에 따름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④동일 목적의 다른 법인에 증여 ⑤기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용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매일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형평화 연구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행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입산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